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법학석사학위논문

미국법상 자동차 등 품질보증에 관한 연구

- 이른바 “레몬법(Lemon Law)” 을 중심으로 -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 한 아



# 미국법상 자동차 등 품질보증에 관한 연구

- 이른바 “레몬법(Lemon Law)” 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재 형

이 논문을 법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김 한 아

김한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요약(국문초록)

WTO 가입국이 늘고 체결되는 FTA 수가 급증하는 등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품 제작자의 마켓은 국경을 넘은지 오래이고 상품 제작자의 지적재산권 등 일정한 권리의 보호는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국의 법환경의 성숙도 여하를 불문하고 비슷비슷한 내용의 이행입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글로벌 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보증'약관이 대부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상품소비자가 처한 사법적 품질보증관계는 국내품질보증법 등 소비자보호법의 유무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국제협약에서의 협약내용자체에 대한 이행입법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될 품질보증법, 소비자보호법과 같은 국내법이 중요해 지는 이유이다.

2015년 미국과 한국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 각각 발생하였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BMW 북미법인의 MINI 품질보증서상 MINI 순정부품을 사용하여 공식딜러서비스 등 공식지정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 품질보증(워런티)가 유지된다는 조항이 “연방품질보증법(연방레몬법)”상의 결부조항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심결 및 시정명령을 공표하였다. 얼마지 않아 BMW 북미법인의 FTC 심결 및 시정명령 수용으로 미국 BMW MINI소비자의 일반 수리센터 이용의 자유나 대체부품선택의 자유는 보다 확고히 보호되게 되었다(물론 일반 수리센터 업자나 대체부품산업계 역시 그러하다). 반면, 위 사건이 2015년 2월, 3월에 걸쳐 마무리되고 난 이후인 2015년 5월, 한국에서는 미국공권력에 의하여 전혀 다른 방향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미국 국토안보국 수사대는 한국특허청과 공조하여 한국의 i-phone 사설수리센터를 급습하고 아이폰 “짜퉁부품” 등을 압수하고 운영자를 지적재산권침해사범으로 입건하였다. 물론 어느 것이 적법한 대체부품이고 어느 것이 위법한 짜퉁부품인지 여부는 적법

한 라이선스의 여부 등 지적재산권법의 평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전혀 다른 평면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의 일상 사적 소비생활의 관점에서 이 두 사건을 보자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BMW MINI이든 i-phone이든 간에, 품질보증의 무효위험을 항상 직면하는 불합리함은 없이, 경우에 따라 적절히 공식이 아닌 집근처 서비스센터에서 굳이 비싼 순정품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체부품을 사용해서 긴 기다림 없이 신속하게 수리받고 싶어했다는 점은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미국의 MINI소비자는 여전히 대체부품이나 대체서비스의 사용이 인정되고 심지어 불합리한 품질보증(워런티)의 무효화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한국의 i-phone소비자는 그나마 존재하던 사설 서비스센터도 미국 국토안보국과 특허청의 공조수사로 문닫고 없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한국에는 i-phone 직영점이나 직영수리센터도 단 한 곳도 없다. 지정대행업체만이 있을 뿐이다. 소비자의 입장, 글로벌제작자의 입장(즉, 순정품과 순정서비스로 판매 후 시장의 사업기회를 독점하고 싶은 것이다), 사설수리업체의 입장, 대체부품제작 및 유통업자의 입장 등 모든 평면에서 이 두 사건은 반대의 결론을 가져왔다.

더불어, 최근 한국에서는 수입차의 증가와 함께 역시 수입차판매후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입차업체측의 영업기회 독과점으로 인한 고가로 인하여 소비자의 가격이나 대기시간 면에서의 불편뿐만 아니라 수입차보험사기 등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대체부품인증제 또는 정비정보공개입법(저자는 이 입법에 관여하였다)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태 소비자와 제작자간의 사적 법률관계에서 품질보증관련 책임을 묻는 사건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적은 없었는데 드디어 소비자에 의하여 품질보증책임을 묻는 2개의 사건이 법원에 제기되었다. 하나는 BMW 520d, 다른 하나는 i-phone5에 관한 품질보증책임을 묻는 사건이다. 특히 BMW 520d사건은 대법원까지 계속되었고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로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종류물의 불완전 급부이행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매매계약의 당

사자가 아닌 품질보증인과 소비자 간의 품질보증책임 자체에 관하여는 방론에 그쳤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세계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공정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향후의 논의를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법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전되고 있지 못한 법으로서 현대와 같은 상품소비시대의 매일같이 발생하는 최빈도 거래인 소비자상품구입거래에 관한 민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국내법인 “품질보증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이에 관련되는 사건이나 사회현상, 그리고 관련 국내입법현황을 조사하여 설명하면서 특히 위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온 근거규범인 미국의 연방품질보증법, 이 연방품질보증법의 논의를 촉발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미국 레몬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에는 품질보증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 위 두 사건의 차이를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초 토대 중 일부 영역이 아예 공백이다. 즉,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 미국 경쟁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의 역외효력 등 많은 주요 법역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지만 소비자의 상품품질보증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품질보증영역은 기본법도 없는 실정이다. 약관규제법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품질보증법이 소비자에게 직접 주고 있는 권리에 비하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고, 여전히 일반법이자 기본법인 우리 민법이 유상계약의 공평 등 일반원리에 기초하여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품질보증인과 소비자간에는 직접적인 전형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 수준의 민법적 보호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이슈를 제기하고, 미국 품질보증법의 이 유가 된 미국 레몬법을 연방법과 주법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 법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레몬법과 1개주의 레몬법을 전부 번역하여 빠짐없이 재구성하여 모든 내용을 실었으며, 우리 민법에



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를 함으로써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 레몬법의 핵심 조항인 레몬 조항은 하자를 계량화한 공식을 직접 제공하여 교환이나 환불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특히 3개 주(코네티컷,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레몬법의 레몬조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 레몬법을 민사적 관점에서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품질보증편의 신설과 개별법 품질보증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될수록,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강한 곳에서는 글로벌 상품에 대한 각 측면에서의 법역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소비자의 사적관계에서의 글로벌마켓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한 법역은 아직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는 지적재산권, 경쟁마켓, 소비자의 권리보호 간의 관계, 글로벌 프로덕트에 대한 글로벌마켓에서의 국적을 불문한 평등한 소비자 보호 등의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서도 품질보증에 관한 우리나라 국내법 차원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품질보증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여 이러한 논의에 참고법이 될 수 있는 미국 레몬법을 매우 상세히 소개하였다.

.....

**주요어 :** (6단어 이내) 미국 레몬법, 자동차 등 품질보증, 하자의 계량화, 종류물 불안전급부와 하자담보책임, 결부조항 금지와 대체부품 또는 대체서비스, 세계무역환경하의 지적재산권 ·공정한 경쟁 · 동등한 소비자 보호 전반에 걸친 국내이행입법 또는 관련입법의 중요성

**학 번 :** 2005-21775

## <목 차>

제1장 서 .....	1
1. 문제의 제기 .....	1
2. 품질보증의 기본원칙과 판단기준 확립 필요성 .....	3
3. 품질보증의 민사적 기본 법률관계 .....	7
4. 연구의 대상과 범위 .....	8
제2장 레몬법 개관 .....	12
1. 레몬과 레몬법 .....	12
가. 레몬의 의미 .....	12
나. 레몬법의 명칭 .....	12
2. 연방 레몬법과 각 주의 레몬법 .....	17
3. 레몬법과 다른 법률의 구분 .....	18
가. 레몬법과 품질보증법(Product Warranty Act)의 관계 .....	18
나. 레몬법과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21
다. 레몬법과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 .....	21
제3장 레몬권의 객체인 “자동차” .....	23
1. 주요 자산으로서의 자동차 .....	23
2. 특별한 동산으로서의 자동차 .....	24
3. 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율 .....	25
4. 자동차를 둘러싼 분쟁의 유형 .....	26

**제4장 레몬법의 등장과 핵심내용 .....29**

**제1절 레몬법의 등장배경과 입법 .....29**

- 1. 연방 레몬법의 등장배경 .....29
- 2. 입법과정 .....30
  - 가. 대통령의 메시지 .....30
  - 나.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의회의 입법과정 .....32
- 3. 연방 레몬법 제정 및 문제의 대두 .....35
- 4. 각 주 레몬법 입법 및 그 현황 .....37

**제2절 레몬법의 핵심내용 .....41**

**제5장 연방 레몬법 .....43**

**제1절 서 .....43**

- 1. 연방 레몬법 .....43
- 2. 연방 레몬법의 구성과 “레몬 조항(Lemon Provision)” .....44
  - 가. 연방 레몬법의 구성 .....44
  - 나. “레몬 조항” .....46
  - 다. 비재송적 분쟁해결절차, 승소한 소비자의 변호사비용배상청구권 등  
.....47

**제2절 연방 레몬법상의 주요 개념과 그 의미 .....49**

- 1. 상품(Consumer Product) .....49
  - 가. 상품 .....49

나. 목적 .....	49
다. 부동산에의 부속물 또는 중물 .....	50
2. 소비자(Consumer) .....	51
3. 공급자(Supplier), 품질보증인(Warrantor) .....	52
4. 서면 품질보증(Written Warranty) .....	54
5. 서비스계약 .....	55
6. 합리적이고 필요한 유지관리 .....	56
7. 구제 .....	57
8. 기타 개념의 정의 .....	57
<b>제3절 서면 품질보증(Written Warranty) .....</b>	<b>59</b>
1. 연방 레몬법 적용요건 : “서면의 품질보증(Written Warranty)” .....	59
2. 통일상법전의 담보책임(Warranty)과의 비교 .....	59
3. 서면의 품질보증(Written Warranty) .....	60
가. 해당 법조문의 소개 .....	60
나. 구별개념 .....	62
1) 명시적 품질보증(Express Warranty) .....	62
2) 묵시적(내재적·내포된) 품질보증 .....	64
3) 서비스계약 .....	65
4. 서면품질보증의 요건 .....	65
가. 서면품질보증 유형의 구분 .....	65
나. 보증적 품질보증-MMWA § 2301. (6)(A) .....	66
다. 보장적 품질보증-MMWA § 2301. (6)(B) .....	67
라. 서면 품질보증의 유형별 요건상 異同 .....	67
5. 서면품질보증요건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 .....	67
가. 문제의 제기 .....	68
나. “일정한 기간”의 요건- 전제품에너지효율등급표시, 의류취급표시	68

다. “재판매가 아닌 거래의 기초를 구성할 것” 요건-합성물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품질보증 .....	69
라. “거래의 기초 ” 요건-서비스계약 .....	69
마. “무료체험기간(Free Trial Period)” “보상판매정책(Trade-in Credit Policy)”	70

**제4절 연방 레몬법상 품질보증의 내용을 지배하는 규칙 .....**72

1. 품질보증 내용에 관한 규칙(Rules governing contents of warranties)	72
2. 품질보증 내용의 전부 및 명확한 공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	·73
3. 소비자에 대한 품질보증 내용의 편의성; 정보 제공이나 게시의 방법, 양식, 존속기간, 서면 품질보증이나 서비스계약 기간의 연장 .....	74
4. 서면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상 결부조건부과 금지 및 FTC 면제 .....	75
가. 문제의 제기 .....	75
나. 법규의 내용 .....	76
다. 연방위원회의 해석(Interpretation, C.F.R. Part 700) .....	77
5.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품질보증 조항의 원용을 통한 통합 .....	79
6. 적용요건으로서의 소비자상품의 \$5이상 비용 .....	79

**제5절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과 일부품질보증(Limited Warranty)81**

1. 서 .....	81
2. 품질보증의 연방최소기준(Federal minimum standards for warranties)	81
가.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의 요건 .....	82
(1) 서면 품질보증상의 무료 구제수단 .....	82
(2) 묵시적 품질보증의 존속기간 .....	82
(3) 서면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의 위반에 따른 후속 손해의 배제 또는 제한 .....	83
(4) 레몬 조항 - 환불 또는 교환의 선택 .....	83

(5) § 2302, § 2304에 기초한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 요건	84
나. 연방 레몬 조항 (Federal Lemon Provision)	85
(1) 연방 레몬법의 제정 의도	85
(2) 연방 레몬법의 레몬 조항 § 2304. (a) (4)	85
(3) 연방 레몬 조항의 핵심내용	86
1) “레몬” 일 것	86
2)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 와 “환불 또는 교환”	86
3)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	87
4) 환불 또는 교환	88
(4) 연방 레몬 조항의 위치와 일부 품질보증(Limited Warranty)에의 적용여부	89
다. 기준의 면제와 입증책임	89
라. 품질보증인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조건	90
마. 비용의 부과 없는 구제	92
바.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로 유형지정된 상품에 대한 기준구비	
간주	93

**제6절 서면품질보증의 유형 지정(Designation of written warranties) 94**

1. 유형 지정 및 표시의 의무	94
2. 전부품질보증(존속기간의 표현) 또는 일부품질보증	95
3. 기타 유형 지정 관련 논의	95
가. 요건, 기준 등의 소비자 만족도의 묘사나 표현에 대한 적용가능성	96
나. 위원회에 의한 면책	96
다. \$10 이상이고 전부품질보증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비자 상품에 대한 적용가능성	96
4. 전부품질보증과 일부품질보증의 비교	96
가. 전부품질보증	97

나. 일부품질보증 .....	97
5. 전부품질보증와 일부품질보증의 병립 가능성 .....	98
<b>제7절 묵시적 품질보증 .....</b>	<b>99</b>
1. 면책과 수정에 대한 제한 .....	99
2. 존속기간의 한정 .....	99
3. 면책, 수정, 한정조항의 효력 .....	100
<b>제8절 연방 레몬법의 소비자 분쟁 구제절차 .....</b>	<b>101</b>
1.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	101
2. 연방 레몬법에서의 연방법원 .....	103
가. 연방법원의 관할권 .....	104
나. 잠정적 처분과 그 효력의 상실 .....	104
다. 거주지 외의 관할 법원 소환 .....	104
라. 기만적 품질보증의 의미 .....	105
3. 레몬소송과 연방법원의 레몬소송관할 .....	105
가. 연방법원의 레몬소송관할권 .....	105
나. 변호사비용 .....	106
다. 레몬소송의 연방법원 제소요건 .....	107
4. 구제수단의 집행에 대한 적용을 받는 품질보증인 .....	108
5. 금지된 조치 .....	109
<b>제9절 위원회 규칙공포절차 .....</b>	<b>110</b>
1. 위원회의 규칙 공포에 적용가능한 절차 .....	110
2. 구두 발표 .....	110

3.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품질보증과 품질보증 실행 .....	110
---------------------------------------	-----

**제10절 효력발생일 및 다른 법규와의 적용관계 .....**113

1. 효력발생일 .....	113
2. 다른 법규와의 적용관계 .....	113
가. 연방거래위원회법과 연방중자단속법 .....	114
나. 각 주의 품질보증법과의 관계 .....	114
다.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리, 구제수단,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115
라. 다른 연방 품질보증법과의 관계 .....	115
마. 주 레몬법, 통일상법전 그리고 연방레몬법 간의 관계 .....	115

**제11절 연방 레몬법 제정의 의의 및 비판 .....**117

1. 연방 레몬법 제정의 의의 .....	117
2. 비판 .....	119

**제6장 주 레몬법(플로리다주 “자동차품질보증이행강제법” ) .....**122

**제1절 서론 .....**122

1. 주 레몬법의 등장 .....	122
2. 주 레몬법의 주요 특징 .....	123
3. 플로리다주 레몬법의 범명(法名) 및 입법의도 .....	125

**제2절 플로리다 레몬법의 구성 .....**128

**제3절 플로리다 레몬법상의 주요 개념 및 그 의미 .....**130



<b>제4절 품질보증(Warranty) 준수 등 제작자의 의무</b> .....	136
1. 수리의무 .....	136
2. 차량 수리시 설명 및 서면제공의무 .....	137
3. 연락처 정보제공의무와 차량소유자 매뉴얼 및 품질보증 제출의무 ..	137
4. 비공식분쟁해결절차 관련 제작자의 의무 .....	137
<b>제5절 플로리다 레몬 조항</b> .....	139
1. 차량의 부적합성·불량·고장(Nonconformity) .....	139
가. “3+1”의 원칙: 3회의 수리 시도+1회의 마지막 수리기회를 위한 통지 .....	139
나. 15일 이상의 운행정지 .....	140
2. 부적합성·불량·고장(Nonconformity)의 치유 의무-10일 내의 응답의 무+10일(RV:45일) 내의 수리의무 .....	140
3. 40일 이내의 “환매수(Buyback) 및 환불” 또는 “교환” 의무 .....	141
4. 합리적 횟수의 수리시도 성립에 대한 추정(Presumption) .....	142
가. “3+1” 수리 시도 .....	142
나. 30일(RV:60일) 운행정지 .....	142
5. 레몬 주장에 대한 가능한 항변 .....	143
<b>제6절 플로리다 주 레몬법의 분쟁해결절차</b> .....	144
1. 법무부 인증 분쟁해결절차 .....	144
가. 제작자의 절차의 설립 및 법무부의 인증절차 .....	144
(1) 절차의 마련 및 인증 신청 .....	144
(2) 법무부의 인증심사 .....	144
(3) 법무부에 제출할 서류 .....	145

가) 회계감사서의 제출 .....	145
나) 합의서 사본의 제출 .....	145
(4) 증거거절에 대한 불복 .....	146
나. 인증절차 전치주의 .....	146
다. 인증갱신 또는 절차운영의 중지와 인증의 효력상실 .....	147
(1) 인증의 갱신 .....	147
(2) 절차운영의 중지와 인증의 효력상실 .....	147
라. 기타 .....	148
2. 주립 분쟁해결절차: 플로리다 신차중재위원회 .....	148
가. 분쟁 적격 .....	148
나. 중재위원회의 설립과 기능 .....	150
3. 중립 분쟁해결절차-RV조정·중재 프로그램 .....	155
가. RV 조정·중재 프로그램(RV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gram)의 구성과 기능 .....	155
나. RV 조정과 중재 프로그램의 분쟁적격과 프로그램의 기능 .....	159
4. 레몬 소송 .....	166
가. 소비자의 구제 .....	166
나. 딜러의 피고적격 .....	167
(1) 소비자에 의한 제소시 피고적격 .....	168
(2) 제작자에 의한 제소시 피고적격 .....	168
<b>제7절 환수레몬(Lemon Buyback)의 재판매제한 등 기타 주요 규정</b> .....	<b>169</b>
1. 환수레몬(Lemon Buyback)의 재판매 .....	169
가. 제작자의 레몬 VIN(차대번호) 통지의무 .....	169
나. 재판매의 제한 .....	169
2. 법무부의 집행권한 .....	170
3. 레몬법의 우선적 지위와 레몬법 위반 행위의 효력 .....	170

가. 우선권 .....	170
나. 무효가 되는 합의와 차량 양수인의 권리 .....	170
다.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거래 관행 .....	171
4. 기타 .....	171
가. 수수료 .....	171
나. 입법권 .....	172
<b>제8절 플로리다 레몬법 제정의 효과 .....</b>	<b>173</b>
1. 새로운 구제수단 .....	173
2. 플로리다 레몬법, 연방 레몬법, 플로리다 통일상법전상의 구제수단 .....	173
3. 관련문제 .....	175
가. 제작자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된 품질보증서상 조항의 효력 .....	175
나. 신체적 상해(Injury)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	176
다.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	177
라. 소결 .....	178
<b>제9절 주 레몬법의 공통요소 .....</b>	<b>179</b>
<b>제7장 레몬 조항, 레몬 법칙, 레몬 추정 .....</b>	<b>181</b>
<b>제1절 서 .....</b>	<b>181</b>
<b>제2절 연방 레몬 조항 .....</b>	<b>182</b>
1. 레몬조항의 내용 .....	182
2. 레몬권의 발생요건과 내용(레몬권 행사의 효과) .....	183
가. 레몬권의 발생요건(“레몬” 요건) .....	183

나. 레몬권의 내용(레몬권 행사의 효과) .....	183
<b>제3절 주 레몬 조항 .....</b>	<b>183</b>
<b>1. 코네티컷주 레몬 조항 .....</b>	<b>184</b>
가. 레몬조항의 내용 .....	184
나. 레몬권의 발생요건(레몬 인정 요건) .....	187
1) 실체적 요건 .....	188
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품질보증부 차량의 소비자일 것 .....	188
나) 차량이 “레몬” 으로 인정될 것-부적합성, 합리적인 횃수의 치유시도188	
(1) 레몬 요건 .....	188
(2) 레몬 추정-4회, 30일, 2회, 2년, 23,000마일, 품질보증기간, 1년189	
2) 절차적 요건-통지요부, 비재송적 분쟁해결절차 전치 등 .....	191
다. 레몬권의 내용-교환 또는 환불 .....	192
1) 교환의 경우 .....	192
2) 환불의 경우 .....	192
<b>2. 캘리포니아주 레몬 조항 .....</b>	<b>193</b>
가. 품질보증에 대한 규율-Song-Beverly Act .....	193
나. 레몬 조항의 내용-Tanner Consumer Protection Act .....	194
다. 레몬권의 발생요건(레몬 인정 요건) .....	197
1) 실체적 요건 .....	197
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품질보증부 차량의 소비자일 것 .....	197
나) 차량이 “레몬” 으로 인정될 것-부적합성, 합리적인 횃수의 치유시도198	
(1) 레몬 요건 .....	198
(2) 레몬 추정-4회, 30일, 2회, 18개월, 18,000마일 .....	198

2) 절차적 요건-통지요부,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전치 등 .....	200
다. 레몬권의 내용-교환 또는 환불 .....	201
<b>3. 플로리다주 레몬 조항 .....</b>	<b>201</b>
가. 레몬조항의 내용 .....	202
나. 레몬권의 발생요건(레몬 인정 요건) .....	205
1) 실체적 요건 .....	205
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품질보증부 차량의 소비자일 것 .....	205
나) 차량이 “레몬” 으로 인정될 것-부적합성, 합리적인 횃수의 치유시도	205
(1) 레몬 요건 .....	205
(2) 레몬 추정- “4회” 또는 “30일, 단 RV: 60일” 운행정지(기준: 24개월)	206
2) 절차적 요건-통지요부,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전치 등 .....	207
다. 레몬권의 내용 - 교환 또는 환불 .....	208
4. 소결 .....	209
<b>제4절 레몬 법칙과 레몬 추정 .....</b>	<b>210</b>
1. 하자과 레몬 .....	210
가. 수리불능의 레몬 .....	210
나. 상태적 레몬 .....	210
2. 레몬 추정과 레몬 법칙을 통한 하자의 정량화, 계량화, 객관화 .....	211
가. 레몬 법칙 .....	211
나. 레몬 추정 .....	211
다. 하자판단기준의 계량화, 정량화, 객관화 .....	212
3. 레몬 추정과 증명책임 .....	213
4. 종류물 불완전이행급부의 보완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레몬 조항 .....	213
5. 소결 .....	215

제8장 레몬법의 적용 .....	216
제1절 다른 법과의 관계 .....	216
1. 권리 경합 .....	216
2. 연방 중재법과의 관계 .....	216
제2절 연방거래위원회의 레몬법 적용사례 .....	218
1. 결부조건부 품질보증의 금지 .....	218
2. BMW of North America, LLC 사례 .....	220
3. 검토 .....	221
제9장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224
제1절 미국 레몬법의 법역 .....	224
제2절 품질보증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법·판례현황 .....	225
1. 품질보증에 관한 현행 법령 현황 .....	225
2. 품질보증에 관한 우리 입법의 태도 .....	228
3.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과 품질보증책임(Product Warranty) .....	230
가. 확대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 .....	230
나. 계약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약책임으로서의 품질보증책임 .....	231
4. 품질보증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판례 현황 .....	232
가. 미미한 품질보증쟁송현실 .....	232
나. 품질보증과 관련한 판결의 태동 .....	233

5. ‘BMW 520d’, ‘아이폰5’ 판결의 사안과 미국 레몬법 .....	234
가. ‘BMW 520d’ 사안 .....	234
1) 사실관계와 원고의 청구 .....	234
2) 법원의 판단 .....	234
3) 검토 .....	235
나. ‘아이폰 5’ 사안 .....	236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	236
2) 검토 .....	237
다. 소론 .....	238

### 제3절 품질보증의 본질, 그 법적 성질 .....

242

1. 품질보증의 본질 .....	243
가. 마케팅수단으로서의 품질보증과 이행의 강제 .....	243
나. 자동차 품질보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상거래 현황 인식 .....	244
2. 품질보증의 법적 성질 : 부합판매된 독립한 서비스계약 .....	246

### 제4절 품질보증에 대한 법적 규율 또는 구제수단 .....

250

### 제5절 종류물 불완전이행금부의 보완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레몬 조항 252

1. 요건 및 효과에서의 유사성 .....	252
2. 레몬권과 종류물하자담보책임의 차이 .....	253
3. 소결 .....	256

### 제10장 결론 .....

257

1. 특정 하자판단기준에 기초하여 특별한 절차와 구제수단을 인정한 레몬법	257
------------------------------------------	-----

2. 연방 레몬법의 품질보증원칙확립과 주 레몬법의 개별레몬구제 .....	257
3. 우리나라 품질보증책임 분쟁의 태동 .....	259
4. 민법상 새로운 유형의 전형계약인 품질보증계약편 신설(입법제안) ..	260
5. 특별법인 품질보증법의 제정(입법제안) .....	262
6. 결어 .....	265
<b>참고문헌 .....</b>	<b>272</b>





# 제1장 서

## 1. 문제의 제기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민사적 거래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법은 그 법률관계의 모든 면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정합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을까, 혹시 중요한 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율 토대도 미처 마련되지 못한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의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산업혁명이 일상생활에 미친 가장 현저한 변화 중 하나는 공산품의 대량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자측과 소비자측은 점점 더 명확히 구별되고, 양자를 잇는 유통업이 발달하며,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마케팅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기업화, 공장에서의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마케팅 등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삶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발현되는 동산매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곧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지도 않고, 계약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정보교류의 쌍방성이 보장되지도 않으며, 생산자·제조자나 유통업자인 매도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광고나 규격화된 소비재의 한 표면 혹은 부대하여 제공되는 설명서 등으로 전달되는 정보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동산매매는 현대의 일상적 민사거래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늘었고 언제부터인지 품질보증은 경쟁자의 상품에 비하여 자신이 제조한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마케팅의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대량생산되는 공산품의 전성시대인 오늘날, 품질보증서가 포함된 종류물의 거래는 일상에서 늘상 발생하는 민사거래의 최다빈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회구성원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품질보증서가 들어있거나 품질보증이 표시되어 있는 공산품을 구입하고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 의하여 결정된 제품의 사양과 가격을 기초로 제조물이나 공산품을 사 먹고, 사 입고, 사서 쓰며 일상생활을 대부분을 영위해 나가는 현대 사회에,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다거나 광고나 성능의 표시 등을 통하여 짐작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반하는 경우, 소비자의 법적 구제수단은 무엇일지 문제된다. 전통적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구제만이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언론이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는데 성공하거나 나아가 일정시기의 특정 종류의 상품 전체의 회수조치를 이끌어 내거나 혹은 전혀 구제되지 못하거나 악성 소비자(Black Consumer)로 인정되는 등 소위 ‘복불복’으로 구제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새로운 유형의 구제수단이라고 칭하여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러한 상품들이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공산품 혹은 제조물로서 품질보증서(Written Warranty)가 제공된 경우에는 소비자의 법적 구제수단은 무엇일지,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추가되는 구제수단을 어떠한 것이 있을지가 문제된다. 유통과 판매단계가 분화된 경우가 대부분인 현대 사회에서 매수인은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을 누구에 대하여 가질 수 있을까, 사회가 변화한 만큼 구제수단도 그에 대응하여 다양화되어 있을까,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서 소비자인 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여전히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바 소송비용과 시간의 소요를 감내하고라도 구제절차를 밟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을까,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축에 들면서 즉시소비재가 아니라 내구재이며 재산으로서도 중요한 가치도 갖는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상품의 계속적 사용에서 발생한 하자는 어떻게 구제되어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재산상으로도 경미한 손해

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를 수반할 수도 있는 소비재로서 고도의 첨단기술과 다양한 마켓플레이어들의 협업과 사회의 인프라이용을 통하여 운용되는 하이테크제품이나 “커넥티드 카 플랫폼(Connected Car Platform)” 과 같이 그 제품의 기반제품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과 효과 및 증명책임은 주관설에 따른 하자라는 불확정개념과 상당인과관계설 등 전통적 추상적 판단기준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면 정량화·계량화·객관화될 수 있을까 등의 문제 역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 2. 품질보증의 기본원칙과 판단기준 확립 필요성

2015년 2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BMW MINI 북미법인의 품질보증서 중 ‘유지보수관리나 수리를 받을 때 BMW MINI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BMW MINI의 순정부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 항목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미국의 연방품질보증법<sup>1)</sup>을 위반하였다는 조사결과 및 시정사항을 발표하였다.<sup>2)</sup> 같은 해 3월, BMW MINI 북미법인이 이러한 미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시정사항을 받아들임으로써 BMW MINI의 소비자들은 순정부품이 아닌 부품(이하 ‘비순정부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칭한다)으로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서비스제공업체(이하 ‘비공식서비스센터’로 칭한다)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품질보증의 무효화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을 보다 확실히 보장받게 되었다.<sup>3)</sup> 그리고 같은 해 5월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성

1) 구체적으로는 ‘연방 레몬법’으로 불리우는 매그너슨-모스 연방거래위원회 품질보증 개선법(Magnuson-Moss Warranty 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이다. 이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법으로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미연방차원의 기본법이다. 이에 관해서는 제2장 이하에서 자세히 다룬다.

2) BMW MINI 사례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연구논문의 해당부분 (제6장) 참조

3) 미국법의 역외적용논의는 서면법 등 반독점법 영역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과를 반영하여 연방품질보증법에 대한 유권해석지침을 개정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그 즈음인 2015년 5월 14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HSI)과 우리나라 특허청의 지재권위반사범에 대한 첫 번째 수사공조사례가 등장하게 된다. 양 기관은 서울의 스마트 수리점을 압수수색하여 i-phone(아이폰) 소위 “짜통 부품” 등 스마트폰의 비순정부품을 압수하고 수리점운영자 등을 상표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하였다.<sup>4)</sup>

과연 적법한 ‘대체부품’과 위법한 이른바 ‘짜통부품’의 구별기준은 무엇일까,<sup>5)</sup> 순정부품 이외의 부품이나 공식서비스센터 이외의 서비스센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미연방품질보증법상 소비자보호의 원칙은 양 사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 마켓의 경쟁구조와 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제를 보장하는 방향의 기본 태도는 역시 동일한 것일까 등의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갈등, 국제통상에서의 지적재산권문제, 국제통상과 경쟁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문제, 또는 미국경쟁법의 역외집행문제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논의

---

적용의 효과로 표면적인 독점규제와 경쟁마켓활성화,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타국경쟁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기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2015년 2월 연방거래위원회의 BMW MINI의 순정품사용결부조건부 품질보증에 대한 사례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연방품질보증법의 적용과 집행이 자국기업이 아니라 미국 내 타국경쟁기업에 대하여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얼마든지 자국기업보호의 효과를 실현하는 비관세장벽으로 기능케 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4) 특허청 보도자료 참조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4&pg=1&npp=10&catmenu=m02\\_01\\_01\\_02&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4910](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4&pg=1&npp=10&catmenu=m02_01_01_02&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4910)

5) 이는 특허 주문자부착상표 등 실물경제현실을 직접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론에 의한 그 판단기준의 확립이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오일필터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어느 한 하청업체에서는 같은 생산라인에서 나온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필터에 절반은 자동차메이커의 순정품 스티커를 붙여 납품하고, 나머지 절반은 대체부품유통판매업자의 스티커를 붙여서 혹은 아무 것도 붙이지 않은 채 출하하기도 한다.

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WTO, FTA 등 각종 통상협약들로 인하여 체결국가의 국내이행규범간의 주요내용이나 집행이 유사해지는 접근 현상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품질보증법은 아직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품질보증법이라는 법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자동차 또는 스마트폰의 소비자가 공식서비스센터에 가서 제작자의 순정품을 사용하여 상품의 수리를 받지 않고 비공식서비스센터에 가서 비순정품을 사용하여 상품의 수리를 받은 경우 당해 상품의 품질보증은 일응 유효하게 유지되는가, 만약 유지된다면 이의 전제로서 비공식서비스센터나 비순정품의 합법적 존립이나 사용이 사회적으로 승인되어야 하는가, 이 경우 지적재산권법과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등이 문제되고 결국은 제작자의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소비자 보호, 마켓의 경쟁활성화, 지적재산권의 보호 간에 있어 그 국내외 법적 기준의 정립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BMW MINI 소비자가 비공식서비스센터에서 비순정부품을 사용하여 수리받기로 선택하는 것은 미연방품질보증법 차원에서 강력히 보호되나, 한국의 i-phone 소비자가 비공식서비스센터에서 비순정부품을 사용하여 수리받기로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미국의 공권력이 한국 영토 내까지 진입하여 한국의 공권력과 공조하여 비공식서비스센터 운영자를 형사입건하고 비순정부품을 압수하고 비공식서비스센터는 문을 닫게 된다.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 후 서비스마켓에 대한 사업공급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차이가 있게 된다. BMW MINI에 대한 서비스나 부품은 공식 혹은 지정수리센터나 순정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독립사업자들이 대체재로서 마켓에 공급할 가능성이 보장되는 반면, i-phone의 경우에는 대체재가 없으므로 서비스이든 부품이든 애플의 공식 혹은 지정수리센터나 순정품만을 사용하게 되는 등 애플의 서비스 정책은 독과점화될 가능성이 크고 애프터세일즈 마켓의 비즈니스 기회는 애플이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위 두 사

안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위와 같이 현실세계에서의 법 적용 면에서는 전혀 다른 쟁점이 부각되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물론 미연방품질보증법의 순정부품사용조건부 품질보증의 효력유지금지 문제와 WTO, TRIPs 협약<sup>6)</sup>하에서 협약국내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는 법익과 법역이 다르고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비순정부품인지 아니면 지적재산권 침해가 있는 비순정부품인지 여부에 따라 논의영역이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은 위와 같이 소비자의 상품수리와 관련한 소비활동의 본질에 있어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실행에 있어서는 매우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는 위 두 사안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특히, 미국내 BMW MINI에 대한 공식 서비스센터는 상당수 존재하나 한국에는 애플 직영 오프라인스토어조차 한 군데도 없고 함께 입점되는 직영 수리센터 지니어스 바도 없고 공인서비스대행업체의 수도 많지 않은 관계로 일면 비공식 서비스센터의 존재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sup>7)</sup>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법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가 충분한 수의 서비스 및 수리센터를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한 곳에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함을 비롯하여 동 센터 내에 공지할 내용 등 운영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일단 일견의 차이점으로는 단지 한국에는 이와 같이 기준을 확실히 제시하는 강력한 품질보증법과 이를 적용하는 법집행(Law Enforcement)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제 하는 강력한 연방거래위원회가 없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매우 흥미롭다. 특히 폭스바겐의 MQB<sup>8)</sup>이나 구글의 ARA폰<sup>9)</sup>

6)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trips\\_01\\_e.htm?l=it](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trips_01_e.htm?l=it)

7) [https://locate.apple.com/kr/ko/?target=nav/find\\_a\\_store](https://locate.apple.com/kr/ko/?target=nav/find_a_store) 애플의 온라인스토어나 애플과 계약을 맺은 공인판매점이 있고 수리센터로는 애플 직영수리센터가 아니라 단지 애플과 계약을 맺은 대행공인수리센터가 몇 군데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의 부분수리를 받는 것이 통상 매우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반드시 리퍼폰으로만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의 부분수리를 받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소위 ‘짜퉁부품’ 입건으로 인하여 비공식 서비스센터는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소비자의 대체재 선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과 같이 기본 플랫폼위에 레고블럭처럼 필요한 부품만을 조립하여 필요에 따른 개성 있는 상품을 만들고 또 만든 이후에도 엔진을 가솔린 6기통에서 디젤 8기통으로 교체한다든지 카메라를 저화소에서 고화소로 교체한다든지 등 필요에 따라 모듈을 교체함으로써 얼마든지 다른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한 “조립식 자동차, 조립식 스마트폰”의 시대, 나아가 “휴보”와 같은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의 상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첨단시대로 진입하여 가고 있는 현재임을 고려한다면 품질보증의 범역에 있어서도 상품과 품질보증, 수리와 부품, 모듈 등의 문제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인식하고 관련법률관계의 해결기준, 판단기준의 기본을 정립하여 두는 것은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는 문제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sup>10)</sup>

### 3. 품질보증의 민사적 기본 법률관계

그렇지만 아직 품질보증법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품질보증에 관한 소송이나 축적된 판례도 극히 미미한 우리나라의 법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에서 품질보증법과 지적재산권법, 경쟁법, 통상법 등에 걸쳐 있는 위 미국의 BMW MINI 순정품사용강제금지사례와 한국 i-phone 짝퉁 부품사례를 본격적인 대상으로 삼고 직접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크게 조망하여 볼 때 지적재산권, 경

8) Modularer Querbaukasten, “Modular Transversal Toolkit“ or “Modular Transverse M a t r i x “ .  
[http://www.volkswagenag.com/content/vwcorp/content/de/investor\\_relations/Warum\\_Volkswagen/MQB.html](http://www.volkswagenag.com/content/vwcorp/content/de/investor_relations/Warum_Volkswagen/MQB.html) 참조

9) <http://www.projectara.com/>  
<https://twitter.com/ProjectAra/>

Project Ara, from Google’s Advanced Technology & Projects (ATAP) group, is making an open, modular smartphone platform. Making hardware more like software apps.

10) 현재로서는 언제나 판단기준이 국내외적으로 선명하고 확고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적 법집행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공권력집행도 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WTO, FTA 무역 분쟁의 한 원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쟁법, 품질보증법의 세 법역이 교차하는 이 흥미롭고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두 법역과는 달리, 아직 불모지로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품질보증법의 영역에 대하여 기본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품질보증의 본질이 제작자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품질보증이므로 이러한 기본에 해당하는 민사법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연구를 시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연구대상이 될 품질보증법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법, 경쟁법과 더불어 자국법의 글로벌 영향력이 강하고, 관련 EU 법규를 유럽 내에서 EU Lemon Law라고 칭할 정도로 범명칭까지 비공식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미국 레몬법(미국 연방품질보증법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동 연방법뿐만 아니라 50개 각 주에서 비슷한 시기에 모두 레몬법을 입법하여 주별 레몬법까지 시행중임)에 대한 연구가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방향, 연구순서에 대한 생각으로 위 세 법역간의 관계나 갈등문제나 적용문제 등 응용적, 파생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우선 미국 레몬법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법률 내용 자체의 연구를 통하여 현대 민사거래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상품거래의 일면을 구성하는 품질보증의 민사적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4. 연구의 대상과 범위

‘1. 문제의 제기’에서 기술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미국의 레몬법(Lemon Law)에서 상당부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과 관련한 법, 특히 행정권력과 산업주체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들은 비교적 활발히 제·개정되어 가고 있지만 그에 비하여 소비자와 산업주체간의 사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의 발전이나 분화는 사실상 미미하다.<sup>11)</sup>

11)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품질보증’과 관련한 한국현행법령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한 부분 참조

이와 같이 일반대중의 민사거래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분야는 관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필요성에 대한 대변도 제대로 되지 못하여 변화 및 분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그러한 분야의 분쟁은 일부 특별법적 규율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이나 소비자기본법 등 이외에는 여전히 기존의 민법 일반론에 기댈 수밖에 없을 뿐 상기 의문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나 현대와 미래 민사거래현실에서 발생할 첨단과학기술이 집약된 소비재를 둘러싼 새로운 유형의 분쟁들에 대한 기본적 판단기준을 국내법에서 구체적으로 찾기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각 분야가 균형 있게 성숙해 나갈 수 있었고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헌법가치 중 하나로 삼는 문화아래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존중이 깊은 전통으로 자리 잡은 미국의 경우는, 권력과 대기업, 부 혹은 각종 이권 등이 집중되는 분야가 아닌 법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나 안전 등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각 분야의 법 역시 고루 발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기축통화를 무기로 하는 세계적 소비국가로서 내수시장의 소비의 힘이 무역을 비롯한 각종 협상의 중요한 요인일 만큼 미국에서는 소비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가나 국민들은 이러한 소비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나 경쟁환경구축 등의 국가구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즉 이를 통하여 자국민소비자를 보호하고 정치적 인기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경제공법에 규정된 내용을 미국시장에 진출한 국외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국 경쟁사업자를 우회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때도 있었고 그 국외사업자의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출국 정부를 압박하거나 미국시장 내 수출국의 지위차체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 중의 하나로 “레몬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품질보증법의 제정이유가 된 “레몬”에 대한 법, 즉 “레몬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양한 상품 중 거래발생의 빈도, 구입가격의 크기, 내구연한의 길이, 하자 발생시 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비용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비자의 구입 상품 중 주택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품질보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부합하여 작동하지 않는 그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의 특별한 구제수단을 획기적인 요건 하에 부여한 특별법인 미국의 “레몬법”을 탄생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왜 미국의 레몬법이 자동차로부터 기원하여 대부분 자동차에 대하여 입법되었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수동산으로서의 자동차의 특성과 자동차를 둘러싼 분쟁의 유형을 간략히 언급하고 미국 연방 레몬법의 입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한 후 연방 레몬법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소개하고 연이어 주 레몬법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소개한 미국 레몬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민법에 주는 시사점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미국 레몬법은 사적인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비교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이미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만 소비자보호법의 성격을 띠는 경제공법적 성격이 강한 법인 점, 품질보증에 있는 경우 그 품질보증을 둘러싼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특별법인 점에서 우리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과의 형식적인 평면적 비교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도 경제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약관규제법<sup>12)</sup>을 계약의 효력요건 중의 하나로 개별 민사사건에 적용하여 구체적 내용통제를 하고 있는 바<sup>13)</sup>, 이에 비추어 볼 때 미국 레몬법의 경제공법적 성격 때문에 우리

12) 우리 나라에 레몬법은 없지만 신차매매계약에서 교부되는 품질보증서는 통상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면에서 약관규제법은 레몬법과 기능면에서 일정부분 공통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 레몬법상 “레몬”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국내법제에서 비교하는 경우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일반채무불이행책임과의 기능적 비교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본 연구에서는 약관규제법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후술하듯 연방레몬법은 “결부조건금지”와 같은 품질보증의 기본원칙들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기능은 약관규제법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13) 가령 “대법원 2008.12.16. 자 2007마1328 결정[부당이득금][공2009상,29]【판시사항】

민사관계법과의 비교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미국 레몬법상 레몬의 본질은 결국 상품의 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 민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과 기능적 비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미국 레몬법이 우리 민법에 시사할 수 있는 점을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1] 법원이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의 내용과 기준【결정요지】[1] 법원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 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제와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통제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불공정성통제의 과정에서, 개별사안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등.

## 제2장 레몬법 개관

### 1. 레몬과 레몬법

#### 가. 레몬의 의미

“레몬(Lemon)”이란 명사는 노랗고 신맛이 나는 과일의 한 종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레몬”이라는 단어에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레몬은 “허약하고 불만족스럽거나 실망스러운 것으로 특히 자동차<sup>14)</sup>” 또는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 또는 사물, 불량품”<sup>15)</sup>을 의미한다.

#### 나. 레몬법의 명칭

“레몬법”은 레몬에 관한 법, 즉 레몬인 차량에 관한 구제수단을 규정한 미국법을 칭한다.<sup>16)</sup> “레몬법(Lemon Law)”이라는 명칭은 미국 거래일반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각 주정부에서 사용되고 있고, 법원의 변론이나 판결문, 주 레몬법상 구체적인 조항들에서도 “Lemon Law Buyback”, “Lemon Law Rights Period”, “Lemons”와 같은 용어가 직접 법률용어<sup>17)</sup>로 사용되고 있고 있을 만큼 공적, 사적으로 널리

---

14) “feeble, unsatisfactory, or disappointing thing, esp. a car.” 474면, OXFORD Desk Dictionary and Thesaurus, Second American Edition, OXFORD

15) “Informal. a person or thing that proves to be defective, imperfect, or unsatisfactory; dud: His car turned out to be a lemon.” ,  
<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lemon?s=t> 참조

16) 다만, 미국 레몬법의 명칭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EU 지역 내에서도 EU의 차량관련 소비자보호법을 EU Lemon Law로 부르기도 한다.  
<http://www.courthousenews.com/2015/06/04/eu-high-court-clarifies-europes-lemon-law.htm>

통용되는 명칭이다. 각종 학술 논문 등에도 사용된다.<sup>18)</sup> 사실 미국 내에 국한된 명칭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 유럽 등 서구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Lemon Law” 는 신문기사에서 무리 없이 일반어휘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sup>19)</sup>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즈랜드주 정부는 올해 개정여부가 논의될 호주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에서 “Lemon laws” 를 입법하기 위하여 주정부사이트에서 새로 Lemon laws 관련 웹페이지를 구성하기도 하였다.<sup>20)21)</sup>

후술하듯 미국에는 연방 레몬법이 있고 모든 주에 각 주 레몬법이 제정되어 발효 중이다. 그런데 이 연방 레몬법과 각 주의 레몬법의 내용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니다. 연방법과 모든 각 주법이 “레몬” 인 소비재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구제를 위하여 레몬법상의 권리를 특별법적으로 획기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은 공통으로 하지만, 연방법이나 각 주법은 대상 소비재의 범위를 차량에 한정할 것인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의 상품 전반으로 확장할 것인지, 신차에 한정할 것인지 중고차를 포함할 것인지, 소비자의 정의에 사업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 적용범위가 같지 않다. 그리고 연방 레몬법과 같이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라는 법명이 의

17) 가령 후술하는 캘리포니아 주법, 플로리다 주법 등

18) George. A.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19) 사실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유럽 등 서구(Western) 그리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대부분 알려져 있다. “Lemon Car” 는 다른 많은 영단어들과 같이 vocabulary의 하나로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의 기본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20) 오스트레일리아 퀸즈랜드주정부의 사이트 중 레몬법에 대한 웹페이지:

<http://www.qld.gov.au/law/laws-regulated-industries-and-accountability/queensland-laws-and-regulations/fair-trading-services-programs-and-resources/consultation-regulatory-reform/lemon-laws/>

21) 미국식 “Lemon Law” 를 자신들도 입법하기 위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입법활동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가령 “Lemon Laws 4 Aus”, “Queensland to push for national lemon laws for when new cars keep going bad”  
<https://www.facebook.com/lemonlaws4aus>,  
<http://www.abc.net.au/news/2015-06-17/queensland-to-push-for-national-lemon-laws-when-new-cars-go-bad/6553056> 등 참조

회에 의하여 부여된 것도 있지만 각 주 레몬법에는 레몬법이라는 통칭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법명이 법조항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채 각 주의 Code의 위치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법이 더 많고, 법의 위치도 품질보증에 관한 절에 들어가 있는 주,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절에 들어 있는 주, 일반 상거래법에 들어가 있는 주 등 각 주마다 법명이나 입법의 위치나 형태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연방 레몬법 제정 이래 각 주에서 레몬법을 제정할 때의 그 입법취지는 ‘품질보증이 된 레몬인 소비재의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하여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연방과 각 주에 공통되었다. 그리고 연방 및 주정부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일반 국민에 대하여 매스컴 등에서 “레몬, 레몬법”으로 제정된 법을 홍보<sup>22)</sup>하였고 상거래에서 관련 기업 역시 규범준수나 마케팅시 “레몬법”으로 홍보하고 소통하였기 때문에 미국인이라면<sup>23)</sup>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sup>24)</sup>, Song-beverly Act<sup>25)</sup>, Tanner Consumer Protection Act<sup>26)</sup>가 무엇인지는 모를지라도 “레몬법(Lemon Law)”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알고 있다. 즉, 구입한 상품이 “레몬”이면 그 레몬을 계속 보유하며 지속적으로 고통 받을 필요 없이 그 레몬을 다시 제작사나 그 대리인인 판매자에게 되돌려 주고 제대로 된 다른 상품으로 가져오거나 아예 환불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요컨대 “레몬”일 때에는 소비자는 그 레몬과는 국

22) 홍보와 관련하여, 친근하면서도 청량감있게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취지도 차용하여, 음료인 레모네이드(Lemonade)를 연상시키는 “Lemon Aid”를 레몬법상의 구제관련 공공기관의 이름이나 레몬법 관련 서적의 제목 등에 두루 사용하기도 한다.

23) 그리고 설령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동음이의어를 포함하여 한 단어의 여러 용례를 잘 알고 있거나 미국에서 일정기간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면 레몬이라는 보통명사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미국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 대화의 도중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또는 자동차상점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혹은 집에서 TV 시청 중 광고로, 심지어 레스토랑의 메뉴판에 꽂혀있는 달러의 협찬광고문구 등 레몬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다.

24) 연방레몬법의 이름이다.

25) 캘리포니아주법의 이름이다.

26) 캘리포니아주법 중 자동차품질보증 부분의 이름이다.

바이를 할 수 있고 판매자나 제조자는 즉시 그 레몬을 “교환, 환불”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심지어 “Barney’s Lemon Law says that if you don’t like the person in the first five minutes of a date, you can invoke the Lemon Law...and leave.”<sup>27)</sup>와 같은 문장에서 볼 수 있듯 “레몬법”의 명칭과 그 법의 핵심요지는 일상적인 대화나 신문기사에도 비유적으로도 아무렇지 않게 사용될 정도로 대중인지도가 매우 확고하다. 이와 같이 레몬법은 ‘품질보증이 된 “레몬”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권’을 규정한 연방 및 각 주의 특별한 법을 지칭하거나 혹은 그 모든 법규를 한꺼번에 집합적으로 총칭하여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띤 용어로 오랜 기간 동안 그 확고한 위치를 정립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품질보증법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레몬법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연방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고 주법의 현황을 소개하며 연방법과 주 법1개의 구체적인 조문내용을 검토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연방법 제정과정에서 적용범위가 신차에서 일반소비재로 확장되어 버리는 바람에 연방 레몬법만을 소개하다보면 자칫 품질보증법 전반의 연구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고 차량의 품질보증으로 탄생한 레몬법을 레몬법답게 소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레몬법의 태생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주 레몬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율 태도에 해당하기도 하는 자동차를 적용범위로 하는 레몬법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다. 일반적으로 레몬법의 핵심적용대상은 “품질보증”이 된 “신차”인 “레몬”인 것이고 이에 대한 기존의 구제수단에 비하여 획기적인 구제수단으로 규정한 것이 신차가 “레몬”이라면 “교환 또는 환불” 해주라

27)

<http://www.business2community.com/email-marketing/6-lessons-about-email-from-how-i-met-your-mother-01245103>



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품질보증법”이나 “일정 소비재의 품질보증법”, “자동차 품질보증법”, “신차 품질보증강제법” 등으로 칭하게 되면, 어느 것으로 부르더라도 레몬인 신차에 관한 특별구제수단을 입법한 레몬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상의 품질보증일반론과 관련된 논의로 오해될 소지가 크고 적용범위가 같지 않은 연방 레몬법과 각 주 레몬법 전부를 무리없이 포함시켜 대표적으로 칭할 수 없게 되며 미국의 레몬법을 자동차를 중심으로 소개한다는 논문의 목적을 투영해 내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다고 집합적 명칭의 사용이 필요할 때마다 연방 레몬법과 51개의 각 주 레몬법, 즉 총 52개의 레몬법의 법명이나 Code 섹션 번호를 52개 모두 일일이 열거하는 것 역시 비효율적이고 레몬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소개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바로바로 투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제가 아니고 연방법과 각 주법이 나뉘어 규율되는데 연방법과 주법간이든 각 주법간이든 유사입법의 경우에도 그 법의 편제나 위치, 형식, 내용이 같지 않다. 이와 같은 미국 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입법의 원인이자 규율의 중심대상인 문제투성이인 차량을 “레몬”으로 불러왔던 점, 그리고 이러한 “레몬”을 그대로 사용하여 법을 부르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던 레몬법의 유래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연방레몬법도 제정되어 있고 모든 주가 각기 레몬법을 입법하여 유사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적용범위에 있어 일반적 소비재 전반인지 신차인지, 중고차규율규정이 있는지 등이 통일되지 않은 점, 이러한 각 입법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이 레몬법 전반에 대한 통칭을 하여 각 주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레몬법이라는 명칭이 미국에서 공지, 주지의 일반적 용어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연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레몬법에 대한 소개를 하는 본 연구에서 “레몬법”이라는 용어 이외의 다른 용어로서 본 연구의 내용을 연구의도대로 투영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미

국의 법제나 사회구조는 한국의 그것과 매우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 논문에 사용할 법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한국적 관념에 기초하여 보아야만 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연구의 목적인 레몬법의 ‘소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레몬법”이라는 용어를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칭하는 대표적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 2. 연방 레몬법과 각 주의 레몬법

미국에는 현재 연방 레몬법과 51개의 각 주 레몬법이 발효 중이다. 1975년 7월 4일 발효된 연방 레몬법을 시작으로, 1982년 주 레몬법 중에서는 처음으로 코네티컷주 레몬법이 입법된 이후 현재 51개의 각 주 레몬법이 발효 중이다. 그런데, 이 레몬법들은 “레몬조항(Lemon Provison)”과 “레몬권(Lemon Law Rights)” 등 레몬법으로서의 본질(Identity)를 결정짓는 핵심조항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법의 위치나 적용범위 등 구체적인 항목이나 규율의 내용이 각 주별로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연방 레몬법과 주 레몬법 중 1개의 주법을 선택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기로 한다.<sup>28)</sup>

---

28) 연구 초기에는 “연방 레몬법”만을 소개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방 레몬법”은 자동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상품에 대한 미국의 “연방 품질보증법”이기 때문에 미국 “품질보증법”에 관한 연구에 보다 가까워 질 뿐 실제 연구의 목적인 미국 “레몬법”의 소개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레몬법의 샘플로 자동차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미국 “주 레몬법 중 하나”만을 소개하는 방법이나 “몇 개 주의 레몬법 간의 비교” 등을 고려하였으나, 우선 “몇 개 주의 레몬법 간의 비교”는 각 주간 레몬법이 전부 같지도 않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제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사실상 “51개 주의 레몬법 간 비교 및 연방 레몬법과의 비교”를 하게 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감으로써 한국에 아직 레몬법 자체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연구논문도 없는 영역임을 고려할 때 연구순서의 문제나 연구범위가 과도하게 방대하여지는 문제가 있었고, “주 레몬법 중 하나”만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일단 주 레몬법 자체가 연방 레몬법의 부족함 때문에

### 3. 레몬법과 다른 법률의 구분

#### 가. 레몬법과 품질보증법(Product Warranty Act)의 관계

품질보증이 된 자동차소비자의 품질보증이행강제방안으로 “레몬(Lemon)”인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의 강력한 구제수단인 “교환 또는 환불권”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입법된 미국의 레몬법을 소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범위이다. 그런데 미국의 레몬법은 연방 레몬법과 각 주의 레몬법으로 나누어지고, 각 주의 레몬법이 대부분이 자동차(Motor Vehicle)만을 대상으로 입법되었으나 연방 레몬법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 전반(Consumer Product)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자동차 소비자들의 빗발치는 민원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연방 레몬법임에도 불구하고 제정당시 법률의 적용대상을 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고

---

입법이 촉발된데다가, 레몬조항이나 레몬권, 비쟁송분쟁해결절차, 변호사비용구상의 인정 등 핵심 내용이나 구조는 여전히 연방 레몬법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레몬소송의 연방관할권을 인정한 연방 레몬법의 효력으로 실제 레몬소송에서는 청구의 객관적 병합으로 주 레몬법위반과 연방 레몬법 위반을 모두 청구원인으로 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레몬소송의 판례 하나라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하여는 어떤 주의 레몬법을 선택하더라도 연방 레몬법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준비하면서 조사한 결과, 미국 레몬법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레몬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이 연구에서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연구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레몬법으로 제정되고 발효중인 법률의 숫자만 해도 연방과 주를 합쳐 52개에 달하고, 입법 이전단계의 논의를 제외하고라도 이미 연방 레몬법이 제정된 해인 1975년 이래로 올해인 2015년까지 40여 년에 걸친 연구와 많은 양의 법원 판례 또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심결례가 연방과 각 주의 차원에서 실로 방대하게 집적되어 있는 영역으로 장차 다양한 세부적인 논제를 잡아 흥미 있고 깊이 있는 논의가 열마든지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살펴보니, 미국의 통일상법전과 같은 대다수의 주법으로 편입된 상거래기본규범들에 대하여는 이미 국내에서 법자체도 번역이 잘 되어 있고 참고할 만한 국내문헌도 상당수 있었으나 레몬법의 경우에는 법자체에 대한 한글번역문조차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법의 내용이나 구조분석은 차치하고 번역자체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연구범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연구논문에서는 레몬법 연구의 시초로서 레몬법의 번역자체에도 신중을 기하고 레몬법의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는데 보다 집중함으로써 “연방 레몬법과 주 법 1개의 소개”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품질보증에 제공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입법하게 된다. 이로써 연방 레몬법은 원래의 법명인 “매그너슨-모스 연방거래위원회 품질보증개선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sup>29)</sup>” 이 “연방 레몬법(Federal Lemon Law)” 라는 별칭뿐만이 아니라 “매그너슨-모스 품질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 MMWA) “ 또는 ” 연방품질보증법(Federal Warranty Act) “ 또는 ” 품질보증법(The Warranty Act)” 으로서 자주 불리울 정도로 “품질보증(Warranty)” 를 연방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대표적인 “Warranty” 에 관한 기본법이 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sup>30)</sup> 따라서, 미국 레몬법의 연구는 그 본질상 품질보증법에 관한 연구와 분리될 수 없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으로서의 품질보증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레몬법을 소개하는 연구를 진행한다.<sup>31)</sup>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전체 물건 중에서는 통상 두 번째로, 부동산을 제외하면 통상은 첫 번째로 고가의 상품으로 특수동산인 신차로서, 품질보증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게 기능하는 상품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할 만한 실익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연구를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이다.<sup>32)33)</sup> 따라서, 품질보증법에 관한 연구는 연방

29) 이 법명을 곧이곧대로 번역한다면 “매그너슨-모스 품질보증—연방거래위원회 개선법” 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이 법의 내용을 보면 개선의 대상이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니라 품질보증이고 의회가 연방거래위원회에게 품질보증의 개선을 위하여 할 업무 및 그를 위한 규칙제정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매그너슨과 모스는 의원이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오해되기 보다는 이해되기 쉽도록 품질보증과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치를 바꾸어서 “매그너슨-모스 연방거래위원회 품질보증개선법” 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라는 법명은 다른 법과 달리 법 자체에서 명칭 조항을 찾을 수 없고 Public Law의 입법기록을 찾아봐야만 알 수 있다. Short Title, Pub. L. 93-637, § 1, Jan. 4, 1975, 88 Stat. 2183, provided: “That this act [enacting this chapter and sections 57a to 57c of this title, amending sections 45, 46, 49, 50, 52, 56, and 58 of this title, and enacting provisions set out as notes under sections 45, 56, 57a, and 57b of this title] may be cited as the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참조.

30) 이하 “연방 레몬법” 이라고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MMWA” 라고 간단히 기재할 수 있다.

31) 각주 5)에서도 본 연구의 목적을 서술한 바 있다.

32) 실제 연방 레몬법이나 주 레몬법 중 연방 레몬법과 같이 일반적 상품을 적용범위로

레몬법을 소개하면서 검토하게 되는 내용과 그로써 찾을 수 있는 시사점 및 우리나라의 품질보증에 관한 입법현황을 검토하는 정도에 한정한다.<sup>34)</sup>

---

하는 경우의 주 레몬법이 적용된 사례 중 압도적 다수가 자동차에 관한 것이다.

- 33) 일반소비자가 구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주요자산에는 주택(부동산)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택의 상당수가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형태로 종류물인 제조물과 유사하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구입한 공공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민법상 전형계약의 독자적인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급편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 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을 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련 개별 특별법도 이미 상당수 입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제외하고, 동산 중 통상적으로는 가장 많은 대금을 지출하여 구입하는 자산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상품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미국의 연방 레몬법에서도 부동산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34) 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날이 갈수록 자동차(특히 중고자동차)뿐만 더욱 그러할 수 있다) 못지않게 고가인 자전거나 오토바이, 가전기기나 프리미엄 IT상품 등이 늘어나고 있고 고압적인 애플의 아이폰 수리정책과 관련한 다수의 미디어 아티클에서 보듯 품질보증의 된 상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소위 'A/S')로 인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바, 본 레몬법 연구는 전통적 레몬개념의 출발지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지만 그 연구 내용은 위와 같은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 레몬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율이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주택 (Motor Home), 가전기기 혹은 일반 상품 등 적용대상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입법적 결단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대의 자동차마켓에서는 자동차의 전장화를 넘어서서 “자동차와 IT의 융합”이 일어남으로써 무선통신기능과 모바일컴퓨터 기능 등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자동차와 합체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라든지 무인자율주행차 등 각종 자동차와 IT의 융합 Platform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고속으로 구체화되고 발전하여 가고 있는바, 이러한 차량을 해킹하여 고의로 외부조종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은 논의를 굳이 상정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신 유형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하자 또는 고장 (Nonconformity)만 보더라도 단순히 기존의 민사적 책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책임의 주체, 책임의 범위, 증명책임, 책임의 내용, 제조물책임 등 기타 특별법과의 관계,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책임자의 책임, 국가배상책임, 보험책임,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국적자나 기관에 대한 국내법의 역외적용, 관련 국제규범해석 등 여러 가지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민법상 전통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유상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일반 불법행위책임만으로 해결을 고수하기 보다는 우리도 대비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시작으로 우선은 “품질보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형계약을 민법편에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기본부터 차근히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토대로 벤치마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미국 레몬법은 신차 품질보증의 이행강제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러한 신차품질보증에 대한 이행강제 및 국가의 특별법제정을 통한 신차품질보증에 관한 제도 형성내용을 우선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신차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품질보증을 논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아닌 품질보증쪽에 보다 초점을 두어 IT의 대표주자인

## 나. 레몬법과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레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레몬인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통일상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Warranty)”<sup>35)</sup>으로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일 정도로 동 담보책임은 전통적인 구제수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레몬법의 제정 이후에도 레몬법상의 “품질보증(Warranty)”에 관한 규율방식이 통일상법전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고 레몬법 자체에서 다른 법에서 인정되는 구제수단과의 권리 경합을 인정하여 상호보충적 구제수단임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상법전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여전히 레몬인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구제수단 중의 하나이다. 실제 “레몬소송 (Lemon Litigation)”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방 레몬법, 주 레몬법 및 통일상법전 모두에 기초한 수 개의 청구를 객관적 병합하여 제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상법전의 담보책임에 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이와 같이 권리경합적으로 인정되는 전통적인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요최소한의 언급만을 하는 것에 그치기로 한다.<sup>36)</sup>

## 다. 레몬법과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

---

애플사의 아이폰 품질보증 사례 등도 논의하기로 한다.

- 35) 미국 레몬법의 품질보증과 미국 통일상법전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용어는 모두 “Warranty”이다. 통일상법전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서 몇 개의 논문을 찾아 볼 수 있었는데 그 국내의 문헌들은 모두 통일상법전의 “Warranty”를 담보책임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미국 레몬법의 “Warranty”를 “품질보증”으로 번역하기로 한다(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는 해당 부분의 각주 참조).
- 36) 미국 통일상법전의 담보책임자체 또는 그 중 부분에 대하여도 논문연구를 할 정도로 이 자체로도 연구범위가 상당하고, 또한 ‘통일상법전의 담보책임과 레몬법상의 레몬권과의 관계’는 미국에서도 그 자체로도 논문의 주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연구범위가 방대하다. 따라서 레몬법의 소개에 초점을 두기로 한 본 연구에서는 통일상법전상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언급에 한정하기로 한다.

“상품의 품질보증(Product Warranty)” 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은 상품(Product)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미국법적 규율의 쌍벽을 이루는 주제일 것이다.<sup>37)</sup> 상품의 품질보증책임을 논의하는 경우에도 상품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레몬법과 관련하여서는 인체에 발생한 손해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을 레몬법에 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이나 제조물책임에 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의 논의시 연계되는 주제로 등장하나, 제조물책임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필요시 언급하는 정도에 한정하기로 한다.<sup>38)</sup>

---

37) “Product Liability” 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에 해당하기도 하겠지만, 미국의 교재나 논문 등에서 “Product Liability” 에 대하여 연방법으로 U.S.C.의 “Consumer Product Safety” 편만을 언급할 때도 있지만 “Consumer Product Safety” 뿐만 아니라 연방 레몬법인 “Consumer Product Warranties” 편까지 양자를 전부 포함하여 논의할 때도 있을 정도로 연방 레몬법은 Consumer Product의 면에서는 제조물책임법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Consumer Product Safety” 가 아닌 “Product Liability” 라는 용어로 상당수의 주에서 주 법을 보유하고 있다(연구하며 확인한 것은 23개 주였음). Product Liability와 Product Warranty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고, 법적 성질도 일반 불법행위의 본질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책임의 본질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는지, 상품 자체의 손해 이외에 확대손해의 배상까지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면에서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우리 법에서도 품질보증법과는 전혀 관계 없이 제조물책임법이 별도로 입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Product Liability안에 Consumer Product Warranty까지 포함시켜서 이해하기 보다는 두 개를 병렬적으로 대비시키기로 한다.

38) 다만, 미국의 경우 일반불법행위책임의 특별법적 책임으로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고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의 특별법적 책임으로 레몬법(품질보증법)을 입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현재 제조물책임법만 입법되어 있는 우리 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 제3장 레몬권의 객체인 “자동차”

레몬법 연구와 관련하여, ‘왜 하필 “자동차” 인가’<sup>39)</sup>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자동차가 다른 소비생활의 대상인 상품들에 비하여 차이가 있는 점을 간단히 살펴본다.<sup>40)</sup>

### 1. 주요 자산으로서의 자동차

신차라는 상품의 소비자는,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사 및 각종 부품제작사가 대량생산한 약 2만 여개<sup>41)</sup>나 되는 각 부품을 적합한 기술로 조립하여 대량생산한 차를, 각종 광고나 자동차 판매업자의 설명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염두에 두어 구매를 결정하고,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소소한 생필품에 대한 지출보다는 훨씬 대규모인 금액을 지출하여 (필요시 은행이나 리스운용사 혹은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업자와의 계약 하에서 제공되는 금융도 포함하여), 자동차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39)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연방 레몬법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주법도 있으므로 모든 주 레몬법이 항상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레몬법의 촉발도 주된 적용 대상도 자동차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40) 우리나라에는 품질보증법이나 레몬법같은 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이 권고의 효력만을 가지는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다) 그 이외의 법령들 중 자동차의 특별성을 보여주는 부분을 활용한다.

41)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는 약 2만 여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다만, 2007년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시작한 “Local Motors”와 같이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개성 있는 자동차제작 등 고객의 다양한 목적과 수요에 맞추어 3D 프린팅의 방식으로 자동차를 제작하는 3D 프린팅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그 부품수가 40 여개로 줄어들고, 기존의 공장형 대량생산 방식이 아니라 도시형 소규모 공장인 ‘마이크로팩토리(MicroFactory)’에서 소량생산 혹은 주문제작하는 등 전통적 자동차산업의 방식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가 제작되고 있고, 실제 세계 최초의 3D Printed Car인 “Strati” 1대를 이 Local Motors에서 제작하는데 걸린 시간은 44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렇게 부품의 수가 줄어들었다거나 양산방식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본 연구의 주제인 ‘자동차제작자의 소비자에 대한 품질보증책임’과 그에 대하여 직접적 규율을 하고 있는 현존 법규인 ‘미국 레몬법’에 대한 연구의 내용의 대부분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별도로 이와 같이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범주를 나누어 적용범위에 관한 논의를 하지는 않는다.



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운송 또는 유통업체를 통하여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인도된 차량을 인도받음으로써 운행을 시작하고, 정비업소에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비 또는 고장이나 파손 등에 관한 수리를 받으며, 자동차보험업자로부터 자동차관련보험상품을 구입하여 차량운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내구재로서 차령이 10여 년 넘는 차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만큼 중고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물건이다.

## 2. 특별한 동산으로서의 자동차

우리나라 법에서도 자동차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소비대상인 여느 상품들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는 항공기나 선박과 더불어, 여타의 다른 동산과는 다른 “특수동산”으로서 마치 부동산에 준하는 법적 취급을 받는 것을 들 수 있다. 소유권의 변동에 있어서 일반적인 동산의 물권변동요건으로 요구되는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을 받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자동차등록<sup>42)</sup>이라는 공시방법을 구비하여야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특정동산”<sup>43)</sup>으로서 담보물권의 설정으로 교환가치를 유통할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아무리 비싼 명품 시계나 보석을 샀다고 해서 분기별로 보유세를 내지는 않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취득시 개별소비세법상의 세금뿐만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 내내 재산세의 성질을 띤 지방세법상의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검사·정비의

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15.01.06 [법률 제12986호, 시행 2015.01.06]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4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정 2009.03.25 [법률 제9525호, 시행 2009.09.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를 말한다.

무 등 자동차관리법 등 각종 행정법규의 규율을 받게 되는 특수한 동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한 물건성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자동차사고의 위험이나 고속도로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는 터진 재생타이어로 인한 화물차사고에서부터 급발진주장을 들 수 있는 버스 사고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는 자동차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구성원인 타인의 안전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위험원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각종 검사나 정비의무의 대상이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

### 3. 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율

자동차에 관한 주요 현행 입법으로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도로교통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을 들 수 있는데 사고 피해자구제목적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업이나 행정적 필요에 의한 것들이고 자동차 소비자들의 일상의 운행에서 발생하는 차량품질에 관한 법령은 찾아보기 어렵긴 하지만 자동차가 다른 동산에 비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sup>44)</sup> 이렇듯 동산중에서 법적으로도 특수한 취급을 받는 자동차는 다른 여타의 동산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로써 평균적인 일반인

---

44)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검색 결과에 따르면, 조문제목에 “자동차”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행 법령은 약 680건이다. 법령명에 포함된 것만 해도 32건이고 법률명에 아예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법률만 해도 8건이다.

의 삶에서 통상 주택 다음으로 제2의 고가재산목록이 되는 경우가 많고<sup>45)</sup> 보유하고 있는 동안 각종 유지·보수비용, 세금, 보험료 등의 지출이 예상되며 중고로 거래될 가능성이 다른 여타의 소비재에 비하여 훨씬 높으며 위험원으로서의 성질이 있으므로 신체의 안전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경우에 따라서는 택배기사의 유일한 생존수단일 때도 있고, 장애인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일 때도 있으며 포퓰러원 경주를 관람하러 기꺼이 해외로 나가고 캠핑카 튜닝을 취미삼거나 모터쇼를 순회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하자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다거나 후발적으로 자동차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소액에 불과한 여타 동산에 비하여 쟁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하다.

#### 4. 자동차를 둘러싼 분쟁의 유형

기존의 자동차와 관련한 법학연구는 보통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즉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보험의 문제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죄에 관한 논의 혹은 자동차 특정동산저당과 같은 담보에 관한 논의 등이 대부분이었다. 자동차 사고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의 대부분의 시간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자동차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문제는 자동차의 품질 보증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동차의 품질과 관련하여서는 행정부 소관의 리콜명령 등이 일어나는 이외에는 별다른 입법이 없었고

45) 법원의 재산명시명령과 관련하여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의 2번째이기도 하다. 가령 민사집행규칙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항 제2호 또는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재산목록의 제출) 제2항 제2호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간혹 특정현안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뉴스를 접할 수 있을 뿐이다.

자동차의 품질과 관련된 민사적 분쟁으로는 구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수차례 수리를 받았는데도 문제가 고쳐지지 않은 채 지속되는 신차, 한군데 고치고 나면 다른 부분이 연쇄적으로 계속 고장하는 신차, 순정품 사용의무위반으로 인한 품질보증 무효화문제, 비순정 서비스센터의 이용으로 인한 품질보증 무효화문제, 정비센터의 불투명한 과잉정비나 비용과다청구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문제들에서부터 최근 자동차가 점점 전장화하며 기계에서 전자제품으로 변화하여 가고 있는 현대에서 새로이 등장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들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 급발진, 텔레매틱스를 통한 스마트폰과의 정보교류시 데이터 인증이나 암호화 또는 데이터 검증 필터를 통한 바이러스 체크 오류로 발생한 정보나 금융피해, OBD(On-Board Diagnosis)단자에 연결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모듈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스마트키의 복사를 통한 고급차 절도·차량구금·차량통제·고의적 교통사고 유발 등의 피해, 전장화된 부품에 대한 불완전한 방화벽설치와 해킹에의 취약성으로 인한 차량보안침범으로 인한 손해<sup>46)</sup>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문제에서부터 차량의 전자화, 자동차와 IT의 융합이 가속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일상생활의 사용에서 겪게 되는 자동차의 하자문제에 대하여 다른 매매의 목적물보다는 좀 더 특별히 취급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측면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는 구체적인 법학적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46) 가령 문자나 앱을 통하여 원격으로 자동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켜는 기능이 있는 차가 제작자의 방화벽설치 미흡으로 쉽게 외부의 공격을 받는 경우, 달리는 차의 시동이 공격자에 의하여 꺼지거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범죄나 테러의 수단으로 외부나 외국에서 타율조종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에는 “품질”, “상품적합성” 그리고 “품질보증”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광고한 상품이 그만큼의 대금을 받고 판매할 만큼 제대로 된 상품이었고 그 상품을 팔면서 교부한 품질보증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의 품질을 지닌 상품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품의 품질을 품질보증의 내용에 맞추도록 그 이행을 신속하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특별한 동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적용한 것이 바로 미국의 레몬법이다.

## 제4장 레몬법의 등장과 핵심내용

이 장에서는 미국에서 연방 레몬법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입법과정의 주요내용 및 주 레몬법의 입법현황을 검토하고, 레몬법의 핵심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제1절 레몬법의 등장배경과 입법

#### 1. 연방 레몬법의 등장배경<sup>47)</sup>

조립라인, 상품의 대량생산현실화, 광고기법과 매스 머천다이징의 등장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편의와 기쁨을 주는 각종 상품들을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896년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시작된 해로서 조직화된 기업에 의하여 같은 디자인의 13개의 차가 생산되었다. 그 후로부터 75년이 지난 1971년에는 8.5백만대가 넘는 승용차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다른 소비재의 생산역시 이에 필적할만한 괄목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이와 같은 상품들에 대한 품질과 내구성에 대한 미국소비자들의 고민도 커져갔다. 많은 상품들이 제대로 수리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 금은선세공으로 멋들어지게 장식된 “품질보증(Warranty)” 나 “품질보장(Guarantee)” 증서는 그 종이 값 만도 못하다는 점 역시 분노와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었다.<sup>48)</sup> 즉, 이러한 증서들은 “큰 글씨가 주고 작은 글씨가

---

47) 이하는, 연방 레몬법인 Magnuson-Moss Warranty Act에 대한 Senate Report인 [S. Rep. No. 151, 93d Cong., 1st Sess. (1973)], [H.R. Rep. No. 1606, 93rd Cong., 2d Sess. (1974)]의 Background and Needs부분을 참조하였다.

48) H.R. Rep. No. 93-1107, at 24 (1974).

빠앗는다” 는 속담처럼 품질과 내구성을 보증·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법에 의하여 인정되던 상품적합성이나 상품목적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품질보증(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조차도 대부분 없애버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195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국회의 위원회와 각 위원들, FTC를 비롯한 정부산하의 각 기관들과 그 소속공무원들은 격노한 차량소유자들로부터 자동차제작사와 딜러들이 그들이 판매한 자동차의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성토하는 민원을 급증하는 수로 받게 된다. 이 기간 중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FTC가 받은 민원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FTC가 설립된 1914년 이래 받은 민원들을 전부 합친 만큼이나 될 정도로 많았다. 민원의 주된 내용들은, 차량제작자나 딜러들이 품질보증을 안 지키다가거나, 차량의 불안전성, 불량·고장한 디자인, 소음 혹은 차량을 반복적으로 딜러에게 가져가서 수리를 받거나 결함을 고쳐보려고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 등이었다.

## 2. 입법과정<sup>49)</sup>

### 가. 대통령의 메시지

1962년 3월 15일, 케네디 대통령은 소비자 이해와 관련한 첫 번째 대통령의 메시지를 의회에 보냈다. 그 이후로, 소비자문제와 관련한 6개의 추가적인 대통령들의 메시지가 의회에 보내지게 된다. 그 중 주요한 메시지들은 아래와 같다.

---

49) 이하는, 연방 레몬법인 Magnuson-Moss Warranty Act에 대한 입법과정기록인 [S. Rep. No. 151, 93d Cong., 1st Sess. (1973)], [H.R. Rep. No. 1606, 93rd Cong., 2d Sess. (1974)], [H.R. Rep. No. 93-1107, at 29 (1974)]을 참조하여 필요부분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1968년 2월 6일 존슨 대통령은 소비자문제대통령특별보좌관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Consumer Affairs), FTC 의장, 상업부장관, 노동부장관으로 구성된 “Task Force on Appliance Warranties and Service” 라는 TF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산업계와 함께 즉시 (1) 서비스와 수리의 질을 증진시킬 것을 장려할 것, (2) 품질보증과 개런티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명하도록 하고 그들이 표명한 것은 실제로 준수하도록 할 것, (3) 정상적인 사용시의 내구연한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4) 연방차원의 법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정할 것이라는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1969년 11월 3일, 닉슨대통령은 자신의 소비자 메시지에서 개런티와 품질보증문제에 관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문제대통령특보(the Special Assistant for Consumer Affairs), 상업부, 노동부, FTC, 법무부, Council of Economic Advisors의 대표들로 구성된 TF를 활성화하였다.

1971년 3월 1일, 닉슨은 의회에 대한 메시지에서, 보다 선명한 품질보증과 기만적인 품질보증의 사용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Fair Warranty Disclosure Act” 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이 메시지에서 닉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소비자와 기업가 간의 끊임없는 이해의 불일치는 바로 품질보증이다. 개런티와 품질보증은 종종 불분명하고 기만적이다.... . 이 제안은 FTC가 소비재에 대한 개런티와 품질보증의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적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만적인 품질보증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법하에서 인정되는 묵시적 품질보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서면 품질보증나 개런티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 나.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의회의 입법과정

우선 이와 같은 자동차 품질보증에 관한 폭증하는 불평에 대한 대응으로, 연방거래위원회는 품질보증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 제작사들의 간과할 수 없는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65년에 현장 조사를 전개하였다. 기존의 품질보증의 효과를 분석하는 수개의 연구들을 진행한 후 연방거래위원회는 제작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동차 품질보증의 커버리지는 부적합하고 품질관리(Quality Control)의 문제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원의원 매그너슨과 헤이든은 1967년에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품질보증과 관련한 법안을 소개하였다. 이 법안들은 공급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품질보증 내용을 명백하고 현저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90회기때 이 법안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그너슨과 헤이든이 위 입법을 제안한 후 7년이 지났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자동차 품질보증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인 1974년, 하원의원 John E. Moss는 하원의 상업 및 금융 위원회의 직원들에게 연방거래위원회의 보고서에서 파악된 문제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계의 조치들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직원들은 다양한 범위의 상품 제작자들은 매우 길고 이해하기 어려운 품질보증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up>50)</sup> 이 기간 동안의 연구는 단순히 현존하는 품질보증이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작자들이 20세기에 형평법과 성문법 하의 묵시적 품질보증에 비하여 더욱 실효성이 없는 새로운 명시적 품질보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원보고서에서는 4가지 주요 영역에서 소비자 품질보증은 개선을 요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첫 번째, 보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

50) 120 Cong. Rec. 31,304, 31,318 (1974)

다는 것, 둘째, “전부(Full)” 과 “한정(Limited)” 의 명백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 묵시적 품질보증을 면책하는 조항이나 변형시키려는 조항에 대한 구제조치(Safeguards)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품질보증의 위반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sup>51)</sup>

이와 같이 1950년대 후반에 분노한 자동차 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된 품질보증 이슈는 1965년경 연방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조사에 기초하여 70년대 초반부터 입법화 과정으로 진행되게 된다. 그 이후의 입법과정 중 연방거래위원회의 연방자동차품질관리법 제정 제안,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작된 입법이 소비자 상품(Consumer Product)전반으로 확대된 계기는 주목할 만한 하다고 생각한다. 그 내용을 입법과정보고서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 2월 19일, 연방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품질보증과 서비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동차 품질보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위원회는 자동차제작자의 공익에 부합할 의무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신차 및 그 부품의 품질, 내구성과 성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결함 없는 차량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 및 그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이나 부품을 제작자가 소비자에게 그 기준에 맞도록 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제작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품질관리법 (Automobile Quality Control Act)”이라는 종합적 · 포괄적 신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sup>52)</sup>

“1970년 3월, 의회에서 행정부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상품을 적용범위로 포함하는 ‘품질보증을 규율하는 연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표

51) H.R. Rep. No. 93-1107, at 29 (1974).

52) [S. Rep. No. 151, 93d Cong., 1st Sess. (1973)], [H.R. Rep. No. 1606, 93rd Cong., 2d Sess. (1974)]의 Background 부분 참조

명을 하였다. 상원의 상거래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한 후 행정부, 산업계와 소비자의 증언으로 제안된 내용들을 담는 방향으로 매그너슨-모스 법안을 수정하였다.”<sup>53)</sup>

그리고 입법과정보고서 중 아래와 같은 입법목적 부분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오늘날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상품은 약관에 의한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전형적이기 때문에 계약적인 내용에 관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 대부분인바, 오늘날의 소비자는 상품의 제작자나 공급자와 품질보증을 획득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품질보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협상력의 증대한 차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품질보증의 영역에서 공정한 경기(Fair Play)의 개념을 돌려놓기 위한 시도를 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다. 이 품질보증법안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품질보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소비자와 상품의 공급자간의 협상력에 현존하는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결과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만들어졌다.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은 4개의 기본적인 요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1. 소비자의 이해증진
2. 최소한의 품질보증을 통한 소비자보호
3. 제공된 품질보증 내용의 이행확보
4. 상품 신뢰도의 증진” <sup>54)</sup>

---

53) [S. Rep. No. 151, 93d Cong., 1st Sess. (1973)], [H.R. Rep. No. 1606, 93rd Cong., 2d Sess. (1974)]의 Background 부분 참조

54) [S. Rep. No. 151, 93d Cong., 1st Sess. (1973)], [H.R. Rep. No. 1606, 93rd Cong., 2d Sess. (1974)]의 Needs부분 참조

이와 같은 입법과정을 거쳐 상인들에 의한 명시적 품질보증과 면책조항(Disclaimer)의 남용 확산에 대응하여 대다수의 국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차원의 품질보증 법인 “매그너슨-모스 연방거래위원회 품질보증개선법(Magnuson-Moss Warranty - 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of 1975, 15 U.S.C.A. § § 2301 et seq.)” 이 의회입법으로 제정되어 1975년 7월 4일 포드 대통령의 사인으로 발효되었다.<sup>55)</sup>

### 3. 연방 레몬법 제정 및 문제의 대두

1975년 7월 4일 발효된 연방 레몬법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처음으로 종합적인 연방차원의 기준을 설립하였다.

연방 레몬법의 제정은 품질보증영역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명·묵시의 모든 품질보증과 그 면책조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연방차원의 첫 번째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통일상법전 상의 품질보증규정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sup>56)</sup> 연방 레몬법은 서면의 품질보증에 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고, 묵시적 품질보증의 면책시도를 무효화하고 있다.<sup>57)</sup> 동 법은 소비자상품의 판매와 연계되어 만들어지는 서면의 품질보증이나 서비스계약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다. 또한 동 법은 제정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은 광고나 유통에 있어서 기재되고 표명된 품질보증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는바,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품질보증 내용

55) Pub. L. No. 93-637, 88 Stat. 2183 (1974)

56) § 2 [a] Summary and background—Generally, Consumer product warranty suits in federal court under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15 U.S.C.A. § 2301 et seq.), 59 A.L.R. Fed. 461 (Originally published in 1982)

57) 15 U.S.C.A. § 2308

의 공개와 권리를 침해당한 소비자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연방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게 된 것이다.<sup>58)</sup> 물론 이 연방 레몬법은 어떠한 판매자에게도 명시적이고 기재된 서면 품질보증을 교부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품질보증이 약속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법은 동법에서 규정한 품질보증의 요건 적용을 오로지 서면의 품질보증(Written Warranty)에 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미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주 법하에서 향유하고 있던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와 같은 기존의 권리들까지도 판매자가 무엇인가를 서면으로 써주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품질보증에 기한 보호는 없다고 믿게 하는 등의 혼동을 초래하였다.<sup>59)</sup> 그리고 동법하에서 품질보증에 대하여 강화된 보호는 대부분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에 대하여만 적용가능하였는데 동법은 제작자의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 부여의무는 인정하지 않고 자유에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대부분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를 부여하지 않았다.<sup>60)</sup> 결국 전부품질보증을 제공하였던 유일한 자동차 제작사는 현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아메리칸 모터스(American Motors) 하나였고 그 외의 모든 다른 제작자들은 오직 일부품질보증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었다.<sup>61)</sup>

이러한 연방 레몬법의 미미한 효과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1979년, 연방 자동차 품질보증 및 수리 법(Federal Automobile Warranty and Repair Act)이 제안되기에 이르렀지만 입법되어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하

---

58) 59 A.L.R. Fed. 461 (Originally published in 1982)

59) Joan Vogel, Squeezing Consumers: Lemon Laws, consumer Warrantuies, and a Proposal for Reform, 1985 Ariz. St. I.J. 589

60) Joan Vogel의 위 논문

61) Harold Greenberg, 22 Ind. L. Rev. 57, B. THE INDIANA MOTOR VEHICLE PROTECTION ACT OF 1988: THE REAL THING FOR SWEETENING THE LEMON OR MERELY A WEAK ARTIFICIAL SWEETENER?, Indiana Law Review, 1989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in Indiana Law

였고 이에 각 주들은 1982년부터 각 주의 레몬법들을 입법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sup>62)</sup> 그리고 획기적인 소비자의 구제수단인 “레몬조항”을 최초 입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레몬법상의 레몬조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이유로는 “합리적인 횃수”의 구제시도를 하였지만 그 하자나 오작동이 유지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였을 뿐 어느 경우를 “합리적인 횃수”로 볼 것이냐, 즉 “하자”의 치유불가능성에 관한 정량적인 정의를 통한 “레몬”의 정량적 요건을 결여한 탓에 언제 이 권리가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계속되었다.

#### 4. 각 주 레몬법 입법 및 그 현황<sup>63)</sup>

1980년대 초반을 시작으로 많은 주들이 소비자들에게 제작자의 자동차에 대한 명시적 품질보증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주기 위하여 “레몬법”을 채택하였다. 즉, 1982년 코네티컷주와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각 주의 레몬법이 제정되어 현재 미국의 51개의 주에서 레몬법이 다음과 같이 제정·발효되어 있다.

Alabama : Alabama 1990 Ala. Acts 505 (effective July 1, 1990).

Alaska: Alaska Stat. § § 45.45.300 to 45.45.360 (1984).

Arizona: Ariz. Rev. Stat. § § 44-1261 to 44-1265 (West 1984).

62) 각주 61) 전기논문

63) 미국은 각 주의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연방국가이다. 따라서 각 주의 법들은 실제 사건에서는 연방법과 더불어 일차적으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각 주마다 정부의 구조나 부처의 역할 등이 다 제각기 다르고 법명을 지정하는 방법도 대부분 다르며 레몬법의 경우 법명이나 절 제목 자체가 레몬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법을 찾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레몬법의 소개가 연구목적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각 주 레몬법의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여 적시하였다.

Arkansas: AR ST s 4-90-401, et seq.

California: Cal. Civ. Code § § 1793.2 to 1793.4 (West Supp. 1984).

Colorado: Colo. Rev. Stat. § § 42-12-101 to 42-12-107 (1984).

Connecticut: Conn. Gen. Stat. § § 42-179 to 42-186 (West Supp. 1983)

Delaware: Del. Code Ann. tit. 6, § § 5001 to 5009 (Supp. 1983).

District of Columbia: D.C. Code Ann. § § 40-1301 to 40-1309 (1985).

Florida: Fla. Stat. Ann. § § 681.10 to 681.108 (West Supp. 1989).

Georgia: Ga. Code Ann. § § 10-1-780 to 10-1-793 (1990).

Hawaii: Haw. Rev. Stat. § 490:2-313.1 (1984).

Idaho: Idaho Code § § 48-92 to 48-909 (1988).

Illinois: Ill. Rev. Stat. ch. 12W, § § 1201 to 1208 (1983).

Indiana: Ind. Code § 24.5.13 (1988).

Iowa: Iowa Code Ann. § 322E.1.

Kansas: Kan. Stat. Ann. § § 50-645 to 50-646 (1985).

Kentucky: Ky. Rev. Stat. Ann. § § 367.860 to 367.870 (Bobbs Merrill Supp. 1984).

Louisiana: La. Rev. Stat. Ann. § § 51:1941 to 1948 (1984).

Maine: Me. Rev. Stat. Ann. tit. 10, § § 1161 to 1169 (Supp. 1983-1984).

Maryland: Md. Code Ann., Com. Law § § 14-1501 to 1504, 2001 to 2007 (1984).

Massachusetts: Mass. Gen. Laws Ann. ch. 90 § 7N½ (West Supp. 1983).

Michigan: Mich. Comp. Laws Ann. § § 257.1401 to 257.1410 (West 1986).

Minnesota: Minn. Stat. § 325F.665 (West Supp. 1984).

Mississippi: Miss. Code Ann. § § 63-17-151 to 63-17-165 (1985).  
Missouri: Mo. Ann. Stat. § § 407.560 to 407.579.  
Montana: Mont. Code Ann. § § 61-4-501 to 61-4-533 (1983).  
Nebraska: Neb. Rev. Stat. § § 60-2701 to 60-2708 (Supp. 1983).  
Nevada: Nev. Rev. Stat. § § 598.751 to 598.786, 598.791 (1983).  
New Hampshire: N.H. Rev. Stat. Ann. § 357-D (Supp. 1984).  
New Jersey: N.J. Stat. Ann. § § 56:12-29 to 56:12-49 (West Supp. 1988).  
New Mexico: N.M. Stat. Ann. § § 57-16A-1 to 57-16A-9 (1986).  
New York: N.Y. Gen. Bus. Law § 198-a (McKinney 1983).  
North Carolina: N.C. Gen. Stat. § 20-351 (1987).  
North Dakota: N.D. Cent. Code § § 51-07.16 to 51-07.22 (1985).  
Ohio: Ohio Rev. Code Ann. § § 1345.71 to 1345.77 (1987).  
Oklahoma: Okla. Stat. Ann. tit. 15, § 901 (West 1985).  
Oregon: Or. Rev. Stat. § § 646.315 to 646.375 (1983).  
Pennsylvania: Pa. Stat. Ann, tit. 73, § § 1951 to 1963 (1984).  
Rhode Island: R.I. Gen. Laws § § 31-5.2-1 to 31-5.2-13 (Supp. 1984).  
South Carolina: S.C. Code Ann. § § 56-28-10 to 56-28-110 (1989).  
Tennessee: Tenn. Code Ann. § § 55-24-201 to 55-24-211.  
Texas: Tex. Rev. Civ. Stat. Ann. art. 4413(36), § 6.07 (Vernon Supp. 1983).  
Utah: Utah Code Ann. § § 13-20-1 to 13-20-7 (1985).  
Vermont: Vt. Stat. Ann. tit. 9, § § 4170 to 4181 (1984).  
Virginia: Va. Code Ann. § § 59.1-207.9 to 207.16 (1988).  
Washington: Wash. Rev. Code Ann. § § 19.118.010 to 19.118.160 (West Supp. 1987).  
West Virginia: W. Va. Code § § 46A-6A-1 to 6A-9 (Supp. 1984).



Wisconsin: Wis. Stat. § 218.015 (West Supp. 1984).

Wyoming: Wyo. Stat. Ann. § 40-17-101 (Supp. 1984).

이와 같은 레몬법은 상품에 품질보증인 된 경우, 그 보증된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의 하자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그 해결책이란 일반적으로 제작자가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품질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신차에 대하여는 곧 교환 또는 구입가격을 환불하여 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법원 역시 레몬법의 목적은 제작자의 품질보증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권리를 확립하여 주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sup>64)</sup>

---

64) General Motors Corp. v. Schmitz, 362 Md. 229, 764 A.2d 838, 88 A.L.R.5th 735 (2001), Patricia C. Kussmann, J.D., Validity, Construction and Effect of State Motor Vehicle Warranty Legislation (Lemon Laws), 88 American Law Reports (이하 'A.L.R.' 라 한다) 5th 301 (Originally published in 2001)에서 재인용

## 제2절 레몬법의 핵심내용

본격적인 연방 레몬법과 주 레몬법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위와 같이 제정된 연방 레몬법과 주 레몬법을 “레몬법”으로 만드는 공통적인 핵심특별법성을 간략히 검토해 본다.

레몬법의 핵심내용은 바로 획기적인 소비자 구제수단으로 입법된 “레몬조항”이다.

그리고 이 레몬조항을 비롯하여 ‘1. 레몬조항과 레몬권, 2. 공개의무, 3. 통지의무, 4.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5. 변호사비용’이 바로 레몬법의 주요핵심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물론 ‘결부조건 금지’ 등 품질보증의 중요한 기본원칙을 천명한 내용도 매우 중요하나 연방과 각 주 레몬법 전반에 공통적인 것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즉, 레몬법은 레몬조항을 통하여 “레몬”인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제소하기 이전에 이용할 수 있는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승소한 소비자에게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품질보증의 내용과 레몬조항과 그에 기초한 레몬권,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의 존재나 이용방법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제작자 등이 품질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명확화와 더불어 품질보증서나 사용설명서상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고, 레몬조항에 기초한 레몬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소비자의 제작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통일상법전 등 기존 주법하에서도 인정되어 온 것으로서 “획기적”일 것이 없고 특별

법성도 없다고 보면 이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위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레몬법에서 위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레몬”이다.<sup>65)66)</sup>

---

65) 레몬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관련부분에서 후술한다.

66) 물론 계약당사자관계의 유무 등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레몬성은 하자의 일 유형으로서 사실상 채무불이행의 본질을 갖는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 제5장 연방 레몬법(67)(68)(69)

### 제1절 서

#### 1. 연방 레몬법

- 67) 연방 레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U.S Code의 해당부분을 <http://uscode.house.gov>에서 찾아서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직접 번역하여 사용하였다(이후 동일).
- 68) 레몬법을 직접 연구하고 있는 국내문헌이나 연방 레몬법을 번역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법문이나 미국 내의 참고문헌들을 연구자가 직접 번역하였다. 참고로 UCC의 경우에는 각 조문별로 Annotated의 Official Comment가 아주 상세히 달려 있고 각종 참고문헌의 리스트까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일차적으로 참고할 수 있으면서도 계속 일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만, 레몬법의 경우에는 그런 자료가 없다. 공식적으로 해석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것은 C.F.R.뿐이었는데 그것도 UCC의 Official Comment와는 달리, 전부에 대한 것도 아니고 부분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간단하게 적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러 문헌들을 전반적으로 다 읽고 난 이후에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야 법조문의 해석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레몬법이라는 외국의 법을 학위논문으로는 국내에 처음 소개하게 된 점, 이 연방 레몬법은 각 주의 레몬법의 모태로서 각 주 레몬법의 비교·분석·이해를 위한 필수전제가 된다는 점, UCC의 품질보증규정·연방 레몬법·주레몬법·FTC규칙·관련 공정경쟁법이나 소비자보호법 등이 함께 적용되는 미국레몬판례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 우리말과 영어간의 언어간 거리가 멀고 법조항의 특성상 항목의 나열과 각종 요건이 되는 한정어의 수식이 많을 수 있고 양 법체계가 달라서 미국의 법률용어를 한국의 법률용어로 치환할 수 있도록 항상 완비되어 있지도 않아서 번역문만으로는 원래 외국법의 취지를 정확히 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잃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오해케 할 수도 있는 점, 저자는 미국사법시스템이나 교육제도 안에서 직접 프랙티스를 하거나 미국법을 연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혹시라도 미국 법률용어에 관한 번역에 있어서 세밀하고도 정확한 법률용어의 차이를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번역문만 본문에 놓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에 법조문 번호를 인용함으로써 법조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법조항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원문을 각주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 69) 이 장은 연방 레몬법을 직접 전부 번역한 후, 전체적인 내용에 기초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 차례 분석하여 목차를 세분화하며 구조를 재구성하였다. 연방 레몬법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소개한 국내 문헌이 없어서 참고할 수 있는 국내문헌은 전무하였기 때문에 몇 부분의 미국 논문의 견해를 직접 번역하여 짧게 인용한 부분 이외에는 이 장의 내용은 사실상 전부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 즉, 연방 레몬법을 번역하며 선택한 용어나 연방 레몬법의 구조분석, 이 장의 각 목차 배열이나 각 문단 내용 등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견해에 불과함을 밝힌다.

연방 레몬법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자상품의 품질보증을 보다 충실하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게 함과 동시에 통일상법 전 등 기존의 전통적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의 내용을 침해받은 소비자를 실효성있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에서 1975년 제정된 법으로서, US Code의 Title(이하 ‘편(編)’ 이라 한다) 15—COMMERCE AND TRADE, CHAPTER(이하 ‘장(章)’ 이라 한다)50—CONSUMER PRODUCT WARRANTIES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의 명칭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그너슨-모스 연방거래위원회 품질보증개선법(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sup>70)</sup>” 으로서 통상 “매그너슨-모스 품질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 또는 “MMWA”, “연방품질보증법 (Federal Warranty Act 또는 The Warranty Act)” 으로 줄여서 칭하여 지고, 자동차와 관련한 레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방 레몬법” 으로 칭하여 진다.<sup>71)</sup>

## 2. 연방 레몬법의 구성과 “레몬 조항(Lemon Provision)”

### 가. 연방 레몬법의 구성

연방 레몬법은 아래와 같이 2301부터 2312까지 총 12개의 섹션(이하 ‘조(條)’ 라 칭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 레몬법의 핵심을 딱 5가지

70) Short Title, Pub. L. 93-637, §1, Jan. 4, 1975, 88 Stat. 2183, provided: “That this act [enacting this chapter and sections 57a to 57c of this title, amending sections 45, 46, 49, 50, 52, 56, and 58 of this title, and enacting provisions set out as notes under sections 45, 56, 57a, and 57b of this title] may be cited as the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71) 이전 장과 같이 주로 연방 레몬법으로 동법을 지칭하기로 하고 필요에 따라 MMWA 나 Warranty 법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섹션부호없이 조문번호부터 바로 기재하기로 한다.

만 꼽으라면 “레몬 조항”, “서면품질보증(Written Warranty), 전부 또는 일부품질보증(Full 또는 Limited Warranty)” 그리고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Inform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와 “ 레몬소송의 연방 법원 관할 인정” 및 “변호사 비용 구상 인정” 이 될 것이다.

#### 제50편—상품의 품질보증 (CONSUMER PRODUCT WARRANTIES)

제2301조 정의,

제2302조 품질보증의 내용을 규율하는 규칙 (Rules governing contents of warranties),

제2303조 서면 품질보증의 유형지정 (Designation of written warranties),

제2304조 품질보증의 연방최소기준 (Federal minimum standards for warranties),

제2305조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 품질보증 (Full and limited warranting of a consumer product)

제2306조 서비스 계약, 서면의 품질보증에 부가 또는 대신한 계약 내용의 명백하고 현저한 전부 공개의 원칙 (Service contracts; rules for full, clear and conspicuous disclosure of terms and conditions; addition to or in lieu of written warranty)

제2307조 품질보증서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품질보증인에 의한 대행자 지정 (Designation of representatives by warrantor to perform duties under written or implied warranty)

제2308조 묵시적 품질보증 (Implied warranties),

제2309조 연방거래위원회 규칙 공포 절차 (Procedures applicable to promulgation of rules by Commission),

제2310조 소비자의 분쟁구제수단 (Remedies in consumer disputes),

제23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pplicability to other laws),

## 제2312조 효력발생일 (Effective dates)

연방 레몬법은 품질보증의 내용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서면 품질보증의 유형을 전부(Full)와 일부(Limited)로 구별하면서 품질보증서의 유형을 반드시 제품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명목뿐인 품질보증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품질보증상의 보증수리의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어디에서 어떻게 이행하여 소비자를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이루어 낼 것인지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면서 실제적 권리면에서 결정적으로 소위 “레몬 조항”을 규정하게 된다. 즉, “레몬”을 구입한 것으로 판명되는 소비자는 더 이상 끊임없이 수리를 받는 고통에 내몰리지 않고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식적 절차면에서는 이러한 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비쟁송절차인 분쟁해결절차를 연방거래위원회 산하에 도입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품질보증의 내용으로 흔히 편입되어 있는 서비스 계약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밝히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기존의 통일상법전 등에서 발생하였던 소비자의 관련 권리와 의 관계, 주 법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규정을 둬으로써 이 연방 레몬법은 다른 법들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경합적으로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나. “레몬 조항”

“레몬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소비자가 구입한 새 제품이 하필이면 불량·고장품이어서 보증수리를 몇 번이나 맡겨보아도 별 소용이 없는 경우 소비자는 그 제품을 환불하거나 다른 새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량·고장품을 “레몬”이라고 칭하고, 이러한 레몬에 대하여 “환불 또는 교환”을 받

을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레몬 조항” 이라고 한다.<sup>72)</sup> 이 내용은 “레몬 법칙(Lemon Rule)” 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그런데 이 “환불 또는 교환” 을 받을 권리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레몬이라고 생각할만한 불량·고장이 발견되기만 하면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량·고장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수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 (reasonable numbers of tries or attempts)” 가 있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sup>73)</sup> 이와 같은 레몬 조항 규정은 이후 각 주의 레몬법에도 도입되게 된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공식법명을 가지고 있는 연방 또는 주의 자동차 품질보증에 관한 법들이 레몬법(Lemon Law)라는 공통의 명칭으로 불리워지게 된 핵심 정체성(Identity)이 바로 이 레몬 조항이고 이러한 레몬 조항이 없는 법은 레몬법이 아니므로 이는 레몬법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내용 중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 다.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승소한 소비자의 변호사비용배상청구권 등

레몬 조항뿐만이 아니라 연방 레몬법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비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고,<sup>74)</sup> 승소한

72) Lawrence Alan Towers, J.D. 11 Am. Jur. Proof of Facts 3d 343 (Originally published in 1991), “Lemon Law” Litigation—Existence of Substantial Defect, § 1. General comments; scope of article에서는 “자동차는 삶에 있어서 미국인의 15%에게는 생애 가장 큰 금액으로 구입하게 되는 상품이고, 미국인의 65%에게는 생애 두 번째로 큰 금액으로 구입하게 되는 상품이라고 한다. 게다가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믿을 만한 자동차의 존재는 그들의 일과 개인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반복되는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결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는 소비자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논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구제수단이 정립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데 참조할 만하다(물론 이 논문이 쓰여진 1991년과 2015년인 지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요즘과 같이 고부가가치가 집적된 다양한 고가의 전자기기 등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서는 그 통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자동차가 상위 수위의 지출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3) 레몬 조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 부분에서 후술한다.



소비자가 변호사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요한 입법적 결단을 하고 있다. 즉, 동법은 구매자가 매그너슨-모스 품질보증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든 아니면 주법하에서의 묵시적 품질보증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든 이를 불문하고 승소한 구매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여 주는 것을 승인하였다.<sup>75)</sup>

---

74) 다만, 반드시 이 절차를 먼저 이용하여 소진시켜야만 비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방식에 대하여는 비판적 견해도 상당히 발견된다. 가령 Vogel의 전기 논문

75) Harold Greenberg, 22 Ind. L. Rev. 57, B. THE INDIANA MOTOR VEHICLE PROTECTION ACT OF 1988: THE REAL THING FOR SWEETENING THE LEMON OR MERELY A WEAK ARTIFICIAL SWEETENER?, Indiana Law Review, 1989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in Indiana Law

## 제2절 연방 레몬법상의 주요 개념과 그 의미<sup>76)</sup>

동법 2301. 정의(Definitions) 규정을 중심으로 연방 레몬법상의 주요 개념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 1. 상품(Consumer Product)

#### 가. 상품<sup>77)</sup>

“상품”이란 상업적 방법으로 유통되고 주로 개인이나 가족 또는 가정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적 유형물 (실제 부착 혹은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부착되거나 설치될 의도였던 물건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sup>78)</sup>

#### 나. 목적

---

76) 이러한 정의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당해 법의 “적용범위”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를 함께 논의하지 않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런데 주 레몬법의 정의 규정이나 적용범위는 연방 레몬법의 그것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특히 레몬법이 시작한 “자동차”였던 점에서 대부분의 주 레몬법은 연방 레몬법이 “소비자 상품”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연방 레몬법의 경우 주 레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주 레몬법 역시 연방 레몬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아서 통상 레몬소송에서는 연방 레몬법과 주 레몬법에 기초한 주장들이 병합되어 제출된다는 점들을 두루 고려하면, 주 레몬법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가 서술된 이후에 연방 레몬법과 주 레몬법을 함께 고려하면서 “적용범위”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부분에서는 적용범위를 직접적으로 목차로 삼지 않았다.

77) 소비자가 상거래인 최초 거래(구입 후 친구 등에게 재판매하더라도 잔존품질보증기간에 대하여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품질보증인의 책임이 원칙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최초’ 거래로 표현하였다)를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취지를 담기 위하여 “Consumer Product”를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상품”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소비자, 소비자상품 등으로 혼용하기로 한다.

78) MMWA § 2301.(1)

상품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개인이나 가족 또는 가정생활을 위한 목적이라는 “개인적 소비목적”이다. 그렇다면, 개인적 목적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자동차나 타이프라이터와 같은 상품들은 소비자상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연방 공보(Federal Register)의 연방 규칙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은 이와 같이 어떤 특정 상품이 소비자상품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와 같은 불명확성은 포함된다고 보는 쪽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해석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sup>79)</sup> 소비자 상품인지 여부의 논란이 있는 또 다른 대표적 상품으로 농기계나 구조물 등 농업과 관련한 상품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품들은 개인, 가족 또는 가정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연방 레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농업과 관련한 상품들이 개인이나 가정의 정원을 위하여 이용된 경우라면 이는 연방 레몬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 상품에 해당한다.<sup>80)</sup>

#### 다. 부동산에의 부속물 또는 종물

그리고 연방 레몬법은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부착되거나 설치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부동산에 부착되거나 설치될 의도였던 물건 역시 소비자상품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그와 같은 상품의 사용이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면 그 상품은 소비자 상품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본

79) 본 연구에서 나오는 C.F.R.의 내용은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의 e-CFR Data를 기본으로 연구하였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ecfr.gov/cgi-bin/retrieveECFR?gp=1&SID=80e6dfbcdc5239a06ce86a15fd34cf9&ty=HTML&h=L&r=PART&n=pt16.1.700> (이하 C.F.R.에 대하여도 Part번호의 차이 이외에는 동일)

§ 700.1. Products covered.(a), 16 C.F.R. Part 700(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80) § 700.1. Products covered.(b), 16 C.F.R. Part 700(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다.<sup>81)</sup> 이와 같이 소비자 상품의 정의규정은 연방 레몬법의 적용범위를 “실제 부착 또는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에 부착 또는 설치될 의도였던 물건을 포함한” 개인물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에어컨이나 난로, 또는 온수기 등 부동산에 부속 또는 부착된 별도의 독립설비들을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sup>82)</sup>

부동산에 부착된 독립한 물건이었던 설비 중 어느 범위까지 연방 레몬법의 소비자상품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기배선, 수도관, 덕트 등 부동산의 일부로 부합되어 일체화되어 버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전기기, 온도 조절기, 기계나 전자설비 등은 소비자 상품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와 같은 상품들을 부동산의 불박이 세간으로 구별하는 각 주의 법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주법하에서 불박이 세간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연방 레몬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규에 의한 정의가 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sup>83)</sup>

## 2. 소비자(Consumer)

“소비자”란 상품의 매수인(재판매의 목적 이외), 혹은 그러한 상품을 적용가능한 묵시적 또는 서면 품질보증(또는 서비스계약)의 기간 동안 양수한 자, 상기 품질보증(또는 서비스계약)의 내용 또는 적용가능한 주법에 의하여 품질보증인(또는 서비스계약자)에 대하여 품질보증(또는

---

81) § 700.1. Products covered.(a), 16 C.F.R. Part 700(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http://www.gpo.gov/fdsys/pkg/CFR-2012-title16-voll/pdf/CFR-2012-title16-voll-part700.pdf>

82) § 700.1. Products covered.(c), 16 C.F.R. Part 700(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83) § 700.1. Products covered.(d), 16 C.F.R. Part 700(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서비스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자를 의미한다.<sup>84)</sup> “소비자”는 재판매 목적이외의 상품 구매자로서 개인, 사업체,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등이 될 수 있다.<sup>85)</sup>

### 3. 공급자(Supplier), 품질보증인<sup>86)</sup>(Warrantor)

84) MMWA § 2301.(3)

85) Reitz, Consumer Product Warranties Under Federal and State Laws, § 12.05 at 204-07. (1987)

86) Warrantor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역시 고민이 많았는데 이는 Warranty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어서 Warranty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지와 함께 고민을 하였다. 국내에서 UCC상의 Warranty책임을 연구한 기존 논문들{김동석, 미국통일상법전상 담보책입의 성립요건, 수원대 사회과학논집 1집, 1989.12., 주지홍, 미국 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입,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이재찬, 미국통일상사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상의 담보책입(Warranty)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8 등}은 “담보책입”으로 번역하고 있었다. Warranty책입은 책입의 본질 혹은 기능상으로는 우리 법체계하에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입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Product Warranty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Product Liability 만 하더라도, 본질을 고려하여 곧 불법행위책입이라고 번역을 하기 보다는 불법행위책입의 특별한 분야로서의 제조물책입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하더라도 단순히 관형어나 한정어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별법에 있어서 핵심에 해당하는 이 용어에 대한 국내의 용어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본질적 법적 성질에 있어서의 유사성에만 기한 번역을 고수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미국의 Warranty Act, 즉 연방 레몬법과 각 주의 51개의 레몬법은 매매목적물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정보를 쏟아내며 그 반대편에 위치하여 실제 물건을 제조한 제작자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상품들을 표시된 대로 믿고 제작자와는 다른 사람인 것이 보통인 상인으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역할을 맡게 된 현대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매매계약의 직접당사자 여부를 불문하고 제작자에게 직접 Warranty에 기초한 책임을 지운 법이다. 특히 레몬법의 제정촉매제이자 핵심 상품인 자동차는 현대의 양산되는 공산품, 즉 종류물인 합성물의 대표주자로서 상업적 방법으로 매스 미디어와 각종 표시에 기한 일방적인 광고와 다양한 유통기법 및 금융상품의 결합, 제작사와 부품업체, 각각의 A/S업체, 기타 정비업체, 진단서비스 업체, 인증업체, 부품유통업체, 각 단계의 보험 등이 복잡하게 연결된 상태로 판매되며 감자칩과 같이 일회성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계속적 소비의 대상인 내구제이면서 서민들에게는 집 다음으로 큰 지출을 하게 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Warranty를 보고 Warranty없이 산 경우에 비하여 통상 높은 금액을 주고 구입하였으므로 Warranty 제공한 사람이 매매 등 상품구입계약의 상대방인지 여부를 떠나서 Warranty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라는 Warranty법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사실상 품질보증한 제작자와 품질보증을 보고 구매한 자 간에 품질보증계약이 성립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핵심적 차이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다르다는 것이다. 통상 매도인인 딜러와 자동차의 제작자는 별개의 주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로 이 점이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의 매매계약관계에 기초한 UCC상의 Warranty와의 결정적인

1) “공급자”란 상품을 소비자들이 소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을 의미한다.<sup>87)</sup>

차이점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매매계약과 같은 상품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유상계약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법상 용어인 “담보책임”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레몬법상 Warranty의 대부분의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고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커졌는바 이에 레몬법상의 Warranty를 설명하는 이 논문에서는, 기존 UCC상의 Warranty에 관한 연구논문들의 대부분에서 이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러한 취지를 담으면서 거래실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찾아보았고 이는 바로 “품질보증”이라고 생각하였다. 품질 “보증”이라는 용어보다는 품질 “보장”이라는 말이 낫지 않은지의 의문이 있을 수도 있으나(실제 위 이재찬, 미국통일상사법전(Uncle Sam Commercial Code)상의 담보책임(Warranty)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8의 첫 페이지 각주 1에서는 Warranty를 담보책임으로 번역하기로 하면서 그 의미로는 품질 “보증”이 아닌 품질 “보장”을 뜻한다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양 단어를 찾아 비교해 보면 “보증”에 대하여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예) 보증 각서”으로, “보장”에 대하여는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 (예) 비밀 보장, 생활 보장 대책, 인권 보장”로 나와 있고 “보증”의 비슷한 말로는 “보장, 증명”이, “보장”의 비슷한 말로 “뒷감당, 보증”이 기재되어 있다. 두 단어는 서로 비슷한 말로 예시되어 있을 정도로 의미의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사실 미국의 단어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관계에 있는 단어로 Warranty와 Guarantee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Warranty와 Guarantee는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연방 레몬법의 입법과정의 서류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참고로 EU의 소비자법으로서 EU Lemon Law로 칭하여지는 Directive 1999/44/EC에서는 “Sales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로 Warranty가 아닌 Guarantee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양 단어는 매우 유사하다. 그렇지만 실제 Usage에 기초하여 보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You can guarantee without providing warranty”를 말하는 상황은 딜러샵 등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는 “I wouldn’t jump into that icy cold water unless you guarantee there is a pearl necklace for sure.”라는 문장에서 guarantee는 warranty로 치환될 수 없는 것이다.), 대량생산되는 공산품의 대다수는 품질에 별 문제가 없고 예외적으로 불량·고장품이 있다는 경험칙에 기초하여 볼 때, 품질에 대하여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한다’고 보기보다는 품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두면서 ‘책임지고 틀림없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의 거래에 접근해 있다고 판단되고, 이미 거래 현실에서도 “품질보증”이라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 2014.5.16.선고 2012다72582판결에서도 별다른 쉐린지 없이 자동차거래시 교부되는 “품질보증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관시하고 있기도 할 정도로(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이 용어에 관한 고려를 본격적으로 하였다거나 품질보증이라는 용어로 승인하였다고 등 판결례를 읽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품의 Warranty에 대하여는 “품질보증”이라는 용어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사회의 관행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Warranty를 “품질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고 “Warrantor”는 “품질보증인”으로 번역하도록 한다.

87) MMWA § 2301.(4)

2) “품질보증인”이란 공급자 또는 그 이외의 어느 누구든지 서면으로 품질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하려는 한 자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sup>88)</sup> 품질보증인은 서면에 의한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연방 레몬법의 어떤 조항도 품질보증인으로 하여금 서면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하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러한 품질보증인은 그 지정된 대행자의 보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마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정은 품질보증인의 소비자에 대한 그의 직접적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그 대행자를 공동품질보증인으로 만들지 못한다.<sup>89)</sup>

#### 4. 서면 품질보증(Written Warranty<sup>90)</sup>)

연방 레몬법에서 품질보증을 규정짓는 방법은 바로 “서면의 품질보증·품질보증서(Written Warranty)”, “전부 품질보증(Full Warranty)”, “일부 품질보증(Limited Warranty)”이다. 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연방차원의 기본법인 연방 레몬법의 핵심 기틀을 이루는 개념이므로 다음 절에서 별도로 상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

88) MMWA § 2301.(5)

89) MMWA § 2307.

90) 서면 품질보증이나 품질보증서로 번역하는 경우 종이사면 등으로 의미가 일견 과도하게 한정되어 읽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쓰여진’ 품질보증으로 번역하는 것이 “서면의 품질보증이나 품질보증서”로 번역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자동차 거래 실제에서 대부분 서면으로 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반드시 종이여야 한다거나 정해진 양식이 있어야만 할 필요 없이 품질보증의 내용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는 이해의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Written Warranty”를 “서면 품질보증”, “서면의 품질보증” 또는 “품질보증서”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 5. 서비스계약

“서비스 계약”이라 함은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한 지속기간 동안 소비자 상품의 유지관리 또는 수리(또는 양자 모두)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sup>91)</sup>

연방 레몬법하의 서비스계약은 반드시 이러한 동법 제2301조 (8)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서면의 품질보증에 관한 정의규정인 동법 제2301조 (6) (A) 또는 (B)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거래기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그 합의는 서비스계약이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상품의 구입 가격에 더하여 약간의 대가를 요구하는 합의 또는 소비자 상품의 구입 이후 어느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소비자 상품에 적용되는 계약은 서비스 계약이 된다. 유지 및 검사 혹은 유지 또는 검사 서비스의 이행에만 관련되는 합의로서 일정한 수준의 성능 또는 그 상품이 재질 또는 제조상 함이 없다는 점에 관한 약속이나 확인이 아닌 것은 서비스 계약이다. 일정한 기간에 걸쳐 주기적인 청소와 점검을 하기로 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매매계약 당시에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계약의 예가 된다.<sup>92)</sup>

연방 레몬법은 상품에 대하여 비슷한 내용과 효과를 가지는 서면 품질보증과 서비스계약이라는 2가지 유형의 계약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보험계약으로 다른 주 법규하에서 규율되고 판매되고 있는 다른 합의들도 위 품질보증서와 서비스계약의 둘 중 하나의 법규적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다. 하나의 예로 많은 주에서 팔리고 있고 상해보험의 한 양식으로서 주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자동차 긴급출동 보험을 들 수

91) § 2301. (8)

92) § 700.11. Written warranty, service contract, and insurance distinguished for purposes of compliance under the Act. (c), 16 C.F.R. Part 700(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있다. 맥카란-퍼거슨 법(The McCarran - Ferguson Act, 15 U.S.C. 1011 et seq.)은 주법에 의하여 보험으로 규율되고 있는 합의에 대하여는 보험업에 대한 연방법의 관할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는 특정 주에서 보험업의 문제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 한도에 한에서만 연방 레몬법이 적용된다.<sup>93)</sup>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특히 가격이 비싼 상품에 대하여 그 판매자들이 서면의 품질보증에 부가하여 또는 서면의 품질보증을 갈음하여 서비스 계약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sup>94)</sup> 서비스 계약은 품질보증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호를 위하여 또는 품질보증이 끝난 후의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을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되는 별도의 옵션 계약이다.<sup>95)</sup> 이 “서비스 계약”과 “서면 품질보증”은 어떤 산업에서는 치환적인 용어로 사용 중이어서 소비자와 사업에 혼동을 초래한다.<sup>96)</sup> 양자의 유사점은 의회로 하여금 서비스 계약을 규율하는 넓은 기준을 MMWA에 포함시키게 하였다.<sup>97)</sup> MMWA에 의하면 서비스 계약과 품질보증은 공개요건과 묵시적 품질보증의 면책과 관련하여 달리 취급되는데 이와 같은 구별은 MMWA와 연방거래위원회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의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sup>98)</sup>

## 6. 합리적이고 필요한 유지관리

---

93) § 700.11. Written warranty, service contract, and insurance distinguished for purposes of compliance under the Act. (a), 16 C.F.R. Part 700(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94) Barkley Clark and Christopher Smith, 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 19:1

95) Barkley Clark and Christopher Smith, 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 19:1

96) Barkley Clark and Christopher Smith, 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 19:1

97) Barkley Clark and Christopher Smith, 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 19:1

98) Barkley Clark and Christopher Smith, 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 19:1

“합리적이고 필요한 유지관리”란 (A) 소비자에게 수행하거나 수행하였기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B) 소비자 상품이 의도된 성능을 발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으로 구성된다.<sup>99)</sup>

## 7. 구제<sup>100)</sup>

“구제”란 품질보증인이 선택하는 (A) 수리, (B) 대체물교부 또는 (C) 환불을 의미한다.

다만, 품질보증인은 (i) 품질보증인이 교환을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리는 상업적으로 실행할 수 없거나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또는 (ii) 소비자가 환불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아닌 한 환불을 선택할 수 없다.

1) 대체물교부<sup>101)</sup> : “대체물교부”란 품질보증되었던 소비자 상품과 동일하거나 합리적으로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환불<sup>102)</sup> : “환불”이란 실제 구입가격(위원회의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실제 사용에 의한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 8. 기타 개념의 정의

---

99) § 2301. (9)

100) § 2301. (10)

101) § 2301. (11)

102) § 2301. (12)

1) “상업적으로 유통된”이란, 상거래에서 팔리거나, 상거래에 진입되거나, 상거래에 진입될 목적으로 수송되거나, 상거래에 진입된 이후 매때나 유통을 위하여 보관된 것을 의미한다.<sup>103)104)</sup>

2) “상거래”란 거래, 운송, 주 내의 장소와 그 밖의 장소 간 또는, 이러한 거래, 교통, 상업 또는 운송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sup>105)</sup>

3) “주”란, 각 주,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령, 괌, 파나마 운하지역 또는 아메리칸 사모아를 의미한다. “주법”이란 미국법 중 오로지 콜롬비아 특별구 또는 미국의 영토나 지배대상에만 적용되는 법을 포함한다; “연방법”이란 주법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sup>106)</sup>

4) “위원회”란 연방거래위원회를 의미한다.<sup>107)</sup>

---

103) § 2301. (13)

104)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연방기록으로는 아래의 것이 있다. § 700.1. Products covered.(i), 16 C.F.R. Part 700(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i) The Act covers written warranties on consumer products “distributed in commerce” as that term is defined in section 101(3). Thus, by its terms the Act arguably applies to products exported to foreign jurisdictions. However, the public interest would not be served by the use of Commission resources to enforce the Act with respect to such products. Moreover, the legislative intent to apply the requirements of the Act to such products is not sufficiently clear to justify such an extraordinary result. The Commission does not contemplate the enforcement of the Act with respect to consumer products exported to foreign jurisdictions. Products exported for sale at military post exchanges remain subject to the same enforcement standards as products sold within the United States, its territories and possessions.

105) § 2301. (14)

106) § 2301. (15)

107) § 2301. (2)

### 제3절 서면 품질보증(Written Warranty)<sup>108)</sup>

#### 1. 연방 레몬법 적용요건 : “서면의 품질보증(Written Warranty)”

연방 레몬법에서 Warranty를 규정짓는 방법은 바로 “서면의 품질보증(Written Warranty)”, “전부 품질보증(Full Warranty)”, “일부 품질보증(Limited Warranty)” 이다.

연방 레몬법은 오로지 “서면의 품질보증(Written Warranty)” 에 한하여만 적용되고, “서면의 품질보증(Written Warranty)” 는 “전부 품질보증(Full Warranty)” 와 “일부 품질보증(Limited Warranty)” 로 반드시 나누어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 같이 “서면의 품질보증(Written Warranty)” 은 연방 레몬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개념이다.

#### 2. 통일상법전의 담보책임<sup>109)</sup>(Warranty)과의 비교

---

108) 이는 UCC 2-313에 규정된 ‘express warranty’, 즉 명시적 품질보증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 거래의 기초에 편입된 사항이지만 구두였을 뿐 기재된 바는 없다면 이는 명시적 품질보증의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품질보증서의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109)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통일상법전과 레몬법에 Warranty라는 용어가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어떤 용어로 번역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Warranty는, 특히 Express Warranty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상품거래는 기본적으로 Warranty없이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Warranty까지 함께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Warranty없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Warranty를 포함하여 그 가격을 달리 하여 Warranty부 상품구입하는 경우가 상거래관행에 존재함을 당연히 예정에 둔 상태에서 이러한 Warranty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 위와 같은 미국통일상법전이나 미국레몬법의 기본 전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명백하지 않다. 오히려 품질보증약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상계약의 등가성, 공평의 원칙상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책임으로서 채부물이행의 본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미국의 이러한 원칙적 Warranty 개념은 통상 명시적 Warranty를 구입한 품질보증계약이 있다는 것

이는 통일상법전에서의 담보책임(Warranty)에 관하여 “명시적 담보책임(Express Warranty)”와 “묵시적 담보책임(Implied Warranty)”로 구분하여 규율하던 것과 대비된다. 연방 레몬법에 “명시적 품질보증(Express Warranty)”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묵시적 품질보증(Implied Warranty)”는 정의규정인 § 2301(6)에서 용어 정의되고, § 2304(a), § 2307, § 2308에서도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방 레몬법의 고유하고도 독자적인 품질보증(Warranty) 유형 기준인 “서면, 전부, 일부의 품질보증(Written, Full, Limited Warranty)”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원칙적으로 통일상법전과 각 주법의 영역인 “명시적 담보책임(Express Warranty)”과 “묵시적 담보책임(Implied Warranty)”에 대하여는 연구의 목적을 넘는 관계로 상세히 검토하지 않는다.

### 3. 서면의 품질보증(Written Warranty)

#### 가. 해당 법조문의 소개 110)

---

이 사실상 전제되지만,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품질보증계약이 없더라도 유상계약의 등가성이나 공평에 의하여 배제특약이 없는 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Warranty와 담보책임은 본질상 완전히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법에 의하여 창설되는(“created”) Implied Warranty는 그 연혁상 Common Law의 “fair value for money spent,”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FTC의 “Businessperson’s Guide to Federal Warranty Law” 참조) 이는 우리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과 그 본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Warranty를 Express Warranty인지 Implied Warranty인지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담보책임”으로 번역하는 것은 이러한 본질상의 차이를 드러낼 수 없어서 자칫 오해를 생길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 국내 연구관행에 따라 통일상법전상의 “Warranty”는 모두 “담보책임”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레몬법의 “Warranty”는 여전히 “품질보증”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초점에 따라서 “Express Warranty”는 명시적 담보책임, 명시적 품질보증으로 “Implied Warranty”는 묵시적 담보책임, 묵시적 품질보증으로 번역한다.

110) § 2301. (6)

레몬 조항과 더불어 연방 레몬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개념 중의 하나인 “서면 품질보증(Written Warranty)” 에 대하여 동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2301.(6) “서면의 품질보증” 이란 다음의 서면의 확인, 약속 또는 서약이 공급자와 구매자 간에 재판매 목적이 아닌 거래관계의 기초를 이루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A) 상품의 판매와 연계되어 공급자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작성된 서면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한 확인 또는 약속으로서 재질 또는 제조에 연계되고 그러한 재질이나 제조에 하자가 없다는 것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수준의 성능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점을 확인 또는 약속하는 것, 또는

(B) 상품의 공급자에 의하여 그 판매와 관련하여 상품이 서약서에 정하여진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상품에 대하여 환불, 수리, 교환 또는 다른 구제수단의 실행을 취할 것임을 기재한 서약

§ 2301. (6) The term “written warranty” means—

(A) any written affirmation<sup>111)</sup> of fact or written promise<sup>112)</sup> made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a consumer product by a supplier to a buyer which relates to the nature of the material or workmanship and affirms or promises that such material or workmanship is defect free or will meet a specified level of performance over a specified

111) 본 연구에서는 “확인” 으로 번역한다. affirmation, A pledge equivalent to an oath but without reference to a supreme being or swearing.(Black’s Law Dictionary, 8<sup>th</sup> Edition)

112) 본 연구에서는 “약속” 으로 번역한다. promise, 1. The manifestation of an intention to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a specified manner, conveyed in such a way that another is justified in understanding that a commitment had been made.(Black’s Law Dictionary, 8<sup>th</sup> Edition)

period of time, or

(B) any undertaking<sup>113)</sup> in writing in connection with the sale by a supplier of a consumer product to refund, repair, replace, or take other remedial action with respect to such product in the event that such product fails to meet the specifications set forth in the undertaking,

which written affirmation, promise, or undertaking becomes part of the basis of the bargain between a supplier and a buyer for purposes other than resale of such product.

## 나. 구별개념

### 1) 명시적 품질보증(Express Warranty)<sup>114)</sup>

연방 레몬법상 서면의 품질보증(Written Warranty)과 명시적 품질보증(Express Warranty)를 혼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시적 품질보증은 통일상법전 § 2-313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서면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지만, 연방 레몬법상 서면의 품질보증은 성립요건 자체는 통일상법전의 명시적 품질보증성립요건과 유사하지만 연방레몬법 § 2301.(6)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는 “서면(Written)” 요건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인 물건의 품질에 대하여 매도인이 명시

113) 본 연구에서는 “서약”으로 번역한다. undertaking, 1. A promise, pledge, or engagement. 2. A bail bond. (Black’s Law Dictionary, 8<sup>th</sup> Edition)

114) 연방 레몬법이나 주 레몬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통일상법전의 명시적 담보책임과 묵시적 담보책임의 개념의 이해는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상법전의 담보책임 전반을 본 연구에서 상세히 논의하여 이를 레몬법상의 품질보증과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독립한 연구의 주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으로서 본 연구목적범위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통일상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명시적 담보책임의 내용을 오직 조문의 내용에 한정하여 이 구별개념으로서의 명시적 품질보증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적으로 보증을 하였더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명시적 품질보증에 불과할 뿐 연방 레몬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서면의 품질보증이다.

명시적 품질보증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보증한다(warrant)” 또는 “장담한다(guarantee)” 등의 정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거나 매도인이 품질보증책임을 성립시킬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의 가치에 대한 단순한 확인이나 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의견이나 추천은 품질보증책임을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명시적 품질보증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도인의 확인, 약속, 묘사가 있거나 샘플이 제시되었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매도인에 의한 명시적 품질보증책임을 인정된다.<sup>115)</sup>

(a)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물건에 관한 사실의 확인 또는 약속으로서 거래의 기초를 이루게 된 것은 그 물건이 그러한 확인이나 약속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품질보증책임을 성립시킨다.

(b) 거래의 기초를 구성하게 된 물건의 묘사는 그 물건이 그 묘사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품질보증책임을 성립시킨다.

(c) 거래의 기초를 구성하게 된 샘플이나 모델은 매매목적물 전부가 그 샘플이나 모델과 부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품질보증책임을 성립시킨다.

이와 같은 명시적 품질보증은 연방 레몬법상의 서면 품질보증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sup>116)</sup> 연방 레몬법은 품질보증인이 상품에 대하여 서면의

---

115) 통일상법전 § 2-313.

116) Reitz, Consumer Product Warranties Under Federal and State Laws, § 3.02 at 21 (1987), Michael F. Brockmeyer, FEDERAL AND STATE WARRANTY LAWS, C739 ALI-ABA (271 American Law Institute - American Bar Association Continuing Legal Education), January 9, 1992에서 재인용



품질보증(Written Warranty)으로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연방 레몬법을 제정한 의회는 상품에 품질보증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는 강제하지 않았고, 상품에 품질보증을 할 것인지의 여부나 품질보증을 하더라도 어떠한 품질보증을 할 것인지의 여부, 즉 아예 어떠한 품질보증도 하지 않을 것인지, 명시적 품질보증(Express Warranty)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의 품질보증(Written Warranty)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작자와 판매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였다.

## 2) 묵시적(내재적·내포된) 품질보증<sup>117)118)</sup>

묵시적 품질보증이란 매도인이 동종의 물건에 대한 상인인 경우라면 상품은 상거래에서의 상품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품질보증은 원칙적으로 그 매매의 계약에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거나, 계약 체결 당시의 매도인이 매수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에 어떠한 특정 목적이 요구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적합한 상품을 고르거나 공급하는 것에 대한 기술이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물건이 그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묵시적인 품질보증이 인정된다고 보는 통일상법전이나 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다.<sup>119)120)</sup>

117) “implied warranty” 는 연방 레몬법뿐만이 아니라 UCC 2-314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용어이다. 추단적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express warranty” 와는 달리 거래당사자가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성립된다기보다는 일종의 법정책임에 보다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번역할 때 의미상으로는 “내재적” 또는 “내포된” 등의 용어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레몬법을 다루는 기존의 국내논문은 없으므로 참조할 수 없었지만 통일상법전의 담보책임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국내논문들(이태희, 미국통일상법전상의 담보책임, 법률실무연구 제15집, 1985. 1., 주지홍 미국 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등)에서는 이를 “묵시적 담보책임” 으로 이미 번역하고 있기에 용어의 혼용방지를 위하여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레몬법 및 그에 관한 미국의 논문들(본 논문의 참고 문헌 목록참조)은 연방 레몬법상의 implied warranty가 통일상법전의 implied warranty 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양자의 본질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연방 레몬법의 “written vs implied” warranty의 구도에 대한 용어를 UCC의 “express vs implied” warranty의 구도에 대한 용어와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는 ‘묵시적’ 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118) § 2301. (7)

연방 레몬법의 제2308조에서는 묵시적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묵시적 품질보증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통일상법전이나 주법에 규정된 묵시적 품질보증의 개념에 기초하여 서면의 품질보증(Written Warranty)이 있는 상품에 대한 묵시적 품질보증의 면책, 변경 또는 존속기간을 제한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 3) 서비스계약

연방 레몬법은 품질보증과는 별도로 원칙적으로 서비스계약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서비스계약의 내용이 단순명료하고 이해되기 쉬운 언어로 전부, 선명하고도 눈에 잘 띄게 공개되어 있다면 연방 레몬법의 어느 조항도 공급자나 품질보증인이 서면 품질보증에 부가하여 혹은 대신하여 소비자와 함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서비스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방식과 양식으로 전부, 선명하게 그리고 눈에 잘 띄도록 공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sup>121)</sup>

## 4. 서면품질보증의 요건

### 가. 서면품질보증 유형의 구분

연방 레몬법은 § 2301. (6)에서 서면품질보증의 2가지 유형을 (A), (B)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서면품질보증으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연방 레몬법상 해당 구제규정의 효력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두 가지 유형

---

119) 통일상법전 § 2-314.

120) 통일상법전 § 2-315.

121) § 2306.

의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유형은 각기 다른 요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내용의 본질적 차이에 초점을 두어 “보증적 품질보증”, “보장적 품질보증”으로 편의상 유형을 구분하여 요건을 검토하도록 한다.<sup>122)</sup>

#### 나. 보증적 품질보증-MMWA § 2301. (6)(A)

- 1) 서면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 또는 서면에 기재된 약속일 것
- 2) ‘1)’의 그 확인 또는 약속은 공급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당해 상품의 판매와 연결되어 만들어진 것일 것
- 3) ‘1)’의 그 확인 또는 약속은 재료나 제조의 본질에 연결된 것이고, 그런 재료나 제조가 하자가 없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성능을 만족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한 것일 것
- 4) ‘2), 3)’의 요건을 갖춘 이러한 ‘1)’의 확인이나 약속이 그 상품의 재판매를 제외한 목적으로 구매한 자와 공급자 간 거래의 기초가 되었을 것

---

122) MMWA § 2301. (6)의 서면품질보증의 이 두 유형을 구분하여 각기 유형별 세부 제목을 붙인 문헌이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문헌을 다양하게 리서치하였으나 MMWA § 2301. (6)(A)와 (B)를 나누어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 미국의 문헌은 찾지 못하였다. 미국 레몬법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한국의 문헌은 연구자가 찾은 한도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역시 참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양 자는 동일하지 않은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유형은 상품의 품질이 확실하니 걱정말라는 취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보증’에 가까움), 두 번째 유형은 혹시라도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일정한 구제조치를 해서라도 그 상품의 품질을 백업해줄겠다는 취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보장’에 가까움). 따라서 연구의 편의상 양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내용을 논하게 되었으나 이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함을 밝힌다. “보증”과 “보장”의 미세한 의미차이에 대하여는 이전 각주에서 밝힌 바 있다. Warranty “전체”를 두고 생각할 때에는 품질에 대한 “보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품질보증”이라는 단어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품질보증의 위 세부 유형에서는 그 유형별 특징에 방점을 두어 “보증적” 품질보증과 “보장적” 품질보증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전달이 수월할 것으로 보았다(“보증”과 “보장”은 유사하나 여전히 미세한 의미의 차이는 있는 것인바 큰 외연에는 보증을 사용하고 작은 외연에는 보증과 보장으로 구체화하는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논리에 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 다. 보장적 품질보증-MMWA § 2301. (6)(B)

- 1) 서면에 기재된 서약일 것
- 2) 판매와 연결되어 상품의 공급자에 의하여 쓰여진 것일 것
- 3) 당해 상품이 그 서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양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환불, 수리, 교환 또는 여타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일 것
- 4) ‘2), 3)’ 의 요건을 갖춘 이러한 ‘1)’ 의 서약이 그 상품의 재 판매를 제외한 목적으로 구매한 자와 공급자 간 거래의 기초가 되었을 것

#### 라. 서면 품질보증의 유형별 요건상 異同

보증적 품질보증은 상품의 재료나 상품을 만든 제조 등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는 내용이 보다 강조가 된 서면품질보증의 한 유형이고, 보장적 품질보증은 만약 그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 조치를 해서 그 품질을 맞춰주겠다는 내용이 보다 강조가 된 서면품질보증의 또 다른 유형이다.

보증적 품질보증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는 기간요건이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고, 양 유형 모두 그와 같은 확인, 약속, 서약이 상품 구매거래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면 품질보증의 요건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5. 서면품질보증요건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

## 가. 문제의 제기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표시, 의류에 대한 취급 표시 등과 같은 기재, 혹은 상품의 하자나 성능미달 등과 무관하게 무조건적 상품수령철회권을 유보한 거래의 경우 거래조건이 쓰여 있는 경우라면 이는 역시 서면품질보증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든 상품정보의 표시를 곧바로 서면품질보증으로 해석한다면 기만적이지 않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서면품질보증으로 인한 책임을 우려하여 공개를 꺼리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형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유지적 보수정비{이하 “메인テナンス(Maintenance)” 라 한다} 약정을 함께 체결한다든지 또는 연장된 품질보증(Extended Warranty)를 구매하는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거래가 보편화된 요즘, 보장적 품질보증의 경우와 서비스계약을 어떻게 구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 나. “일정한 기간”의 요건- 전제품에너지효율등급표시, 의류취급 표시<sup>123)</sup>

연방 레몬법은 상품에 서면 품질보증을 제공한 공급자에게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서면 품질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과 같은 일정한 표현, 의류에 대한 취급 표시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통일상법전의 명시적 품질보증<sup>124)</sup>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공개 자체만으로는 곧 연방 레몬법에서의 서면품질보증으로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연방 레몬법 § 2301. (6)(A)상, 이러한 표시가 서면의 품질보증에 되기 위하여는 사실의 확인 또는 일정 등급의 성능에 대한 기

123) 이하의 논의는 § 700.3. Written warranty.(a), 16 C.F.R. Part 700(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참조

124) U.C.C. § 2-313.

재된 약속이 반드시 ‘일정한 기간’ 과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과 관계없는 상품정보의 공개는 연방 레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의 품질보증에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 다. “재판매가 아닌 거래의 기초를 구성할 것” 요건 - 합성물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품질보증<sup>125)</sup>

연방 레몬법은 상품에 적용되는 서면의 품질보증에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된다. 그렇지만 많은 상품들은 소비자를 위한 것으로 의도되지 않고 소비자가 원용할 수도 없는 품질보증들로 커버되어 있다. 흔한 예로 부품공급자가 소비자 상품의 제작자에게 제공하는 품질보증을 들 수 있다 (물론, 제작자가 소비자에게 그런 부품들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제공할 수는 있다). 그 부품공급자의 품질보증은 일반적으로 상품제작자에 대하여서만 오로지 제공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 의도되지도 않았고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주목 반경 내로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러한 부품의 품질보증들은 연방 레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연방 레몬법은 그 품질보증에 반드시 공급자와 구매자간 재판매가 아닌 거래의 협상의 기초를 구성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라. “거래의 기초 ” 요건 - 서비스계약 <sup>126)</sup>

서면 품질보증과 서비스계약은 연방 레몬법 § 2301. (6) 및 (8)<sup>127)</sup>에서 각기 정의되고 있다. 서면의 품질보증은 반드시 공급자와 소비자간 거래

---

125) § 700.3. Written warranty.(c), 16 C.F.R. Part 700(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126) 이하 내용은 § 700.11. Written warranty, service contract, and insurance distinguished for purposes of compliance under the Act. (b), 16 C.F.R. Part 700(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127) MMWA § 2301.(8)

의 기초(becomes part of the basis of the bargain)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그 품질보증서가 소비자상품의 판매시점에 전달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그 합의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그 소비자 상품의 구입가격 이상으로 지출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28)</sup> 서면의 품질보증에 관한 정의규정인 동법 제2301조 (6) (A) 또는 (B)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거래기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그 합의는 서비스계약이 된다.<sup>129)</sup> 합의가 상품의 공급자를 서면 품질보증상의 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것은 연방레몬법의 요건이 아니다. 다만 단지 그것이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의 기초의 일부가 되기만 하면 된다. 이는 공급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품질보증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 마. “무료체험기간(Free Trial Period)” “보상판매정책(Trade-in Credit Policy)”<sup>130)</sup>

상품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하자나 일정수준의 성능에 미달하는 등과는 관계없이 배송 후 일정기간동안 조건 없는 상품수령을 철회할 권리를 부여한 경우는 이는 통상 연방 레몬법 § 2301(6)에 의한 서면 품질보증으로 볼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은 동법에 의한 효력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신용이나 또는 다른 상품의 구매 사유 등의 경우 반품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거래조건 자체는 동법 상의 품질보증서가 아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그러한 거래조건을 품질보증으로 특성화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고 “무료

---

128) 즉, 애초에 품질보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거래의 기초로 하여 그 품질보증부 상품을 그 소비자가 가격에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129) § 700.11. Written warranty, service contract, and insurance distinguished for purposes of compliance under the Act.(c), 16 C.F.R. Part 700(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130) 이하 내용은 § 700.3. Written warranty.(b), 16 C.F.R. Part 700(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체험기간(Free Trial Period)”, “보상판매정책(Trade-in Credit Policy)” 등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거래조건은 품질보증서와는 분리하여 서술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거래조건은 연방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을 규율하는 관련법(가령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이하)의 적용을 받는다.



## 제4절 연방 레몬법상 품질보증의 내용을 지배하는 규칙

### 1. 품질보증 내용에 관한 규칙(Rules governing contents of warranties)<sup>131)</sup>

연방 레몬법 § 2302에서는 품질보증의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연방차원에서 기본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 품질보증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되고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위원회에 일정한 경우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 품질보증의 내용에 관한 규칙 중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으로 “결부조건부<sup>132)</sup> 품질보증”의 금지규칙이 있다. 즉, 연방 레몬법은 품질보증의 내용이 일정한 브랜드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체 등의 사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결부조건부 품질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sup>133)</sup>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래현실의 실제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2월 5일 연방거래위원회의 BMW MINI에 대한 심결에 기초하여 2015년 3월 19일 BMW MINI의 시인으로 2015년 3월 26일 공보에 기재된 BMW MINI의 결부조건

131) § 2302. Rules governing contents of warranties

132)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구속조건부 거래와 구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부조건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133) 우리나라의 유사한 법규정으로는 약관규제법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제3호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들 수 있으나 이는 일반조항에 불과하고 연방레몬법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금지를 못 박고 있지도 않고 또한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동 규정에 관한 심결례에 비추어 보건대 이 규정이 적용되어 연방 레몬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굳이 비교 등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연방 레몬법상의 결부조건부 품질보증 금지와 관련된 사례로는 2015년 2월 5일자 BMW MINI에 대한 FTC 사례를 연구하여 해당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부 품질보증금지 위반 사례<sup>134)</sup>, 이 BMW MINI사안 이후 이를 반영하여 2015년 5월 22일 연방 레몬법(MMWA)상 결부조건부 품질보증금지의 내용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해석(Interpretation)을 수정하여 2015년 6월 5일 그 사실을 보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사례와 유권해석의 보충 등이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 2. 품질보증 내용의 전부 및 명확한 공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sup>135)</sup>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적합성을 증진시키고, 기만을 방지하며, 소비자 상품의 마케팅에 있어서의 경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면 품질보증으로서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보증을 하는 품질보증인은 위원회가 정하는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 품질보증의 내용 전부를 간단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서 명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규칙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면 품질보증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할 수 있다.

- (1) 품질보증인의 이름과 주소에 대한 명확한 식별
- (2) 품질보증이 미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대한 식별요건
- (3) 품질보증 대상 상품 및 부품
- (4) 결함, 오작동 또는 서면 품질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실패가 발생한 경우 누구의 비용으로 품질보증인은 무엇을 얼마의 기간 동안에 할 것인지에 대한 진술

---

134) 16011~2면, Federal Register / Vol. 80, No. 58 / Thursday, March 26, 2015 / Notices

135) 이하는 § 2302. Rules governing contents of warranties 조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서술하였다.

(5) 소비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및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지출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술

(6) 품질보증 내용에 대한 예외나 적용배제사유

(7) 품질보증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신원을 포함하여, 품질보증 하의 의무 이행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취하여야 하는 단계적 절차

(8) 법원에 법률구제절차를 밟기 이전에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우선 이용할 것이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품질보증의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보증인이 제공하는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와 발표회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

(9)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에 대한 간단명료하고 일반적인 내용

(10) 품질보증인이 품질보증 하의 의무를 수행할 시기

(11) 결함(하자), 오작동 또는 품질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실패에 대한 통지 이후 워턴터가 품질보증하의 의무를 이행할 시기

(12) 품질보증으로 커버되지 않는 상품이나 부품의 특성 또는 속성

(13) 품질보증의 본질이나 범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을 정도의 품질보증 요소에 대한 설명

### 3. 소비자에 대한 품질보증 내용의 편의성; 정보 제공이나 게시의 방법, 양식, 존속기간, 서면 품질보증이나 서비스계약 기간의 연장<sup>136)</sup>

(1)(A) 위원회는 소비자상품에 대한 서면품질보증의 내용은 매매에 앞서 소비자(또는 잠재적 소비자)가 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sup>136)</sup> 이하는 § 2302. Rules governing contents of warranties 조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서술하였다.

한다는 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B) 위원회는 광고, 상표, 판매시의 포장 또는 다른 여하한 형태의 기재 등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상품의 정보에 대하여 합리적인 평균적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하여 소비자상품의 서면품질보증에 관한 어떠한 정보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제공 또는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과 양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이 연방 레몬법의 어느 조항(바로 다음의 (3) 문단 제외)에 의하여도 위원회에게 제공된 서면품질보증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거나 소비자 상품이나 그러한 상품의 구성부품이 품질보증으로 보장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3) 상품이 서면품질보증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품질보증인이 품질보증(또는 서비스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러한 품질보증(또는 서비스계약)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상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합리적인 기간을 넘는 기간(10일보다 적지 않을 것)에 상응하여 위원회는 유효한 서면의 품질보증나 서비스계약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4. 서면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상 결부조건부과 금지 및 FTC 면제<sup>137)</sup>

##### 가.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품질보증서에는 “순정품사용의무약관” 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통이고, 이는 면책약관(Disclaimer)과 연결되어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통상 “보증수리” 라고 칭하여지는 품질보증서 상

---

137) § 2302. Rules governing contents of warranties

의 A/S를 보증기간 내에 무상으로 받기 위하여는 순정품사용의무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처럼 거래 현실의 대부분이 운용되고 있다. 현대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각종 품질보증서상의 이와 같은 “순정품 사용의무약관”은 상당수의 상품에서 발견되는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소비자들 역시 이와 관련한 A/S에 있어 끊이지 않는 분쟁에 노출되어 있다.<sup>138)</sup> 과연 자동차를 구매한 이후에 품질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품질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하여는 유지보수나 수리 등 자동차정비가 필요할 때 반드시 자동차제작자나 공식판매자의 공식 서비스 센터만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한 순정품이 아닌 부품, 또는 재제조품이나 재생품 등을 사용하여 정비한 경우 자동차 매수인의 품질보증서상의 품질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더 이상 유효하게 주장할 수 없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결부조건 여부를 논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품질보증에 관하여 조차도 별다른 규율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 연방 레몬법 제정당시부터 결부조건부 품질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바, 이 내용은 연방 레몬법의 매우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는 법규의 내용과 그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공식유권해석 내용을 검토하고, 연방레몬법의 적용사례로서 연방거래위원회의 2015년 상반기 BMW MINI 사례를 제6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 나. 법규의 내용

138) 자동차와 같이 고가의 물건인 경우 이는 특히 더욱 민감한 문제이다. 이는 오일필터와 같이 비교적 저가 항목에 대한 비순정품사용때문에 보증수리 기간 중 발생한 엔진 등 주요 기관의 문제에 대하여서까지도 비순정품인 오일필터의 문제로 엔진이상이 생겼으므로 결국 보증수리해줄 수 없고 이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확대손해라는 취지로 보증수리거부를 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품질보증서에 순정품 사용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별다른 판단 없이 이러한 약관의 유효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면 아무리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같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제작사의 브랜드가 붙어 있는 순정품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보증수리를 거부당하게 될 위험이 증가하고 우리 나라의 관련 거래 실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연방 레몬법은 § 2302.(c)에 결부조건부 품질보증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결부조건부 품질보증은 금지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원회에 면제를 신청하여 위원회는 법상의 요건에 따라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즉, 상품의 품질보증인은 소비자의 그 상품의 사용에 대하여 브랜드, 업계 또는 회사명 등으로 특정되는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품질보증 조항 아래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외한)와 결부하여 조건부로 서면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1) 품질보증인이 당해 품질보증에 제공된 상품은 오로지 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회를 충분히 설득하는데 성공한 경우, 그리고 (2) 위원회가 그러한 면제는 공공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면제를 부여할 수 있고 상품의 품질보증인이 이러한 위원회의 면제를 획득하면 예외적으로 그러한 결부조건부 품질보증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위원회는 공보에서 위 면제의 적용대상을 모두 밝혀서 알려야 하고 이에 대한 일반의 코멘트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유와 함께 그러한 적용의 성질에 관하여 공보에 발행하여야 한다.

#### 다. 연방위원회의 해석(Interpretation, C.F.R. Part 700)

연방 레몬법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공식적 유권해석(Interpretation)을 실고 있는 연방규칙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sup>139)</sup> C.F.R. § 700.10.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139) § 700.10. Written warranty, service contract, and insurance distinguished for purposes of compliance under the Act. (a), 16 C.F.R. Part 700(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연방 레몬법 § 2302.(c)는 그 품목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요금 부과없이 제공되지 않는 이상, 서면 품질보증의 적용 여부를 브랜드, 업계나 회사명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조건으로 결부시키는 결부 약정(tying arrangement)을 금지한다.<sup>140)</sup> 결함이 있는 부품의 교체만을 제공하고 공임에 대하여는 커버하고 있지 않은 한정적 품질보증하에서는, MMWA 2302(c)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 교체할 부품을 설치함에 있어서 오직 품질보증인에 의하여 지정된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품질보증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행자는 그와 같은 부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할 사람이나 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의 품질보증하에서는 부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sup>141)</sup>

품질보증인은 품질보증대상이 아닌 서비스와 유지보수에 대하여 오직 승인된 지정정비서비스 그리고/또는 승인된 교체용 부품만을 사용하여야만 품질보증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결부조건지을 수 없다(품질보증에 기하여 별도의 비용 부과 없이 서비스되는 부품이나 서비스 또는 품질보증인이 이 법에 의하여 면책을 획득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sup>142)</sup> 예를 들어, “공식지정딜러인 ‘ABC’ 이외의 자에 의하여 정비되는 경우 이 품질보증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체되는 부품은 반드시 순정품 ‘ABC’ 부품이어야만 합니다.” 라든지 이와 유사한 규정들은 품질보증에 의하여 커버되지 않는 그 서비스와 부품에 대하여는 금지된

140) C.F.R. § 700.10. § 102(c).(a) § 102(c)

141) C.F.R. § 700.10. § 102(c).(b)

142) 이 연방 레몬법의 결부조건부 금지약정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공식해석인 C.F.R. Part 700은 올해 개정되었음이 2015. 5. 22. 발표되었다. 이 괄호 부분(other than an article or service provided without charge under the warranty or unless the warrantor has obtained a waiver pursuant to section 102(c) of the Act, 15 U.S.C. 2302(c))이 바로 개정된 주요부분이다. 아직 공보(F.R)에 반영되기 전이지만 이 개정은 BMW MINI 사례의 후속조치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 개정된 내용도 함께 언급하였다.

다. 이러한 규정들은 MMWA를 2가지 면에서 위반하고 있다. 우선, 결부 조건부 약정을 금지하고 있는 MMWA 2302(c) 위반이다. 그리고 MMWA 2310의 기만적인 규정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품질보증인은, 법적으로, 소비자의 “승인되지 않은” 품목이나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이 없는 결합에 대한 서면품질보증하의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품질보증인이 그러한 “승인되지 않은” 품목이나 서비스에 의하여 야기된 결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또한 품질보증인이 그와 같은 결합이나 손해가 그렇게 야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도 금하지 않는다.<sup>143)</sup>

## 5.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품질보증 조항의 원용을 통한 통합<sup>144)</sup>

위원회는 규칙으로서, 품질보증인이 그들의 품질보증 안에서 원용함으로써 통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품질보증 조항을 고안할 수 있다.

## 6. 적용요건으로서의 소비자상품의 \$5이상 비용<sup>145)</sup>

이 § 2302.의 내용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5달러 이상인 소비자 상품에 적용되는 품질보증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C.F.R. PART 701—상품의 서면 품질보증 내용 공개 (DISCLOSURE OF WRITTEN CONSUMER PRODUCT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의 § 701.2에서는 C.F.R.에서 구체화되는 규율들의 내용은

---

143) C.F.R. § 700.10. § 102(c).(c)

144) § 2302.(d)

145) § 2302.(e)



실제 가격이 \$15이상인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인에 대하여 서면품질보증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제5절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과 일부품질보증(Limited Warranty)

### 1. 서

연방 레몬법은 § 2302에서 품질보증의 내용을 규율하는 규칙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 2304에서 품질보증의 연방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 2303에서는 이러한 § 2304의 연방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품질보증을 “전부(Full)” 품질보증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부(Limited)” 품질보증으로 그 유형을 지정하여 상품에 명백하고 현저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레몬법은 전부 품질보증부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구제수단을 인정하였다. 소위 레몬조항이라고 불리우는 조항에 의하여 전부 품질보증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하자나 오작동을 고치기 위하여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있거나 오작동하는 상품이나 부품에 대하여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sup>146)</sup> 연방 레몬법에 의할 때, 통일상법전에 의하여 승낙을 철회하는 경우에 요구되었던 것과는 달리, 매수인은 그 위반이 상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상당히 손상시킨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sup>147)</sup> 이하에서는 우선 품질보증과 관련한 연방최소기준을 검토한 후 유형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 2. 품질보증의 연방최소기준(Federal minimum standards for

---

146) Barkley Clark and Christopher Smith, 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 20:35

147) Barkley Clark and Christopher Smith, 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 20:35

warranties)

## 가.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의 요건

품질보증인이 품질보증 연방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서면 품질보증으로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는, 연방 레몬법 § 2304.(a)<sup>148)</sup>에서 규정된 품질보증의 연방최소기준인 ① 서면 품질보증하의 구제수단, ② 묵시적 품질보증의 존속기간, ③ 서면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의 위반에 따른 후속 손해의 배제 또는 제한, ④ 환불 또는 교환의 선택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 ④에 해당하는 § 2304. (a)(4)이 소위 “레몬 조항”으로 칭하여 지는 규정이다.

### (1) 서면 품질보증상의 무료 구제수단

품질보증인은 소비자 상품의 결함, 오작동 또는 서면품질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실패 등의 경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비용의 부과 없이<sup>149)</sup> 최소한이라도 반드시 구제를 하여야 한다.

### (2) 묵시적 품질보증의 존속기간

§ 2308(b)<sup>150)</sup>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인은 상품에 대한 묵시적 품질보

---

148) § 2304. Federal minimum standards for warranties

149)※ 참고 C.F.R. § 700.9. Duty to install under a full warranty.

Under section 104(a)(1) of the Act, the remedy under a full warranty must be provided to the consumer without charge. If the warranted product has utility only when installed, a full warranty must provide such installation without charg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consumer originally paid for installation by the warrantor or his agent. However, this does not preclude the warrantor from imposing on the consumer a duty to remove, return, or reinstall where such duty can be demonstrated by the warrantor to meet the standard of reasonableness under section 104(b)(1).

증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서면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의 위반에 따른 후속 손해의 배제 또는 제한**

품질보증인은 후속손해가 배제 또는 제한됨을 눈에 잘 띄도록 품질보증의 표지에 표시하지 않는 한, 소비자 상품에 제공된 서면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의 위반으로 인한 후속손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레몬 조항 - 환불 또는 교환의 선택**

상품의 결함이나 오작동이 존재하여서 이를 구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 시도가 품질보증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상품(또는 상품의 구성부품)에 결함 또는 오작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품질보증인은 그와 같은 상품이나 부품(경우에 따라)에 대하여 반드시 소비자의 환불이나 추가비용 없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sup>151)</sup> 위원회는 각기 다른 상황 하에서 결함이나 오작동의 유형에 따라 무엇이 합리적인 횃수의 구제 시도인지에 관하여 이 문단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만약 품질보증인이 소비자 상품의 구성 부품을 교체한 경우 그와 같은 교체에는 추가 비용청구 없이 그 부품을 설치해주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레몬 조항” 또는 “Federal 레몬 조항”으로 불리우며 51개의 주 레몬법에서도 일제히 수용하고 있는 내용인 바, ‘나’에서 좀 더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

150) § 2308 (b)

151) 레몬 조항

## (5) § 2302, § 2304에 기초한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 요건

요건대, 연방 레몬법에서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sup>152)</sup>

- ① 서면으로 된 품질보증서 있을 것
  - 그리고, 품질보증기간 동안 상품을 소유한 그 누구에게도 품질보증서 유효하게 적용될 것
- ②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구제(Remedy)가 규정되어 있을 것
  - 결함이 있는 상품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될 것(필요시 제거 및 재설치 포함)
  - 상품이 소비자의 불만접수가 있고 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될 것
  - 품질보증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매우 무거운 상품을 가게로 반환해야 한다든지 하는 비합리적인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을 것
- ③ 묵시적 품질보증의 제한이 없을 것
  - 묵시적 품질보증은 면제되거나 품질보증의 존속기간내로 한정될 수 없음
- ④ 원칙적으로 후속손해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품질보증서 표지상 명백한 표시로 제한가능)
- ⑤ 레몬 조항이 있을 것
  -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

---

152) 이하의 정리는 조문의 내용해석을 기본으로 하여 FTC의 Businessperson's Guide to Federal Warranty law, <https://www.ftc.gov/tips-advice/business-center/guidance/businesspersons-guide-federal-warranty-law>, Alan S. Gutterman, Business Transactions Solutions, Part V. Business Transactions, G. Consumer Transactions, Chapter 140. Consumer Warranties, § 140:4. Full warranties중 FTC 문헌 “Warranties: Making Business Sense Out of Warranty Law, a Federal Trade Commission Manual for Businesses.” 을 인용한 부분을 참조하여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소비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

⑥ 등록은 품질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아닐 것(그러나 카드의 반환이 자발적일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품질보증인이 등록카드를 제공하고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제안할 수 있음)

이라는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나. 연방 레몬 조항 (Federal Lemon Provision)

### (1) 연방 레몬법의 제정 의도

1973년 연방 레몬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미국 상원 리포트에 기록된 입법과정에 따르면, 이 조항은 “소비자가 알고 보니 레몬인 상품을 받았거나 공급자의 수리 시스템이 전혀 효과가 없어서 그 상품이 반복적으로 수리를 받기 위하여 입고되는 상황임에도 그 결함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고 한다.<sup>153)</sup>

### (2) 연방 레몬법의 레몬 조항 § 2304. (a) (4)

연방 레몬법은 상품(또는 그 부품)이 품질보증인에 의하여 그 상품의 하자 또는 오작동을 구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횃수의 시도가 이루어진 후에도 하자 또는 오작동을 지속하는 경우, 품질보증인은 반드시 소비자로 하여금 그 상품 또는 부품의 환불 또는 추가비용없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레몬 조항을 입법하였다. 즉, 레몬법의 핵심은 “Repair or Replace/Refund” 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연방 레몬법의 레몬 조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

153) S. Rep. No. 151, 93d Cong., 1st Sess. 19 (1973).

§ 2304. Federal minimum standards for warranties (a)

(4) if the product (or a component part thereof) contains a defect or malfunction after a reasonable number of attempts by the warrantor to remedy defects or malfunctions in such product, such warrantor must permit the consumer to elect either a refund for, or replacement without charge of, such product or part (as the case may be).

### (3) 연방 레몬 조항의 핵심내용

#### 1) “레몬” 일 것<sup>154)</sup>

상품이 레몬이어야 한다. 즉 상품의 하자 또는 부적합성·불량·고장이 여러 번의 수리시도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고 지속되는 ‘레몬성’이 인정되어야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상품이 레몬으로 인정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연방 레몬법은 정량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고, 이에 각 주는 “3회 혹은 4회의 공식 수리센터에서의 수리시도” + “1회의 제작자에 의한 최후 수리” 또는 “30일 간의 운행정지” 등을 통한 레몬 “추정” 규정을 주 레몬법에 입법함으로써 구체적인 레몬인정요건을 정량화하고 있다.

#### 2)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시도”와 “환불 또는 교환”

레몬 조항의 핵심을 이루는 어절은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시도”와

---

154) 레몬이 무엇인지, 즉 어느 경우에 레몬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소위 “레몬” 요건에 대하여는 플로리다주 레몬법의 검토 이후에 별도로 보다 상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환불 또는 교환”이다. 즉, 상품이 품질보증된 내용과는 달리 하자나 오작동이 있는 경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몇 차례의 수리 시도를 해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레몬권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 레몬성요건이 충족되고 소비자는 곧바로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시도

레몬 조항의 핵심은 소비자의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을 권리이지만 반드시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즉, 품질보증인으로서 환불 또는 교환해주기에 앞서 우선은 이를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수리 시도가 이루어졌을 때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연방 레몬법은 법 자체에서는 규율함이 없이 연방거래위원회로 권한유보하고 있지만 각 주의 레몬법은 4회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sup>155)</sup> 미국의 판례 중에는 피고인 품질보증인이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구입가격의 환불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sup>156)</sup> 그런데 이와 같이 환불이나 교환을 받기에 앞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이 수리시도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시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연방 레몬법에는 확정적인 기준이 없어서 실제 소비자의 분쟁사건에서 또 다

---

155) 후술하는 플로리다 주 레몬법의 해당 부분 참조

156)Pratt v. Winnebago Indus., Inc., 463 F. Supp. 709, 714 (W.D. Pa. 1979) “In short, we find that the Plaintiffs are not entitled to rescission under 15 U.S.C.A. s 2304(a)(4) because the Defendants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a reasonable number of attempts to repair the vehicle. We also find that the obligation of the Plaintiffs to return their motor home for repairs is a reasonable and necessary incident of owning a motor vehicle which the Plaintiffs in this case voluntarily accepted and does not constitute an impermissible duty under 15 U.S.C.A. s 2304(b)(1).”



른 다툼이 빈번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각 주의 레몬법에서는 연방 레몬법에서 탄생한 레몬 조항을 두면서도 특히 어느 경우에 “합리적인 횡수의 수리 시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추정’ 규정을 두는 수가 많게 된다.<sup>157)</sup>

#### 4) 환불 또는 교환

① 권리의 주체 : 연방 레몬법에 의한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소비자이다. 주 레몬 조항<sup>158)</sup>의 경우, 환불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비슷한 가치의 차량이나 시승차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등 교환의 방법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연방 레몬 조항의 경우에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을 권리를 “레몬법상의 권리(Lemon Law Rights, 레몬권)”<sup>159)</sup>로 부르기도 한다.

② 의무의 부담자와 계약관계 요부 : 환불 또는 교환의 의무자는 품질보증인이다. 연방 레몬법은 최소한 동 법에 의하여 정의된 서면의 품질보증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서는 계약관계(Privity) 요건 역시 제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sup>160)</sup> 제작자가 마련하여 둔 하자관련분쟁에 대한 절차가 있는 경우라면 구매자가 그 대안적 분쟁 해결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서면의 품질보증을 제공한 제작자를 포함한 품질보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의 제기도 인정하였다.<sup>161)</sup>

157) 후술하는 플로리다 주 레몬법의 해당 부분 참조

158) 후술하는 플로리다 주 레몬법의 해당 부분 참조

159) 플로리다 주 레몬법에서는 이를 전제로 정의규정에서부터 “Lemon Law Rights Period”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160) Harold Greenberg, 22 Ind. L. Rev. 57, B. THE INDIANA MOTOR VEHICLE PROTECTION ACT OF 1988: THE REAL THING FOR SWEETENING THE LEMON OR MERELY A WEAK ARTIFICIAL SWEETENER?, Indiana Law Review, 1989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in Indiana Law

161) 각주 160) 전기논문

그리고 환불 또는 교환을 누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방 레몬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각 주의 레몬법이 모두 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4) 연방 레몬 조항의 위치와 일부 품질보증(Limited Warranty)에의 적용여부

연방 레몬 조항은 품질보증의 연방최소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이 최소기준을 모두 구비한 서면의 품질보증은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으로 유형이 지정되게 된다. 그렇다면, “일부품질보증(Limited Warranty)” 만이 제공된 상품의 소비자도 레몬조항에 기한 레몬권(Lemon Law Rights)를 향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연방 레몬 조항은 일부품질보증(Limited Warranty)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다.<sup>162)</sup> 그렇지만 연방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합의된 구제수단이 그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주법하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주에서 주법으로서의 레몬법을 자동차에 대하여 입법하였는데 이 주 레몬법들은 연방 레몬법과 같이 반드시 서면의 품질보증이면서 전부품질보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품질보증이 제공된 경우의 대부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같은 하자에 대하여 4회의 수리시도 또는 총 30일간의 수리센터 입고로 인한 사용불가라는 정형화·계량화된 요건 하에 자동차제작사에게 교환 등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연방 레몬법자체의 해석으로는 중요한 사항이더라도 사실상 실제 소송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아니다.

#### 다. 기준의 면제<sup>163)</sup>와 입증책임

162) 가령, Barkley Clark and Christopher Smith, 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 20:35

163) § 2304. Federal minimum standards for warranties (c)

연방 레몬법 § 2304 (c)에서는 품질보증인이 당해 결함, 오작동 또는 서면 품질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소비자 상품의 실패 등이 소비자의 소유 기간 중 손상(결함이나 부적합성, 고장, 불량,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 아닐 것) 또는 불합리한 사용(합리적이고 필요한 유지보수를 하는데 실패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그 품질보증인에게는 동법 § 2304 (a)하의 의무이행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품질보증인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에 결함이나 불량이 있고 그로 인하여 구입한 상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든지 또는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 없이 레몬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면 품질보증인이 항변사유로서 상품의 결함이나 부적합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야기된 상품성능의 실패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다.<sup>164)</sup>

## 라. 품질보증인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조건<sup>165)</sup>

(1) 서면 품질보증에 대하여 연방 레몬법 § 2304 (a)하의 의무를 만족시키는 경우, 품질보증인은 규칙제정절차나 행정 혹은 사법적 강제절차(사적 집행을 포함한다) 또는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에서 그와 같은 의무가 합리적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지 않은 한, 소비자에게 오작동하

---

164) 이와 같은 취지는 EU Lemon Law로 칭하여지기도 하는 Directive 1999/44/EC의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이 적용된 2015. 6. 4.자 EU법원 판결의 Burden of Proof에 관한 판시를 보더라도 동일한 입증책임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의 기본 입장은 미국이나 EU나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C-497/13, Froukje Faber v. Autobedrijf Hazet Ochten BV. 사건 참조).

165) § 2304. Federal minimum standards for warranties (b)

거나 결함이 있거나 서면품질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소비자 상품의 구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통지의무 이외에는 어떤 의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sup>166)</sup>

(2) (1)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칙이나 명령이 그와 같은 요건을 그러한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달리 명하고 있지 않는 한, 품질보증인은 § 2304 (a)하의 소비자상품의 교환 또는 환불의 조건으로 그 소비자 상품은 선취특권이나 피담보채무 등에서 자유롭고 깨끗한 상태일 것임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 2304 (a)에 정해진 의무와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 가 제공된 다른 카테고리의 소비자상품의 품질보증인에 대한 그러한 의무의 적용가능성을 규칙에 의하여 상세하게 정의할 수 있다.

(4) § 2304 (a) 아래의 의무는 품질보증인으로부터 그 소비자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모든 사람에게 연장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의 존속기간이 오직 첫 번째 구입자의 소유기간 동안으로 정의되어 있는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 양수인과 그 존속기간의 제한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sup>167)</sup> § 2304(b)(4)의 규정을 § 2301(3) 소비자를 정의한 규정과 함께 살펴보면, 재판매의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닌 한 어떤 상품의 매수인이든, 또는 그 내재적 또는 서면의 품질보증의 존속기간 중에 소유권을 양수받은 어떠한 자도 모두 소비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의 경우 그 존속기간동안의 양수인에 대하여 품질보증상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의 존속기간이 오직 첫 번째 구입자의 소유기간 동안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의자체에 의하여

166)※ 참고 C.F.R. § 700.7. Use of warranty registration cards.

167) 이하는 C.F.R. § 700.6. Designation of warranties.(b) 부분을 기초로 서술하였다.

양도의 시점에 품질보증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관계로 2304(b)(4)의 위반이 있을 수 없게 된다. “품질보증의 존속기간 중”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의 어떠한 권리도 단절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은 상품의 첫 번째 구입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배타적으로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을 부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배터리나 소음기의 품질 보증이 “원매수인에 한하여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 for as long as you own your car.)”인 경우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품질보증의 유형은 소비자로 하여금 구입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믿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품질보증하에서는 그가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한 서면 증거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이 항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품질보증에서 그 특정한 청구인이 첫 번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 또는 그 상품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품질보증인에게 있다. 그러나 품질보증인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행자들은 소비자에게 그들이 그 상품의 첫 번째 구입자인지를 진술하거나 확인할 것을 물을 수 있다.

#### 마. 비용의 부과 없는 구제<sup>168)</sup>

§ 2304 및 § 2302(c)의 목적을 고려할 때 “비용의 부과 없이”란 품질보증인은 품질보증인이나 그의 대표자가 품질보증부 소비자상품에 필요한 구제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어떤 비용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의 부과 없는 구제 의무는 반드시 품질보증인이 소비자의 부수적 지출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제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행하여지지 않았거나 품질보증인이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무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어떤 부수적 비용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그와 같은 품질보증인에 의한 행위

<sup>168)</sup> § 2304. Federal minimum standards for warranties (d)

에 기하여 발생한 부수적 비용의 지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회복할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바.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로 유형지정된 상품에 대한 기준구비간주<sup>169)</sup>**

공급자가 상품에 대하여 “전부품질보증<sup>170)</sup>” 으로 지정하였다면 이 법이나 주 법에 기한 소송에서 그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연방 레몬법 § 2304 및 그에 기한 하부규칙에서 규정한 품질보증의 최소기준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한다.

---

169) § 2304. Federal minimum standards for warranties (e)

170) “full (statement of duration)” warranty

## 제6절 서면품질보증의 유형 지정(Designation of written warranties)<sup>171)</sup>

### 1. 유형 지정 및 표시의 의무

연방 레몬법 § 2303. (a)에서는 \$10 달러보다 비싼 상품에 부여되는 서면 품질보증은 반드시 명백하고 현저하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 “전부(full)” 또는 “일부(limited)” 라고 품질보증의 유형을 밝혀 두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품질보증이 법규의 최소한의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면 그것은 전부품질보증이 되고 반드시 그렇게 밝혀져 있어야 한다. 그 법규의 그 최소한의 기준요건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라면 그것은 “일부(limited)” 품질보증에 해당하고 이는 역시 반드시 그와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품질보증인은 일부품질보증의 지정시 존속기간문구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서면의 품질보증은 “전부” 또는 “일부” 로 반드시 유형을 지정하여 표제를 달아야 한다는 이 규정은 판매가격이 \$10을 넘는 상품에 적용되지만, “전부” 품질보증에 대한 공개요건은 판매가격 \$15 이상의 상품에 적용된다(연방규정집 제701.2조). 따라서 판매가격이 \$10이상 \$15 미만인 상품은 연방규정집에 따른 공개요건외에 연방 레몬법에 따른 표제요건만 준수하면 족하다.<sup>172)</sup>

그러한 지정은 품질보증의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곳과 별도로 분리하여서 캡션 또는 눈에 잘 띄는 제목으로 명백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규칙에 의하여 특정한 예외가 새로 규정

171) § 2303. Designation of written warranties

172) Michael F. Brockmeyer, I. A. 2. c., FEDERAL AND STATE WARRANTY LAWS, C739 ALI-ABA (271American Law Institute - American Bar Association Continuing Legal Education), January 9, 1992

되지 않는 한 연방 레몬법에 의하여서는 전부 또는 일부품질보증의 지정만이 오로지 인정될 뿐이다.<sup>173)</sup>

## 2. 전부품질보증(존속기간의 표현) 또는 일부품질보증

서면품질보증으로 소비자상품에 품질보증을 하는 품질보증인은, § 2303.(c)에 의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품질보증의 종류를 선명하고 눈에 띄도록 그 유형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만약 서면 품질보증이 § 2304에서 정한 품질보증의 연방최소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라면 그러한 품질보증은 “Full(존속기간의 표현) Warranty” 라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도록 그 유형을 지정하여야 한다 (예. “FULL TEN-YEAR WARRANTY” ).

연방 레몬법이나 연방거래위원회는 품질보증의 최소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품질보증인은 전부품질보증의 효력을 갖는 기간을 설정할 재량이 인정된다.<sup>174)</sup>

(2) 만약 서면 품질보증이 § 2304에서 정한 품질보증의 연방최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품질보증은 “일부품질보증” 으로 눈에 잘 띄도록 그 유형을 지정하여야 한다.

## 3. 기타 유형 지정 관련 논의

---

173) C.F.R. § 700.6. Designation of warranties.(a)

174) 15 U.S.C. § 2302(b)(2). Michael F. Brockmeyer, FEDERAL AND STATE WARRANTY LAWS, C739 ALI-ABA (271American Law Institute - American Bar Association Continuing Legal Education), January 9, 1992



## 가. 요건, 기준 등의 소비자 만족도의 묘사나 표현에 대한 적용가능성

§ 2303과 § 2302 및 § 2304는 소비자 만족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의 표현과 유사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한계의 대상이 아닌 표현이나 묘사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sup>175)</sup>

## 나. 위원회에 의한 면책

§ 2302에 의한 공개에 적용되는 권한의 실현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 2303에 따라서도 언제 서면 품질보증에 “전부” 또는 “일부”로 지정되지 않아도 되는지를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다. \$10 이상이고 전부품질보증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비자 상품에 대한 적용가능성

연방 레몬법상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자가 \$10이상 지출하였고, 전부품질보증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비자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질보증에 한하여 적용된다.

## 4. 전부품질보증과 일부품질보증의 비교

연방거래위원회는 품질보증의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정리하여 둔 바 있는데 이를 참조하여 양 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76)</sup>

---

175) C.F.R. § 700.5. Expressions of general policy.

## 가. 전부품질보증

품질보증의 표제에 붙은 “전부(Full)”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결함이 있는 상품은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되어야 한다(필요시 제거 또는 재설치를 포함한다).

(b) 소비자가 불만을 접수한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상품은 수리되어야 한다.

(c) 소비자는 품질보증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무거운 상품을 가게로 반품하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것을 할 필요가 없다.

(d) 품질보증은 그 품질보증의 기간 동안 상품을 소유한 그 누구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e)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레몬조항).

(f) 등록은 품질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요구될 수 없다. 그러나 품질보증인은 등록카드를 줄 수 있고 전적으로 카드의 반환이 자발적이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반환을 제안할 수 있다.

(g) 내재된 품질보증은 면책되거나 품질보증의 기간으로 제한될 수 없다.

## 나. 일부품질보증

전부품질보증이 제공하는 보호에 비하여 적은 보호만이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경우의 모든 품질보증은 일부품질보증에 해당한다. 일부품질보증은 품질보증인이 비용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

176) FTC의 Businessperson's Guide to Federal Warranty law,

<https://www.ftc.gov/tips-advice/business-center/guidance/businesspersons-guide-federal-warranty-law>, Warranties: Making Business Sense Out of Warranty Law, a Federal Trade Commission Manual for Businesses, Alan S. Gutterman, Legal Compliance Checkups § 13:24 Full and limited warranties under federal law (2014)

의미한다.

예를 들면:

(a) “부품 한정” (“Parts only”), 소비자는 공임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b)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품을 가게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c) 품질보증은 양도불가입니다(The warranty is nontransferable).

(d) 수리에 한정함(Repair only).

(e) 오직 비례적 환불 또는 크레딧만 가능합니다(Only a pro rata refund or credit will be provided).

(f) 처리비용이 부과됩니다(There is a charge for handling).

(g) 등록카드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품질보증은 무효화됩니다(Warranty void if registration card is not returned).

(h) 내재된 품질보증은 면책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존속기간이 아주 단기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비양심적인 것이 아니라면 내재적 품질 보증은 서면 품질보증의 존속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다.

## 5. 전부품질보증과 일부품질보증의 병립 가능성

명백하고 현저하게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는 한, 한 상품위에 전부품질보증과 일부품질보증 양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의 판매는 금지되지 않는다. 177)

---

177) § 2305. Full and limited warranting of a consumer product

## 제7절 묵시적 품질보증

“묵시적 품질보증”은 소비자상품의 공급자에 의하여 그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각 주법하에서 발생하는 묵시적 품질보증을 의미한다.<sup>178)</sup> 연방 레몬법은 서면의 품질보증에 제공된 상품의 묵시적 품질보증에 대하여 존속기간, 후속손해 또는 면책·변경에 관하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sup>179)</sup>

### 1. 면책과 수정에 대한 제한

(1) 공급자가 그러한 소비자 상품에 관하여 서면 품질보증을 작성하였거나, (2) 매매의 시점에, 또는 매매 이후 90일 이내에, 공급자가 그 소비자와 그 소비자 상품에 적용되는 서비스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공급자도 소비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소비자 상품에 대한 묵시적 품질보증을 면책하거나 수정(연방 레몬법 § 2308 (b)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즉 서면 품질보증기간으로 묵시적 품질보증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sup>180)</sup>

### 2. 존속기간의 한정

묵시적 품질보증에 대한 제한이 정당하고 오해의 여지없는 언어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고 품질보증의 표지에 두드러지게 표시되어 있다면,

---

178) 묵시적 품질보증은 U.C.C.하에서의 Warranty논의에서는 명시적 품질보증(Express Warranty)과 함께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MMWA, 즉 연방 레몬법에서는 Written Warranty의 Full Warranty vs. Limited Warranty가 기초를 이루는 개념으로서 Implied Warranty를 상세히 논의하는 것은 본 연구목적에 벗어나므로 연방 레몬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한다.

179) § 2301(7), § 2304(a), § 2308

180) § 2308.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존속기간의 서면 품질보증의 기간으로 묵시적 품질 보증의 존속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sup>181)</sup> 그러나, 연방 레몬법의 적용을 받는 전부품질보증에 제공된 상품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을 위와 같이 제한할 수 없다( § 2304(a)(2)).

### 3. 면책, 수정, 한정조항의 효력

연방 레몬법과 주법의 목적상, § 2308에 반하여 작성된 품질보증의 면책, 수정, 한정조항은 효력이 없다.<sup>182)</sup>

---

181) § 2308. (b)

182) § 2308. (c)

## 제8절 연방 레몬법의 소비자 분쟁 구제절차

연방 레몬법의 전통적 핵심내용<sup>183)</sup>을 딱 5가지만 꼽으라면 “레몬 조항”, “서면품질보증(Written Warranty), 전부/일부품질보증” 그리고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Inform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sup>184)</sup>”와 “레몬소송의 연방 법원 관할 인정” 및 “변호사 비용 구상 인정”이 될 것이다. 연방 레몬법은 품질보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연방 레몬법이 적용되는 서면품질보증 및 그 유형을 정립하고, 그 핵심 구제수단으로 레몬을 구입한 소비자의 레몬권을 규정한 레몬 조항을 두었으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선행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그 이후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연방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면서 승소한 소비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연방 레몬법 § 2310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 분쟁의 구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소개한다.

### 1.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sup>185)</sup>

---

183) “전통적” 핵심내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요즘의 연방 레몬법은 제정시에 중점을 두었던 이러한 내용보다 오히려 “결부조건부 금지원칙” 등 품질보증에 관하여 정립한 원칙들이 보다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동법의 핵심기능축이 움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미국법상 자동차품질보증에 관한 논의를 처음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므로 연구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방 레몬법의 제정 배경부터 입법의도 등 기본 구조를 중심으로 기본부터 내용을 정립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전통적 핵심내용을 선별하였다. 연방 레몬법의 핵심기능축 이동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론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84) “비공식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비쟁송적”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절차의 본질이 법원의 소송에 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것과 주에 따라서 주법이 제작자측에서 마련한 절차뿐만이 아니라 주의 기관에서 절차를 주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비공식적이라고 칭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때문이다.

185) § 2310.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의 설립, 최소요건을 정립하는 규칙, 품질보증인에 의한 준수의 효과, 위원회에 의한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또는 이행 심사, 현존하는 비공식적 절차에의 적용에 관하여 연방 레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연방 레몬법은 품질보증인이 비쟁송적 분쟁해결메커니즘을 통하여 소비자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절차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의회의 정책임을 선언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절차의 설립 및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2)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 레몬법이 적용되는 서면 품질보증의 내용으로 편입될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최소 요건을 정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 규칙은 독립적 혹은 정부의 기관에 의한 그 절차에 대한 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3)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품질보증인들은 다음의 경우라면 상기 연방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규칙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쟁송적 분쟁 해결 절차를 설립할 수 있다.

- (A) 품질보증인이 그러한 절차를 설립하는 경우이면서,
- (B) 그 절차, 그 이행이 위원회의 규칙상 요건에 부합하고,
- (C) 소비자는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시키기에 앞서서 그러한 절차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는 요건을 서면 품질보증에 포함하는 경우

이와 같이 설립된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i) 소비자는 이와 같은 분쟁 해결절차를 먼저 이용한 경우가 아닌 한 민사소송(집단소송이 아닌 경우)을 개시할 수 없다. 그리고 (ii) 원고들이(품질보증 의무와 관련한 집

단소송의 원고목록에 있는 자들임을 피고에게 통지한 상태) 우선 그러한 절차에 먼저 구제를 도모하지 않는 한 소비자집단은 법원이 소송원고의 대표성 확립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이외에는 집단소송을 진행시킬 수 없다. 미국의 지역법원에 제기된 이러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대표성은 연방민사절차법 규칙의 적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품질보증 의무에서 비롯되었거나, 위의 절차와 관련되어 발생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에서 작성된 어떠한 결정이든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4) 연방거래위원회는 서면 품질보증상의 내용인 법률적 구제수단의 추구 이전의 전제조건인 분쟁해결절차가 신의성실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고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하여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가 그러한 절차 또는 이행이 연방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비쟁송적 분쟁절차에 관한 규칙의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 레몬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칙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이미 존재하는 소비자품질보증에 관한 어떠한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의 효력에 연방 레몬법상의 규정내용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된 경우 그 어느 소송에서든 만약 그러한 절차가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절차를 무효화할 수 있다.

## 2. 연방 레몬법에서의 연방법원<sup>186)</sup>

---

186) 이 부분은 § 2310.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 가. 연방법원의 관할권

연방법원(District Court)은 (A) 상품에 대한 기만적인 품질보증을 작성한 품질보증인 또는 (B) 연방 레몬법에 의하여 부과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자 또는 연방 레몬법에 의하여 부과된 금지의무를 어긴 자를 통제하기 위한 위하여 검찰총장 또는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된 변호사에 의하여 제기된 이와 같은 연방 레몬법 위반의 소송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 나. 잠정적 처분과 그 효력의 상실

위원회나 검찰총장의 종국적 승소가능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러한 소송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점을 충분히 실시하고 피고에게 통지한 후, 법원은 보석금 없이 잠정적인 중지 명령 또는 예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잠정적 중지명령이나 예비처분을 내린 이후, 소장이 법원에 의하여 명시된 기간(10일을 초과하지 않음)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그 명령이나 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해소되고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다. 거주지 외의 관할 법원 소환

소는 거주지 또는 사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의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법원이 정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그들이 소송이 계속된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들을 소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절차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열리게 되는 셈이 된다.

## 라. 기만적 품질보증의 의미

“기만적 품질보증”란 용어의 의미는 (A) 서면 품질보증으로서 (i) 거짓 또는 사기이거나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개개인의 타당한 주의를 실행하는 것을 호도하는 확인, 약속, 묘사 또는 표현을 포함하거나 또는 (ii) 품질보증이 합리적인 개개인이 타당한 주의를 기울임을 호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B) 그 품질보증의 내용이 합리적인 개개인을 기만할 목적으로 품질보증의 범위와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의 “품질보증”나 “개런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된 서면 품질보증을 뜻한다.

## 3. 레몬소송과 연방법원의 레몬소송관할<sup>187)</sup>

### 가. 연방법원의 레몬소송관할권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를 거쳤고, 집단소송의 경우라면 집단소송요건을 구비한 경우, 연방 레몬법에 의한 의무 또는 서면품질보증, 묵시적 품질보증 또는 서비스 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공급자, 품질보증인 또는 서비스계약자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그 손해의 구제 및 다른 법규나 형평법에 의한 구제를 받기 위한 소를 (A) 각 주의 관할법원, (B) 1인의 계쟁금액이 \$25이상이고 모든 청구를 합산한 금액 또는 가치가 \$50,000(이자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상인 경우인 경우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있는 연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집단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기명원고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

---

187) § 2310.

다. 이렇게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은 연방 레몬법의 매우 중요한 점 중의 하나이다.

## 나. 변호사비용

이렇게 소비자가 제기한 레몬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하는 경우, 법원이 그와 같은 변호사 비용은 부적합하다고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그 소송을 개시 및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지출(실제 시간에 기초한 변호사 선임 비용 포함)의 합계총액에 대응하는 수액을 회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정을 법원 판단의 일부로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방 레몬법에서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레몬으로 충분히 오랜 기간 겪지 않았어도 될 고통을 겪게 된 소비자들은 지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속담이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을 단념하기 쉬운데 이렇게 단념하지 않고 소송비용의 걱정 없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밟음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통한 구제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시간이나 노력과 비용 등 구제를 받기 위하여 희생하여야 하는 기회비용이 많을수록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에 있어서는 구제수단을 실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상품보다는 고가에 해당하는 차량에 관한 소송에서 이와 같은 변호사 비용을 승소한 소비자에게 인정해 준 것은 특히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제작자측에 배상액에 변호사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함으로써 전치절차인 비재송적 분쟁해결절차에 이르기까지

부당하게 소비자의 클레임을 묵살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다. 레몬소송의 연방법원 제소요건

연방 레몬법은 동법의 품질보증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연방법원에의 제소를 인정함으로써 연방법원의 레몬소송 관할을 인정하면서도 아래의 경우에는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 목적은 (1) 너무 사소하거나 미미한 사건이 집단소송으로서 연방법원에 제소되는 것을 회피하고, (2) MMWA역시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인 관계로 상거래 관련 연방법원의 소송 관할권을 28 U.S.C.A. § 1337에 기한 제쟁금액 요건하에 인정하는 동법상 제쟁금액요건의 흠결을 극복하여 제쟁금액여하에 불구하고 MMWA의 요건에 따라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sup>188)</sup>

- (A) 개인의 분쟁금액의 합 또는 가치가 \$25 미만인 경우
- (B) 소송의 판단대상인 모든 청구에 기초하여 계산한 분쟁금액의 합 또는 가치가 \$50,000(이자 및 비용은 제외) 미만인 경우
- (C) 집단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기명원고의 숫자가 100미만인 경우

이에 대하여, \$50,00이나 집단소송의 원고숫자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sup>189)</sup> 연방 법원은 위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연방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수 개의 사안에서 판결하였다. 이 중 \$50,000요건과 관련하여, 인디애나 주법 하에서 징벌적 손해는 품질보증

---

188) *Novosel v Northway Motor Car Corp.* (1978, ND NY) 460 F Supp 541, 1978-2 CCH Trade Cas ¶162380, 25 UCCRS 137. 54 A.L.R. Fed. 919 (Originally published in 1981), Elaine K. Zipp, J.D. ALR, Jurisdiction of district court to entertain class actions by consumers pursuant to provisions of Magnuson-Moss Federal Warranty Act (15 U.S.C.A. § § 2301 et seq.) § 1. Generally 에서 재인용

189) 가령 Vogel의 전기논문

위반에 기한 청구로 회복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MMWA에 의한 관할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sup>190)</sup>

#### 4. 구제수단의 집행에 대한 적용을 받는 품질보증인<sup>191)</sup>

서면의 사실의 확인, 약속 또는 서약을 실제로 한(actually making) 품질보증인만이 서면의 품질보증을 형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그와 같은 품질보증인에 대하여만 강제될 수 있다. 대부분의 상품은 품질보증서까지 포장되어서 상점으로 수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데 이러한 상품의 유통업자나 판매자는 품질보증책임을 지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연방거래위원회는 품질보증인으로 특정되는 다른 사람 또는 기업이 제공한 서면의 품질보증에 부여된 상품을 단순히 유통 혹은 판매에만 종사한 공급자는 그 서면품질보증에 연방 레몬법이나 그 하위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그와 같은 공급자가 그 품질보증된 상품의 제공 또는 판매와 연관되어 별도의 조치나 서면이나 구두의 표현을 하였다면 그 공급자는 연방 레몬법 아래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주법하에서 그 공급자가 사실의 확인, 약속 또는 서약서를 채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면 그 공급자는 연방 레몬법 아래에서도 역시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공급자는 그들을 공동 품질보증인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품질보증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게 하는 위와 같은 조치나 표현에 관하여는 확실히 판단을 위하여 주법을 확인하여야 한다.<sup>192)</sup>

---

190) Schafer v Chrysler Corp. (1982, ND Ind) 544 F Supp 182.

191) § 2310.

192) C.F.R. § 700.4. Parties “actually making” a written warranty.

## 5. 금지된 조치

연방 레몬법 또는 연방 레몬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칙에 의하여 부과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금지규정을 어기는 자는 상품의 표시에 관한 규칙(Labels on Products)의 위반이 된다.<sup>193)</sup>

---

<sup>193)</sup> § 2310.

## 제9절 위원회 규칙공포절차

### 1. 위원회의 규칙 공포에 적용가능한 절차<sup>194)</sup>

연방 레몬법은 연방거래위원회에게 구체적인 품질보증 관련 내용이나 관련 절차에 관한 규칙의 작성을 유보하였고 이러한 규칙 등을 제정하여 공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 2309에 두고 있다.

### 2. 구두 발표

연방 레몬법 하의 모든 규정은 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의 정부조직에 관한 장의 행정절차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칙제정(Rule Making)조항<sup>195)</sup>을 준수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다만, 연방거래위원회는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제출뿐만이 아니라 자료, 의견, 주장 등 구두 발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모든 구두 발표는 글로 옮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규칙들은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제정에 관한 미국연방법전의 규정에 따라서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 3.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품질보증과 품질보증 실행

연방거래위원회는 1975. 1. 4. 이후 1년 이내에 중고자동차의 매매에

---

194) § 2309.

195) U.S.C.A. § 553.

관한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과 품질보증실무에 관하여 적용될 규칙제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연방 레몬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수단의 보완에 대하여 필요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품질보증과 관련법실무를 다루는 규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에 기하여 규칙을 규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 연방 레몬법 아래에서 또는 다른 법 아래에서 보유하고 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연방거래위원회는 중고자동차가 품질보증 없이 팔렸다는 점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공개의 내용과 양식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중고자동차 매매에 관한 품질보증에 대한 규칙<sup>196)</sup>이 제정되었다.<sup>197)</sup> 연방거래위원회는 중고차 규칙을 1981년에 처음으로 채택하였고 1985년 5월 9일 최종적인 규칙이 효력을 발생하였다.<sup>198)</sup> 처음부터 이 규칙은 “공개(disclose)”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되

---

196) 49 FR 45725, Nov. 19, 1984, C.F.R. PART 455—USED MOTOR VEHICLE TRADE REGULATION RULE 참조

197) 동 규칙의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검토를 생략하기로 한다. 연방 레몬법에 의하여 중고 자동차의 품질보증에 관하여 적용될 규칙을 제정하라는 입법유보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칙이므로 당연히 중고 자동차는 연방 레몬법의 일반적 적용범위에는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그 내용을 전적으로 동 규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인지 연방 레몬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MMWA발효일인 1975년 7월 4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하여는 연방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연방 레몬법 적용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신차도 동일하다.).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은 연방 레몬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는 행정입법을 하지만 항상 그보다 강력한 소비자보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주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법을 우선시하고 있고(C.F.R. § 455.6 State exemptions.) 여차피 중고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묵시적 품질보증까지 포함하여 어떠한 품질보증없이 팔 것인지(“As-is”) 전부나 일부로 팔 것인지 여부를 모두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 기본 태도(C.F.R. § 455.2 )이므로 여태 논의한 연방 레몬법의 내용과 별도로 다시 논의할 실익이 크지 않다. 그리고 중고차를 레몬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각 주 차원에서의 규율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 주마다 다르다. 애초 레몬법의 시작은 “신차”인 레몬에서부터였고 원칙적으로 신차를 적용범위로 한정하였는바(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 7:19도 같은 취지) 레몬법을 처음 소개하는 본 연구에서는 파생된 가지로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중고차에 대한 규율내용 전부를 세세히 검토하거나 중고차 거래 실무에서 사용하도록 정한 서류양식 등을 포함하고 있는 중고차 품질보증관련 규칙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에도 같은 비중으로 집중하는 것은 본 연구가 추구하는 레몬법의 기본내용소개라는 목적을 벗어나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었다.<sup>199)</sup> 매그너슨-모스법이 신차의 품질보증세계로 인도하는 티켓인 것과 같이 이 중고차규칙은 중고차를 품질보증의 세계로 인도하는 기본적인 핵심 진입로이다.<sup>200)</sup> 이 중고차규칙의 위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개인적인 사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인 매수인과 주 검찰총장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중고차규칙위반이 주의 기만적인 거래금지법의 당연위반을 구성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sup>201)</sup>

대다수의 주법원은 통일상법전상의 묵시적 품질보증규정이 중고차의 판매에 적용됨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함이 있고, 부적합하거나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묵시적 품질보증을 위반한 매도인은 통일상법전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의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sup>202)</sup> 법원은 중고트럭을 매수한 이후, 매수인의 유효한 소유권보유에 관하여 조사를 한 법집행기관에 의하여 매수한 중고트럭의 여러 부분에 새겨진 VIN(Vehicle Identity Number)이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동 트럭이 압류된 경우 매도인은 중고트럭에 적용되는 묵시적 품질보증의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203)</sup>

---

198) Barkley Clark and Christopher Smith, 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 18:15

199) 각주 198)의 전기 저서

200) 각주 198)의 전기 저서

201) 각주 198)의 전기 저서

202) Diane L. Schmauder, J.D., 47 A.L.R.5th 677, Liability on implied warranties in sale of used motor vehicle.

203) Colton v Decker (1995, SD) 540 NW2d 172, 47 ALR5th 951, 전기 논문에서 재인용

## 제10절 효력발생일 및 다른 법규와의 적용관계

### 1. 효력발생일

연방 레몬법은 1975. 1. 4.로부터 6개월 후인 1975. 7. 4. 효력을 발생하였다. 다만 위 날짜 이전에 제조된 소비자 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었다.<sup>204)</sup> 따라서 1975.7.4. 후에 제조된 상품에 적용된다.<sup>205)</sup>

다만, 품질보증의 내용에 관한 기본 규칙들은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규칙을 제정하여 최종적으로 공포하고 난 뒤 6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합당한 이유가 인정된 경우 지정된 공급자의 집단이 그들의 서면품질보증을 동 규칙을 준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허가를 위하여 연방거래위원회는 그 적용을 위 최종 발표 이후에 1년 뒤까지 미룰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 레몬법의 초기 실행을 위한 규칙들을 1975. 1. 4. 이후부터 1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 내에 가능한 한 신속히 공포하여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관련 규칙을 1975. 12. 31. 공포하였고, 이에 1976. 12. 31. 후에 제조된 상품에 대한 서면 품질보증에 대하여 1975. 12. 31. 공포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이 적용되게 되었다.<sup>206)</sup>

### 2. 다른 법규와의 적용관계

---

204) § 2312.

205) 16 C.F.R. Part 700 (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 700.2. Date of manufacture.

206) 16 C.F.R. Part 700 (1984), PART 700—INTERPRETA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ACT, § 700.12. Effective date of 16 C.F.R., Parts 701 and 102.

연방 레몬법은 § 2311.<sup>207)</sup> 에서 다른 법규의 적용가능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가. 연방거래위원회법과 연방중자단속법

(1) 연방 레몬법에 포함된 그 무엇도 FTC Act 또는 반부패법상의 그 어떤 법규를 폐지하거나 효력을 없애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연방 레몬법의 어느 것도 연방 중자법을 폐지하거나 효력을 없애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연방 레몬법의 그 어느 것도 식재를 위한 중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 나. 각 주의 품질보증법과의 관계

(1) 각 주의 품질보증법에 서면 품질보증 또는 성능에 대한 라벨링이나 공개에 관계된 요건이 있는 경우와 연방 레몬법 §§ 2302~2304 및 그에 대한 시행규칙의 적용가능한 요건의 범위 안에 있는 규정들 또는 위 요건과 동일하지 않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각 주의 그와 같은 규정들은 연방 레몬법상의 위 §§ 2302~2304 및 그에 대한 시행규칙상의 준수내용을 지키는 서면 품질보증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다만, 연방거래위원회가 § 2309에 따라서 제정된 규칙에 따라, 해당 주의 관련 법규상 요건을 적용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각 주의 기관의 적용행태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이 연방 레몬법의 요건보다 더욱 큰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고 있고 주와 주간의 상업에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주의 해당기관이 그와 같은 요건에 대한 행정 및 집행을 효과적으로 하는 한, 그러한 주의 요건은 그와 같은 결정에

---

207) § 2311.

명시된 한도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 **다.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리, 구제수단,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1) 연방 레몬법의 그 어느 것도 주법 또는 다른 연방법 하에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나 구제수단을 무효화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연방 레몬법의 그 어느 것도(연방 레몬법 § 2308 또는 § 2304(a)(2)와(4) 이외에는)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원인자가 지는 책임에 영향을 주거나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또한 부차적 손해로서의 사람에게 대한 손해 또는 기타 부상에 관한 주법의 조항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 **라. 다른 연방 품질보증법과의 관계**

다른 연방법에 의하여 작성이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규율되는 서면 품질보증에 대하여는 이 연방 레몬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그렇지만 만약 그 서면 품질보증의 일부에만 위 연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나머지 잔부에 대하여는 이 연방 레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마. 주 레몬법, 통일상법전 그리고 연방레몬법 간의 관계**

연방 레몬법은 기존의 통일상법전이나 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들 및 주 레몬법에 기하여 인정되는 권리까지 모두 그대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 레몬법이 제정된 주의 소비자는, 기존 법 아래에서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들이 주의 레몬법 아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따라서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제작자 또

는 딜러에 대하여 주의 레몬법뿐만이 아니라 통일상법전이나 연방 레몬법 아래에서도 시정을 구할 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권리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sup>208)</sup>

---

208) Harold Greenberg, 22 Ind. L. Rev. 57, B. THE INDIANA MOTOR VEHICLE PROTECTION ACT OF 1988: THE REAL THING FOR SWEETENING THE LEMON OR MERELY A WEAK ARTIFICIAL SWEETENER?, Indiana Law Review, 1989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in Indiana Law

## 제11절 연방 레몬법 제정의 의의 및 비판<sup>209)</sup>

### 1. 연방 레몬법 제정의 의의

연방 레몬법은 이렇게 한 세기를 넘는 논의를 거쳐 1975년에 제정되었고 현재에도 품질보증에 관한 현존 유일의 연방법이다. 1975년 이전까지 자동차의 품질보증에 대한 분쟁은 주로 통일상법전 제2조에 포함되어 있는 품질보증조항에 기초하여 전적으로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었다.<sup>210)</sup> 그러나 이제 품질보증에 관한 분쟁은 연방 레몬법에 우선적으로 기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법은 품질보증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자와 제조자가 준수하여야 할 품질보증의 연방최소기준과 기본원칙(결부조건 금지원칙 등)을 확립하였고, 동법 위반시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묵시적 품질보증의 면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동법의 기본적인 목표는 소비자에게 간결명료한 품질보증서 내용의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품질보증에 관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동법의 초안자들은 그렇게 증가된 소비자의 정보를 통하여 제작자들에게 더 나은 품질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연방 레몬법은 최소한 동 법에 의하여 정의된 서면의 품질보증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서는 계약관계 요건 역시 제거하였고,<sup>211)</sup> 제작자가 마련하여

---

209)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Joan Vogel, SQUEEZING CONSUMERS: LEMON LAWS, CONSUMER WARRANTIES, AND A PROPOSAL FOR REFORM, 5면, 1985 Arizona State Law Journal 589 및 Comment, Consumer Warranty Law in California Under the Commercial and the Song-Beverly and Magnuson-Moss Warranty Acts, 26 UCLA L. REV. 583, 594-597 (1979)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10) Lawrence Alan Tower, Automobile Warranty Litigation § 2, 39 Am.Jur.Trials 1

211) Harold Greenberg, 22 Ind. L. Rev. 57, B. THE INDIANA MOTOR VEHICLE PROTECTION ACT OF 1988: THE REAL THING FOR SWEETENING THE LEMON OR MERELY A WEAK ARTIFICIAL SWEETENER?, Indiana Law Review, 1989 Survey of

둔 하자관련분쟁에 대한 절차가 있는 경우라면 구매자가 그 대안적 분쟁 해결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서면의 품질보증을 제공한 제작자를 포함한 품질보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의 제기를 인정하였다.<sup>212)</sup> 그뿐만 아니라 동법은 구매자가 매그너슨-모스 품질보증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든 아니면 주법하에서의 묵시적 품질보증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든 이를 불문하고 승소한 구매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여 주는 것을 승인하였다.<sup>213)</sup>

의회가 1975년 매그너슨-모스법을 제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제작자들이 구제할 생각이 없거나 구제할 수 없는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의 손실에 대하여 제작자들로부터 시정을 추구하는 자동차 구입자들이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과 비용 때문이었다.<sup>214)</sup> 동 법은 ‘전부품질보증’ 라고 칭하여지는 최소한의 연방 품질보증기준과 이를 구비하지 못하는 ‘일부품질보증’ 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전부품질보증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횃수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고치지 못한 품질보증인은, 제작자이든 딜러이든 불문하고, 반드시 상품을 교환하여 주거나 구입가격을 환불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동법의 ‘레몬’ 조항이다.<sup>215)</sup> 일부품질보증을 제공한 품질보증인은 이 레몬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sup>216)</sup> 다만 이러한 경우의 구매자는 통일상법전상의 구제들을 포함한 주법하의 적절한 구제수단을 추구할 수 있다. 동법은 전부 또는 일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품질보증을 한 품질보증인은 상거래적합성의 묵시적 품질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묵시적 품질보증도 면책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품질보증의 제공자는 묵시적 품질보증의 존속기간을 서면의 품질보증상의 존속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고, 결함이 있는 부

---

Recent Developments in Indiana Law

212) 각주 211) 전기 논문

213) 각주 211) 전기 논문

214) 각주 211) 전기 논문

215) 각주 211) 전기 논문

216) 각주 211) 전기 논문

품의 수리나 교체에 한정하는 구제로 제한할 수 있다.

## 2. 비판

사실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품질보증 보호의 의미심장한 발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산업계처럼 자동차 산업의 품질보증 조항들 역시 제조사간의 작은 차이만 있을 뿐 거의 표준화되었고 여전히 많은 내용들이 평균적인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쓰여 있으며 사실 현존하는 주법하의 소비자들의 권리를 의도치 않게 혼란스럽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

연방 레몬법의 품질보증 규정들은 오직 품질보증서가 제공된 경우의 소비자 상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품질보증서의 정의는 구두에 의한 진술을 포함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일상법전의 요건에서라면 명시적 품질보증을 성립시키기에 충분한 일반적 진술의 많은 부분도 배제하게 되어 통일상법전의 명시적 품질보증의 정의에 비하여 훨씬 더 엄격하다. 이에 소비자들은 종종 판매자가 품질보증을 써주지 않는 한 아무런 품질보증 보호도 없다고 여기기도 한다. 이렇게 동법상의 품질보증 요건을 오로지 서면에 한정함으로써 연방 레몬법은 이와 같은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연방 레몬법 하에서 품질보증인은 전부품질보증을 제공할 것인지 일부품질보증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품질보증인이 전부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동법은 그 최소요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들 중 통일상법전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품질보증인은 묵시적 품질보증의 존속기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부품질보증은 상품이 품질보증의 존속기간 중 양



도된 경우 이를 양수한 어느 사람에게나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결함 있는 상품이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리되지 않는다면 품질보증인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 상품을 교환해주거나 구입가격을 환불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품질보증인은 배제함을 눈에 잘 띄게 명백히 한 경우에 한하여 부수적 손해를 배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눈에 잘 띄게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통일상법전하에서의 보호보다 더 많은 보호를 주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많은 법원에서 이미 그와 같은 구제의 제한조항에 대하여는 명백성을 요구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17)</sup>

그렇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일부품질보증에 대한 요건은 최소한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제한은 품질보증인이 품질보증서의 존속기간으로 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인은 묵시적 품질보증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sup>218)</sup> 품질보증인은 자유롭게 품질보증의 적용을 첫 번째 구매자로 한정하거나 품질보증상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후속 손해를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환불이나 교환을 인정하는 “레몬 법칙 (Lemon Rule)” 은 묵시적 품질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219)</sup>

이와 같이 연방 레몬법이 품질보증인으로 하여금 전부와 일부품질보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품질보증인들은 전부품질보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

217) Avenell v. Westinghouse Electric Corp., 41 Ohio App. 2d 150, 324 N.E.2d 583, 586-87 (1974), Joan Vogel, SQUEEZING CONSUMERS: LEMON LAWS, CONSUMER WARRANTIES, AND A PROPOSAL FOR REFORM, 5면, 1985 Arizona State Law Journal 589에서 재인용

218) 15 U.S.C. 2308. Section 108 (b)

219) Comment, Consumer Warranty Law in California Under the Commercial and the Song-Beverly and Magnuson-Moss Warranty Acts, 26 UCLA L. REV. 583, 594-597 (1979), 666-67. Joan Vogel, SQUEEZING CONSUMERS: LEMON LAWS, CONSUMER WARRANTIES, AND A PROPOSAL FOR REFORM, 5면, 1985 Arizona State Law Journal 589에서 재인용

그리고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는 반드시 품질보증인의 비쟁송적 분쟁해결메카니즘을 소진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 대한 단 하나의 제한은 그 절차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정립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차적 이점은 절차적 장애에 의하여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진요건의 표면상의 목적은 소비자 품질보증 분쟁을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소송 없이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이는 구제를 심하게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이러한 비공식적 절차를 소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연방법원에의 접근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또한 손해가 \$50,0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방법원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최소 100명의 기명원고가 있고 연방민사절차규칙의 규칙23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 바,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연방법원에의 접근을 포기하고 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할 만큼 너무도 엄격하다.

이와 같이 법의 통과를 위하여 오랜 투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레몬법은 소비자들에게는 실망스러웠다. 그 모든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레몬구입자들의 손해를 제작사들로부터 배상받게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만약 동법이 묵시적 품질보증의 배제를 금지하고 승소한 소비자의 변호사 비용을 아예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정되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방 레몬법의 불완전성은 레몬구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주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법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배양하게 하였고 각 주의 레몬법 입법을 촉발하였다.

## 제6장 주 레몬법(플로리다주 “자동차품질보증 이행강제법”)

### 제1절 서론

#### 1. 주 레몬법의 등장

다수의 주에 의하여 채택되어 주법으로의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통일 상법전의 품질보증 규정들이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고 1975년 연방 레몬법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해구제에 있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차량소비자들의 불만과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1982년 코네티컷주와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각 주의 레몬법이 제정되어 현재 미국의 51개의 주에서 레몬법이 제정·발효되었다.<sup>220)</sup>

차량소비자들의 폭증하는 민원이 계기가 되어 입법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레몬법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차량뿐만이 아니라 비상업적 사용목적의 소비자 상품 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방차원의 품질보증에 관한 일반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각 주의 레몬법들은 그렇지 않았다. 즉, 연방 레몬법과 같이 차량 이외의 일반적인 소비대상상품까지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였지만<sup>221)</sup> 대부분의 주<sup>222)</sup>에서는 오로지 차량, 그중에서도 신차에만 한정하여 레몬법을 제정

220) 각 주정부나 의회, 혹은 입법도서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221) 대표적으로 California주의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 그 중 레몬조항은 “Tanner Consumer Protection Act”

222) 대표적으로 Florida 주의 “Motor Vehicle Warranty Enforcement Act”, Connecticut 주의 Conn. Gen. Stat. Ann. Chapter 743b NEW AUTOMOBILE WARRANTIES, Chapter 743f USED AUTOMOBILE WARRANTIES

하였다.

각 주의 레몬법들은 동일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연방 레몬법의 주요 핵심내용이었던 레몬 법칙에 의하여 레몬권을 인정하는 레몬조항, 비재송적 분쟁해결절차, 변호사 비용배상의 인정 등을 주 레몬법들의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그렇지만 각 주가 이곳저곳에서 조금씩은 다른 체계, 다른 적용범위, 다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플로리다(Florida)주의 레몬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후 필요에 따라 다른 주의 레몬법 해당 조문을 인용하여 검토한다.<sup>223)</sup>

## 2. 주 레몬법의 주요 특징

각 주 레몬법의 그 주요 공통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레몬법이 기 위한 핵심조항인 “레몬 조항”을 규정하되 연방 레몬법보다 훨씬 더 상세한 절차 규정과 특히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에 관한 “추

---

223) 51개의 레몬법을 모두 비교대조하여 각 항목별로 꼼꼼한 분석을 하면 보다 다양한 논점을 잡아서 보다 정치한 논의를 넓은 범위에서 전개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본 석사학위논문의 범위를 넘으므로 그와 같은 연구방식은 취하기 않기로 하였다. 주 레몬법의 유형은 크게 연방 레몬법과 같이 소비자상품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과 전통적인 레몬의 의미에 기초하여 차량만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 레몬법의 두 유형 중 연방 레몬법과 비교대조분석에 보다 효과적인 후자의 주 레몬법이라면 조문체계가 보다 정비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다고 판단되는 플로리다주 레몬법을 기본으로 하여 인용하도록 한다. 사실 연구초기에는 가장 처음 제정된 코네티컷주 레몬법과 “Song-Beverly Act”, “Tanner Consumer Protection Act”로 불리우는 캘리포니아주 레몬법 역시 주레몬법의 기본 연구대상으로 고려하였으나 세법을 비교해 본 결과 “Song-Beverly Act”, “Tanner Consumer Protection Act”는 적용대상이 Consumer Product로서 차량에만 한정되지 않고, 코네티컷 레몬법은 최초의 레몬법으로서 다른 주의 레몬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법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이지만 그만큼 제개정역사도 좀 더 복잡하고 범명도 별도로 부여되어 있지도 않고 신차와 중고차를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등 조문 구성도 약간 복잡한 면이 있었다. 이에 플로리다 레몬법이 범명이나 법의 체계면에서 볼 때 연방 레몬법과 함께 비교하며 연구하는 대상으로는 보다 잘 정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플로리다주 레몬법 이외의 다른 주레몬법의 내용은 논의의 필요에 따라 인용하기로 한다.

정” 규정을 두고 있고, 법원에의 소송 제기 이전에 이용할 수 있는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적용대상에 있어 대다수의 레몬법은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차량 중 신차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sup>224)</sup> 非상업적 목적의 구입<sup>225)</sup>인 경우에만 통상적으로 적용되며 레몬법은 소비자로부터 문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는 것을 바탕으로 제작사에게 품질보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차량을 준수시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 제작사가 정해진 기간 또는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바로잡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레몬법은 구입자로 하여금 결함 있는 차량을 반환하고 구입금액의 환불 또는 대체 차량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그 차량을 수리하려던 노력들이 결국 실패했다는 점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는 한 그 환불이나 교체라는 구제수단은 소비자에게 이용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각 주의 레몬법들은 소비자가 그들의 권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개관련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플로리다 레몬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 레몬법은 통지요건 또는 소비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적으로 거쳐야 하는 비쟁송적 분쟁해결메카니즘의 존재에 대한 정보의 공개만큼은 필수적으로 이행할 것을 품질보증인에게 요구한다. 펜실베이니아,<sup>226)</sup> 미네소타,<sup>227)</sup> 웨스트 버지니아<sup>228)</sup> 주는 제작자에게 소비자의 레몬

224) 물론 주에 따라 중고차에도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점차 중고차에 대한 적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레몬법의 적용범위의 확장경향을 보이고 있다.

225) 물론 주에 따라 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차 등에도 확장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226) 73 P.S. § 1953. Disclosure-The Attorney General shall prepare and publish in the Pennsylvania Bulletin a statement which explains a purchaser's rights under this law. Manufacturers shall provide to each purchaser at the time of original purchase of a new motor vehicle a written statement containing a copy of the Attorney General's statement and a listing of zone offices, with addresses and phone numbers, which can be contacted by the purchaser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act.

[https://a.next.westlaw.com/Link/Document/FullText?findType=L&pubNum=1000262&cite=PS73S1953&originatingDoc=I307b3dd14a6f11db99a18fc28eb0d9ae&refType=LQ&origination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contextData=\(sc.Search\)](https://a.next.westlaw.com/Link/Document/FullText?findType=L&pubNum=1000262&cite=PS73S1953&originatingDoc=I307b3dd14a6f11db99a18fc28eb0d9ae&refType=LQ&origination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contextData=(sc.Search))에서 법조문 검색 후 인용

227) M.S.A. § 325F.665. New motor vehicle warranties; manufacturer's duty to repair, refund, or replace, Subd. 3. Manufacturer's duty to refund or replace. (g) At the

법하의 권리를 차량구입시의 소비자에게 정보제공할 것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수의 레몬법은 이렇게 반환된 차량의 재판매시 당해 차량은 환매수(Buyback)된 “Lemon” 임을 명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든지 하는 등의 제한을 하고 있다.

### 3. 플로리다주 레몬법의 법명(法名) 및 입법의도

플로리다주의 자동차 품질보증에 대한 법의 명칭은 “자동차 품질보증 이행강제법(Motor Vehicle Warranty Enforcement Act)”<sup>229)</sup>이며 통상

---

time of purchase or lease, the manufacturer must provide directly to the consumer a written statement on a separate piece of paper, in 10-point all capital type, in substantially the following form: “IMPORTANT: IF THIS VEHICLE IS DEFECTIVE, YOU MAY BE ENTITLED UNDER THE STATE’S LEMON LAW TO REPLACEMENT OF IT OR A REFUND OF ITS PURCHASE PRICE OR YOUR LEASE PAYMENTS. HOWEVER, TO BE ENTITLED TO REFUND OR REPLACEMENT, YOU MUST FIRST NOTIFY THE MANUFACTURER, ITS AGENT, OR ITS AUTHORIZED DEALER OF THE PROBLEM IN WRITING AND GIVE THEM AN OPPORTUNITY TO REPAIR THE VEHICLE. YOU ALSO HAVE A RIGHT TO SUBMIT YOUR CASE TO THE CONSUMER ARBITRATION PROGRAM WHICH THE MANUFACTURER MUST OFFER IN MINNESOTA.”

[https://a.next.westlaw.com/Link/Document/FullText?findType=L&pubNum=1000044&cite=MN STS325F.665&originatingDoc=I307b3dd14a6f11db99a18fc28eb0d9ae&refType=LQ&originating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contextData=\(sc.Search\)](https://a.next.westlaw.com/Link/Document/FullText?findType=L&pubNum=1000044&cite=MN STS325F.665&originatingDoc=I307b3dd14a6f11db99a18fc28eb0d9ae&refType=LQ&originating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contextData=(sc.Search))에서 법 조문 검색 후 인용

228) W. Va. Code, § 46A-6A-6. Written statement to be provided to consumer-At the time of purchase, the manufacturer, either directly or through its agent or its authorized dealer, must provide the consumer a written statement on a separate piece of paper, in ten point all capital type, in substantially the following form: “IMPORTANT: IF THIS VEHICLE IS DEFECTIVE, YOU MAY BE ENTITLED UNDER STATE LAW TO REPLACEMENT OR TO COMPENSATION. HOWEVER, TO BE ENTITLED TO REPLACEMENT OR TO COMPENSATION, YOU MUST FIRST NOTIFY THE MANUFACTURER OF THE PROBLEM IN WRITING AND PROVIDE THE MANUFACTURER AN OPPORTUNITY TO REPAIR THE VEHICLE.”  
www.westlaw.com의 West’s Annotated Code of West Virginia에서 인용

229) Florida Statutes TITLE XXXIX COMMERCIAL RELATIONS 681.10 Short title.— This chapter shall be known and may be cited as the “Motor Vehicle Warranty Enforcement Act.” (이하 플로리다주의 레몬법이나 플로리다 주법의 조문 인용시 첵터표시다음의 숫자부분만 인용하기로 한다)

“플로리다 레몬법(Florida Lemon Law)<sup>230)</sup>” 로 알려져 있다. 광활한 영토를 바탕으로 널찍널찍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며 국토 전역에 고르게 대중교통을 고도로 발달시키기가 쉽지 않은 미국의 특성상 자동차는 사실상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중요시되고 또한 신차의 경우에는 통상 집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구매하게 되는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플로리다 레몬법은 첫 조에 범명을 규정한 이후 바로 681.101에 입법의도에 대하여 별도의 조문을 할애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연방 레몬법의 부족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 달러의 법적지위문제나 “레몬 조항”, “레몬법 권리 기간(Lemon Law Rights Period)”, “추정(Presumption)” 규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각 주의 입법의사결정을 통한 실질적인 보완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구체화된 실체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법규와의 병립적 위치를 확실히 하여 레몬차량소비자구제의 특별법적 추가적 수단으로 규율하고자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동 조의 입법의도를 규정한 내용이다.

“입법부는 자동차가 소비자의 중대한 자산구매이며 결함이 있는 자동차는 의심할 여지없이 소비자에게 곤란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부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프랜차이즈인 자동차 딜러는 제작사의 정당한 공식 서비스 대행자임을 인식하고 있다. 소비자에 의한 선의의 자동차 품질보증 민원은 제작사에 의하여 구체화된 기간 동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을 직접 제공한 각 제작사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횃수의 시도의 추정을 규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입법부의 의도가 아니다. 소비자가 이 챕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품질보증에 합치되지 못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을 받거나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 절차를 제공하는 것은 입법부의 의도이다. 그러나 이 챕터의 어느 규정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비자의 다른 권리나 구제수단은 제한

---

230) 이하 “플로리다 레몬법” 이라 한다.

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 231)

---

231) 681.101



## 제2절 플로리다 레몬법의 구성

플로리다 레몬법은 플로리다 법의 39장 681절(Florida Statutes of TITLE XXXIX COMMERCIAL RELATIONS 중CHAPTER 681 MOTOR VEHICLE SALES WARRANTIES<sup>232)</sup>에 규정되어 있고 아래의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sup>233)</sup>

**§681.10** 법명 (Short title).

**§681.101** 입법의도 (Legislative intent).

**§681.102** 정의 (Definitions).

**§681.103** 제작자의 자동차를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할 의무 (Duty of manufacturer to conform a motor vehicle to the warranty).

**§681.104** 자동차의 부적합성(불량·고장) (Nonconformity of motor vehicles).

**§681.106** 악의적 주장 (Bad faith claims).

**§681.108** 분쟁해결절차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681.109** 플로리다 신차중재위원회와 중재적격 (Florida New Motor Vehicle

<sup>232)</sup><http://www.flsenate.gov/Laws/Statutes/2014/Chapter681/All>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600-0699/0681/0681ContentsIndex.html](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600-0699/0681/0681ContentsIndex.html), 이하 인용되는 플로리다주의 레몬법은 모두 이 두 곳을 출처로 하고, 법 자체를 인용할 때는 “레몬법”으로, 법 내용을 인용해야 할 경우는 제목이나 장, 편, 절이나 섹션부호없이 조문 번호만 또는 조문 번호부터 인용한다. (플로리다 레몬법과의 구분을 위하여, 연방 레몬법의 경우는 법 자체를 인용할 때에는 “연방 레몬법”으로, 법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섹션부호를 포함한 조문 번호부터 인용한다.)

<sup>233)</sup> ※ 비교 : 연방 레몬법의 조목차

15 USCA Ch. 50 Consumer Product Warranties,

§ 2301. Definitions

§ 2302. Rules Governing Contents of Warranties

§ 2303. Designation of Written Warranties

§ 2304. Federal Minimum Standards for Warranties

§ 2305. Full and Limited Warranting of a Consumer Product

§ 2306. Service Contracts: Rules for Full, Clear and Conspicuous Disclosure of Terms and Conditions: Addition to or in Lieu of Written Warranty

§ 2307. Designation of Representatives by Warrantor to Perform Duties Under Written or Implied Warranty

§ 2308. Implied Warranties

§ 2309. Procedures Applicable to Promulgation of Rules by Commission

§ 2310. Remedies in Consumer Disputes

§ 2311. Applicability to Other Laws

§ 2312. Effective Dates

- Arbitration Board; dispute eligibility).
- §681.1095 플로리다 신차중재위원회의 형성과 기능 (Florida New Motor Vehicle Arbitration Board; creation and function).
- §681.1096 RV 조정 및 중재 프로그램, 형성과 자격 (RV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gram; creation and qualifications).
- §681.1097 RV 조정 및 중재 프로그램, 분쟁적격과 프로그램기능(RV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gram; dispute eligibility and program function).
- §681.110 준법 및 징계조치 (Compliance and disciplinary actions).
- §681.111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거래 (Unfair or deceptive trade practice).
- §681.112 소비자 구제 (Consumer remedies).
- §681.113 딜러의 책임 (Dealer liability).
- §681.114 반환된 차량의 재판매 (Resale of returned vehicles).
- §681.115 무효인 합의 (Certain agreements void).
- §681.116 우선적용 (Preemption).
- §681.117 수수료 (Fee).
- §681.118 법규제정권한 (Rulemaking authority).

플로리다 레몬법의 조문목차만 연방 레몬법의 그것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 681.104 자동차의 부적합성·불량·고장(Nonconformity of motor vehicles)을 제작자의 품질보증준수의무 규정 후 곧바로 규정함으로써 “레몬” 요건을 구체화하려고 하였음을 주목할 수 있고, 3가지의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를 사설, 주립, 제3자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여 두고 있는 점, 반환된 차량의 재판매와 악의적 주장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다.

### 제3절 플로리다 레몬법상의 주요 개념 및 그 의미

레몬법을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동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개념들과 그 의미를 동법상 정의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레몬법 권리기간(Lemon Law rights period)” 이란 차량이 소비자에게 처음 배송된 날로부터 24개월을 의미한다.<sup>234)</sup>

(2) “소비자”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본질적으로 개인적, 가족용도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자 및 레몬법 권리 기간 동안 같은 목적으로 그 차량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 품질보증의 내용에 의하여 품질보증 상의 의무를 강제할 권리가 부여된 자를 의미한다.<sup>235)</sup>

이와 관련하여 Real Estate, Inc. v. Lazy Days R.V. Center, Inc. 사건에서 플로리다 제2항소법원(the Florida Second District Court of Appeal)은 “소비자”는 개인 또는 회사를 불문하고 신차를 구입한 모든 소비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회사”도 플로리다 레몬법의 소비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레몬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레몬법의 소비자 보호 및 구제의 목적, 동법 자체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함 있는 차량의 구입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소비자의 불편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목적에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법원은 개인 또는 회사를 불문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소비자의 개념은 레몬법의 구제적 목적에 부합하며 그 투자가 그 자의 자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품질보증된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sup>236)</sup>

---

234) 681.102 (9)

235) 681.102 (4)

236) 505 So.2d 587, RESULTS REAL ESTATE, INC., Appellant, v. LAZY DAYS R.V.

(3) “차량”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하기 위하여 이 주 안에서 판매되는 신차로서 근육의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차량을 의미한다. RV, 시승차로 사용되는 차량, 제작자의 품질보증에 판매의 조건으로서 발행된 리스차량, 임차인이 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차량을 포함하나, 트랙 위에 한하여 운행되는 차량, 오프로드 차량, 총중량 10,000파운드를 넘는 트럭, 오토바이, 모터달린 자전거 또는 RV의 주거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RV의 주거 시설”이라 함은 주로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되고 사용되고 유지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바닥, 배수시스템과 붙박이, 지붕 에어컨, 난로, 발전기, 자동차의 전기회로 이외의 전기설비, 측면출입문, 외부 수납함, 차량 앞유리나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제외한 다른 창문들을 의미한다.<sup>237)</sup>

(4) “RV”란 오락, 캠핑 또는 여행을 위한 임시적 거주 구역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고안된 차량으로서 Van을 개조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sup>238)</sup>

(5) “부적합성·불량·고장(Nonconformity)”<sup>239)</sup>이라 함은 결함<sup>240)</sup>

---

CENTER, INC., a Florida corporation, Winnebago Industries, Inc., an Iowa corporation, and Chevrolet Motor Division, a division of General Motors Corporation, Appellees. No. 86-427. April 10, 1987.

237) 681.102 (14)

238) 681.102 (20)

239) “Nonconformity”는 “레몬(Lemon)”이 되기 위한 핵심요건으로서 결국 “레몬법(Lemon Law)” 자체의 핵심 중의 핵심개념이다. Black’s Law Dictionary(8th edition)에서는 “The failure to comply with something, as in a contract specification”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한국어를 연구기간 내내 고민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번역용어인 “부적합성”이나 “부적합, 불일치” 만으로는 미국사회에서 말하는 “레몬(Lemon)”의 뉘앙스를 전부 담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여 레몬법의 핵심적용대상인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검토하여 보았고 결국 ‘불량·고장’이라는 용어가 그나마 레몬(Lemon)요건으로서의 Nonconformity를 번역하기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존에 nonconformity를 부적합성으로 번역해오고 있어서 본 레몬법 연구에서는 “Nonconformity”를 원칙적으로 “부적합성(불량·고장)”이라고 표현하고 경우에 따

(defect) 또는 전반적 문제상태(condition)<sup>241)</sup>로서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상당히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작자나 공식서비스대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고, 남용, 과실, 변경 또는 변형에 기하여 발생한 결함 또는 전반적 하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sup>242)243)</sup>

---

라서 부적합성, 불량, 고장 등을 적절히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함’이라는 용어는 통상 “defect”에 대한 번역어로 사용되거나 문맥에 따라서 Nonconformity를 ‘결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결함’이라는 용어도 역시 사용하기로 한다.

240) “defect”를 결함으로 번역할 것인지 하자로 번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민스러웠다. 우리 법에 익숙한 상태에서 읽게 되면 결함은 제조물책임법에서의 결함으로, 하자는 담보책임법에서의 하자로서 자연스레 용어의 의미가 이해되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의 구제에 초점을 둔 제조물책임법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Product Liability에 관한 논의에 비하여 Product Warranty에 관한 논의를 매우 찾아보기 어렵지만(품질보증의 법적성질은 결국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본질을 갖는다고 볼 때 결국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므로 사실상 품질보증 논의도 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공산품의 마스프로덕션, 일방적 광고 및 마케팅에 의한 정보전달, 품질보증 증서에 의한 호도, 공정하지 못한 거래, 거래 당사자간 힘·정보의 불균형, 제작자와 소비자간의 직접 계약관계의 부재, 실효성 있고 신속한 구제수단의 마련 등 Warranty 논의의 본질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구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논의를 Warranty에 관한 논의로 보는 것은 약간의 비약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소비자보호법의 성격을 강조한 품질보증 즉 품질보증 자체를 정면으로 깊게 논의하고 있는 국내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사실 미국에서는 Product Liability는 Product Warranty와 함께 소비자보호법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자연스럽게 같이 논의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fect를 결함이나 하자로 번역하지만, 우리 법상의 결함이나 하자를 의미하는 특정 용어로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241) “condition”은 연방 레몬법에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로서 역시 번역에 있어 고민스러웠다. Lemon의 개념상 이 용어는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컨디션)가 안 좋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 용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찾다가 플로리다주 행정법규에 플로리다 레몬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설명해 놓은 부분을 발견하였고 이 condition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la. Admin. Code r. 2-30.001 Written Statement Explaining Consumer Rights Under Chapter 681, Florida Statutes; Hearings Before Florida New Motor Vehicle Arbitration Board. Condition - A general problem (e.g., vehicle fails to start, vehicle runs hot, etc.) that may be attributable to a defect in more than one part., West’s Florida Administrative Code, Title 2. Department of Legal Affairs, Chapter 2-30. Florida Lemon Law 2-30.001 참조

242) 681.102 (15)

243) 플로리다 주 레몬법에서는 “Nonconformity”를 레몬의 핵심요건으로 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연방 레몬법에서는 § 2302(a)(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 defect, malfunction, or failure to conform...”으로 품질보증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6) “제작자”란 이 주의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을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RV의 샤시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기성 조립된 트럭 또는 RV 세시 특별 차체 또는 설치되고 나면 차량의 부분이 되어 버리는 장비 등을 제작하거나 위 트럭이나 차체 등에 설치하는 자 또는 320.60(5)에 정의된 유통업자, 또는 320.60(70)에 정의된 수입자를 의미한다. 320.60(11)(a)에 규정된 딜러는 이 섹션의 제작자, 유통업자, 또는 수입자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sup>244)</sup>

(7) “공식 서비스 대행자” : 이는 프랜차이즈 자동차 딜러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제작자로부터 차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RV(Recreational Vehicle, 이하 “RV”라 한다)의 경우 2이상의 제작자가 있다면, 제작자가 품질보증항목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승인받은 각 제작자의 공식 서비스 대행자로서 프랜차이즈 자동차 딜러를 포함한다. 이 용어에는 렌탈차량을 수리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받은 렌탈카 회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sup>245)</sup>

(8) “품질보증”란 소비자에 대한 차량 판매와 연결되어 제작자에 의하여 발행된 쓰여진 품질보증 또는 제작자에 의한 사실의 확인 또는 약속으로서 재료나 제조의 본질과 연결되어 그와 같은 재료와 제조가 하자로부터 자유롭다거나 일정 수준의 성능을 낼 것이라는 것을 확인 또는 약속한 것을 의미한다.<sup>246)</sup>

(9) “차량의 교환”이란 차량 구입 시점에 존재하였던 피대체차량과

---

244) 681.102 (13)

245) 681.102 (1)

246) 681.102 (22)

동일한 또는 합리적으로 동급인 차량으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대체차량과 합리적으로 동급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체차량의 제작자 희망소비자가격이 피대체차량의 제작자 희망소비자가격의 1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V의 경우에는 대체차량의 소매가격이 피대체차량의 구입가격의 1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sup>247)</sup>

(10) “구입가격”이란 520.31(2)에 정의된 현금가격으로서 보상판매(trade-in)된 차량의 수당을 포함하고, 다른 거래의 부채를 제외한다. “보상판매(trade-in) 차량의 수당”이란 소비자와 제작자에게 수공될만한 것으로서 매매계약 또는 리스계약에 반영된 당 차량에 대한 순 수당을 의미한다. 그 순 수당의 수액이 소비자와 제작자에게 수공될만한 것이 아니라면 보상판매(trade-in) 수당은 미국자동차딜러협회 중고차 공식 가이드{NADA<sup>248)</sup> Official Used Car Guide (Southeastern Edition)} 또는 미국자동차딜러협회 RV 감정평가 가이드 (NADA Recreation Vehicle Appraisal Guide)에 따라 보상판매(trade-in)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판매(trade-in) 차량의 소매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참고할 수 있는 NADA 책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sup>249)</sup>

(11)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상계”란 합의일 또는 중재 심리의 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거리에, 세금과 정부수수료와 딜러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판매계약서에 나와 있는 구입가격을 곱한 금액을,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계약서에서 합의된 금액을, 120,000(RV의 경우에는 60,000)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sup>250)</sup>

---

247) 681.102 (21)

248) 미국자동차딜러연합회, National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https://www.nada.com/> 참조

249) 681.102 (18)

250) 681.102 (19)

(12) “추가소요비용”이란 소비자에게 차량의 구입결과로 인하여 전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들을 의미한다. 이 챕터의 목적상, 추가소요비용은 제작자가 설치하거나 대행자가 설치한 항목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청구된 비용, 금융비용, 판매세(Sales Tax), 소유권이전비용 등을 포함한다.<sup>251)</sup>

(13) “부수 비용”이란 차량의 불량·고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비용을 의미한다.<sup>252)</sup>

(14) “위원회(Board)”는 플로리다 신차중재위원회(Florida New Motor Vehicle Arbitration Board)를 의미한다.<sup>253)</sup>

(15) “절차”란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로써 차량 품질보증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할 목적으로 제작자에 의하여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sup>254)</sup>

(16) “프로그램”이란 RV의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위하여 본 챕터에 의하여 설립된 파일럿 프로그램을 의미한다.<sup>255)</sup>

---

251) 681.102 (3)

252) 681.102 (7)

253) 681.102 (2)

254) 681.102 (16)

255) 681.102 (17)



## 제4절 품질보증(Warranty) 준수 등 제작자의 의무

레몬법은 제작자의 품질보증준수의무를 부과하면서 연락처 등 정보제공의무, 소비자의 통지의무나 기간준수의무,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의 이용방법,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권리 침해 없이 합리적인 수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교부할 의무 등 품질보증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보증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절차에 필요한 주요 기준들을 전반적으로 정하고 있다.

### 1. 수리의무

자동차가 품질보증상의 내용에 부합하지 못하는 성능을 보이는 경우 소비자는 제작자나 공식 서비스대행자에게 알리고 품질보증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제작사 또는 그의 공식 서비스 대행자에게 처음 알린 때가 레몬법 권리기간 중이었던 경우 제작사 또는 그의 공식 서비스 대행자는 그와 같은 수리가 레몬법 권리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개의치 않고 차량을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고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리가 제작사의 기재된 명시적 품질보증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소비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만 통지의 시점과 수리의 시점이 레몬법 권리기간의 내외로 걸쳐 있거나 하는 경우에 대한 레몬법의 규율이 곧 레몬법 권리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거나 레몬법 하에서 소비자가 클레임을 제기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sup>256)</sup>

---

256) 681.103

## 2. 차량 수리시 설명 및 서면제공의무

제작자는, 그의 공식 서비스 대행자를 통하여, 품질보증 하에서 검사되거나 수리되고 난 이후 소비자의 차량이 반환될 때마다 소비자에게 행해진 시험 주행 및 그 대략적인 시간, 실시한 진단, 소비자가 직접 알린 차량상 문제의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또한 그에 한정되지 않은, 또한 결함이나 상태의 확인, 부품과 공임, 차량이 진단이나 정비를 위하여 입고되었을 때의 날짜, 거리계의 거리 또는 수리나 진단이 끝났을 때의 날짜 등 모든 항목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쓰여진 서면 또는 정비견적서를 제공하여야 한다.<sup>257)</sup>

## 3. 연락처 정보제공의무와 차량소유자 매뉴얼 및 품질보증 제출의무

각 제작사는 품질보증서 또는 차량소유자용 매뉴얼에 제작자의 주소, 전화번호, 지역 또는 이 주를 관할하는 지역사무소 정보를 눈에 잘 띄는 방식의 안내문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매년 1월 1일까지 각 제작사는 이 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차종에 해당하는 차량소유자용 매뉴얼과 품질보증서의 각 1부를 법무부<sup>258)</sup>로 보내야 한다.<sup>259)</sup>

## 4. 비공식분쟁해결절차 관련 제작자의 의무

레몬법 681.108에 따라 제작자가 제작한 인증받은 절차가 있는 경우

---

257) 681.103

258) 681.102 (6)

259) 681.103 (2)

그 절차에 따라 어떻게 어디에서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차량 취득시 분명하고 명백하게 기재의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RV에 자신의 이름을 내어 건 제작자는 제681.1096조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른 민원을 어디서 어떻게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고 명백하게 기재의 방식으로 동 차량의 취득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작사는 딜러에게, 딜러는 차량구입당시의 소비자에게 이 법에 의한 소비자의 권리의 설명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은 법무부에 의하여 마련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이 법에 의한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또는 중재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무료전화의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작자가 충분한 수량의 이러한 딜러의 차량판매요건을 충족하는 서면이 제때에 배달되었음을 뜻하는 취지의 서명된 영수증을 획득하였다면, 이는 제작자가 관련 레몬법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그 자체로서 일면 충분한 증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소비자의 레몬법에서 요구되는 서면 등의 수령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된 확인서는 제작자와 딜러의 준수에 대하여 그 자체로 일면 충분한 증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sup>260)</sup>

---

260) 681.103 (3)

## 제5절 플로리다 레몬 조항

레몬법을 레몬법으로 만드는 Identity로서 레몬법의 핵심은 바로 소위 “레몬 조항”으로 칭하여지는 이 부분이다. 레몬 조항, 즉 레몬조항의 핵심은 “레몬”이라고 판명된 차량에 대하여는 제작자는 “환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플로리다 레몬법에서는 681.104의 레몬조항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가 연방 레몬 조항보다 훨씬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특히 어느 경우에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 시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추정(Presumption)”이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정량화를 통한 레몬추정규정은 연방 레몬법과의 핵심적인 차이점이자 개선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플로리다 레몬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1. 차량의 부적합성 · 불량 · 고장(Nonconformity)<sup>261)</sup>

#### 가. “3+1”의 원칙: 3회의 수리 시도+1회의 마지막 수리기회를 위한 통지

차량의 부적합성 · 불량 · 고장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품질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우선 이러한 부적합성 · 불량 · 고장을 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같은 부적합성 · 불량 · 고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3회의 시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부적합성 · 불량 · 고장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비자는 부적합성 · 불량 · 고장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제작자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부적합성 · 불량 · 고장을 수리할 필요성에 대한 서면통지를 등기 또는 고속 우편으로 제작자에게 보내야 한다.

---

261) 681.104 (1)(a)

## 나. 15일 이상의 운행정지

차량이 제작자 또는 그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 의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적합성·불량·고장에 대한 수리 때문에 누적된 시간이 차량소유자용 매뉴얼에 의하여 설명된 일상적인 메인テナンス를 위하여 들어가는 시간은 제외하고 총합 15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운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 제작자 또는 그의 공식 서비스 대행자가 그 차량을 점검하거나 수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제작자에게 등기 또는 고속우편으로 그 내용을 서면통지하여야 한다.<sup>262)</sup>

## 2. 부적합성·불량·고장 (Nonconformity)의 치유 의무-10일 내의 응답의무+10일(RV:45일) 내의 수리의무<sup>263)</sup>

제작자는 위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내에 소비자에게 응답하고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제작자의 응답을 수취한 이후로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합리적으로 접근가능한 수리센터에서 차량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45일이 허여되는 RV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지정된 수리센터에 차량을 입고시킨 때로부터 시작하여 10일 동안 차량을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만일 제작자가 소비자에게 응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차량을 합리적으로 접근가능한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또는 이 10일 또는 45일간의 기간 동안 부적합성·불량·고장을 수리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제작자에게 부적합성·불량·고장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262) 681.104 (1)(b)

263) 681.104 (1)(a)

### 3. 40일 이내의 “환매수(Buyback) 및 환불” 또는 “교환” 의무

제작자 또는 공식 서비스 대행자가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품질보증에 부합하게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 제작자는 40일 이내에 그 차량을 환매수하여야 하고 구입가격 전부 중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상계만큼 적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소비자로부터 사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금을 수령하고 소비자가 받아들일 만한 대체용 차량으로 그 레몬차량을 교환하여야 한다.

환불이나 교환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발생한 병행적 손해 및 예기치 못한 부수적 손해를 포함시켜야 한다. 교환이나 환불에 행사의 순위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는 교환보다 환불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없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러한 환불 또는 교환을 수령할 때, 소비자, 유치권자, 또는 임대인은 제작자에게 깨끗한 소유권과 당해 차량의 점유를 제공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sup>264)</sup> 그리고, 만약 당해 차량의 유치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 레몬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환불을 받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의 환불은 소비자와 기록상 이해관계자로 드러난 유치권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환불은 임차인이 임차비용을 받고 임대인은 임차비용을 제외한 임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기 임대 종료로 인한 불이익은 이 레몬법하의 대체 차량이나 환불을 수령한 임차인에 대하여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세무서는 제작자가 세일즈 택스가 차량이 구입될 때 지불되었고 제작자가 그 세일즈 택스를 소비자, 유치권자 또는 임대인에게 환불하였다는 증거와 함께 환불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작자가 소비자, 유치권자 또

---

264) 681.104 (2)(a)

는 임대인에게 이 섹션 하에서 환불한 세일즈 택스를 제작사에게 환불하여야 한다.<sup>265)</sup>

#### 4. 합리적 횃수의 수리시도 성립에 대한 추정(Presumption)

레몬법 권리기간 동안에 다음의 경우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을 품질보증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횃수의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sup>266)</sup>

##### 가. “3+1” 수리 시도

681.104 (1)(a)의 내용에 따라, 같은 부적합성·불량·고장에 대하여 “3+1”의 수리, 즉 제작자나 그의 공식 서비스 대행자에 의하여 최소한 3번의 수리 및 그에 더하여 그 차량을 고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서의 제작자에 의한 수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적합성·불량·고장이 여전히 존속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횃수의 시도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나. 30일(RV:60일) 운행정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적합성·불량·고장에 대한 제작자 또는 그의 공식 서비스 대행자에 의한 수리 때문에 차량소유자의 매뉴얼에 규정된 일반적인 정규 메인テナンス에 들어가는 시간을 제외한 누적 총합 3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RV의 경우 6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제작자 또는 그의 공식 서비스 대행

---

265) 681.104 (2)(b)

266) 681.104 (3)

자가 681.104 (1)(b)의 내용대로 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 차량을 검사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최소한 한 번의 기회는 반드시 가졌었던 경우라면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30일 또는 RV의 경우 60일이라는 기간요건은 전쟁, 침입, 파업, 화재, 홍수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간만큼은 연장될 수 있다.

## 5. 레몬 주장에 대한 가능한 항변

소비자의 레몬 주장에 대하여 품질보증인은 (a) 주장된 부적합성·불량·고장이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라든지, (b) 부적합성·불량·고장은 제작자나 그의 공식 서비스대행자가 아닌 자의 사고, 남용, 과실 또는 승인되지 않은 부당 개조 또는 변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c) 소비자에 의한 클레임이 선의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다.<sup>267)</sup> 그리고 다른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당한 항변사유 역시 클레임에 대항하여 유효한 항변으로 제출될 수 있다.

이 때 악의적 청구라 함은 소비자의 레몬 소송이 악의적으로 혹은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만 또는 법률이나 사실의 측면 중 그 어느 면에서도 재판에 회부될 만한 쟁점이 전혀 없이 제기된 것이라고 법원에 의한 판단을 받은 소비자의 청구의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악의적 청구라는 항변을 제작자 등 품질보증인은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악의적 청구로부터 직접 발생한 제작자 또는 그의 대행자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은 소비자에게 귀속된다.<sup>268)</sup>

---

267) 681.104 (4)

268) 681.106



## 제6절 플로리다 주 레몬법의 분쟁해결절차

레몬법에는 ① 사적 분쟁해결절차로서 법무부의 인증을 받은 제작자가 설립한 분쟁해결절차, ② 법무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립 중재위원회, ③ 법무부로부터 자격을 인가 받은 제3자 운영의 RV 차량에 대한 조정 및 중재 프로그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분쟁해결절차의 내용을 살펴본다.<sup>269)</sup>

### 1. 법무부 인증 분쟁해결절차

#### 가. 제작자의 절차의 설립 및 법무부의 인증절차

##### (1) 절차의 마련 및 인증 신청

제작자는 레몬법의 규정과 16 C.F.R. part 793(1983.10.1.이후 발효된 개정규칙)상의 규칙을 준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법무부에 그 절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2) 법무부의 인증심사

---

269) 이 부분은 연방 레몬법의 분쟁해결절차규정이 담지 못하였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절차의 유형이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분쟁절차에 관한 측면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넓은 시각에서 분쟁관련 쟁점이나 해결절차의 정립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에는 연방 레몬법의 절차규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약간 정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한 레몬법 관련 문헌들에 비하여 오히려 나은 문헌이기도 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물론, 이와 같은 다양한 전치절차들이 법원에의 제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쟁송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국에 비하여 훨씬 길고 변호사 비용 역시 훨씬 더 높은 미국의 법현실을 고려할 때 레몬 관련 자동차분쟁해결의 다양한 비쟁송적 수단을 강구하는 시도라는 면에서 여전히 검토할 의미가 있다고 본다.

법무부는 이러한 신청의 접수 및 평가 이후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sup>270)</sup>

(a) 신청서나 절차에 있어 불충분한 부분을 제작사에게 통지한다.

(b) 개정된 대로 1983.10.1.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16 C.F.R. part 793와 레몬법의 규정들 및 그 아래에서 채택된 규칙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절차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증한다. 또는

(c) 인증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 (3) 법무부에 제출할 서류

#### 가) 회계감사서의 제출

인증된 절차를 설립하려고 하거나 혹은 인증된 절차의 설립을 위하여 지원하는 제작자는 1983.10.1.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규칙 16 C.F.R. part 793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연간회계감사서 1부를 그 회계기간 동안 이 주내에서 이 레몬법의 규정들에 따라 제작자에 의하여 행해진 환불이나 교환의 숫자를 포함하여 인증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와 함께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sup>271)</sup>

#### 나) 합의서 사본의 제출

인증 받은 절차 또는 인증을 신청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승인되었거나 또는 그 절차의 의사결정권자에 의한 결정으로 도출된 각 합의의 사본을 합의도출일 또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나 합의는 반드시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sup>272)</sup>

---

270) 681.108 (2)

271) 681.108 (4)

272) 681.108 (3)

- (a)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
- (b) 제작사의 이름과 차량이 구입된 딜러십의 주소
- (c) 클레임이 제기된 날짜와 그 클레임을 처리한 절차관련 사무실의 주소
- (d) 소비자에 의하여 요구된 보상안
- (e) 결정을 내린 결정자의 또는 합의를 승인한 자의 각 이름
- (f) 합의나 결정의 세부 내용
- (g) 합의일 또는 결정일; 그리고
- (h) 그 결정이 소비자에 의하여 수용되었는지 아니면 거부되었는지에 관한 진술

#### (4) 인증거절에 대한 불복

인증이 거절된 제작자는 플로리다 주법 120절의 행정절차법(Chapter 120.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sup>273)</sup>

#### 나. 인증절차 전치주의<sup>274)</sup>

제작자가 위와 같이 16 C.F.R. part 793의 규정 및 플로리다 레몬법과 그 하위규칙의 내용을 실제로 준수하는 것으로 보아 인증된 절차를 설립하여 소비자에게 681.103(3)상의 절차에 따른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린 경우, 681.104(2)는 오로지 소비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선행적으로 진행시킨 경우의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위 인증된 절차에서 활동하게 되는 의사결정권자들은 위 절차 내에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품질보증의 내용. 법률상 권리, 16 C.F.R. part 793상의 구제수단, 플로리다

---

273) 681.108 (7)

274) 681.108 (1)

레몬법규, 당해 사건의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적합한 형평적 요소들 등 모든 법률적 및 형평법적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된 절차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결정권자들과 직원들은 레몬법의 내용과 위 C.F.R.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훈련되어야 한다.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차량의 부적합성·불량·고장에 대한 소송에서 이러한 인증된 절차에서 도출된 결론은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 다. 인증갱신 또는 절차운영의 중지와 인증의 효력상실

### (1) 인증의 갱신

법무부는 인증이 갱신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각 인증된 절차를 심사하여야 한다. 인증의 갱신을 구하는 제작자는 최소한 1년 인증기간의 만료 60일 이전에 법무부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심사시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sup>275)</sup>

(a) 절차가 CFR규정, 레몬법 및 그 아래에서 채택된 규칙들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증을 갱신한다.

(b) 절차상 흠결을 제작자에게 통지한다.

(c) 인증의 갱신을 거절한다. 인증이 거절되는 경우, 법무부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절차운영의 중지와 인증의 효력상실

---

275) 681.108 (5)

제작자가 인증받은 절차의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제작자는 법무부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법무부는 그 절차의 인증의 효력을 그 절차가 중지된 날로부터 즉시 없애야 한다.<sup>276)</sup>

## 라. 기타

절차 규율에 있어 연방의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 인증절차전치주의에 관한 레몬법규정은 적용되지 않고,<sup>277)</sup> 플로리다주의 법무부는 이 선택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을 도입할 수 있다.<sup>278)</sup>

## 2. 주립 분쟁해결절차: 플로리다 신차중재위원회

레몬법 681.109 이하에는 플로리다 신차중재위원회(Florida New Motor Vehicle Arbitration Board, 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에서의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가. 분쟁 적격<sup>279)</sup>

(1) 제작사가 법무부의 인증을 받은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레몬법 권리기간 중에 발생한 소비자의 클레임은 반드시 레몬법 권리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그 인증된 절차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 인증된 절차에 의하여 클레임이 제기된 이후 4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법무부에 그 분쟁을 중재위원회로 옮겨 달

---

276) 681.108 (6)

277) 681.108 (8)

278) 681.108 (9)

279) 681.109

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작자가 법무부의 인증을 받은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레몬법 권리기간 중에 발생한 소비자의 클레임은 반드시 레몬법 권리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그 인증된 절차에 제기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그 결정 또는 제작자의 그에 의한 준수내용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법무부에 그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작자가 위 인증절차 하에서 나온 결정의 심사를 구할 수는 없다.

(3) 제작자가 위와 같은 법무부의 인증을 받은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인증된 절차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관할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바로 법무부의 중재위원회에 분쟁을 제출할 수 있다.

(4) 소비자는 레몬법 권리기간의 만료 이후 60일보다 늦기 이전 또는 인증된 절차의 마지막 조치로부터 30일 이내 중 늦게 도달하는 기간 이내에 레몬법 권리기간 중 발생한 클레임에 관하여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5) 법무부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기에 앞서 중재 신청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가려야 한다. 소비자의 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 신청은 법무부에 의하여 규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 레몬법에 의한 구제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쟁의 전부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6) 법무부는 기만적이거나 위원회의 권한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중재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법무부에 의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 의한 중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분쟁은 그 분쟁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제출된 경우에 다시 심사될 수 있다. 법무부는 두 번째의 심사 이후 증거가 명백히 구제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 경우 그 분쟁에 대한 중재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법무부가 분쟁에 대한 중재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 거절의 취지 및 그 이유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소비자와 제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법무부가 분쟁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이 레몬법에서 인정되는 구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레몬법 하에서 발생하고 법무부에 의하여 심사된 문제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받아주지 않기 위하여 행해진 결정은 어느 것이든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8) 법무부는 이러한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집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도입할 수 있다.

#### 나. 중재위원회의 설립과 기능<sup>280)</sup>

(1) 법무부 내에 검찰총장이 1년의 첫 임기로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된 플로리다 신차 중재위원회를 둔다. 위원들은 추가적인 2년의 임기로 재임명될 수 있다. 각 위원은 위원의 의무 수행에 대하여 검찰총장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지고, 멤버의 공식적인 직무로서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작위나 부작위로 인한 시민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법무부는 그러한 조치나 부작위로부터 발생한 위원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하여도 그 위원을 방어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이 플로리다 레몬법의 규정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위원회의 지부들을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분쟁이 법무부의 중재제도에 의하여 진행되기도 한 소비

---

280) 681.1095

자가 중재심리에 합리적으로 편리한 장소에서 참가하고 구두로 분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주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사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심리는 법무부가 할당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3인의 패널의 다수표에 의하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 섹션하의 중재절차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3) 위원회의 각 지부는 최대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들을 그들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이 플로리다 레몬법 및 이에 의하여 채택된 규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각 지부에 할당되는 행정가와 사무국장은 법무부에 의하여 지명되어야 한다. 각 지부의 위원회 중 최소한 한 명의 위원은 자동차 메커니즘에 관한 전문가 위원이어야 한다. 그 위원은 제작사 또는 프랜차이즈 자동차 딜러에 의하여 고용될 수 없고 절차의 컨설턴트나 의사결정권자 또는 직원이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멤버들은 이 플로리다 레몬법이나 이 플로리다 레몬법 하에서 채택된 규칙의 적용에 대하여 훈련되어야 한다. 위원들은 검찰총장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고 주법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4) 681.104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분쟁이 중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소비자는 반드시 법무부에, 그리고 위원회에 분쟁을 먼저 접수하여야 한다.

(5) 소비자에 의하여 중재가 요청되었고 그 분쟁이 681.109에 의하여 법무부에 의하여 중재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제작자는 반드시 위원회에 의하여 진행되는 중재에 따라야 한다.

(6) 위원회는 중재요청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그 분쟁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



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위원회의 자체적인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 소비자의 지속에 대한 요청은 이 플로리다 레몬법에서 정한 기간제약을 없애게 된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분쟁을 조사할 수 있고 기록, 서류 그리고 다른 증거들의 위원회에 대한 제출을 위하여 또는 증인의 출석을 위하여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위 규정된 기간 동안 분쟁을 심리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결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7) 중재의 모든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을 할 수 있고 분쟁과 관련한 증인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반대 심문을 할 수 있고 변호사에 의하여 소송대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나 확인, 당사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차량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8)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적합성·불량·고장을 교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가 행하여진 경우 위원회는 구제를 명할 수 있다.

(9) 위원회의 결정은 배달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소비자와 제작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사실과 결정의 이유를 기재한 결정이 담겨야 한다. 결정이 소비자의 편에서 내려진 경우 제작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40일내에 그 결정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용할만한 대체 차량을 배달하여 소비자가 이를 수령한 날 또는 중재결정에서 결정된 금액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어 소비자가 수령한 날에 제작자의 중재판정이행이 이루어진다. 이 플로리다 레몬법에 의하여 그리고 위원회에서 중재된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에서 위원회에 의한 결정은 모두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10) 당사자에 의하여 항소되지 않는 한 결정은 종국적이다. 순회법원에 대한 중재결정에 대한 항소신청은 결정을 받고 난 이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항소신청은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 또는 차량이 구입된 곳 또는 중재심리가 행하여진 곳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항소신청이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항소인은 항소신청서는 법무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승소한 중재결정을 제작자가 수령한 이후 40일 이내에 그러한 항소신청의 통지를 법무부가 받지 못하였고 제작자는 중재결정을 이행하지도 그러한 결정에 항소하지도 아니한 경우, 제작자가 지연이나 불준수가 그의 지배영역을 벗어나서 발생하였다거나 소비자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진술에 의하여 증명됨으로써 소비자가 그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분명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제작자에 대하여 벌금총액이 차량 구입가격의 2배가 될 때까지 1일당 최고 \$1,000까지의 벌금부과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작자가 그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는데 실패하거나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제작자에 대하여 벌금미납에 관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부과된 벌금으로 인한 재원은 이 플로리다 레몬법의 이행과 강제를 위하여 법무부에 있는 자동차품질보증트러스트펀드에 들어가야 한다. 제작자가 이 서브섹션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비자의 신청서에 대한 보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11) 위원회에서의 강제중재, 법무부에 의한 분쟁적격심사, 위원회의 절차와 결정, 그에 대한 항소에 관한 681.1095, 681.109 규정의 내용은 플로리다주 행정절차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12) 소비자 또는 제작자에 의한 중재결정에 대한 순회법원에의 항소는 처음부터 새로이 심리되어야 한다. 중재결정에 대한 서면신청서에는, 항소인은 반드시 항소를 위한 근거와 요구된 조치를 적시하여야 한다. 항소의 마지막 조치 후 15일 이내에, 항소인은 법무부에 합의서 또는 법

원의 명령이나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소비자의 편에서 내려진 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 소비자가 보상받을 내용에는 중재판정의 금전적 가치, 중재판정을 확인받기 위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 모든 비용, 위원회의 결정을 제작자가 수령한 이후로부터 40일이 넘은 후부터의 기간 동안 하루 \$25의 금액으로 발생하는 계속적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이 제작자가 악의적 항소를 하였거나 오로지 고통을 줄 목적으로 항소한 것이거나 또는 재판에 회부할 만한 법이나 사실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전체 배상액의 두 배를 명하여야 한다(법원은 세 배를 명할 수도 있다).

(14) 법원의 판결이 위원회의 소비자승소판정을 확인하는 경우, 항소심리는 제조자의 소비자측 변호사 비용 지불과 심사기간동안 발생한 비용과 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달려 있다.

(15) 법무부는 위원회에 회부된 각 분쟁의 기록과 연도별, 제조사별, 모델별 차량의 인덱스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보관하여야 하고 매년 위원회에 회부되고 결정된 모든 분쟁의 통계와 제작자에 대한 다음의 가치, 수량, 퍼센트 현황을 포함한 연간 통계를 종합편찬하여야 한다.

- (a) 차량의 대체 요구
- (b) 구입가격 환불 요구
- (c) 사전청문합의에서 획득된 차량의 교환
- (d) 사전청문합의에서 획득된 구입가격 환불
- (e) 차량교환의 중재결정
- (f) 구입가격 환불의 중재결정
- (g) 40일 이내에 이행되지도 않고 30일 이내에 항소되지도 아니한

위원회 결정

(h) 항소된 위원회 결정

(i) 법원에 의하여 지지된 항소; 그리고

(j) 악의 또는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항소

이렇게 취합된 통계는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이다.

(16) 법무부에 의하여 요청되는 때, 제조자는 중재에 의하여 인증되었으나 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 것은 아닌 분쟁에 대한 합의내용을 진위 증명하여야 한다.

(17) 법무부는 이러한 주립 중재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도입할 수 있다.

### 3. 중립 분쟁해결절차-RV조정·중재 프로그램

레몬법은 제작자측에서 설립하여 법무부의 인증을 받은 분쟁해결절차, 주의 법무부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 이외에도 RV에 대하여는 법무부로부터 자격을 인가받은 조정과 중재 프로그램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가. RV 조정·중재 프로그램(RV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gram)의 구성과 기능<sup>281)</sup>

(1) 플로리다 레몬법 681.1096과 681.1097의 규정은 1997.10.1.이후 구

---

281) 681.1096

입된 RV와 관련한 분쟁으로서 이 플로리다 레몬법 하에서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 분쟁에 적용된다.

(2) 별도로 품질이 보장된 새시와 부품 제작자와 681.102(13)에 정해진 제작자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다른 자를 포함하여 이 플로리다 레몬법에 의하여 적격이 인정된 분쟁에 연루된 RV 제작사는 법무부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것으로 여겨진 조정과 중재 프로그램에 참석하여야 한다.

(3) 법무부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것으로 여겨지기 위하여는, 조정과 중재 프로그램은 최소한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a) 프로그램은 공정한 조정과 중재서비스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로 진행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제작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사로부터 충분히 격리된 행정가와 직원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b) 프로그램의 행정 비용은 제작자에 의하여 제때에 지불되어야 하고 그러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c) 프로그램은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제공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유능하고 적합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d) 프로그램의 조정자와 중재자는 분쟁에 대한 공정한 조정과 중재의 제공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제작사로부터 충분히 격리되어야 한다.

(e) 프로그램의 조정자와 중재자는 제작자나 차량 딜러에게 고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f) 프로그램의 조정자는 플로리다 대법원의 인증 서킷 또는 카운티의 조정 연수 프로그램 또는 법무부가 인증하는 다른 조정 연수프로그램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g) 프로그램의 조정자는 미국 중재 협회, 미국 변호사 협회의 분쟁

해결책선, 분쟁해결직역소사이어티에서 발간한 조정자를 위한 모델 수행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h) 프로그램의 중재자는 플로리다 대법원의 인증 서킷 또는 카운티의 중재 프로그램 또는 법무부가 인증하는 여타의 중재연수프로그램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i) 프로그램의 중재자는 미국 중재 협회와 미국 변호사 협회가 1977년에 발간하고 개정한 상업적 분쟁의 중재자를 위한 윤리 코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j) 프로그램은 반드시 조정자와 중재자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프로그램의 규칙과 절차 및 이 플로리다 레몬법의 규정에 대하여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충분히 훈련되었음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그들이 유능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프로그램의 규칙과 절차 및 이 플로리다 레몬법의 규정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조정자와 중재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모니터하여야 한다.

(k) 프로그램은 반드시 적격이 인정된 소비자클레임에 대하여 프로그램 행정가가 소비자로부터 클레임을 접수한 이후 70일 이내에 모든 조정과 중재를 끝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프로그램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 해도 이는 합의나 중재결정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소비자와 각 제작자의 개개의 불평사항, 입장, 희망하는 해결방식을 포함하여 그 분쟁에 관한 모든 고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사자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에 제출된 서류의 사본들은 모든 분쟁당사자, 선정된 조정자, 선정된 중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l) 조정 회의와 중재 절차는 소비자가 참석하고 분쟁을 구두로 제시할 수 있도록 주 내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장소에서 열려야 한다.

(4) 법무부는 프로그램이 이 플로리다 레몬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를 모니터하여야 한다. 만약 프로그램이 자격이 없거나 또는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면, 분쟁은 681.109와 681.1095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이 제작사에 대하여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면, 적격 있는 소비자 분쟁에 잠재적으로 연루된 그러한 모든 제작자들은, 소비자에 의하여 중재가 요청되었고 분쟁이 중재적격이 있다고 법무부에 의하여 681.109에 따라 판단되었다면, 위원회에 의하여 진행되는 중재를 하기로 요구되어야 한다.

분쟁에 잠재적으로 연루될 몇몇 제작자들에 대하여 그 프로그램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작자와 연관된 분쟁의 소비자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그 자격이 상실된 프로그램에는 분쟁을 진행시키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5) 이 법의 681.1097규정 및 동 법규 하에서 법무부에 의하여 채택된 규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프로그램은 법무부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법의 681.1097규정 및 동 법규 하에서 법무부에 의하여 채택된 규칙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참가하는 제작자들에 대하여

120.536(1)와 120.54규정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법무부가 구체화한 행동을 이유로 그 절차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6) 프로그램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프로그램의 자격이 특정한 제작사에 대하여 상실된 경우, 프로그램의 관리자와 관련 제작사는 이 플로리다 레몬법이나 이 플로리다 레몬법 하에서 채택된 규칙에 위반된 제작자의 행동에 대하여 법무부에 의하여 통지되어야 하고 법무부에 의하여 규정된 룰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불충분함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리고 플로리다 레몬법 120규정에 따른 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보제공

되어야 한다.

(7) 프로그램 관리자, 조정자, 그리고 중재자는 이 플로리다 레몬법 하에서 지휘되는 조정 또는 중재와 관련한 조치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8) 프로그램 관리자는 중재심리의 기록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제기된 각 분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록은 프로그램의 관련 없는 기록들과 분리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이 플로리다 레몬법 하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보관되는 모든 기록들은 일반에게 공개되는 기록이어야 하며 합리적인 통지 하에 법무부의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분쟁의 최종 절차 이후 최소 5년간은 각 분쟁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보유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합의일이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합의서와 결정문의 사본을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규칙에 의하여 정하는 정보를 담은 분기별 그리고 연간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법무부는 120.536(1)과 120.54의 규정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위한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들을 도입할 수 있다.

#### **나. RV 조정과 중재 프로그램의 분쟁적격과 프로그램의 기능<sup>282)</sup>**

(1) 681.104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RV를 구입한 소비자는 우선 분쟁이 적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프로그램에 그 분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는 RV의 제작자 중 하나가 그와 같은 절차를 보유하고 있음에 관계없이 681.108에 따른 인증된 절차를 이용할

---

282) 681.1097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이러한 소비자는 681.1096(4)와 681.1097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의하여 진행되는 중재를 이용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2) RV를 구입한 소비자는 레몬법 권리기간동안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레몬법 권리기간 만료 후 60일보다 늦지 않도록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클레임은 신청서가 절차에 접수되면서 날짜스탬프도장이 찍힌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소비자의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신청은 이 프로그램에 규정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프로그램에 참가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서의 적격을 판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a)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소비자와 제작자는 프로그램관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이 거절의 통지는 거절의 이유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b) 프로그램 관리자가 분쟁을 거절하는 경우, 이 플로리다 레몬법 하에서 인정되는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플로리다 레몬법 하에서 발생하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고려된 문제에 관련되는 민사소송에서 분쟁을 거절하기 위하여 형성된 결정은 증거로서 제출될 수 있다.

(4) 조정은 조정협의 이전에 분쟁이 화해로 해소되지 않는 이상 소비자와 제작자 양측 모두에 대하여 의무적이다. 조정협의는 비밀이 유지되고 대립당사자주의의 절차에 기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여는 그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당사자 및 그들의 변호사에 한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합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대표되어야 한다. 그러한

클레임이 소비자가 제작자 또는 그의 공식 서비스 대행자에게 제작자의 명시적 품질보증 기간 중에 알림으로서 알려진 경우,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이 플로리다 레몬법에 의하여 커버되지 않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품질보증 클레임을 해결을 시도하기 위하여 조정협의를 범위를 확장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a) 신청이 적격이 있다는 결정 하에, 프로그램 관리자는 소비자와 연관된 제작자들 전부에게 적격이 있는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조정협약이 언제 열릴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지정된 조정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며, 프로그램의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연관된 제작자 전부에게 신청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고 각 제작자로부터 신청서상의 주장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그와 같은 답변을 지지하는 서류들의 사본과 함께 획득하여야 한다. 서면답변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규정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b) 조정자는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하여 선택되고 임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재정적 문제이든 아니든, 직업적, 사회적 혹은 다른 어떤 종류에 의하여든 조정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일방 당사자나 그의 변호사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사실에 기초하여 조정자를 기피할 수 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와 같은 기피를 고려하여야 하고 그것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피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면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 사건에 다른 조정자를 할당하여야 한다.

(c) 조정협약에서 조정자는 분쟁에 대하여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화해에 도달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조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정자는 당사자에게 화해를 강요할 수 없다.

(d) 조정협의를 끝나면, 조정자는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그 사건이 화해되었는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지의 결론을 통지하여야 한다.

(e) 조정협이가 교착상태로 종결되는 경우, 중재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즉시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분쟁은 중재절차로 이전된다는 점을 알리고 할당된 중재인의 신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f) 분쟁이 프로그램에 회부된 이후 어느 때이든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그러한 화해합의는 읽기 쉽게 글로 써서 소비자와 모든 관련 제작자들이 서명하여서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화해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1.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

2. 연관된 각 제작자의 이름과 주소

3. 대상 RV의 연식, 제작자, 모델, VIN

4. RV를 구입한 딜러십의 이름과 주소

5. 프로그램 관리자가 클레임을 접수한 날짜

6. 조정자 또는 중재자가 있는 경우 그의 이름

7. 합의 내용의 전부, 당해 차량이 제작자에 의하여 재취득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차량을 재취득할 제작자의 신원정보; 소비자 또는 제작자에 의하여 지불된 돈의 총액; 교환된 차량 또는 거래 보조로 소비자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차량의 연식, 제작자, 모델; 합의된 수리 또는 부품이나 악세사리의 교환에 대한 날짜, 시간, 장소, 합의의 본질과 그와 같은 수리나 교체에 대한 예상되는 소요시간; 당사자가 서명한 합의의 날짜로부터 40일을 넘지 않는 이행을하기로 확정된 시기

(g) 제작자가 합의에서 요구된 시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이행기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접수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프로그램 관리자는 분쟁이 중재로 이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중재 심리일정을 잡아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그 분쟁이 중재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분쟁은 거절되어야 한다.

(5) 중재절차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에 기하여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a) 중재심리는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하여 할당된 1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중재인은 이전의 조정협의를 수행한 조정인과 같은 사람이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재정적 문제이든 아니든, 직업적, 사회적 혹은 다른 어떤 종류에 의하여든 중재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일방 당사자나 그의 변호사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사실에 기초하여 중재자를 기피할 수 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와 같은 기피를 고려하여야 하고 그것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피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면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 사건에 다른 중재자를 할당하여야 한다.

(b) 중재인은 증인의 출석이나 기록, 서류 또는 다른 증거의 제출을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발부된 소환장은 전달되어야 하고, 중재에 참여한 당사자에 의하여 법원에 신청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법에 의하여 이행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c) 프로그램 중재절차의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을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이나 분쟁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을 반대신문할 수 있고 변호사에 의하여 소송대리될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것과 같은 증거법의 기술적인 규칙들은 이 프로

그램에 의한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재인은 중재심리를 녹음하여야 하고, 선서를 주재할 권한이 있다. 당사자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중재인이 그러한 검사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인은 차량을 검사할 수 있다. 그러한 클레임이 소비자가 제작자 또는 그의 공식 서비스 대행자에게 제작자의 명시적 품질보증 기간 중에 알림으로서 알려진 경우, 상호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이 플로리다 레몬법에 의하여 커버되지 않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품질보증 클레임을 해결을 시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클레임에 대한 중재인의 고려를 허용하기 위하여 중재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d) 프로그램 중재인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자체 신청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 소비자에 의한 계속의 요청은 프로그램 하의 모든 절차 완료에 대한 681.1096(3)에 정해진 기간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e) 중재인은 결정을 내림에 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에 밀접히 관련되는 품질보증과 이 플로리다 레몬법의 규정들을 포함한 모든 법적, 형평법적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f) 프로그램 중재인은 심리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하여진 양식에 읽기 쉽게 기재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소비자와 연관된 각 제작자들에게 결정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g) 제작자는 결정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그 중재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중재판정에 구체화된 구제를 받은 날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h) 제작자가 요구되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항소가 제기되지도 않은 경우, 소비자는 30일 이내에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불이행을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법무부에 제작자의 불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이 주 내에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중재판정을 확인받기 위한 명령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서는 제작자의 불이행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고 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법령과 규칙에 의하여 제공되는 통지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심리된다. 이 신청서는 민사소환의 전달에 대한 법규적 방식으로 전달된다. 소비자는 중재판정의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중재판정을 확인하는 법원의 명령서의 사본을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

(i) 당사자는 결정서면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요청서를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프로그램 중재인이 결정에 대하여 기술적인 정정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술적인 정정은 계산착오, 당사자 이름이나 RV에 관한 정보의 정정, 인쇄상 또는 철자의 오류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 결정의 기술적 정정은 항소기간이나 제작자의 이행기간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6) 달리 서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인 조정과 중재, 자격심사, 조정 절차, 중재심리 및 결정, 그에 대한 항소에 관한 이 섹션의 모든 조항은 플로리다 레몬법 120의 조항으로부터 면제된다.

(7) 중재인의 결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681.1095(10)와(12)에 규정된 방식과 시간에 따라 순회법원에 항소신청이 접수된 경우가 아닌 한 구속력이 있다. 681.1095(13)와 (14)는 접수된 항소에 적용된다. 프로그램 중재인의 소비자 편에 선 결정이 법원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은 중재판정의 금전적 가치, 중재판정의 확정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모든 비용, 제작자가 중재인의 결정을 받은 이후

40일을 넘는 기간동안 하루 \$25씩 발생하는 계속적 손해의 총합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이 제작자가 악의로 항소하였다거나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항소한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이나 사실의 어느 것에서도 재판에 회부될 논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총 배상액을 두 배로 산정하여야 하고 세 배로 산정할 수도 있다.

(8) 이 플로리다 레몬법하에서 이 프로그램에 따라 중재된 분쟁에 관하여 발생한 민사소송에서, 중재인의 결정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9) 법무부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120.536(1) 와 120.54에 따른 규칙을 도입할 수 있다.

#### 4. 레몬 소송

레몬법은 제작자의 비재송적 분쟁절차를 이용하였거나 법무부나 위원회에 분쟁해결을 구한 경우에 “레몬법 권리기간의 만료 이후 1년 또는 전치절차의 종료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 레몬법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승소한 소비자의 변호사비용을 배상받을 권리를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 레몬법의 위반은 제작자에 대하여 공정거래(Fair Trade) 위반 즉,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거래 관행을 성립시키므로 이에 대한 청구 및 연방 레몬법위반에 기한 청구 등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 가. 소비자의 구제<sup>283)</sup>

(1) 소비자는 레몬법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는 통상 품질보증인에 해당하는 제작자가 된다. 법원은 승소한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의 총합, 소송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적합한 형평한 구제의 총합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이 플로리다 레몬법 하에서 제기된 소송은 반드시 레몬법 권리기간의 만료 이후 1년 이내에, 또는 소비자가 비재송적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였거나 법무부나 위원회에 분쟁해결을 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 법무부, 또는 위원회의 최종적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3) 레몬법은 소비자가 다른 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나 구제수단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나. 딜러의 피고적격<sup>284)</sup>

---

283) 681.112 Consumer remedies.

- (1) A consumer may file an action to recover damages caused by a violation of this chapter. The court shall award a consumer who prevails in such action the amount of any pecuniary loss, litigation costs,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appropriate equitable relief.
- (2) An action brought under this chapter must be commenced within 1 year after the expiration of the Lemon Law rights period, or, if a consumer resorts to an informal dispute-settlement procedure or submits a dispute to the department or board, within 1 year after the final action of the procedure, department, or board.
- (3) This chapter does not prohibit a consumer from pursuing other rights or remedies under any other law.

284) 681.113 Dealer liability.—Except as provided in ss. 681.103(3) and 681.114(2), nothing in this chapter imposes any liability on a dealer as defined in s. 320.60(11)(a) or creates a cause of action by a consumer against a dealer, except for written express warranties made by the dealer apart from the manufacturer's warranties. A dealer may not be made a party defendant in any action involving or relating to this chapter, except as provided in this section. The manufacturer shall not charge back or require reimbursement by the dealer for any co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refunds or vehicle replacements, incurred by the manufacturer arising out of this chapter, in the absence of evidence that the related repairs had been carried out by the dealer in a manner substantially inconsistent with the manufacturer's published instructions.



## (1) 소비자에 의한 제조사 피고적격

원칙적으로 제작자의 품질보증과 별개로 딜러에 의하여 작성된 명시적 서면 품질보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딜러는 레몬소송의 피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제작자에 의한 제조사 피고적격

다만, 딜러에 의하여 수리가 행하여 졌고 그 수리가 문제가 된 경우, 제작자는 딜러에 의하여 행해진 문제의 수리가 제작자가 발간한 지침과 상당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딜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증이 없이는, 이 플로리다 레몬법에 의하여 제작자에게 발생한 차량의 환불 또는 교환 등을 포함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딜러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7절 환수레몬(Lemon Buyback)의 재판매제한 등 기타 주요 규정

### 1. 환수레몬(Lemon Buyback)의 재판매<sup>285)</sup>

#### 가. 제작자의 레몬 VIN(차대번호) 통지의무

레몬법에 따른 합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 차량의 반환(이렇게 환매수되어 반환된 차량을 ‘환수레몬(Lemon Buyback)’이라 부르기로 한다)을 수용한 제작자는 그와 같은 수용, 양도, 차량의 폐기 중 최후의 시점 이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 및 그 차량의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차량확인번호, 차대번호)을 알려야 한다. 이 재판매의 제한조항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합의”라는 용어는 분쟁이 절차나 프로그램에 회부되거나 위원회중재가 인증된 이후에 성립된 제작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 나. 재판매의 제한

제작자가 되사오게 된 레몬, 즉 환수레몬을 재판매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차량이 환매수된 레몬차량(Lemon Buyback)임을 반드시 밝히고 이를 수리하여 품질보증을 제공하여야만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다. 즉, 레몬법은 잠재적 양수인, 임차인 또는 매수인에 대하여 당해 차량의 결함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선명하고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 한, 그리고 제작자가 그와 같은 결함을 바로잡았고 이에 1년 또는 12,000마일 동안(둘 중 빨리 도달하는 것이 종기) 품질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 플로리다 레몬법 또는 다른 주의 유사

---

285) 681.114

한 법규에 따른 합의, 판결 또는 판정을 이유로 반환된 차량에 대하여 이를 알면서 임대, 도매나 소매에서의 매매 또는 소유권의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공개문구에 관하여 법무부가 규칙에 의하여 양식,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2. 법무부의 집행권한<sup>286)</sup>

법무부는 본 레몬법의 규정과 그에 의하여 채택된 규칙의 준수를 강제하거나 반드시 지키도록 하게 할 수 있고 증인의 출석과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제작자에게 각 범법행위에 대하여 \$1,0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부과된 벌금으로 인한 수납액은 레몬법의 이행과 강제를 위한 기금으로 법무부의 “자동차품질보증신뢰기금(Motor Vehicle Warranty Trust Fund)” 로 귀속시켜야 한다.

## 3. 레몬법의 우선적 지위와 레몬법 위반 행위의 효력

### 가. 우선권<sup>287)</sup>

레몬법은 이 주에서의 차량의 구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품질보증 권리에 관하여 이와 유사한 카운티나 시의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나. 무효가 되는 합의와 차량 양수인의 권리<sup>288)</sup>

---

286) 681.110

287) 681.116

288) 681.115

레몬법에 의하여 인정된 소비자의 권리들을 포기, 제한 또는 면책하는 내용의 합의 또는 그러한 합의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러한 합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계약시 소비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는, 공공정책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 그리고 레몬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 차량의 취득자인 양수인에게도 확장되어 인정되어야 한다.

#### 다.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거래 관행<sup>289)</sup>

제작자에 의한 본 레몬법의 위반은 “플로리다주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거래법(Florida Deceptive and Unfair Trade Practices Act.)”<sup>290)</sup> 위반에 해당하여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거래 관행을 구성한다.

### 4. 기타

#### 가. 수수료<sup>291)</sup>

(1) 수수료로 \$2가 차량 딜러 또는 차량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차량의 구입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거나 차량의 리스 계약에 진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 소비자로부터 수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카운티 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대행자인 Private Tag Agency에게 송금되어야 한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소유권 등록이나 자동차 등록을 위하여 이 주의 밖으로 차량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 그 수수료는 국세청에 송부

---

289) 681.111

290) West's F.S.A. 501절 Consumer Protection의 Part II. Deceptive and Unfair Trade Practices

291) 681.117

되어야 한다. 행정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법무부에 차량품질보증 트러스트펀드에 예치되도록 매달 송금되어야 한다.

(2) 국세청은 플로리다 주법 212편 “Tax on Sales, Use, and Other Transactions” 의 규정에 따라 이 레몬법에 의하여 승인된 수수료를 관리하고, 수집하고, 이행시켜야 한다. 이 수수료는 212.11(1)(a)<sup>292</sup>에 따른 예정세금의 계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고, 212.12 하에서 제공되는 딜러의 신용은 수수료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회계와 평가, 경리장부와 기록의 작성과 보관, 이자와 미이행된 수수료에 대한 과태료 권한에 관한 212 편의 조항들은 이 레몬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 나. 입법권<sup>293</sup>

법무부는 레몬법의 각 조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120.536(1) and 120.54에 따라 규칙을 도입할 수 있다.

---

292) § 212.11 Tax returns and regulations

(1)(a) Each dealer shall calculate his or her estimated tax liability for any month by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1. Sixty percent of the current month's liability pursuant to this chapter as shown on the tax return;
2. Sixty percent of the tax reported on the tax return pursuant to this chapter by a dealer for the taxable transactions occurring during the corresponding month of the preceding calendar year; or
3. Sixty percent of the average tax liability pursuant to this chapter for those months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year in which the dealer reported taxable transactions.

293) 681.118

## 제8절 플로리다 레몬법 제정의 효과

### 1. 새로운 구제수단

1983년 플로리다 레몬법의 제정으로 소비자들은 기존의 플로리다 통일상법전이나 연방 레몬법에 의하여 인정되던 구제수단이외에도 새로운 구제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1988년 첫 번째 개정으로 중립적인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인 플로리다 신차중재위원회가 마련되었고, 승소한 소비자에게 변호사선임료와 기타 비용의 배상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1988년의 개정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 주게 되었다.<sup>294)</sup>

1988년 플로리다 레몬법<sup>295)</sup>의 개정당시 새로 신설된 위 신차중재위원회는 소송의 제기 없이도 소비자가 중립적인 포럼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양측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었고 불복하는 당사자는 순회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다. 첫 3해의 기간 동안 중재위원회는 약 1,700건의 사건을 접수하였고 \$25,000,000에 달하는 합의와 20개의 중재판정을 내렸다.<sup>296)</sup>

### 2. 플로리다 레몬법, 연방 레몬법, 플로리다 통일상법전상의 구제수단

---

294) H.R. OF FLORIDA, COMM. ON REGULATORY REFORM, FINAL STAFF ANALYSIS AND ECONOMIC IMPACT STATEMENT ON H.B. 854, at 10 (1988)

295) 플로리다주는 1983년 레몬법을 처음 제정하였다.

296) FLORIDA LEMON LAW ARBITRATION PROGRAM, 1989 ANNUAL REPORT 1

레몬 차량의 매수인은 연방 레몬법과 플로리다 레몬법, 그리고 플로리다 통일상법전에서 인정되는 각 구제수단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법 중에 일률적으로 어느 법이 항상 더 커다란 보호수단을 보다 쉽게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연방 레몬법을 검토하고 난 이후 플로리다 레몬법을 검토하게 되면 많은 곳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자동차에 관한 정의규정만 보더라도 플로리다 레몬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플로리다 주 안에서 신차를 구입하였어야 하고, 오프로드용 차량이나 10,000파운드가 넘는 트럭, 오토바이 등을 대상이 아니며 동법상의 레몬법 권리기간을 준수하여야만 하고 서면품질보증뿐만 아니라 명시적 품질보증도 레몬법의 적용을 받는 품질보증에 포함되며 전부나 일부 품질보증의 유형 구분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방 레몬법에서는 상당한 손상(substantial impairment)를 요건으로 레몬권 발생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플로리다 레몬법에서는 이를 레몬요건의 주요 요건인 부적합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요구한다.

플로리다 통일상법전에 의하면, 구매자는 차량의 가치가 상당히 손상된 경우 부적합한 차량의 수리를 철회할 수 있는데 구매자가 이러한 부적합성을 발견하였거나 아니면 발견하였어야 할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플로리다 레몬법이 레몬법 권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통일상법전은 수리철회권 행사기간의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 통일상법전은 수리철회를 즉시 허용하나 레몬법에서는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합리적인 부적합성 수리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상법전은 명시적 그리고 묵시적 품질보증양자가 인정되나 플로리다 레몬법에서는 오직 명시적 품질보증만이 인정된다.<sup>297)</sup> 통일상법전은 그 가치가 구매자에게 상당히 손상된 경우에 수

297) Duane A. Daiker, FLORIDA'S MOTOR VEHICLE WARRANTY ENFORCEMENT ACT:

령철회권을 구매자에게 인정함으로써 객관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구체요건으로 주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상법전은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레몬법은 제작자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좀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sup>298)</sup> 그리고 레몬법에서는 통일상법전의 상당한 손상(substantial impairment) 요건을 가치(value)뿐만 아니라 이용(use) 또는 안전(safety) 등도 포함하여 확장하고 있는 점<sup>299)</sup> 역시 통일상법전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플로리다주 레몬법은 레몬법 권리기간 내에 통지 등 요건을 구비하고 합리적인 수리의 기회를 제작자에게 부여한 이후에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차량의 부적합성을 넓게 인정받아 명시적 품질보증인인 제작자에게 직접 교환이나 환불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구할 수 있고 또한 비쟁송분쟁 해결절차에서 보다 신속히 권리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볼 때 기존의 다른 구제수단에 비하여 장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3. 관련문제

#### 가. 제작자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된 품질보증서상 조항의 효력

품질보증서 상의 조항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특히 결함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단순히 차량의 가치를 넘지 않는

---

LEMON-AID FOR THE CONSUMER,45 Fla. L. Rev. 253

298) 각주 297)의 전기 논문

299) 각주 297)의 전기 논문



범위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상해, 다른 재산적 손해, 기타 부수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작자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서상 조항의 해석이 문제되었다. 즉, 신차 품질보증서에는 제작자나 판매자의 책임을 결함이 있는 부품의 수리 또는 교환에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일정기간이나 주행거리동안 재질이나 조립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증수리를 약속하면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발생한 부품의 수리나 교환을 약속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책임제한을 기재한 조항에 의하여 신체에 발생한 상해에 대한 제작자나 판매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신체적 상해 등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은 매수인의 구제수단은 결함 있는 부품의 교환 또는 수리에 한정된다는 품질보증서의 조항은 신체적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신체적 상해로 인한 손해의 회복을 구할 수 없게 하는 효과가 없다고 보았으나 그러한 결함 있는 부품에 의하여 야기된 다른 재산에의 손해나 기타 부수 손해에 대하여는 각 주의 법원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sup>300)</sup>

#### 나. 신체적 상해(Injury)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제작자의 품질보증(Warranty)이 유효한 기간 동안 제작자 이외의 자가 제공한 보증수리(repair)로 인하여 야기된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 제작자가 책임을 진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제조물책임과 함께 문제된다. 부품이나 완성된 상품이 제작자의 지배를 벗어난 이후에 변형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일반적으로 제작자는 결함 있게 고안되거나 제작된 부품에 의하여 야기된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sup>301)</sup> 그렇

---

300) John S.Herband, J.D. Construction and effect of new motor vehicle warranty limiting manufacturer's liability to repair or replacement of defective parts, 2 A.L.R. 4<sup>th</sup> 576, § §1-2

301) 40 A.L.R.4th 1218, Francis M.Dougherty, J.D., Products liability: automobile

지만 품질보증 기간 동안 차량에 행하여진 수리는 제작자의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항상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리를 수행한 자가 결함이 있는 부품을 사용하였기 때문이거나 수리과정에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302)</sup> 몇몇 사건에서 법원은 수리는 개입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작자의 과실은 상해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라고 보아 제작자는 상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고 몇몇 법원에서는 수리하는 자가 제작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독립한 계약자였음을 이유로 제작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판시하기도 하였으나, 상당수의 법원에서는 품질보증기간에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분하고 제작자는 품질보증기간 전 기간에 걸쳐 차량의 결함 있는 디자인 또는 제작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며 그 이유로 품질보증하에서 부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매수인은 제작자와 거래하는 것이라고 믿도록 유도된다는 점을 들고 몇몇 법원은 수리자와 제작자간의 관리 또는 관계의 정도를 적시한 증거를 거시하기도 하였다.<sup>303)</sup>

#### 다.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작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005년 캘리포니아 주의 JOHNSON v. FORD MOTOR COMPANY 사건에서 주항소법원과 주대법원은 레몬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재판매할 때 회사전반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트랜스미션의 수리와 교환 기록을 숨긴 제작자에 대하여 보상적 손해배상 이외에 \$10 million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

---

manufacturer's liability for injuries caused by repairs made under manufacturer's warranty, § 1. Generally

302) 각주 301)의 전기 논문

303) 각주 301)의 전기 논문

다.<sup>304)</sup> BMW OF NORTH AMERICA, INC. v. Ira GORE, Jr.<sup>305)</sup>에서도 차량의 인도 전 손상을 입어 당해 차량을 재도색한 사실을 숨긴 제작자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였다.

## 라. 소결

레몬법의 특별법성은 합리적인 횡수의 수리시도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지닌 차량에 대한 교환 및 환불을 인정한 것이고 이 경우의 교환이나 환불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규를 두고 있다. 플로리다 레몬법은 수수료 등 당해 레몬거래에 부수하여 발생한 비용인 손해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환불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구제수단이 이 레몬법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가, 나의 문제는 연방 레몬법과 각 주의 레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연방 레몬법의 품질보증일반원칙에 의하여 연방 레몬법에 반하는 부당한 품질보증조항의 효력이 통제될 것이고 각 주의 레몬법 및 관련 주법에 따라 차량 자체에 발생한 손해, 기타 재산에 발생한 손해, 부수 손해나 신체에 발생한 손해 등 확대 손해,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에 대하여 각기 근거가 되는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하여 경합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04) 다만, \$10 million 의 징벌적 손해배상 수액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었다. 35 Cal.4th 1191, Greg JOHNSON v. FORD MOTOR COMPANY, No. S121723. June 16, 2005., U.S.C.A. Const.Amend. 14. Johnson v. Ford motor Co., 135 Cal. App. 4<sup>th</sup> 137, 37 Cal. Rptr. 3d 283 (5th Dist. 2005),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동 판결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되는 판례로 각주 301)의 판례와 State Farm Mut. Auto. Ins. Co. v. Campbell (2003) 538 U.S. 408, 123 S.Ct. 1513, 155 L.Ed.2d 585 등을 들고 있다. 포드사건의 항소심판결을 소개하고 있는 관련문헌으로는 Mark S. Dennison, Warren Freedman, Punitive Damages I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 20.7., 54 Am.Jur. Trials 443 참조

305) BMW of North America v. Gore (1996) 517 U.S. 559, 116 S.Ct. 1589, 134 L.Ed.2d 809 (BMW ).

## 제9절 주 레몬법의 공통요소

본 연구에서는 플로리다주의 레몬법을 대표적 예시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주법규정은 통일상법전과 같은 내용을 입법한 주법하에서 인정되던 표준적인 철회권에 더하여 중요한 소비자보호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sup>306)</sup> 그 이외의 주법들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sup>307)</sup> 첫째, 각 주에서 제정된 주 레몬법의 적용범위는 소비자인 매수인이 구매한 신차에 한정되고 이동식 주거나 다른 값비싼 내구소비재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sup>308)</sup> 다만, 차량을 교두보로 하여 일단 주 레몬법이 정립되고 나면 많은 주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법개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sup>309)</sup> 둘째, 제작자가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에도 불구하고 적용가능한 명시적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차량의 하자를 고치지 못하고 그 부적합성이 차량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 제작자는 운행이익을 그 차량을 교환하거나 상쇄할 만큼을 공제한 액수의 판매가격을 환불하여야 한다.<sup>310)</sup>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교환 또는 환불” 구제수단은 통일상법전 § 2-608의 철회가 성공한 경우와 유사하다.<sup>311)</sup> 어떤 주에서는 위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지만 어떤 주에서는 제작자에게 있는 경우도 있다.<sup>312)</sup> 셋째,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는 보통 4회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313)</sup> 이와 같은 “4 스트라이크 후 아웃” 규칙(“four-strikes-and-you’re-out” rule)에 대한 대안으로 차량이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 총 30일 이상 하자수리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소비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

---

306) Barkley Clark and Christopher Smith, *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 7:19

307) 각주 306) 전기 저서

308) 각주 306) 전기 저서

309) 각주 306) 전기 저서

310) 각주 306) 전기 저서

311) 각주 306) 전기 저서

312) 각주 306) 전기 저서

313) 각주 306) 전기 저서

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는 점을 들 수 있다.<sup>314)</sup> 넷째, 이와 같은 4회의 시도 또는 30일의 운행정지는 통상 적용가능한 품질보증에 규정된 명시적 품질보증기간 또는 1년 등의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그 기간 내에 판매자에게 통지할 것이 요구된다.<sup>315)</sup> 어느 주에서는 제작자는 반드시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sup>316)</sup> 어느 주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적용가능한 명시적 품질보증기간이 2년, 18,000마일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됨으로서 소비자의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권리도 확장된다.<sup>317)</sup> 다섯째, 만약 제작자측에서 제3자에 의한 중재가 가능한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선행적으로 밟아야만 한다.<sup>318)</sup>

만약 주 법이 레몬소송의 변호사비용을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레몬법에 대한 스위트너로서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의 상황을 명하는 권한을 법원에 인정하고 있는 연방 레몬법상의 청구가 소장에 병합되지 않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sup>319)</sup> 표준적인 주레몬법에 의할 때 교환이나 환불의 구제수단은 오직 제작자가 하자치유를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이후에야 인정되므로, MMWA에 의하여 요구되는 “cure”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방법하에서의 변호사비용의 상황을 구하는 장애도 사라진다.<sup>320)</sup> 요컨대, 차량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상품에 대한 통일상법전의 소비자 철회 사건에서 MMWA에 기한 청구가 병합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차량이 연루된 품질보증위반사건의 주 레몬법에 대하여는 연방 레몬법 MMWA가 병합될 수 있는 것이다.<sup>321)</sup>

314) 각주 306) 전기 저서

315) 각주 306) 전기 저서

316) 각주 306) 전기 저서

317) 각주 306) 전기 저서

318) 각주 306) 전기 저서

319) 각주 306) 전기 저서

320) 각주 306) 전기 저서

321) Barkley Clark and Christopher Smith, 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 7:19

## 제7장 레몬 조항, 레몬 법칙, 레몬 추정

### 제1절 서

연방 레몬법과 주 레몬법 중 1개를 선정한 플로리다주 레몬법 이렇게 두 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함으로써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 특히 신차의 품질보증에 대한 미국법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연방법이든 주법이든 레몬법을 레몬법으로 결정짓는 정체성(Identity)은 “레몬 조항”이다. 즉, 매수한 신차가 “레몬”인 경우에는 기존의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레몬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제작자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레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이를 실제로 실현시키기에 적합한 절차(변호사 비용구상관련 근거규정포함)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레몬법의 정체성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레몬인가, 연방 레몬법과 주 레몬법에서 레몬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레몬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보다 선명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레몬으로 인정되어 레몬 조항이 적용되었을 때의 특별한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선명한 이해 역시 중요할 것이다. 레몬 조항에 의한 레몬권 행사의 실제법적 효과는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는 권리의 종류만 언뜻 형식적으로 보면 사실 획기적이지 않아 보인다. 즉, 기존의 동산매매계약관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효과인 것처럼 보인다.

레몬 조항의 획기적인 특별법성은 연방 레몬법 제정의 의의에서 간략히 서술한 바와 같이 자동차매매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작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및 “정량화, 계량화, 법칙화”라고 생각한

다. 즉, 권리발생요건으로서 “레몬, 레몬법칙을 통한 레몬추정”, 권리행사의 효과로서 환불범위까지 수학공식으로 “계량” 해 두고 있는 점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연방 레몬법과 몇 개 주 레몬법의 레몬조항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레몬” 요건과 그 효과 등을 분석하여 기존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던 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차이점을 확인함으로써 “레몬 조항, 레몬 법칙, 레몬 추정, 정량화, 계량화, 법칙화” 로 표현할 수 있는 미국 레몬법의 특별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sup>322)</sup>

## 제2절 연방 레몬 조항

### 1. 레몬조항의 내용

연방 레몬법은 상품(또는 그 부품)이 품질보증인에 의하여 그 상품의 하자 또는 오작동(defect or malfunction)을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가 이루어진 후에도 하자 또는 오작동이 지속되는 경우, 품질보증인은 반드시 소비자로 하여금 그 상품 또는 부품의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sup>323)</sup>

---

322)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레몬법에 대하여 본격적인 민사법적 연구를 한 국내문헌이 전무한 상태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장의 부분 역시 해당 미국 주법 규정을 연구자가 직접 번역하여 옮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내용 및 심지어 하나의 주법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문의 선택조차도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견해에 불과하고 국내문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음을 미리 밝혀 둔다.

323) MMWA § 2304

## 2. 레몬권의 발생요건과 내용(레몬권 행사의 효과)

위 연방 레몬조항의 규정내용으로부터 분석할 수 있는 레몬권의 발생요건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레몬권의 발생요건(“레몬” 요건)

- ① 상품 또는 그 부품에 하자 또는 오작동이 존재할 것
- ② 그 하자 또는 오작동을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가 이루어졌을 것
-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 또는 오작동이 지속될 것

### 나. 레몬권의 내용(레몬권 행사의 효과)

- ① 권리의 귀속주체 : 소비자
- ② 권리의 상대방 : 품질보증인
- ③ 권리의 내용 : 상품 또는 그 부품의 추가적인 비용이 없는 환불 또는 교환
- ④ 선택권의 귀속 : 이러한 환불 또는 교환의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다.

## 제3절 주 레몬 조항

처음으로 주 차원의 레몬법을 제정함으로써 다른 주의 모델로 기능하였던 코네티컷주의 레몬조항과 캘리포니아 레몬조항, 그리고 연방 레몬법과 비교하며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플로리다주 레몬조항을 검토하기로 한다.<sup>324)</sup>

<sup>324)</sup> 이 절에서는 앞 부분에서 각 주의 레몬법이 체계나 내용에 있어 동일하지 않고 조



## 1. 코네티컷주 레몬 조항<sup>325)</sup>

### 가. 레몬조항의 내용

(a) 이 법에서 사용되는 (1) “소비자”란 재판매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차량을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 명시적 품질보증의 존속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양수한 자, 품질보증상의 의무를 이행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를 의미하고, (2) “차량”이란 승용차, 승용과 상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중 이 법이 정한 것으로서 이 주 내에서 팔리거나 임대된 것을 의미한다.

(b) 신규 차량이 적용가능한 명시된 품질보증의 모든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가 그와 같은 부적합성을 차량이 고객에게 처음 인도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첫 23,000마일의 운행이 이루어진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제작자나 그의 대리인 또는 그의 공식 딜러(이하 ‘제작자 등’이라 한다)에게 알린 경우, 그 제작자 등은 그 차량을 그 명시적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수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수리가 적용기간의 만기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금씩 조금씩 다르다고 기술한 바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공통되는 개념은 무엇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자”의 판단기준이 추정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정량화, 계량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민법처럼 “하자담보책임”이나 “하자”라는 일반 조항이나 불확정적 가치판단개념으로 구성된 추상적 요건 하나만을 규정한 채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게 하는 입법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미국의 주요 주 법의 레몬조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소개도 하고자 하였다. 즉, 해당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한 후 재구성하여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법조문의 내용 자체를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직접 번역하여 서술하여 직접 소개를 한 이후에 이 내용을 분석하여 요건과 효과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하 이 절의 다른 주 레몬조항도 동일하다. 다만, 코네티컷주의 레몬 조항은 워낙 모델법적 역할을 하는 조항이어서 C.G.S.A. § 42-179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였지만, 캘리포니아주나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조문 중 원칙적으로 레몬권에 관련되는 항이나 목을 인용하고 절차에 관련한 항이나 목 부분은 생략하는 방식으로 한 조문의 내용을 전부 다 인용하지 않고 한 조문 중 항과 목 단위로 선별적 인용하였다.

325) C.G.S.A. § 42-179

(c) 어떠한 소비자도 제작자에게 본 조와 42-181부터 42-184에 이르는 조문에 기한 주장을 통지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다만, 제작자가 현저하고 명백하게 품질보증 또는 개별 소유자용 사용설명서상에서 소비자가 차량의 환불이나 교환을 받기 위하여는 서면의 부적합성 통지가 요구된다는 점을 밝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작자는 소비자가 그와 같은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 곳의 이름과 주소를 품질보증서나 개별 소유자용 사용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d) 제작자 등이 합리적인 횡수의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차량의 사용, 안전 또는 가치를 해하는 결함이나 상태를 수리 또는 교정함으로써 그 차량을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작자는 그 차량을 소비자가 수락할만한 새로운 차량으로 교환하거나 소비자의 차량반환을 수락하고 소비자, 임대인 또는 유치권자에게 다음을 환불하여야 한다.

(1) 계약가격의 전부, 하부코팅비용, 딜러의 준비나 수송비용, 설치된 옵션상품 비용 등을 포함하고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2) 판매세, 면허와 등록비용, 이와 유사한 정부부과비용 등 모든 부수적 손해,

(3) 소비자가 부적합성을 제작자 등에게 알린 후 차량이 수리를 이유로 운행하지 못하된 이후의 후속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재정적 비용, 그리고

(4) 42a-2715에 규정된 손해에서 소비자가 그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차감한 수액

딜러의 수리가 제작자의 지시에 상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가리키는 증거가 없이는 어떠한 공식 딜러도 환불이나 교환에 대하여 제작자에게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환불이나 교환은 소비자, 임대인

또는 유치권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적인 운행이익은 분모를 120,000마일로 하고 분자를 동 차량의 제작자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기 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거리로 한 분수에 차량의 계약가격전부를 곱하여 얻어진 금액이어야 한다.

(e) 다음 각 경우에는 차량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명시적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소비자에 대한 최초 인도일로부터 2년 또는 첫 23,000운행거리에 이르는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같은 부적합성·고장·불량으로 4번 이상 제작자나 그의 지정된 기관 또는 공식딜러에 의한 수리를 받았으나 그 부적합성·고장·불량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2) ‘(1)’의 기간 동안, 수리를 이유로 차량이 운행하지 못한 기간이 누적합계로 30일 이상에 이르는 경우

상기 2년 또는 30일 기간은 전쟁, 침입, 파업, 화재, 홍수 또는 기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객이 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제작자, 그의 대리인 또는 공식딜러가 그 부적합성의 수리를 위한 시도를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적합성을 수리하기 위하여 제작자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공식딜러에 의한 시도가 최소한 한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본 조에 기한 어떠한 주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f) 차량의 부적합성이 그러한 차량의 운행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 그러한 부적합성을 수리하기 위하여 제작자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공인된 딜러에 의하여 명시된 품질보증기간 또는 소비자에게 차량이 처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동

안의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 2회의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부적합성이 지속되는 경우, 그 차량을 적용가능한 명시적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g) (1) 이 법에 의하여 또는 이 법의 적용에 따라 이루어진 문제제기와 관련한 분쟁의 합의절차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이 요구됨으로써 반환된 차량은 재판매나 임대 이전에 당해 차량이 그와 같은 사유로 반환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대한 현저하고 명백한 서면공개 없이는 재판매, 양도 또는 임대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공개는 차량에 부착되어야 하고 판매나 임대의 어느 계약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자동차과 위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의 문구와 양식을 지정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그 차량이 더 이상 결함이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이후에 그와 같은 공개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h) 제작자가 검찰총장으로부터 관련법 규정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를 설립한 경우, 환불과 교환에 관한 본조의 (d)에 의한 하위규정은 그와 같은 절차를 전치적으로 밟지 않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나. 레몬권의 발생요건(레몬 인정 요건)**

연방 레몬조항에 비하여 코네티컷주 레몬조항은 상당히 구체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코네티컷주 레몬조항에 기한 레몬권의 발생요건을 분석하여 본다. 레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차량이 부적합성이 있는 레몬으로 판명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요건으로 차량의 “부적합성을 수리하기 위한 제작자측의 시도”가 최소한 한번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작자, 그의 대리인 또

는 공식딜러가 그 부적합성의 수리를 위한 시도를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적합성을 수리하기 위하여 제작자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공식딜러에 의한 시도가 최소한 한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코네티컷 레몬법에 기한 어떠한 주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 1) 실체적 요건

### 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품질보증부 차량의 소비자일 것

이 때의 “소비자”에는 신차의 매수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명시적 품질보증의 존속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양수한 자와 기타 품질보증상의 의무를 이행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판매의 목적으로 차량을 매매, 임차 등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비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차량이란 승용차에 한정되지 않고, 승용과 상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중 주 법이 정한 것으로서 주 내에서 팔리거나 임대된 것을 포함한다.

### 나) 차량이 “레몬”으로 인정될 것-부적합성, 합리적인 횟수의 치유시도

#### (1) 레몬 요건

신규 차량이 적용가능한 명시된 품질보증의 모든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가 그와 같은 부적합성을 차량이 고객에게 처음 인도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첫 23,000마일의 운행이 이루어진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제작자나 그의 대리인 또는 그의 공식 딜러(이하 ‘제작자 등’이라 한다)에게 알린(Report) 경우, 그 제작자 등은 그 차량을 그 명

시적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수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수리가 적용기간의 만기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그런데 ① 제작자 등이 ②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③ 당해 차량의 사용, 안전 또는 가치를 상당히 해하는 결함이나 상태를 수리 또는 교정함으로써 그 차량을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④ 부적합성이 존재하는 경우 제작자는 그 차량을 소비자가 수락할만한 새로운 차량으로 교환하거나 소비자의 차량반환을 수락하고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교환이나 환불의 대상이 되는 차량이 바로 레몬에 해당한다. 레몬 요건은 ①~④가 된다(단, 위 2년 또는 첫 23,000마일의 운행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④ 부적합성의 존재를 제작자 등에게 알린 것을 전제로 한다).

## **(2) 레몬 추정-4회, 30일, 2회, 2년, 23,000마일, 품질보증기간, 1년**

위 (1)의 레몬 요건은 차량의 사용, 안전 또는 가치를 상당히 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결함이나 상태에 대하여 “몇 번”의 수리시도를 하였을 때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레몬 요건의 구비 여부가 좌우되지만 이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있어 별다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코네티컷 레몬법은 일정한 횟수의 수리시도가 있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운행정지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이른바 “레몬 추정”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는 연방 레몬법과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면서 하자, 결함, 부적합성의 판단기준을 법에 의하여 정량화, 계량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3가지 경우(즉, a) 즉 4회의 수리시도, b) 30일의 운행정지, c) 사상위험 우려있는 부적합성의 경우에는 2회의 수리시도)에 신차를 적용가능한 명시적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레몬 추정이 발생한다. 이렇게 레몬 추정에 의하여 레몬으로 인

정받음으로써 레몬권(환불, 교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가) 일반적 추정- “4회” 또는 “30일” 운행정지(2년 또는 23,000마일)**

다음 ① 또는 ②의 경우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① 수리횟수기준- “4회”**

같은 부적합성·고장·불량으로 4번 이상 제작자나 그의 지정된 기관 또는 공식딜러에 의한 수리를 받았으나 그 부적합성·고장·불량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② 운행정지기간기준- “30일”**

수리를 이유로 차량이 운행하지 못한 기간이 누적합계로 30일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기준기간-차량인도일로부터 2년 또는 운행거리 23,000 마일 중 선도래기한**

레몬 추정요건의 기준기간은 차량 소비자에 대한 최초 인도일로부터 2년 또는 첫 23,000마일의 운행거리에 이르는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이다. 이 기준기간 동안 1)의 횟수 또는 2)의 누적기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2년 또는 30일 기간은 전쟁, 침입, 파업, 화재, 홍수 또는 기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객이 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나) 사상위험에 기한 추정요건의 완화- “2회” (품질보증기간 또는 1년)**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그 차량을 적용가능한 명시적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횃수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 ① 사상위험-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 야기 가능성

차량의 부적합성이 사상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차량의 부적합성이 있는 상태로 차량 운행시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수리횃수요건-2회의 수리시도

위와 같은 사상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적합성에 대하여 합리적 횃수의 수리를 시도하였음이 추정되기 위하여는 일반적 추정요건으로의 4회가 아니라 그 절반인 2회만으로도 족하다. 즉 위와 같은 부적합성을 수리하기 위하여 제작자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공인된 딜러에 의하여 최소한 2회의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부적합성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레몬 추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기준기간요건-품질보증기간 또는 1년

이러한 2)의 수리는 명시된 품질보증기간 또는 소비자에게 차량이 처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동안의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 2회 시도하였어야 한다.

## 2) 절차적 요건-통지요부,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전치 등

원칙적으로 어떠한 소비자도 코네티컷 주 레몬법상의 주장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작자에 대한 통지(Notify)를 이행하였을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다만, 제작자가 현저하고 명백하게 품질보증 또는 개별 소유자용 사용설명서상에서 소비자가 차량의 환불이나 교환을 받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당해 차량의 부적합성을 통지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힌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제작자가 검찰총장으로부터 관련법 규정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를 설립한 경우, 환불과 교환에 관한 레몬법 규정은 그와 같은 절차를 전치적으로 밟지 않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다. 레몬권의 내용-교환 또는 환불

레몬 추정을 통하여 레몬임이 인정된 차량에 대하여 제작자는 그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하여야 한다.

### 1) 교환의 경우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되는 새로운 차량이 소비자가 수락할만한 차량이어야 한다.

### 2) 환불의 경우

제작자는 소비자의 차량반환을 수락하고 레몬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소비자, 임대인 또는 유치권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환불 범위는 계약가격의 전부, 하부코팅비용, 딜러의 준비나 수송비용, 설치된 옵션상품 비용 등을 포함하고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판매세, 면허와 등록비용, 이와 유사한 정부부과비용 등 모든 부수적 손해도 환불시 포함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부적합성을 제작자 등에게 알린 후 차량이 수리될 이유로 운행하지 못하된 이후의 후속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재정적 비용, 그리고 부수적 손해액과 결과적 손해액<sup>326)</sup>에서 소비자가 그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차감한 수액 역시 환불되어야 한다. 이 때 소

---

326) C.G.S.A. § 42a-2-715

비자가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레몬법에 이미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즉, 합리적인 운행이익은 분모를 120,000마일로 하고 분자를 동 차량의 제작자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기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거리로 한 분수에 차량의 계약가격전부를 곱하여 얻어진 금액이어야 한다.

## 2. 캘리포니아주 레몬 조항<sup>327)</sup>

캘리포니아주는 하나의 절에서 자동차품질보증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역시 동 주만의 고유한 주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레몬법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에 대한 합리적인 횡수의 수리시도에 대한 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테너 소비자보호법(Tanner Consumer Protection Act)의 해당 부분, 자동차 소비자 통지법(Automotive Consumer Notification Act)의 해당부분 등을 MMWA의 품질보증원칙을 수용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법 차원에서 소비재 전반에 관한 품질보증을 규정하고 있는 송-베벌리 법(Song-Beverly Act)의 해당 부분 전반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는 레몬 추정 등 레몬 조항의 구조를 분석하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 가. 품질보증에 대한 규율<sup>328)</sup>-Song-Beverly Act

품질보증수리를 위한 어떠한 주문서나 수리견적서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문구를 주문서나 수리견적서의 앞면 또는 뒷면에 10포인트의 볼드체로 현저하고 선명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상품을 매수한 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이

---

327) West' s Ann.Cal.Civ.Code § 1793.22

328) West' s Ann.Cal.Civ.Code § 1793.1(a)(2)

상품을 서비스를 받거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품질보증기간은 품질보증수리를 위하여 매수인의 사용에서 벗어나게 된 총 기간만큼 연장된다.<sup>329)</sup> 만약 품질보증기간 내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품질보증은 그 결함이 수리되기 전까지는 만료하지 아니한다. 품질보증기간은 매수인의 통제 밖에 있는 상황으로 발생한 지연 때문에 보증수리가 행해질 수 없었던 경우 또는 보증수리가 그 결함을 치유하지 못하였고 매수인이 제작자나 매도인에게 그 수리의 실패를 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한 경우에도 품질보증기간은 역시 연장된다. 만약 합리적인 횃수의 시도가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이 고쳐지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당해 상품을 이용에 관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 위하여 반환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의 연장은 매수인이 다른 법에 의하여 가지는 보호나 구제수단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 나. 레몬 조항의 내용-Tanner Consumer Protection Act

(a) 이 부분은 태너 소비자 보호법(Tanner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 매수인에게 차량이 인도된 때로부터 18개월 또는 차량의 거리계상 18,000마일내의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다음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차를 적용가능한 명시적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횃수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329) 캘리포니아주법의 경우 이러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품질보증에 있어서 매도인의 상품수리에 대한 약속이나 시도가 품질보증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다(가령, Gray D. Spivey, J.D., 68 A.L.R.3d 1277, Promise or attempts by seller to repair goods as tolling statute of limitations for breach of warranty)

(1) 만약 당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 같은 부적합성이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고, 그 부적합성에 대하여 제작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2회 또는 그 이상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부적합성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최소한 한번 직접 제작자에게 통지한 경우

(2) 같은 부적합성에 대하여 제작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4회 또는 그 이상 수리가 이루어졌고 매수인이 부적합성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최소한 한번 직접 제작자에게 통지한 경우

(3) 제작자나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부적합성에 대한 수리를 이유로 차량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이후 총 누적합계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30일 기간은 제작자나 그의 대리인이 지배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제작자가 현저하고 명백하게 품질보증이나 개인소유자용 설명서에 밝힌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제작자에게 위 (1), (2)에 따라서 직접 통지할 것이 요구될 수 있다. 통지가 요구된 경우, 그 통지는 품질보증이나 개인소유자용 설명서에 구체화된 주소로 보내져야 한다. 이 추정은 증명책임에 영향을 주는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이고 소액 사건 또는 다른 공식 또는 비공식 절차를 포함한 어떠한 민사소송에서도 매도인에 의하여 주장될 수 있다.

(c) 자격이 인정된 제3자의 분쟁해결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매수인이 그 절차의 운영과 효과와 함께 그 절차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서면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요구된 대로 그 절차를 먼저 밟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b)의 추정을 주장할 수 없다. 통지의 발송 지연으로 야기된 어떠한 불편으로부터 매수인이 고통 받게 되는 경우 이 통지는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그 제2자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작자나 그의 대리인이 그 절차에서 도출된 판정을 매수인이 수락한

이후에 그 판정상의 이행의무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인의 권리를 강제이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b)의 추정을 원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이 인정된 제3자 분쟁해결절차에서의 사실확정과 판단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연방이나 캘리포니아의 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송의 기간은 누구에 대하여도 소장이 위 제3자분쟁해결절차에 제출된 때부터 그 판정이 나온 날짜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그 판정이 받아들여진 경우로서 제작자나 그의 대리인에 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판정으로부터 요구된 날짜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사이의 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d) 이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아래의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 “부적합성”이라 함은, 매수인이나 임차인에 대하여 신차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해할 수 있는 부적합성을 의미한다.

(2) “신차”라 함은, 개인이나 가족 또는 가정생활을 위함을 본래 목적으로 하여 구입되거나 사용된 신차를 의미한다. “신차”는 또한 총중량 10,000파운드 이하로서 이 주에서 등록된 차량이 5대 이상을 넘지 않는 동업, 책임제한회사, 연합 또는 기타 법인격체를 포함한 개인 등에 의한 업무를 본연의 목적으로 하여 구입되거나 사용된 신차를 의미한다. “신차”에는 샤시, 샤시 캡, 그리고 모터홈 중 거주를 위한 부분을 제외한 추진력을 내기 위한 부분, 딜러가 소유한 차량, 그리고 시승용 차량 또는 제작자의 신차 품질보증과 함께 팔리는 다른 차량을 포함한다. 그러나 오토바이 또는 오토도로에서 벗어나서 사용되거나 운행되기 때문에 자동차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승용 차량이라 함은 딜러에 의하여 그 차량과 동종 또는 유사의 모델이나 타입의 차량의 공통된 특성과 품질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차량을 의미한다.

(e) (1) 아래의 (2)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매수자 또는 원 임차인이 경험한 부적합성의 본질이 구매희망자나 임차희망자 또는 양수희망자에게 현저하고 명백하게 공개되고 그 부적합성이 교정되었으며 제작자가 새로운 매수인,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1년의 기간 동안 그 차량이 부적합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서면으로 품질보증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2)(d)규정 또는 다른 주의 유사규정에 의하여 제작자에게 매수인이나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된 차량을 도소매 여부를 불문한 때, 임대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차량을 자동차정비교육과정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육기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성의 본질이 양수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위 (1)의 나머지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 레몬권의 발생요건(레몬 인정 요건)

### 1) 실체적 요건

#### 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품질보증부 차량의 소비자일 것

이 요건은 코네티컷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품질보증기간의 연장사유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법은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신차”에 대하여 총중량이나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단순히 개인적 목적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업목적의 차량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샤프시, 샤프시 캡, 그리고 모터홈 중 거주를 위한 부분을 제외한 추진력을 내기 위한 부분, 딜러가 소유한 차량, 그리고 시승용 차량 또는 제작자의 신차 품질보증과 함께 팔리는 다른 차량의 포함 인정, 오토바이 또는 오토로지 도로에서 벗어나서 사용되거나 운행되기 때문에 자동차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차량

의 불포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나) 차량이 “레몬” 으로 인정될 것-부적합성, 합리적인 횃수의 치유시도

### (1) 레몬 요건

캘리포니아 주법은 “만약 합리적인 횃수의 시도가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이 고쳐지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당해 상품을 이용에 관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 위하여 반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역시 “레몬” 에 대하여 합리적인 횃수의 시도가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이 고쳐지지 아니한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레몬요건의 핵심개념인 결함 또는 “부적합성” 에 대하여 매수인이나 임차인에 대하여 신차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2) 레몬 추정-4회, 30일, 2회, 18개월, 18,000마일

연방 레몬법과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면서 하자, 결함, 부적합성의 판단기준을 법에 의하여 정량화, 계량화한 이른바 “레몬 추정” 규정을 둔 점, 레몬 추정에 있어서 일반적 추정과 사상위험에 기하여 추정요건을 완화한 점 등의 기본적인 구조는 코네티컷주의 레몬 추정과 유사하나, 기준기간이 18개월 또는 18,000마일로 단축되어 있고 사상위험에 기한 추정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기간을 일반적 추정과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코네티컷주와의 차이점이다. 소액사건 또는 다른 공식 또는 비공식 절차를 포함한 어떠한 민사소송에서도 매도인에 의하여 반박될 수 있는 추정이라는 점, 이와 같이 이 추정은 증명책임에 영

향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레몬 추정편에서 함께 규정한 점도 차이점<sup>330)</sup>이다. 아래의 3가지 경우(즉, ㉠ 즉 4회의 수리시도, ㉡ 30일의 운행정지, ㉢ 사상위험 우려있는 부적합성의 경우에는 2회의 수리시도)에 신차를 적용가능한 명시적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레몬 추정이 발생한다. 이렇게 레몬 추정에 의하여 레몬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레몬권(환불, 교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가) 일반적 추정- “4회” 또는 “30일” 운행정지(18개월 또는 18,000마일)

#### ① 수리횟수기준-최소 “4회”

같은 부적합성에 대하여 제작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4회 또는 그 이상 수리가 이루어졌고 매수인이 부적합성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최소한 한번 직접 제작자에게 통지한 경우

#### ② 운행정지기간기준- “30일”

제작자나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부적합성에 대한 수리를 이유로 차량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이후 총 누적합계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30일 기간은 제작자나 그의 대리인이 지배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 ③ 기준기간-차량인도일로부터 18개월 또는 운행거리 18,000 마일 중 선택도래기한

매수인에게 차량이 인도된 때로부터 18개월 또는 차량의 운행기록계상 18,000마일내의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위 ①, ② 중 하나

---

<sup>330)</sup> 물론 코네티컷주의 레몬 추정도 추정이지 간주가 아님은 캘리포니아주의 레몬 추정과 동일하다.



이상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하여야 한다.

## (나) 사상위험에 기한 추정요건의 완화 “2회” (18개월, 18,000마일)

### ① 사상위험-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 야기 가능성

만약 당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 같은 부적합성이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수리횟수요건-최소 2회의 수리시도

그 부적합성에 대하여 제작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2회 또는 그 이상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부적합성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최소한 한번 직접 제작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③ 기준기간요건-18개월 또는 18,000마일 운행기간 중 선도래기한

매수인에게 차량이 인도된 때로부터 18개월 또는 차량의 거리계상 18,000마일내의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하여야 한다.

## 2) 절차적 요건-통지요부,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전치 등

### ① 통지요건

제작자가 현저하고 명백하게 품질보증이나 개인소유자용 설명서에 밝힌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제작자에게 부적합성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통지를 직접 하여야 할 것이 요구될 수 있다. 통지가 요구된 경우, 그 통지는 품질보증이나 개인소유자용 설명서에 구체화된 주소로 보내져야 한다.

## ②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의 전치주의

자격이 인정된 제3자의 분쟁해결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매수인이 그 절차의 운영과 효과와 함께 그 절차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서면의 통지를 받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그 절차를 먼저 밟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레몬 추정을 주장할 수 없다.

## 라. 레몬권의 내용-교환 또는 환불

레몬 추정을 통하여 레몬임이 인정된 차량에 대하여 제작자는 그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하여야 한다. 환불의 경우 원래의 매매가격에서 매수인이 부적합성을 발견하기 전까지 매수인이 차량의 운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sup>331)</sup>

## 3. 플로리다주 레몬 조항

플로리다주 레몬 조항은 이미 플로리다주 레몬법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이미 검토한 바 있는데 주 레몬조항의 원조격인 코네티컷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레몬 조항에 비하여 보다 최근에 제정되다 보니 코네티컷 레몬 조항과 캘리포니아 레몬 조항간의 차이에 비하여 좀 더 큰 차이가 있다. 가령 “레몬법 권리 기간(Lemon Law rights period)” 를 차량인수 일로부터 24개월로 정의하고 있다든지, 레몬 추정에 있어서 사망이나 중상해의 위험이 있는 차량의 결함에 대한 추정을 일반적인 추정과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은 점, “제작자에게 부적합성을 치유할 마지막 시도를

---

331)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레몬권 행사의 효과인 교환, 환불을 보다 상세히 논하기 위하여는 신차에 한하지 않고 소비자 전반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품질보증법 전반을 다루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서는 한정적으로만 검토한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는 내용을 레몬권 발생의 요건으로 규정한 점, RV와 기타 자동차를 구별하여 규율한 점, 절차면에서 보다 세분화된 규율을 하며 통지의무를 강화한 점,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도 다양한 종류로 나누어 인정하고 규율하고 있는 점, 레몬권 행사시 제작사의 환불의무이행기간을 40일로 원칙적으로 법정한 점 등은 대표적인 차이라 할 것이다.

### 가. 레몬조항의 내용<sup>332)</sup>

(1)(a) 동일한 부적합성 · 불량 · 고장(“부적합성 · 불량 · 고장”이라 함은 결함 또는 전반적 하자<sup>333)</sup>로서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상당히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작자나 공식서비스대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고, 남용, 과실, 변경 또는 변형에 기하여 발생한 결함 또는 전반적 하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sup>334)</sup>에 대하여 3번의 수리가 시도된 후, 소비자는 제작자의 마지막 수리기회를 주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등기 또는 고속 우편으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내에 소비자에게 답변하고 소비자가 그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비센터에 가서 해당 차량을 수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그 센터에 차량을 입고시킨 때로부터 10일(RV의 경우 45일)이내에 그 차량을 품질보증에 부합하는 상태로 수리하여야 한다. 만약 제작자가 소비자에게 답변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비센

---

332) F.S.A. § 681.104.

333) Fla. Admin. Code r. 2-30.001 Written Statement Explaining Consumer Rights Under Chapter 681, Florida Statutes; Hearings Before Florida New Motor Vehicle Arbitration Board. Condition - A general problem (e.g., vehicle fails to start, vehicle runs hot, etc.) that may be attributable to a defect in more than one part., West's Florida Administrative Code, Title 2. Department of Legal Affairs, Chapter 2-30. Florida Lemon Law 2-30.001 참조

334) F.S.A. § 681.101. (15)

터에서 수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위에서 정한 기간 동안 수리하지 못한 경우, “제작자에게 부적합성을 치유할 마지막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b) 만약 차량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적합성을 제작자나 그의 공인된 서비스대리인에 의하여 수리받기 위한 이유로 운행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설명서에 기재된 일상적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간을 제외한 누적합계 15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달하는 경우 소비자는 제작자나 그의 공인된 서비스 담당자가 그 차량을 검사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작자에게 등기 또는 고속메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a) 제작자 또는 공식 서비스 대행자가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품질보증에 부합하게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 제작자는 40일 이내에 그 차량을 환매수하여야 하고 구입가격 전부 중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상계만큼 적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소비자로부터 사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금을 수령하고, 소비자가 받아들일 만한 대체용 차량으로 그 레몬차량을 교환하여야 한다. 환불이나 교환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발생한 병행적 손해 및 예기치 못한 부수적 손해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교환보다 환불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없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환불 또는 교환을 수령할 때, 소비자, 유치권자, 또는 임대인은 제작자에게 깨끗한 소유권과 당해 차량의 점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b) 환불은 소비자와 기록상 이해관계자로 드러난 유치권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환불은 임차인이 임차비용을 받고 임대인은 임차비용을 제외한 임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기 임대 종료로 인한 불이익은 이 법 하의 대체 차량

이나 환불을 수령한 임차인에 대하여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세무서는 제작자가 세일즈 택스가 차량이 구입될 때 지불되었고 제작자가 그 세일즈 택스를 소비자, 유치권자 또는 임대인에게 환불하였다는 증거와 함께 환불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작자가 소비자, 유치권자 또는 임대인에게 이 법에 기하여 환불한 세일즈 택스를 제작사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3) 레몬법 권리기간 동안에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품질보증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a) 위(1)(a)의 내용대로 같은 부적합성·불량·고장에 대하여 제작자나 그의 공식 서비스 대행자에 의하여 최소한 3번 및 그에 더하여 제작자에 의한 그 차량을 고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서의 수리가 이루어졌고 그 부적합성·불량·고장이 여전히 존속되는 경우

(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적합성·불량·고장에 대한 제작자 또는 그의 공식 서비스 대행자에 의한 수리 때문에 차량소유자의 매뉴얼에 규정된 일반적인 정규 메인テナンス에 들어가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누적적으로 도합 3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RV의 경우 6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작자 또는 그의 공식 서비스 대행자는 (1)(b)의 내용대로 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 차량을 검사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최소한 한 번의 기회는 반드시 가졌어야 한다. 이 30일 또는 RV의 경우 60일이라는 기간요건은 전쟁, 침입, 파업, 화재, 홍수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간만큼은 연장될 수 있다.

(4) 레몬법에 기한 어떠한 주장에 대하여도 다음은 정당한 방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다른 정당한 방어 역시 주장에 대항하여 항변될 수 있다.

(a) 주장된 불량이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손상을 주지 않았다.

(b) 불량은 제작자나 그의 공식서비스대행자가 아닌 자의 사고, 남용, 과실 또는 승인되지 않은 부당 개조 또는 변형에 의한 것이다.

(c) 소비자에 의한 클레임이 선의로 제기된 것이 아니다.

## 나. 레몬권의 발생요건(레몬 인정 요건)

### 1) 실체적 요건

#### 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품질보증부 차량의 소비자일 것

플로리다 주법은 레몬법 적용범위의 차량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품질보증이나 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 역시 두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법과 같은 품질보증이 연장되는 사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 이외에 이 요건은 다른 주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 나) 차량이 “레몬” 으로 인정될 것-부적합성, 합리적인 횟수의 치유시도

##### (1) 레몬 요건

제작자나 공식서비스대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고, 남용, 과실, 변경 또는 변형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결함 또는 전반 상태적 하자로서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적합성 · 불량 · 고장”<sup>335)336)</sup>이 존재하여야 하고 동일한 부적합성 · 불량 · 고

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횃수의 치유시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 레몬으로 보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여타 주법과 같다. 다른 주법에서 부적합성, 결함, 하자 등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플로리다 주법에서는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전반 상태적 하자(Condition)”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2) 레몬 추정- “4회” 또는 “30일, 단 RV: 60일” 운행정지(기준: 24개월)

레몬법 권리기간인 24개월 동안에 다음의 경우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품질보증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횃수의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이와 같이 연방 레몬법과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면서 하자, 결함, 부적합성의 판단기준을 법에 의하여 정량화, 계량화한 이른바 “레몬 추정” 규정을 둔 점은 코네티컷주, 캘리포니아주의 레몬 추정과 유사하나, 기준기간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4개월이라는 레몬법 권리기간으로 확정되어 있고 마일 등 거리기준이 없다는 점, 사상위험에 기한 추정요건을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차이점이다. 아래의 2가지 경우(즉, ㉠ 즉 4회의 수리시도, ㉡ 30일 또는 RV의 경우 60일의 운행정지)에 신차를 적용가능한 명시적 품질보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횃수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레몬 추정이 발생한다. 이렇게 레몬 추정에 의하여 레몬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레몬권(환불, 교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335) Fla. Admin. Code r. 2-30.001 Written Statement Explaining Consumer Rights Under Chapter 681, Florida Statutes; Hearings Before Florida New Motor Vehicle Arbitration Board. Condition - A general problem (e.g., vehicle fails to start, vehicle runs hot, etc.) that may be attributable to a defect in more than one part., West's Florida Administrative Code, Title 2. Department of Legal Affairs, Chapter 2-30. Florida Lemon Law 2-30.001 참조

336) F.S.A. § 681.101. (15)

### ① 수리횟수기준-최소 “3회+제작자 1회”

같은 부적합성·불량·고장에 대하여 제작자나 그의 공식 서비스 대행자에 의하여 최소한 3번 및 그에 더하여 “제작자에게 부적합성을 치유할 마지막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제작자에 의하여 그 차량수리시도가 이루어졌으나 그 부적합성·불량·고장이 여전히 존속되는 경우

### ② 운행정지기간기준- “30일 (RV: 60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적합성·불량·고장에 대한 제작자 또는 그의 공식 서비스 대행자에 의한 수리 때문에 차량소유자의 매뉴얼에 규정된 일반적인 정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누적적으로 총합 3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RV의 경우 6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30일 또는 RV의 경우 60일이라는 기간요건은 전쟁, 침입, 파업, 화재, 홍수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간만큼은 연장될 수 있다.

### ③ 기준기간-레몬법 권리기간(차량인도일로부터 24개월)

## 2) 절차적 요건-통지요부,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전치 등

### ① 통지요건

플로리다주 레몬법은 다른 주에 비하여 통지의무가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동일한 하자에 대한 3회의 수리시도 이후,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 인한 운행정지총기간이 15일 이상에 달하



게 되는 경우 제작자의 마지막 수리기회를 위한 소비자의 제작자에 대한 등기 또는 고속우편으로의 통지의무가 있다.

## ②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의 전치주의

플로리다주 레몬법 역시 제작자측에서 마련한 적법한 비쟁송적 분쟁 해결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먼저 이용하여야만 레몬권 규정(교환 또는 환불)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sup>337)</sup>

### 다. 레몬권의 내용 - 교환 또는 환불

제작자 또는 공식 서비스 대행자가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품질보증에 부합하게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 제작자는 40일 이내에 그 차량을 환매수하여야 하고 구입가격 전부 중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상계만큼 적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소비자로부터 사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금을 수령하고, 소비자가 받아들일 만한 대체용 차량으로 그 레몬차량을 교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외에도 플로리다주 레몬법은 교환 또는 환불 범위에 대하여 환불이나 교환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발생한 병행적 손해 및 예기치 못한 부수적 손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소비자는 교환보다 환불을 선택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상계”란 합의일 또는 중재 심리의 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거리에, 세금과 정부수수료와 딜러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판매계약서에 나와 있는 구입가격을 곱한 금액을,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계약서에서 합의된 금액을, 120,000(RV의 경우에는 60,000)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는 점,<sup>338)</sup>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환불은

---

337) 681.108.

338) 681.102 (19)

임차인이 임차비용을 받고 임대인은 임차비용을 제외한 임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 조기 임대 종료로 인한 불이익은 이 법하의 대체 차량이나 환불을 수령한 임차인에 대하여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고 제작자가 세일즈 택스가 차량이 구입될 때 지불되었고 제작자가 그 세일즈 택스를 소비자, 유치권자 또는 임대인에게 환불하였다는 증거와 함께 환불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서는 제작자가 소비자, 유치권자 또는 임대인에게 이 법에 기하여 환불한 세일즈 택스를 제작사에게 환불 하여야 한다는 점 등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4. 소결

3개 주의 레몬 조항 내용을 분석하여 연방 레몬 조항과의 차이, 각 주 레몬 조항간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등을 살펴보았다. 레몬이라고 판단되는 하자를 가지고 있는 신차에 대하여 즉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레몬권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확정개념인 레몬이라는 하자의 판단기준을 레몬 추정규정입법을 통하여 계량화, 정량화하고 그 권리행사의 효과인 교환 또는 환불범위에 대하여 역시 계산공식까지 직접 입법하여 계량화, 정량화하였다는 것은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하자 판단 기준이나 손해배상범위의 결정 기준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 제4절 레몬 법칙과 레몬 추정

### 1. 하자와 레몬

결국 3개 주의 레몬조항내용을 분석한 결과, 레몬이란 하자가 있는 신차 중 특정한 유형의 하자나 결함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특정한 유형의 하자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동일한 유형의 고장이 발생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동일한 유형으로 하나의 결함이 발현된 것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적합성이 자주 발생하여 그에 대한 수리 때문에 신차의 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그것이다. 첫 유형을 “수리불능의 레몬”, 두 번째 유형을 “상대적 레몬”으로 칭하기로 한다.<sup>339)</sup>

#### 가. 수리불능의 레몬

동일한 유형의 하자, 결함 또는 고장, 불량 등 신차 품질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합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적합성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수리는 품질보증에 따라 제작자나 제작자의 대리인 또는 공식적인 서비스센터에 의하여 행하여졌을 것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는 수리불능이라고 판단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 나. 상대적 레몬

---

339) 역시 본 연구의 편의상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에 의한 명칭에 불과함을 밝혀 둔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유형의 부적합성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한 유형의 고장에 대하여 몇 번씩 수리시도를 했었어야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시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 경우에는 신차 품질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합성이 하나 또는 그 이상 지속적으로 발현하는 바람에 이를 수리하느라 차량을 구입한 목적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수리기간만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상품의 전반적인 ‘상태’가 불량한 신차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그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수리기간의 총누적합계”가 레몬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 2. 레몬 추정과 레몬 법칙을 통한 하자의 정량화, 계량화, 객관화

### 가. 레몬 법칙

품질보증이 되어 있고 품질보증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수리불능의 레몬이나 상태적 레몬일 가능성이 큰 신차에 대하여 그 차는 구입한 이상 계속 보유한 채로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만을 받으라고 하기 보다는 레몬에 대하여는 레몬을 반환하고 신속하게 다른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 레몬권이다. 이렇게 레몬일 때에는 레몬을 반납하고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한다는 것이 레몬 법칙(Lemon Rule)이다. 이러한 레몬 법칙은 연방 레몬법에 의하여 규정되었으나 위 두 유형에 대한 구분 없이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를 요건으로 하여 그 법칙이 적용되게 된다.

### 나. 레몬 추정

그런데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를 시도하였어도 품질보증내용대로 고쳐지지 않는 불량품이 레몬이고 이렇게 레몬이라고 판단되어야만 레몬 법칙에 따라 레몬권이 인정되는데, 레몬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어느 경우에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를 하였다고 “추정” 할 것이냐를 규정하는 레몬 추정규정이 주법에 도입된 것이다.

레몬 추정의 대상은 레몬 자체가 아니라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이고 이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를 시도하였다는 요건이 추정으로 충족됨으로써 당해 신차는 레몬으로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리불능의 레몬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4회의 수리시도를 한 경우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가 있었다고 추정하여 결국 수리불능의 레몬으로 판단하고, 상태적 레몬인 경우에는 수리로 인한 운행정지기간이 보통 30일 이상에 달하게 되면 역시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sup>340)</sup>가 있었다고 추정받게 되어 상태적 레몬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물론 18개월, 24개월 또는 18,000마일, 23,000마일 등 기준기간이 정해져 있고, 수리행위는 어느 유형이든 반드시 시도되어야 한다.

#### 다. 하자판단기준의 계량화, 정량화, 객관화

이와 같이 레몬요건인 특정한 하자는 레몬 추정규정에 의하여 계량화, 정량화, 객관화된 판단기준에 의하여 판단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품질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에 대하여 24개월 내 4회 수리 또는 수리입고로 30일 운행 못함 등 객관적, 정량적으로 계량화되어 있는 판단기준에 의하여 레몬인 하자의 존부가 판단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

340) 이 상태적 레몬의 경우에도 추정기준이 일자로 계량되더라도 추정의 대상은 여전히 연방 레몬법상의 레몬요건이자 주 레몬법상의 레몬요건인 “합리적 횃수의 수리시도”이다. 수리를 위하여 입고됨으로써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일수를 총합하여 기준으로 삼기로 입법적으로 결단한 것이므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적합성에 대하여 실제로 각각 몇 회의 수리시도가 있었는지는 상태적 레몬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증명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인 하자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주관설을 취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어서 사실상 객관화된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그리고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자에게 의미가 커진 일상의 소비재에 대한 품질보증이나 보증수리 분쟁의 해결에서부터 크루즈, 각종 가전, IT와 사물인터넷, 각종 전문기기나 특수장비, 신재생발전기, 원전의 부품, 항공기, 항공산업재, 군수품 등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고도로 전문화된 현대의 제품들과 관련된 품질보증 분쟁에서 하자 여부 판단기준의 정립방향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 3. 레몬 추정과 증명책임

레몬 추정은 간주가 아니고 추정되는 것으로서 제작자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든지 하는 반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추정규정의 요건만을 구비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추정으로 인한 실익을 매우 실효적일 뿐만 아니라 분쟁에 있어서 증명해야 할 내용도 보다 더 선명해진다. 즉, 주장된 부적합성이 객관적, 종국적으로 수리불능한 것이었는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여부나 수리가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수리횟수나 수리로 인하여 입고됨으로서 운행하지 못한 일자 총수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므로 수리의뢰서, 견적서 등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증명을 수월하게 해 낼 수 있다.

### 4. 종류물 불완전이행급부의 보완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레몬 조항

미국의 품질보증(Product Warranty)에 관한 문헌들도 연방 레몬법을 논하는 경우, 우리 민법상의 담보책임에 일응 비견될 수 있는 통일상법전의 담보책임(Warranty)를 함께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 품질보증(Product Warranty)에 관한 바클리 클락과 크리스토퍼 스미쓰 공저의 “품질보증법”<sup>341)</sup>의 레몬조항에 관한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 “연방 레몬법은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위한 강력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였다. 소위 “레몬 조항” 이라고 칭하여지는 조항 아래에서,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부 상품의 소비자는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품이나 그 부품이 여전히 결함이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 상품이나 부품의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통일상법전하에서 수령을 철회하기 위하여 요구되었던 그 채무불이행이 상품의 가치를 상당부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연방 레몬법 하에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가령, 품질보증인은 애초에 수리를 유일한 구제방안으로 확정할 수 있다. 통일상법전하에서는 정해진 구제방법이 “그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 (이는, 그 상황에서 매수인에게 적합한 구제를 주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하는 경우, 그 유일한 구제수단은 실패하고 매수인은 통일상법전에서 인정되는 전 구제수단의 모드를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 중 하나의 옵션은 수령의 철회, 계약의 해제를 통하여 구입가격의 환불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레몬 조항은 합리적인 숫자의 수리 시도도 실패하여 오작동이 계속되는 상품의 환불이나 교환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훨씬 적은 수의 장애만을 제시하게 된다.” 즉, 레몬 조항은 기존 통일상법전에서 인정되던 구제수단에 비하여 보다 더 간명한 요건과 경감된 입증책임하에서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구제수단을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342)</sup>

341) Barkley Clark and Christopher Smith의 “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 20:35. Remedies—Full warranties: The “lemon” provision

342) 물론 비쟁송적 절차의 선행강제라든지 합리적인 숫자의 시도 요건이 불명확하다든

## 5. 소결

연방 레몬법의 레몬 법칙 제정이후에도 제작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던 레몬인정기준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합리적인 횡수의 추정을 통한 레몬 추정규정이 주 레몬법에 의하여 보완적으로 입법됨으로써 레몬법이 의도하였던 입법목적은 실효적으로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되었고 연방 레몬법이 레몬 소송의 연방 관할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주 레몬법에 근거한 주장을 통상 같이 하게 되었다. 2015년 3월 연방거래위원회의 BMW MINI사례나 2015년 5월 C.F.R.개정 등을 참조해볼 때, 연방 레몬법은 불완전한 연방 레몬 조항보다도 품질보증 일반원칙조항의 연방적 적용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근래 들어 보다 부각되는 등 연방 레몬법의 핵심적 기능축이 이동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지 주 법에서 정한 3회나 4회의 요건은 실재를 고려할 때 불필요하게 가중된 요건이라든지 하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Joan Vogel, Squeezing consumers: Lemon Laws, consumer Warranties, And a proposal for reform, 1985 Ariz. St. L.J. 589



## 제8장 레몬법의 적용

### 제1절 다른 법과의 관계

#### 1. 권리 경합

레몬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로는 ① 연방 레몬법과 주 레몬법과의 관계, ② 연방 레몬법과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과의 관계, ③ 연방 레몬법, 주 레몬법, 주 통일상법전과의 관계, ④ 불공평하고 기만적인 거래로서 해당법의 위반, 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과의 관계, ⑥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과의 관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①~⑤의 경우에는 각 법에서 인정되는 각 권리는 모두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⑥ 연방 중재법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간단히 검토한다.

#### 2. 연방 중재법과의 관계

연방 레몬법의 통과 이후 바로 연방거래위원회는 동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중재를 금한다는 내용의 분명한 규칙을 공포하였다.<sup>343)</sup> 구속력 있는 중재는 동법을 제정한 의

---

343) Rules, Regulations, Statements, and Interpretations Under Magnuson-Moss Warranty

회의 의도에 반한다고 보며 “설정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충분한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고 보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입장에 기초하여 이 규칙들은 이러한 구속력 있는 중재를 금지하였다. 연방규칙집<sup>344)</sup><sup>345)</sup>은 “메카니즘의 결정은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구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비쟁송적 분쟁 해결 절차(Inform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를 규율하는 규칙들을 담고 있다. 나아가 그 규칙은 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에게 그 결정, 품질보증인이 의도한 조치, 소비자가 그 결정이나 품질보증인의 조치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경우 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공개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레몬법의 위 절차는 통상 동 법에 정하여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심사하는 패널이 있고, 그 판정은 소비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중재가 통상 법이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계약의 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고 그 중재조항은 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중재로 해결하도록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또 소비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점과 다르다. 이에 소비자의 품질보증계약을 규율하는 연방 레몬법상의 분쟁해결절차규정에 의한 중재규정의 효력이 연방 중재법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결국 소비자의 계약에서 연방 중재법의 중재규정이 연방 레몬법의 적용을 불가능하게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의회는 연방 레몬법의 중재가 구속력을 가질 것을 의도하지 않았고, 연방 레몬법에 의하여 유보된 연방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매우 넓으므로, 연방 레몬법은 연방 중재법과 상관없이 중재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346)</sup>

---

Act, 40 Fed. Reg. 60,168, 60,210-11 (Dec. 31, 1975). Jonathan D. Grossberg의 논문에서 재인용

344)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345) 이하는 16 C.F.R. pt. 703 (2006), § 703.5(j), § 703.5(d)(4), (g)(1)의 내용임

346) Jonathan D. Grossberg, 93 Cornell L. Rev. 659

## 제2절 연방거래위원회의 레몬법 적용사례

### 1. 결부조건부 품질보증의 금지

연방 레몬법 § 2302.(c)는 그 품목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요금 부과없이 제공되지 않는 이상, 서면 품질보증의 적용 여부를 브랜드, 업체나 회사명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조건으로 결부시키는 결부 약정(tying arrangement)을 금지한다.<sup>347)</sup> 즉, 상품의 품질보증인은 소비자의 그 상품의 사용에 대하여 브랜드, 업체 또는 회사명 등으로 특정되는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품질보증 조항 아래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외한)와 결부하여 조건부로 서면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1) 품질보증인이 당해 품질보증에 제공된 상품은 오로지 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회를 충분히 설득하는데 성공한 경우, 그리고 (2) 위원회가 그러한 면제는 공공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면제를 부여할 수 있고 상품의 품질보증인이 이러한 위원회의 면제를 획득하면 예외적으로 그러한 결부조건부 품질보증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위원회는 공보에서 위 면제의 적용대상을 모두 밝혀서 알려야 하고 이에 대한 일반의 코멘트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유와 함께 그러한 적용의 성질에 관하여 공보에 발행하여야 한다. 결함이 있는 부품의 교체만을 제공하고 공임에 대하여는 커버하고 있지 않은 한정적 품질보증하에서는, MMWA2302(c)는 소비자로서 하여금 그 교체할 부품을 설치함에 있어서 오직 품질보증인에 의하여 지정된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품질보증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행자는 그와 같은 부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할 사람이나 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347) 연방규칙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 700.10. § 102(c).(a) § 102(c)

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의 품질보증하에서는 부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sup>348)</sup>

이 결부조건부 품질보증금지원칙을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상품 자체에 대한 품질보증에 기한 소비자보호뿐만이 아니라 마켓의 성질과 관련산업의 분화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한다. 즉 소비자 선택권의 실질적 실현과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 마켓의 경쟁 촉진, 경쟁마켓의 구조 구축을 위한 전제가 되는 영업비밀이나 지적재산권에의 접근가능성확보문제, 대체부품의 사용과 그 인증 등 전반문제에 대한 출발점에 해당하는 원칙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관련 고부가가치 합성물내구소비재와 관련한 산업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민사적 거래, 경쟁법, 지적재산권법, 소비자보호법, 통상법 등의 법역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분야로서 법학연구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sup>349)</sup>

특히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같이 다양한 기술이 고도로 집적된 각종 부품의 총체적 합성물이면서 내구재의 성격을 갖는 종류물로서 장기에

---

348) C.F.R. § 700.10. § 102(c).(b)

349)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IT와 자동차의 융합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자동차관련업계에서 변호사이자 프로젝트태스크포스리더로서 수년간 법률과 사업 양자 모두에 걸친 실무를 실무경제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몸으로 체험하였다. 실제 연구자는 이 문제를 푸는데 첫 단추가 되어 줄 자동차관리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일 년이 넘는 시간동안 법개정과정을 혼자서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 OEM정비정보의 공개 등 소비자의 Right to Repair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유럽연합의 법이 가장 선진적으로 발전하여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문제인식조차도 전무한 새로운 영역이어서 당연히 축적된 자료는 있을 수도 없었고 전문가도 없었으며 사실 관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야였었기에 조사부터 시작하여 설득과 법규정 드래프트 등 모든 단계에서 스스로 할 수 밖에 없던 분야였다. 결국 작년 말에 개정이 이루어졌고 올해 초 시행되었다. 서론에서 기술하였듯 이 부분의 영역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레몬법도 그 전제나 기초로서 연구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Lemon Law를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방 레몬법의 결부조건금지조항과 관련 FTC사례의 소개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지로 한다.

걸친 사용기간 동안 합성물이나 그 구성부품 혹은 소모품에 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고 사고 등의 경우 그로 인한 손상에 대한 수리 등을 하여야 하는 등 동 상품의 보유기간동안의 소비행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안이 예정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코 경미한 금액이 아닌 금액의 거래가 예상되며 그와 관련된 산업이 마켓에서 매우 복잡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는 경우는 특히 이와 같은 판매 후의 품질보증의무이행(A/S)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 2. BMW of North America, LLC 사례<sup>350)</sup>

연방거래위원회는 BMW MINI의 품질보증서에 규정되어 있었던 결부조건과 면책약관에 대하여 연방 레몬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BMW MINI에게 혐의를 제시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5. 2. 5., BMW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2015. 3. 19., FTC에서도 이러한 합의에 최종 승인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MINI의 품질보증서에는 MINI의 소유자는 당해 차량의 유지관리와 정비를 MINI의 순정품만을 사용하여 MINI의 딜러에서만 하여야 한다는 점, 이러한 유지관리를 받았다는 것을 스탬프로 확인받으라고 하면서 이는 규칙적인 유지관리를 잘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알리면서, 소유자가 유지관리나 수리를 위하여 비순정품이나 공식딜러가 아닌 정비소를 이용한 경우 MINI는 이에 대하여

---

350) 2015 WL 1346181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In the Matter of BMW of North America, LLC a limited liability company. File No. 132-3150, February 5, 2015, 원문은 <https://www.ftc.gov/system/files/documents/cases/150319bmwcmpt.pdf>, <https://www.ftc.gov/system/files/documents/cases/150319bmwagree.pdf> 참조

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연방거래위원회는 MINI는 연방 레몬법 § 2302.(c) 결부조건부 품질보증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의 면제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품질보증서 상의 내용을 보유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연방거래위원회는 단지 다른 사람이 유지보수나 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의 품질보증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범위반이므로 BMW는 그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MINI 소유자에게 연방거래위원회 명령에 의하여 바로잡힌 그들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보며 이는 연방 레몬법상의 품질보증에의 결부조건부과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BMW of North America LLC는 이와 같은 MINI Division이 고객들에게 그들이 MINI 순정품과 MINI딜러서비스센터를 이용하여 유지관리와 수리를 하지 않으면 품질보증을 무효화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연방 레몬법을 위반하였다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였고 “BMW는 MINI의 부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연방 레몬법이나 연방거래위원회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내용이 사실이고 BMW가 믿을 수 있고 과학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지 않는 한, 차량의 안전한 사용 또는 그 가치의 보존을 위하여 소유자들은 반드시 오로지 MINI딜러나 MINI 센터에 의하여 정기 유지관리를 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리고 BMW가 무료로 그러한 부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MINI의 소유자들은 그들의 워런티가 무효화됨이 없이 제3자의 부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관계있는 MINI 소유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연방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3. 검토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거래 실제에서도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동차제작사의 공식서비스센터가 아닌 곳에서 유지보수관리나 정비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 없는 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 수리에 대하여도 위 비순정품이나 비공식서비스센터의 사용으로 품질보증 이 무효화되었다는 이유로 무상의 보증수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sup>351)</sup>

이와 같이 순정부품의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자동차제작사의 공식 서비스센터만의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자동차 제작사의 품질보증상 결 부조건관행에 대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매그너슨-모스 워런티 법을 적용하여 이를 중지시킴으로써 제작자와 소비자간의 힘의 불균형을 보완 하여 소비자의 부당한 선택권 제한을 해제하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기본 구조를 정립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는 판단을 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자동차보증수리관련분쟁에 대하여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아주 중요한 심결례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요근래 우리나라의 수입차 증가와 함께 수입차와의 사고 가능성도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산차주의 자동차보험료도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보험회사 역시 손해율이 높아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와 함께 등장한 제도가 바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sup>352)</sup>에서 2014년에 신설

---

351) 연구자는 실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수없이 경험하였다. 심지어 성능등급에 맞는 엔진오일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오일교환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한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엔진에 발생한 하자를 고객의 과실로 돌리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엔진 오일은 대표적으로 규격화된 제품이자 한 제조사에서 여러 브랜드사로 납품하기도 할 정도로 브랜드와 상관없이 당해 차종의 엔진매핑에 따라서 권장되는 성능등급의 오일만을 사용하면 족한 자동차소모품이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설치하였을 뿐이거나 커넥티드 카를 위하여 OBD단자에 국가가 산업보조금을 주어 육성한 IT벤처에서 제작을 하여 인증을 받고 이동전화통신사에서 판매하는 모듈제품 하나만을 연결하였을 뿐인데도 이는 불법개조이므로 제작사는 이러한 차량에 대하여는 보증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차량의 전장화나 IT와의 융합이 가속되면서 전기적 연결이 차량 전체를 덮을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352) 국내법의 조문은 [www.law.go.kr](http://www.law.go.kr)의 해당 법령에서 인용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472호, 2014.3.18., 일부개정]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

된 “대체부품인증제”이다. 동조 제①은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관여하는 인증제도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으로 고안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마찰 없는 시행을 위하여서는 부품의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부조건부 품질보증의 면에서 위 연방거래위원회의 사례 역시 참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질 인증 등)

-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 ② 대체부품 중 인증대상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 ④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대체부품의 제조사 등은 이를 대체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7]



## 제9장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제1절 미국 레몬법의 법역

미국의 레몬법이 우리 법제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하여 우선 동법은 어떤 법적 영역에 위치하여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가의 여부를 고민하여 보았다.

레몬법은 우선 권리의 실체적 내용의 면에서 협상권을 상실한 현대계약관계의 약자 소비자 보호, 상거래의 신의와 공평추구, 민상법상의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경합적 특칙, 권리행사요건의 계량화, 공정한 거래와 독점금지추구, 시장의 경쟁촉진, 소비자의 안전·불법행위법상의 제조물 책임과의 경합 등의 법적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권리행사의 절차적 내용의 면에서 연방제소적격부여, 비재송적 분쟁해결절차 전치주의 채택, 변호사 비용의 배상인정을 통한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의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의의가 있는 레몬법은 계약법의 본질을 띤 “거래상의 품질보증”에서 파생하였지만 미국 내에서 주로 소비자보호법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통일상법전의 담보책임과 연계되어 논의되면서, 소비자 대상 상품의 안전성관련성, 품질보증의 유형을 분류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 결부조건부 금지규정 등 제작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산업관련측면의 기능,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의 제재기능, 권리구제절차의 다양화 기능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실체적인 측면만을 우선 보았을 때, 우리 법제에서는 개인과 상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주로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의 경제법을 통한 소비자보호, 제조물책임법과의 경합, 자동차 관리법을 통한 품질관리 등이 교차하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②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③ 경제법과의 관계로서 소비자기본법과의 관계(피해보상기준, 분쟁해결기준 등),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④ 행정법과의 관계로서 자동차관리법과의 관계 등이 그 구체적인 관련법역이 될 것이다.

## 제2절 품질보증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법·판례현황

우리나라에는 ‘품질보증법’이 없다. 그렇지만 “품질보증”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법령은 상당수에 이른다. 그리고 그간 우리나라에는 품질보증에 관한 판례<sup>353)</sup>가 집적되지 않았는데 2014년 품질보증의 영역에서 두 개의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아래에서는 품질보증에 관한 현행 법령 현황·입법태도 등과 판례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레몬법이 있었다라면 위 판례 사안의 쟁점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리되었을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품질보증에 관한 현행 법령 현황<sup>354)</sup>

353) 하자담보책임관련 판례는 제외한다.

354) 물론 이러한 법령들이 모두 “품질보증”이라는 용어를,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자동차 등 상품의 “품질보증(Warranty)”의 의미와 같은 개념으로 엄두에 두고 사용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품질보증이라는 주체가 주로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필요 하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소비자기본법상 표시의 기준항목으로서의 품질보증기간 및 시행령 상의 품질보증, 그리고 시행규칙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질보증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현행 법령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sup>355)</sup>은 행정규칙으로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나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과 관련한 권한으로는 합의권고를 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인데,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당사자로부터 수락되거나 수락간주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sup>356)</sup>

그 외에는 항공법 및 그 시행령상의 항공기의 품질보증업무 등, 항공법상 품질보증체제인증이나 시행규칙상 품질보증프로그램구축이나 품질관리자 임명의 의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상 품질검사 합격기준으로서의 품질보증 적정성,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령상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상 품질보증체계, 방위사업법상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품질보증기관, 방위사업법 시행령상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상의 품질보증, 방산물자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품질보증,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련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상 국제품질

355) 이 중 “자동차”에 관한 분쟁유형과 그 해결기준에 “레몬법의 레몬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아주 짧게 존재한다. 그렇지만 표로 된 문서에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재되어 있어서 레몬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부분을 읽으면 레몬법칙(Lemon Rule)이 기재된 레몬조항(Lemon Provision)의 내용과 유사함을 파악하게 되지만, 레몬법을 모르는 사람의 시각에도 그러한 내용이 보일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는 법률이 아니고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서 여전히 소비자를 위한 강력한 특별구제수단으로서의 레몬법상의 레몬권과는 지위상 차이가 현저하다.

356) 이는 주 레몬법의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중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소비자승소인 경우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소비자패소인 경우 구속력이 없는 등의 효력을 직접 인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보증 등 업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상 제품의 품질보증, 한국해운조합법 상 사업내용으로서의 해운업자에 대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에 관한 사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품질보증계획,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상의 품질보증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인증의 면제사유 중 타법에 의한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등, 산업표준화법상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의 포함을 요구하는 인증심사기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상 시스템의 품질보증사항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상 기술지도의 대상·내용으로서의 정보통신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표시 등 품질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시행령상의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sup>357)</sup>, 재제조제품의 표시 사항 중 품질보증기간 등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의 품질보증서 제공의무, 원자력안전법 및 그 시행령상의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관련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관련증명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인 총리령상의 원자력품질보증정책수립 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 시행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제도의 연구 및 개선

35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5호, 시행 2013.12.12] 제21조의2(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등)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제품품질보증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이하 “인증재제조제품”이라 한다)의 품질이 신제품의 품질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재제조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신제품품질보증기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출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상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품질보증기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중 안전성평가 및 시설관리의 내용으로서의 설계품질보증, 구매품질보증, 시공품질보증, 보수품질보증 등, 석유광산보안규칙의 안정성평가 및 시설관리 내용으로 설계품질보증, 구매품질보증, 시공품질보증, 보수품질보증 등, 전력기술관리법령상 품질관리·품질보증방안 등,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상 품질보증체계에 관한 심사, 하수도법 시행규칙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판매시의 품질보증기간이 표시된 품질보증서 교부의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품질경영조항의 품질보증시스템의 마련의무, 품질보증의 정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상 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으로서의 품질보증체계 및 시행규칙상 품질보증책임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상의 의료기기의 방사선 및 방사성의약품의 방사능 품질보증,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조직의 품질보증업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상의 임상시험의 품질보증<sup>358)</sup>,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품질 매뉴얼 및 검사업무절차서 등의 품질보증시스템 구축·유지 의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국제적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시스템 구축 유지의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상 자가사용기준의 내용인 품질보증방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품질보증기간 등에서 우리 법령상 품질보증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 2. 품질보증에 관한 우리 입법의 태도

358) 다만, 이 법상의 품질보증은 ‘Quality Assurance’ 라고 동법에서 밝히고 있는바, 이는 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품질보증을 이해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품질보증인 ‘Warranty’ 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품질보증에 관한 법령은 소비자기본법에 상품표시와 관련한 규정에서 품질보증기간을 기재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sup>359)</sup> 이외에는 주로 원자력,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전력, 식품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 산업에 있어서의 등급이나 인증기준 등의 목적으로 품질관리<sup>360)</sup>가 필요한 분야, 군수품, 그리고 항공기·선박<sup>361)</sup> 등을 중심으로 개별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각 행정입법으로 규율되고 있을 뿐 일반법적인 규율이나 소비자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품질보증<sup>362)</sup>관련분쟁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구속력 있는 법률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품질보증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1의2. 품질경영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찾기 어려웠는데 동 내용 역시 “품질보증은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sup>363)</sup>라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요건은 담

359)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있고 그 안에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별표로 규정되어 있다.

360) 원래 이러한 품질에 대한 등급이나 인증 관련 입법 목적을 위한 대표적인 법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舊 법명: 공산품품질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이지만 이 법은 품질보증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361) 이 연구는 자동차 구입자인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에서 제정된 ‘자동차’의 ‘품질보증(Warranty)’에 관한 미국 레몬법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다른 소비재와 달리 가격이 훨씬 더 높고 주요 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특수동산인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산업에 기초한 규율이어서 미국 연방 레몬법과 같은 상품의 품질보증(Warranty) 관점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자동차와 함께 특수동산을 대표하는 항공기·선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율이 있으면서 품질보증과 관련한 업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항공기·선박은 보다 산업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거래발생의 빈도가 높지 않지만 이에 비하여 자동차는 일반 국민의 대다수가 구입하는 거래발생의 빈도가 매우 높은 특수동산이라는 점에서 민사적 거래책임에 관한 규율필요성이나 소비자 보호필요성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

362) Warranty로서의 품질보증을 의미한다.

36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5.03.13 [총리령 제1149호, 시행 2015.03.15]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별표 1] <개정 2014.10.10.>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1의2. 품질경영

의약품제조업자는 품질로 인해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가 없도록 의약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품질 목표 달성은 의약품 제조업의 경영진의 책임이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계된 의약품 제조업의 경영진과 작업원은 적절한 품질보증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품질보증시스템은 제조 및 품질관리, 품질관리, 품질평가, 품질위험관리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고 있지 않았다.<sup>364)</sup>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품질보증에 관한 법령들을 대부분 품질보증의 정의에 대한 규명을 하기 보다는 마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인 것처럼 전제를 한 채 별다른 설명 없이 당해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향후 품질보증에 관한 법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품질보증이란 “제품의 품질이 일정 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일”을 의미한다.

### 3.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과 품질보증책임(Product Warranty)

#### 가. 확대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

1) 품질보증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법령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이 입법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조물<sup>365)</sup>인 상품의 하자 또는 결함을 ‘상품적합성’에 관한 것과 ‘안전성’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자에 관한 법적 구제수단은 현재로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과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의 일반론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지만, 후자에 관하여는 바로 제조물책임법이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적 규율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이 경우에도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여전히 하자담보책임으로 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판례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

---

가. 품질보증은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364) 그리고 이 정의 규정을 해당법 이외의 법환경에도 제한 없이 유추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365)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sup>366)</sup>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이 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즉, 대법원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제조물의 결함, 즉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sup>367)</sup>하게 된다고 판단하여 오고 있다.

#### **나. 계약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약책임으로서의 품질보증책임**

이와 같은 제조업자의 책임은 그가 제조물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의무로서 인정되었던 것인바, 만약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인 상품에 품질보증까지 하였고 그 품질보증의 내용이 상품 구매자의 구매행위로서 당해 상품매매계약의 내용의 일부가 되었다면 이러한 제조업자에 대하여 계약책임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소위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품질보증내용의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은 “피고 비엠더블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비엠더블유는 위 피고가 교

366) 대법원 2000.07.28.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참조

367)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부한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 의하여 하자에 관한 책임을 진다....그러나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 따르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품질보증인인 피고 비엠더블유가 매도인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품질보증서의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매도인의 보증을 정당하다고 봄으로써 자동차매매계약의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작자의 차량매수인에 대한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단을 하였다<sup>368)</sup>(이하 이 판결을 “BMW 품질보증서 판결” 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 4. 품질보증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판례 현황

##### 가. 미미한 품질보증쟁송현실

우리나라의 판결례 중 상품의 품질보증을 정면으로 다루며 이에 관한 법리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소비대상인 상품은 가액이 재산목록을 형성할 정도로 크지 않다. 그런데 특별법이 있어서 간단한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으며 통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전 쟁송기간의 불편과 기회비용의 상실을 포함한 권리구제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미미한 수준인데다가 변호사 비용의 전부 구상이 인정되지도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항상 무한경쟁 속에 살아가는 한국의 현실에서 법원의 쟁송절차까지를 거치는 것을 감내할 정도의 실익은 사실상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고, 항공기, 선박 또는 발전기 등 가액이 큰 상품들은 대부분 소비자보호목적은 부여할 만큼 힘의

---

368) 다만, 이 판결은 중류물 하자담보책임의 완전물급부 이행청구권 행사에 대한 공평에 기한 제한이 주요 판시사항이라고 여겨지는바, 제작자의 품질보증서에 기초한 품질보증책임에 대한 논의는 방론에 해당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리고 이와 같이 품질보증책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 판결례가 아니기 때문에 품질보증책임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보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불균형 상태에 있는 약자라기보다는 협상력이 대등한 회사와 회사 간의 관계인 경우가 많고 설령 플로리다 법원의 판결처럼 회사도 소비자에 포함되고 차량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대소를 불문한다는 입장을 유추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대부분 중재조항을 통하여 한국법원으로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나. 품질보증과 관련한 판결의 태동

이러한 법현실에서 2014. 5. 16., 대법원은 종류매매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에 관한 BMW 품질보증서판결<sup>369)</sup>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가소549092<sup>370)</sup>판결은 부당한 애플의 아이폰 A/S 정책에 대하여 당시 30세의 젊은 소비자 원고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사건이었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는바, 2014년은 이 두 개의 중요한 판결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의 품질보증 영역에서 연이어 내려진 해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의 대상물건이 국내에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고가의 수입자동차 BMW<sup>371)</sup>이고 사용자의 충성도를 자랑하는 혁신적 스마트폰 Apple의 아이폰인 점, 그리고 자동차에 비하여는 비교적 가액이 작은 아이폰<sup>372)</sup>의 원고는 30세의 청년이라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시각,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BMW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차량의 소유자가 드디어 첫 번째 자동차품질보증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까지 소송수행을 감내함으로써 최종판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현대인의 필수품이면서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가장 최근거리에서 일상의 사진찍기, 정보나 뉴스의 검색, 친구들과 대화나 SNS, 이메일 등 거의 일상생활의 대부

369)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이 판결례는 품질보증책임, 종류물의 하자담보책임과 완전물급부청구권행사의 요건 등의 면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370) 제1심 판결선고 이후 양측 모두 상소하지 않아 확정됨

371) 당해 사건의 판매가격 64,200,000원

372) 당해 사건의 판매가격 102,7000원

분을 형성하는데 항시 사용함으로써 특별한 애착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자신의 스마트폰을 돌려받기 위하여 조정도 뿌리치고 본인소송으로 1심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낼 때까지 소송절차를 감내한 소비자가 등장했다는 점은 그간 우리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변화가 그 모습을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5. ‘BMW 520d’, ‘아이폰5’ 판결의 사안과 미국 레몬법

위 두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고 미국 레몬법상의 판단기준을 대입하여 보기로 한다.

### 가. ‘BMW 520d’ 사안<sup>373)</sup>

#### 1) 사실관계와 원고의 청구

BMW 520d 자동차를 구입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 5일이 지나 발생한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과 제작자를 상대로 신차로의 교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매도인에 대하여는 종류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완전물급부청구를 하고 제작자에 대하여는 피고 비엠더블유를 코오롱글로벌의 보증인으로 보아 보증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에 대한 완전물급부청구에 대하여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

373)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 23920 판결 등 참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 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고 판시하여 “공평”에 따라 행사를 제한하였고,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제작자에 대한 보증책임의 이행청구에 대하여는 품질보증서 교부의 의사에 대한 법률행위해석을 통하여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구체적인 책임내용만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보고 매도인의 민법상 완전물급부의무를 보증하는 의사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코오롱글로벌에 대한 청구 및 비엠더블유에 대한 청구 등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

### 3) 검토

미국 레몬법에 따르면 수리시도를 하기 전에는 어떠한 레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즉, 레몬법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이나 제작자에게 하자를 통지한 후 지정된 서비스센터에 들러서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통상 지정된 수리대행자 3회 + 제작자 1회, 다만 주에 따라서 4회 + 1회)를 한 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품질보증서가 교부된 신차를 구입하여 인도받은 후 5일 만에 계기판이 고장이 난 BMW 520d의 매수인이 신차로 교환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BMW 품질보증서판결 사안의 경우, 수리시도 없이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 동 사안의 하자

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라는 수리로 용이하게 치유가능하므로 이러한 무상수리로서 품질보증의 이행이 완료될 뿐이고 완전물급부청구에 해당하는 교환이나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구입가격의 환불을 구할 수 없다.<sup>374)</sup>

## 나. ‘아이폰 5’ 사안

###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원고는 아이폰5의 배터리하자를 수리하기 위하여 애플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으나 당초 부분수리약속과는 달리 추가 비용(34만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찾아가야하고 원고의 아이폰5는 돌려줄 수 없다라는 수리센터의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한국소비자원 등의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다.<sup>375)</sup> 휴대폰 수리를 맡긴 후 약 2년 경과 후 휴대폰 구입비

---

374) 이에 관해서는 김재형,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⑤ 민법(하)”, 법률신문 2015. 3. 15.자, 12면도 참조.

375)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2년 12월 초 ‘아이폰5’를 구입하고 구입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3년 11월경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이 생긴 위 ‘아이폰 5’에 대한 수리를 맡기러 2013년 11월 14일 애플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다. 당시 애플 서비스센터에서는 부분수리가 가능하고 했으나 5일 만인 2013년 11월 19일, 애플은 원고에게 “수리가 불가능하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찾아가라”는 일방적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리 맡긴 자신의 원래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애플은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라고만 대응한 후 묵묵부답이었다. 원고는 단지 수리를 맡겼던 자신의 아이폰을 즉시 돌려받기를 원했을 뿐이었지만 제대로 된 이유나 애플 수리정책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 원고는 A/S 보증기간도 남아있는 물건을 수리를 위하여 맡겼을 뿐인데,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어 돈을 더 내고 리퍼폰으로 교체하라고 하는 것도 부족해서, 원고가 여전히 할부요금을 내고 있는 자신 소유의 휴대폰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년 11월 22일 국민신문고, 2013년 11월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애플코리아에 여러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애플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안한 모든 조정안을 거부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은 원고에게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다음 절차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4년 1월 6일 애플코리아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4년 1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새 아이폰으로 교체는 해주겠으나 1~2월 걸릴 수 있다는 취지의 애플코리아측 제안을 듣고 원고는 이를 거절, 그 후 조정신청시

1,027,000원,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00원을 더한 1,527,000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 2) 검토

차량에 한정되지 않고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한 연방 레몬법이나 그와 같은 적용범위로 입법한 주의 레몬법에 의하면, 아이폰 5에도 레몬법이 적용될 수 있다.<sup>376)</sup> 하자가 재료나 제조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고객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서면품질보증서를 교부받은 전부품질보증의 경우라면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 전부품질보증에 아니라 명시적인 품질보증에 있는 경우로서 주법의 적용대상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지정수리대행자의 수리 3회 + 제작자의 수리1회의 시도(혹은 주에 따라서는 4회 + 1회)로써 하자를 고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식 수리 대행자의 수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지 30일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환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연방 레몬법과 대다수의 주법은 레몬법의 수리나 교환 등의 대상을 “결함이 있는 부품 또는 상품”으로 규정함으로써 부품에 대한 상품의 부분적 수리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

---

신청금액인 아이폰 구입가격에 상응하는 현금 1,027,000원을 지불하겠으니 조정을 취하하고 1~2개월 기다리라고 제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의 거절 이유는 이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법원 쟁송 시작 직전의 내용증명 이후 반응하여 제안한 내용이 다시 한두달은 또 걸려서 새 아이폰이나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두 달이 될지 서너 달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조정이 결렬되고 이렇게 5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고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자신의 ‘아이폰 5’ 대신 여전히 통신사에서 지급한 임대폰(sph-w9000)을 사용해야 했다. 결국 원고는 2014년 5월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즉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휴대폰 구입비 1,027,000원, 정신적 피해와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원을 더한 1,527,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년 12월 9일 소비자의 선택권과 재산권 침해를 인정받아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냈다. <http://slownews.kr/22336>참조

376) 물론 각 주별로 소비자보호법의 입법 방식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애플의 품질보증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법을 정확히 적용하여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레몬법이 적용되었을 경우에 대한 예상을 하는 정도에 그치기로 한다.

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고칠 수 없어서 시행하게 되는 교환의 경우 신품 또는 고객이 동의할만한 품질의 상품으로 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원칙적으로 추가비용이 없어야 한다. 각 주의 레몬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이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해당법규를 위반하는 품질보증서 내용은 무효임을 그러한 법에서 대부분 직접 명백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보증서상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은 통상 효력이 없다.<sup>377)</sup> 따라서 위 아이폰5사안에서는 합리적인 횡수의 수리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5의 배터리 부품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경우 제작자는 상품구매자인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없이 소비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상품<sup>378)</sup>으로 교환을 해주거나 구입가격을 환불하여 주어야 한다.<sup>379)</sup>

#### 다. 소론

377) 사실 미국과 같이 “소비자보호”가 핵심가치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주의가 정부기관 및 법원의 기본 태도인 나라에서는 레몬법이나 다른 소비자보호법에 기초하지 않고 일반 민상법에 기초한 청구에서도 “Public Policy” 등을 이유로 사실상 같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추측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378) 애플 등의 서비스 정책에 해당하는 리퍼폰도 포함될 수 있다.

379) 다만, 아이폰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제1심에서 종결되다 보니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법원판단의 상세한 법리 등 자료가 많지 않다. 그리고 보통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각국의 소비자보호법률을 준수한다는 취지를 품질보증서에 명시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연방품질보증법, 즉 연방레몬법이나 각 주 품질보증법이나 레몬법과 같은 강력하고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법규가 없기 때문에 애플의 A/S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애플의 품질보증서나 한국의 애플수리센터의 지침과 수리접수시 징구하는 동의서 등과 관련한 논란(이는 사회경제적논란이고 아직 법적인 논의의 진행은 찾아볼 수 없었다)은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등장하고 있다. 위 광주지법의 판결이 있고 난 이후 애플코리아의 사후서비스정책은 오히려 보다 엄격해졌다. 애플은 한국에 한하여 자사 제품구매자가 손상으로 인한 무상교환을 요구하면 일단 본사 소속 진단센터에 입고시켜서 자신들이 보장한 무상 리퍼 기간일지라도 본사에서 직접 가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더욱 까다로운 사후서비스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고(한국의 블랙컨슈머를 이유로 함), 수리센터의 “수리를 의뢰한 제품이 애플 진단 수리센터의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수리가 진행되는 중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문구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여 애플의 유무상 수리 대상 판정 결과를 소비자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판결은 레몬법과 같은 품질보증법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아무런 특별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상계약의 등가성과 공평의 관념에 기초하여 수리가 가능한 하자에 대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미국 레몬법적용의 결과와 같은 결론<sup>380)</sup>을 도출하였다. 또한 품질보증서의 교부로서 제작자도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 관계에 있지 아니한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책임<sup>381)</sup>을 진다고 판

380) 결론에 있어서 교환이 아니라 수리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부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이를 인정된 것으로서 레몬법은 제작자와 차량소비자의 관계를 품질보증에 기초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당사자관계 등에서는 완전히 같지는 않다.

381)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 중 “또한 이 사건 품질보증서는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증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으로서 신차의 교환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차량 교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앞서 이 사건 하자가 비사업 승용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하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품질보증서의 구체적 보증 범위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피고 비엔더블유에게 신차 교환에 관한 보증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 역시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부분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동 사건 품질보증서에 따르면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 결함에 의한 고장의 경우 당해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해 주고, 비사업용 승용차(‘비사업용’은 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한하여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증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대법원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동 품질보증서의 내용은 사실상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유사하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자동차 부분을 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②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③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대하여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또는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품질보증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분쟁유형 ①의 경우 해결기준 ㉠를, 분쟁유형 ②·③의 경우 해결기준 ㉡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BMW 품질보증서에서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단순 권고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고 또한 개조식 공무원 사회의 표현으로 분쟁해결기준을 표로 만들어 규율하다보니 명확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분쟁유형 ①의 경우 해결기준 ㉠를, 분쟁유형 ②·③의 경우 해결기준 ㉡를 규정하고 있다고 동 표를 항상 누구나 그렇게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표의 내용상 미국 레몬법의 기준을 차용하여 일응의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짐



작할 수 있고 비록 개조식이지만 표의 각 행 열의 위치와 각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본다면 ②의 경우에는 ③의 기준하에 ⑧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비사업용 승용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이나 ‘품질보증서의 구체적인 보증 범위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는 판단의 의미가 품질보증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 보상규정이 아니라 품질보증서 자체를 해석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면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품질보증서 자체에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증하여 준다”라고 명백히 기재하고 있는 이상, 굳이 품질보증서에 옮겨 둔 내용들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내용을 품질보증범위의 해석에 고려하는 것은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보기 보다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즉, 분쟁유형과 분쟁기준 모두) 전반을 품질보증서에 의한 품질보증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품질보증서교부에 의하여 품질보증인이 지는 책임을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품질보증서에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에 따라서 품질보증을 하겠다고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하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품질보증서의 구체적 보증 범위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피고 비엠더블유에게 신차 교환에 관한 보증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 역시 잘못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품질보증서의 구체적 보증 범위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 점이 왜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심판단의 잘못은 본 판결례상의 사유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교환” 기준에 부합하는 분쟁유형에 해당한다고 잘못 포섭함에 있다고 보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건에서와 같이 불확정 개념인 “중대한” 결함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바, 법원은 위와 같이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검토하여야 했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굳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품질보증서는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이 품질보증의 범위를 해석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당사자는 품질보증책임의 내용으로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결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중의 “제품교환”을 주장하였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분쟁유형에 해당하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중대한 결함”과 “3회 수리 및 재발”은 “교환”이라는 해결기준이라는 결론을 발생하기 위하여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필요한 위치에 있고 동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체적 취지상 수리 해보고도 안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해 주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 “3회 수리 및 재발” 요건 역시 고려하여 판단을 하였더라면 보다 선명하게 판단하면서도 레몬법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법규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레몬법사례와 유사한 소송이 드디어 발생한 이 기회에 그나마 존재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렇게 3번이나 수리해 보고 재발해서(즉, 고쳐지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4회까지 했는데도 안 고쳐졌다는 사실은 또한 “결함의 중대함”을 판단하는데 참작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할 것이다. 사안과 같은 계기판의 하자는 1회의 시도에도 고쳐질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더더욱 3+1의 요건을 구비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서 동 해결기준상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의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게 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단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일상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류물에 관한 품질보증의 영역에서 발생한 중요한 리딩 케이스라고 생각되는 이 사안에서, 각 청구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그치는 판단만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품질보증의 법적 성질이나 매도인과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제작자와 매수인인 소비자와의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함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 사법적 쟁송절차를 끝까지 밟았을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는 사건별 구체적 타당성만이 아니라 품질보증에 관한 소비자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구체적 소비자보호가 외면되고 있는 품질보증영역에 있어 매매계약을 넘어선 품질보증 자체에 대한 사법부의 기준을 정립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애플의 아이폰 5사건은 우리나라 품질보증법 등 소비자보호법의 문제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sup>382)</sup> 본 레몬법 연구를 진행하

---

382) 연구자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아이팟터치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하여 집 근처 플로리다의 애플 판매점(수리센터 아님)에 갔다가 즉석에서 새제품으로 교환받은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제작자로부터 품질보증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불필요한 불편이나 희생을 감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미국의 주에 따라 상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센터로 굳이 방문접수하지 않더라도 아예 구입처에서 하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의 슬로건 자체가 “Protecting America’s Consumers” 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들의 소비자 상품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유인이 동기와 보상의 양 측면에서 충분하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벌뿐만 아니라 쉽게 소송으로 비화되고 기업입장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처벌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숫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실화될 염려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정당한 품질보증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미국 소비재기업의 중요한 리스크관리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와 같이 부분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구입한 제품을 수리센터에 맡기고 왔는데 그 이후에 연락을 하여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리퍼폰을 구입하라고 하며 맡긴 제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에 반한 탈취에 해당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의사합치라는 법률적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현실적으로도 수리를 이행하였지만 대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어떠한 수리진단의 경우에도 진단 후 그 결과인 견적을 미리 알려주고 수리를 받을지 말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고객으로부터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수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

면서 미국 법의 내용이나 연방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법집행활동 등은 우리나라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강력한 소비자보호 및 품질보증관철을 위한 기본적인 특별법이나 강력하고 일원화된 법집행기관이 없음으로 인하여 국제통상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정비된 법규를 가지고 있는 타국의 소비자들이 받는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졌다.<sup>383)</sup> 그리고 그렇다면 개별 소송에서 일반법인 민법의 해석, 약관 규제법의 해석 등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미국 레몬법의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미국 상거래에서 발견할 수 있는 “Warranty” 개념을 고려하여 레몬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는 우리나라법 제하에서 품질보증의 본질, 그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하기로 한다.

### 제3절 품질보증의 본질, 그 법적 성질<sup>384)</sup>

이다. 그리고 소비자와 같이 힘의 균형이 보장되지 않는 거래에서의 열등한 지위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계약시 구매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뿐 계약의 내용에 대한 협상권이나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약관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나 부합계약(Adhesion contract)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각 주법들이 그러한 규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소비자보호법상 강행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고 법원 역시 직접 개별사건에서 통일상법전상의 Unconscionability Doctrine(비양심성의 원칙, 부당성의 원칙)을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383) 품질보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다른 국가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그만큼의 시장가격(Market Price)는 상승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법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비용으로 소비자인 다수의 국민에게 각각 손해의 형태로 분담 귀속된다.

384) 이 연구의 주제는 레몬법의 소개이지 품질보증연구가 아니다. 이 부분은 레몬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기 위한 관련 논의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경제법의 영역에서 간혹 논의되고 있는 품질보증계약의 법적 성질론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다. 원래는 레몬법 관련 논문에서 레몬법상의 품질보증규정에 대한 논의 중 법적 성질론을 소개하고자 하였으나, 주제가 레몬법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논문은 그 원리나 본류를 따져 올라가며 개념이나 본질론을 논의하기 보다는 만들어진 레몬법 규정내용을 소개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실제 거래현실은 어떠한지,

## 1. 품질보증의 본질

품질보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품질보증서가 교부된 완제품의 판매, 즉 매매계약의 성립부터 검토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품질보증을 하는 상품의 제작자의 사업전략, 비용전략 및 마케팅전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이다.<sup>385)</sup>

### 가. 마케팅수단으로서의 품질보증과 이행의 강제

품질보증은 원래 ‘상품의 품질을 약속하며 상품 구입목적에 위하여 제 몫을 할 상품이니 믿고 구매하여도 된다는 점, 그리고 공정에서 불량·고장검사를 이미 다 하고 유통망으로 출시하지만 혹시라도 걸러지지 못한 불량·고장품을 구매하게 된다가나 상품의 구입목적에 달성할만한 품질이 안 나올 때에는 이런 조치를 해주겠으니 걱정 말고 구매해도 좋다, 그럴 일은 안 생기겠지만 혹시라도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90일내에 알려 주면 된다’<sup>386)</sup>라는 뜻을 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품질보증이 제공되는 상품이 등장하고 품질보증이 없는 상품보다 안심하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이 많아지고 높은 판매율을 보이자<sup>387)</sup>

---

문제는 무엇인지, 실제 얼마나 범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내용들과 판례법소개 및 비판 등에 대한 것이었다. 환부에 직접 외과적 수술을 하는 방식의 서양 문화 및 개념법학이 아닌 실용주의법학을 추구하며, 이미 제정된 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는 면에 중점을 두고 동법의 적용시 구체적 타당성면에서는 법원의 법형성력을 인정하고 그 판례법의 내용을 존중하며 보완해가는 커먼로 시스템이어서인지 법철학적인 본질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일단 법이 생겼으니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적용례 등에 초점을 맞추고 본인의 의견도 한두줄 정도의 코멘트가 대부분이었다. 실용적 논의를 가장 중시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이 논문들 및 현지 경험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미국 Warranty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품질보증에 관한 본질을 실물경제의 현실에 부합하게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385) 미국과 같이 품질보증을 규율하는 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 범규상 의무이행을 처리하는 제작자의 입장(통상 Compliance Cost)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는 해당 법규가 없으므로 이는 굳이 고려사항으로 넣지 않아도 될 것이다.

386) 미국의 경우이다. 영국은 보통 1년이다.

387) 가령 1990년대 영국에서 대우 자동차가 파격적인 보증수리기간을 제공하는 워런티

산업계는 신속히 품질보증을 대부분 제공하는 쪽으로 변모하게 된다.<sup>388)</sup> 그런데 이처럼 품질보증의 제공이 보편화되면서 품질보증의 항목이나 내용도 비슷해졌을 뿐만 아니라 큰 글씨로 품질보증한다고 써두고는 작은 글씨로 면책이나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졌고 상품의 가격이 크고 오래 사용하는 상품일수록 이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갔다. 이에 기만적인 품질보증에 관한 규율을 담은 국가적 차원의 법규가 등장하게 된다.

한편, 공산품의 경우 일반 공중에 판매를 하기 위하여는 무조건 품질보증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것인지, 품질보증의 항목이나 수준에 대한 규율을 할 것인지 여부, 품질보증의 제공 여부는 자율에 맡기되 일단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규율을 할 것인지 여부, 품질보증의 제공 여부는 자율에 맡기되 일단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내용인 약관을 심사하여 추상적 규범통제도 함께 할 것인지 여부 등 다양한 입법태도를 고려할 수 있다.

#### 나. 자동차 품질보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상거래 현황 인식

자동차에 관한 품질보증을 규율하는 미국법인 레몬법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본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내구소비재이다. 즉, 이는 유지관리를 하게 되고 그 동안 꾸준히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유지관리를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부품이나 재료비 등이 주된 지출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는 자동차정비서비스업자와 거래를 하게 된다.

---

마케팅으로 다른 제작사의 차량에 비하여 판매율이 급증한 적이 있었다.

388)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품질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법, 품질보증을 제공할지 여부는 자유이지만 일정한 품질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 소비자기본법상 위해방지목적 표시내용과 방법을 규정하는 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처럼 품질보증은 아니지만 유사한 영역에 대하여만 규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입법례가 있다.

품질보증기간 내의 보증수리는 통상 자동차제작사의 정비서비스부문이나 정비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 또는 자동차제작사와 계약을 맺거나 자동차제작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동차정비서비스업자<sup>389)</sup>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자동차정비서비스는 통상 엔진오일교환, 필터교환 등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메인テナンス 서비스와 자동차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장수리, 사고수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유형의 자동차서비스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받게 될 수도 있고 품질보증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받게 될 수도 있다. 품질보증기간 내에 받게 되는 보증수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료 또는 조립 등 제조의 하자로 발생한 부적합성, 고장에 대한 치유를 하는 원래적 의미의 품질보증뿐만 아니라 엔진오일 교환 등 메인テナンス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마케팅전략에 따라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비스를 품질보증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받기 위하여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에 자동차 제작사 측에서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품질보증기간을 늘리기도 하고, 품질보증기간은 국가별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에 맞추되 메인テナンス 쿠폰을 발행하여 품질보증기간 후에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용절감의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 전략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래적 의미의 품질보증수리로 발생하는 비용과 더불어 차량의 판매가격 책정에 반영된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작사는 소위 “Extended Warranty” 라고 하여 품질보증기간 중에 받던 몇 회의 점검서비스, 몇 회의 오일교환서비스 등과 같은 내용을 품질보증기간만료 후에도 일반 서비스가격에 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서비스상품을 자동차 판매시 혹은 그 이후에 판매하는 부가적 사업도 한다. 그리고 순정품을 사용하여 제작사의 권장프로그램에 맞추어 지정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389) 이와 같은 경우 보증수리를 품질보증인이 아닌 품질보증인이 지정하는 서비스센터에서 받게 되는 경우, 제작자, 서비스센터, 소비자 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채무인수, 이행인수 등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메인テナンス를 충실히 한 차량이 중고차로서의 가치유지를 잘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고객들에게 강조하고 이러한 기록을 이용하여 제작자인증중고차사업을 한다. 품질보증수리를 받기 위하여 입고된 차량이 무료대상인 품질보증수리만으로 자동차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추가적인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마켓의 점유율제고전략이 필요할 때에는 차량의 가격을 대폭 낮추어 공격적인 판매마케팅을 벌이되, 자동차정비서비스의 부품·재료가격과 공임가격에서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체 사업간의 이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자동차정비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과 필터를 교환하고 고장이 난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정비를 하는 경우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즉, ① 품질보증기간에 해당하고 품질보증에 포함되는 항목만 정비하여 무료일 때, ② 메인テナンス 쿠폰을 사용하여 가격을 면제받는 항목이 포함된 경우, ③ 익스텐디드 워런티에 해당하여 무료일 때, ④ 일부 항목은 품질보증이나 익스텐디드 워런티에 포함되지만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내야 하는 경우, ⑤ 모든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위 ①~⑤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품질보증서에 약속되어 있는 보증수리와 별도의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계약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자동차 품질보증은 과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사실상 그 본질을 같이 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가이다.

## 2. 품질보증의 법적 성질 : 부합판매된 독립한 서비스계약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공평의 관념상 법이 인정한 법정책임<sup>390)</sup>이다. 그렇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이 자동차를 구입한 자동차 매수인은 자동차 매도인에 대하여 신차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매도인도 유통마진이나 판매마진을 수확하며 독립적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합의된 상품적합성이 있는 상품을 등가적으로 합의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품질보증을 제공한 제작자에 대하여도 신차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품질보증책임으로 물을 수 있다면 이때의 품질보증책임은 하자담보책임과 본질이 같은 것인지, 본질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능상 유사점은 있으므로 양자간에 일반법과 특별법 등 기능적 관계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문제된다. 계약관계가 없는 제작자와 매수인의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본질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는 품질보증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레몬법과 같은 특별법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그렇지만, 레몬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여지책으로 법정책임인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금전적 손해배상청구 대신 일정한 급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론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의사표시책임인 계약책임을 물을

---

39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은 채무불이행설의 입장이 통설, 판례이고 연구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여기에서 사용한 법정이라는 말은 담보책임본질론에서의 법정책임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여기에서 법정책임이라는 용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양 당사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발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별개의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의 배제특약이 없는 한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향후 하자 분쟁에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다. 명시적 Warranty(Express Warranty)는 양 당사자간의 Warranty구입합의에 의한 약정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이러한 약정책임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라는 약정을 하였을 때 별다른 담보책임배제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58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효과가 법규대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가장 근접한 것을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담보책임이나 레몬법 중에서 찾아보자면 미국 통일상법전의 묵시적 품질보증(Implied Warranty)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품질보증의 제공된 이상 보다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즉, 품질보증은 단순한 사실의 표시가 아니라 법적구속력이 있는 제작자의 의사표시로서 품질보증책임<sup>391)</sup>으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제작자의 의사에 기한 약정책임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정책임<sup>392)</sup>의 본질을 갖는 하자담보책임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품질보증은 그 자체로도 내용과 범위를 정한 “서비스 상품”으로서 매매목적물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상품인 경우에는 그 소비재와 부합적으로 결합되어 판매되며 사실상 매매목적물인 상품의 가격에 그 구입비용이 혼화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상품가격을 지불함으로써 품질보증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sup>393)394)</sup>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Warranty” 까지 포함해서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Warranty” 없이 목적물을 구매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매가격이 달라지는 상거래의 현실<sup>395)</sup>, 원래의 품질보증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된 별개의 상품으로 추가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Extended Warranty”, 그리고 위에서 상세하게 본 바와 같이 자동차의 판매와 품질보증이나 품질보증에 포함된 각 서비스 내용을 매개로 한 판매 후 시장(After-sales Market)의 상품 현황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

391) 주된 채무자인 본인이 있고 그 채무에 종된 채무를 의미하는 민법상 보증채무의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Warranty를 품질보증이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품질보증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는 본인으로서의 주된 책임을 의미한다.

392) 각주 390)참조

393) 따라서 유상계약이므로 유상계약에 매매규정이 준용되는 한도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법리가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394) 그렇지만 Extended Warranty가 아닌 초기의 원래적 의미의 품질보증은 제작자가 초기 결합 불량·고장 등으로부터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면도 있고 평균적 품질보증이행비용을 상품의 판매가격에 분산시켜 반영하게 되는 것으로 그 내용면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경우 소비자의 보호에 반하지 않으므로 끼워팔기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395) 이렇게 Warranty는 “Warranty” 를 포함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Warranty” 를 포함하지 않고 살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도 가능하고 그에 따라 “가격” 이 달라진다는 점은 고가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계 등의 구매와 설치계약에서 여전히 볼 수 있다.

있다고 본다.

요컨대, 자동차품질보증은 본인인 제작자 등 품질보증인이 본인이 자동차판매자인 매도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품질보증서의 교부를 통하여 자동차매수인과 체결하는 계약<sup>396)</sup>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품질보증계약의 내용은 그 품질보증서상의 기재된 내용(약관)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이 품질보증계약은 자동차매도인과 자동차매수인간의 자동차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자동차매매계약과 일체가 되어 제작자와 자동차매수인간에 체결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sup>397)</sup> 만약 품질보증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전득자는 원칙적으로 부종성에 의하여 자동차명의의 이전등록시 잔여품질보증기간상의 채권도 함께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98)</sup>

---

396) 품질보증책임은 법률행위에 기한 책임으로 보더라도 계약으로 볼 것인지, 단독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없는 이상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품질보증의 연원 및 품질보증서의 형태로 제공되게 된 것에는 전통적인 매도인-매수인간의 판매에서, 대량생산, 대량유통사회로 이전하면서 제작자, 유통상, 매도인이 모두 분화된 상거래로 변화한 시대변천 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특히 품질보증책임 역시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해석의 일반론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품질보증의 내용은 그 해의 베스트셀링 차량모델에 영향을 줄 정도로 소비자의 차량구매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품질보증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특별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를 품질보증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보다 거래현실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서비스계약과 품질보증의 사실상 내용이 비슷한 점 등 실물경제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에 기재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품질보증은 제작자와 소비자간의 계약관계에 보다 근접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계약관계로 보게 되는 경우 유상계약의 일반원칙들을 준용하는 등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원용할 수 있는 등의 실리도 있을 것으로 본다.

397) 대법원의 BMW 품질보증서 판결은 제작자가 품질보증서의 교부로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제작자의 본인으로서의 독립적 책임인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에 의하면 대법원이 보증책임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품질보증계약책임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공정위 고시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질보증서의 내용을 형식적이 아니라 종합적·전체적으로 비교해 본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398) 품질보증과 더불어 교부된 쿠폰의 경우 증권적 채권으로서 교부가 채권양도의 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품질보증서의 경우 레몬법의 관련 규칙에서 품질보증서의 등록카드 소지 등 강화된 요건을 금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증권적 채권으로 보아 품질보증서 자체에 강력한 요건성을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의 목적에

## 제4절 품질보증에 대한 법적 규율 또는 구제수단

품질보증내용에 대한 일반적 구제로는 품질보증의 대부분 약관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 규범통제로서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관 심사를 통하여 약관의 부당성, 불공정성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품질보증위반에 대한 개별적 구제로서 비쟁송적 절차로는 분쟁발생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쟁송적 절차로는 위와 같은 조정결렬시 법원에 제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품질보증인으로서 통상은 상품의 제작자가 되겠지만, 계약인수자나 채무인수자 또는 이행인수자 역시 사안에 따라 분쟁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품질보증인에 의하여 지정서비스대행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 비순정부품의 사용 등으로 품질보증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제조물책임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한 법리나 전술한 연방거래위원회의 2015년 BMW MINI 심결례를 참조하여 주장과 입증책임의 분배에 있어 제작자와 소비자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제작자 측에서 그 비순정부품의 성능과 품질이 순정부품의 성능과 품질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쿠폰 등 증권의 형식이 아닌 원래의 품질보증인 경우 당해 자동차와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품질보증의 목적에 반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에 일체로서 강하게 부종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이와 같이 부종하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작자에 대한 지명채권으로 보아서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 이후 품질보증을 이용하고자 지정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자동차등록증의 제시와 함께 양도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자로 인하여 품질보증대상이었던 기관이나 부품의 결함이 초래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순정부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재질과 기술에 의하여 제작된 비순정부품의 사용을 이유로 제작자는 품질보증책임소멸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sup>399)</sup> 그러나 지정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은 어려운 문제이다. 미국에서도 자동차수리점의 의무나 책임에 대하여 상당수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sup>400)</sup> 그렇지만 이 역시 부품과 마찬가지로 제작자의 공식지정서비스센터의 서비스품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인정된 비공식서비스센터의 이용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up>401)</sup>

399) 이는 유럽연합의 경쟁법(BER)상의 입법태도이기도 하다.

400) 가령 Jay M. Zitter, J.D., Automobile Repair Shop's Duty to provide Customer with information, Estimates, or Replaced parts, under Automobile Repair Counsumer Protection Act, Gregory G. Sarno, J.D., Liability of repairer for unauthorized, unnecessary, or fraudulent repairs of motor vehicle, 78A.L.R.6th 97, 23 A.L.R.4th 274 (Originally published in 1983) 등

401) 이 부분은 연구자가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적 신규사업으로 '독일차 중심의 수입차정비사업'을 런칭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기 때문에 매우 잘 알고 있는 분야이다. 일단 한국, 일본 등 아시아차와 독일 등 유럽차의 구조가 상당히 다르고 차량의 전장화가 급속화되면서 메이커를 불문하고 점점 더 그 제작사의 특정 전자적 스캐너나 정비매뉴얼, 부품카다로그 등을 보유하지 않고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국산차량의 정비에 대하여는 대중소기업상생이슈로 대기업들이 수세에 몰려 있었는데 수입차쪽 글로벌 대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에 불려 나오지도 않았다. 당시 대기업중 유일한 비카메이커였던 우리측에서 동반성장안으로 수입차정비마켓을 열어서 지식공유 등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위 신규사업영역에 대하여는 당시 영세중소기업들은 리소스와 인프라의 부족으로 시장진출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수입차 정비시장은 공식서비스센터의 독과점상태였다. 2007년의 CD로 나오던 시절의 예전 수입차진단프로그램들을 암암리에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는 몇몇 인디샵이 있을 뿐 경쟁마켓이 형성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산차주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즉, 수입차와의 사고가 많아지고 사고가 한번 났다하면 수입차수리비용이 국산차의 수십배에 이르며 고의사고나 보험사기까지 갖게 발생하여 사고에 연루된 국산차주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손해가 분산귀속되게 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기업의 기존 인프라와 리소스를 활용하여 공유가치창출형 신규사업으로 런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서비스업에서 제대로 된 진단기나 정비매뉴얼, 부품카다로그 등도 기본적인 정보공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자동차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 놀라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집근처 어느 서비스센터에 가든지 불문하고 제작사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인디샵자체의 메인터너스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당시 수입차정비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지재권위반의 불법복제물인 진단프로그램탑재노트북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자료였다. 이에 유럽 등 선진국에

## 제5절 종류물 불완전이행급부의 보완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레몬 조항

### 1. 요건 및 효과에서의 유사성

품질보증인과 소비자 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레몬법을 연구하면서 우리 민법 중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로 하자담보책임을 떠올릴 수 있다. 레몬법은 레몬인 차량을 사게 된 매수인의 구제를 위하여 제정된 법이고 따라서 그 매수인인 소비자의 특별한 구제수단이 법의 핵심을 이루는데, 그것이 우선 합리적인 횡수로 제작자로부터 수리를 받아 볼 것, 그래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레몬법상의 특별한 구제수단의 발생요건으로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 효과로서의 수리, 교환, 환불이 인정된다는 점은 우리 민법상 종류물채무의 하자담보책임에서 불완전이행급부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하자에 대한 추완청구권(수리에 상응), 완전물급부

---

서는 법에 의하여 공개할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개인 또는 사업체가 OEM 정비정보를 제작자 등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음을 조사한 후 독일차 제작자의 진단기나 매뉴얼, 부품카다로그 등을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발견하여 유럽과 같은 선진법규에 의한 제도적 구축을 위한 법개정지원을 시작하였다. 즉, 유럽의 경쟁법 등 선진입법자료리서치 및 제출이나 간담회 자문 등 여러 면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드디어 2014년 12월 9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7일 시행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제32조의2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이제 이 제도에 의하여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독점하던 OEM정비정보의 비공개라는 장애사유는 제거되었다. 물론 인디펜던트 서비스센터에서 공식서비스센터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구비하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경쟁마켓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지식재산권과의 조화, 소비자의 선택권, 소비자의 Right to Repair를 현실화할 수 있는 필수적 기본요건 중 최소한의 출발점은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환경은 구축되었다.

청구권(교환에 상응), 또는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권(환불에 상응)과 기능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 2. 레몬권과 종류물하자담보책임의 차이

### 가. 법적 성질

레몬권은 소비자의 품질보증인에 대한 권리이다. 즉, 품질보증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품질보증에 기초하여 지는 책임의 내용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레몬권은 품질보증인이 품질보증서를 써주는 등 품질보증을 한(이것이 계약의 기초 또는 내용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인정되고,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품질보증을 한 자에게 물을 수 있는 품질보증책임 중 레몬에 대한 교환, 환불과 관련하여 특별법인 레몬법으로서 그 권리행사의 요건과 방법을 정형화한 특별한 권리라는 점에서, 별다른 품질보증의사의 표백 및 그에 대한 인식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의 등가성 및 공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에게, 그가 품질보증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종류물하자담보책임과 구별된다.<sup>402)</sup> 그리고 레몬권을 포함한 품질보증책임은 통상 품질보증서와 같은 약관에 의하여 품질보증인과 소비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미국 레몬법에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Privity) 유무를 불문한다는 중요한 특성이 있다는 점 및 품질보증책임 중 레몬권의 요건과 행사의 면에 있어서는 특별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매매 등 사적 계약이 존재하는 평면에서 발생하는 책임

---

402) 우리나라에서 품질보증서에 기초하여 품질보증인에게 품질보증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차이가 아니다. 우리 대법원도 전술한 BMW 판결에서 품질보증인의 독립적인 품질보증서에 기한 책임을 직접 인정한 바 있다.

임에도 불구하고 레몬권은 법정책임적 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성질은 우리 민법에 생소하지 않다. 왜냐하면, 종류물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도 책임의 본질자체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현재 통설의 입장이지만, 종류물에 관한 매매 등 유상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종류물하자담보책임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당사자의 법률행위인 특약을 굳이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상계약(가령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법이 법률로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배제특약으로 담보책임의 발생을 배제하지 않는 한, 법률행위(담보책임발생의 법률행위)가 아닌 그 법률의 규정(담보책임규정)에 기초하여 권리가 발생하고 그 요건과 행사방법, 그리고 효과가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기초한 채무불이행책임의 본질을 갖지만 여전히 법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측면에서의 법정책임적 성질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미국법상 레몬권과 종류물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행사 또는 책임추궁의 상대방과 권리자간의 계약관계 유무가 요건인지 아닌지 여부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 나. 요건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구하기 위하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가 해제권 발생의 핵심 요건으로 요구되지만 레몬법에서는 본질은 유사할지라도 그러한 계약의 목적달성불능 등에 대한 주장·입증 등의 필요 없이 “합리적인 횡수의 수리시도에도 치유되지 않는 불량·고장·부적합성”이라는 객관화·구체화·정량화되어 있는 요건을 주장·입증하면 족하고 이 역시 레몬 추정규정에 의하여 증명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 다만, 레몬법에서 불량·고장·부적합성 등을 정의하면서 목적물의 가치(value)를 상당히 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use), 안전

(safety)을 해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sup>403)</sup> 그만큼 하자 판단의 기준이 구체화되고 권리구제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효과

레몬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어느 유형의 레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 하자보수청구권·추완청구권에 기능적으로 비견할 수 있는 품질보증에 기한 하자치유청구권을 우리 민법상 완전물급부청구권이나 해제권에 비견될 수 있는 교환 또는 환불권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간 행사순위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 라. 적용범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목적물이 반드시 차량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주 레몬법까지 고려할 때 레몬권은 소비재의 매수인 전반이 아니라 주로 신차 구매자만이 갖는 권리라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레몬권으로 추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레몬권으로는 차량 등 목적물 자체의 가치를 한도로 배상받을 수 있고 기타 손해는 다른 주법에 기하여 경합적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체적 상해 등 확대손해까지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각 주법의 입법태도가 다르고 관할마다 법원의 태도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 마. 절차

---

403) 뉴욕레몬법 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반드시 비쟁송적분쟁해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레몬법상 구제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법원에서 의 사법적 구제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반드시 비쟁송적분쟁해결절차를 전치적으로 밟아야 한다.

### 3. 소결

이러한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레몬법(Product Warranty Act)과 유사한 내용의 “품질보증법(가칭)” 등이 제정된다면,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이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기능하면서 제조물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 물을 수 없는 손해를 직접 제조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적용범위를 병렬적으로 보완하는 중요한 법으로 기능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품질보증법은 매도인에 대한 우리 민법상 종류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에 대한 중요한 기능적 보완입법으로 제작자에 대한 품질보증책임도 물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제10장 결론

### 1. 특정 하자판단기준에 기초하여 특별한 절차와 구제수단을 인정 한 레몬법

미국의 레몬법은 그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민사적 구제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상 부동산 다음으로 주요자산인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에 기초한 특별한 구제수단을 인정하였다. 즉, 그차가 품질보증되어 있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기초한 묵시적 품질보증이나 일반적인 품질보증에 기초한 통일상법전과 같은 일반법적 구제수단의 요건과 다른 요건인 “합리적 수리시도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는 하자”라는 요건 하에 특별법적인 구제수단인 교환 또는 환불을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재산권보호 및 구제의 실효성을 꾀한 것이다.

### 2. 연방 레몬법의 품질보증원칙확립과 주 레몬법의 개별레몬구제

연방 레몬법은 “레몬 조항(하자발생시, 하자를 통지하고,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시도를 통하여 하자치유의 노력을 우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환불 또는 교환해 줄 것)”, “서면품질보증(Written Warranty), 전부 또는 일부품질보증(Full 또는 Limited Warranty)” 그리고 분쟁해결의 대체적·효율적 구제수단으로서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Inform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와 “레몬소송의 연방 법원 관할 인정” 및 “변호사 비용 구상 인정”을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서면의 전부품질보증 등 연방 레몬법의 한계를 넘

기 위하여 각 주의 레몬법이 1982년 이래로 제정되어 현재 51개의 주 레몬법이 발효되어 있다. 그리고 전술한 플로리다 중재위원회의 초기 3년간 사건수를 보더라도 자동차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에서 이러한 레몬법의 절차는 매우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방 레몬법은 레몬조항의 최초 입법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라는 그 요건의 불확정성으로 기대한 만큼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입법은 코네티컷주와 캘리포니아주를 선두로 하여 각 주에서 “합리적인 횃수의 수리시도”를 객관적, 정량적, 계량적 방법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레몬법 제정을 통하여 자동차에 존재하는 일정한 하자를 양 당사자간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횃수와 수리로 인한 운행중단일수라는 객관화, 정량화, 계량화된 판단기준을 통하여 “레몬”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실효성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의 등장을 촉발하였다. 미국의 레몬법 적용현황에 비추어 보건대, 연방 레몬법과 주 레몬법간에 큰 의미에서의 역할 분담, 기능 분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방 관할이나 집단 소송이나 권리 경합의 면 등 여러 면에서 연방 레몬 조항이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주 레몬 조항상 레몬 추정규정의 뛰어난 권리구제실효성제고로 인하여 사실상의 구체적인 개별레몬차량에 대한 소비자권리구제는 주로 주 레몬조항의 적용을 통하여 추정규정적용의 이익을 향유하며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연방 레몬법은 보다 품질보증에 관한 기본원칙을 연방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정립하는 연방품질보증기본법으로서 기능이 중요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BMW MINI 사례에서 보듯 연방 레몬법은 개별법원에서 개별 차량에 대한 레몬 조항 여부의 적용을 통한 개별 사법적 권리구제를 넘어 결부조건부 품질보증금지원칙과 같이 연방법에서 천명된 중요한 품질보증의 기본원칙을 연방거래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하여 제작자로 하여금 연방 차원에서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방 차원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추상적 품질보증내용통제를 연방거래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으로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연방 레몬법의 실효적 기능축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sup>404)</sup>

### 3. 우리나라 품질보증책임 분쟁의 태동

2014년도의 BMW 520d 판결이나 i-phone 5 판결은 품질보증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화 및 경제발전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매겨져왔다. 정체기에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미 사회가 성숙된 유럽 또는 미국과 같이 소비자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고 소비자운동이 성숙되어 있는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는 소비재 등 상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충분한 보호를 향유하지는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살피본 바와 같이 연방과 주에서 레몬법도 일찌감치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매그노슨-모스틀에 대한 그간의 법적용 성과들을 사후심사하여 준법지침(Compliance Guideline)을 만들어서 발간하고 국민들로부터 피드백<sup>405)</sup>을 받아가면서 소비자의 품질보증에 관한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도 미국이나 유럽의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제작자가 대량으로 생산하여 각종 홍보와 함께 판매하는 종류물인 공산품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소비행위는 민사거래의 상

---

404) 미국에 약관규제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MMWA의 집행기관인 FTC를 통하여 위 원칙을 위반하는 품질보증실무기업과 그 품질보증내용을 단속함으로써 품질보증에 관한 한 마치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약관에 적용됨으로써 추상적 규범통제가 되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405)

<https://www.ftc.gov/news-events/blogs/business-blog/2011/08/mag-moss-rule-review-it-warranty-ed>

당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전형계약편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품질보증계약이나 제작자의 품질보증책임을 규율하는 편은 없다. 그리고 그 소비재의 품질보증책임을 제작자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한 법률도 아직 없다. 이와 같이 이러한 소비자의 민사거래 소비자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법률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유기농 과자에서 식중독균 또는 시리얼에서 대장균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에서부터 자동차 급발진의혹이 주장된 자동차 사고, 혹은 리콜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이르기까지 소비의 대상인 상품의 품질에 관한 논란은 과거에 비하여 늘어나고 있었지만 해당 소비재에 대한 전문지식에 있어 제작자 등에 비하여 열위에 있는 소비자가 문제제기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받게 되는 부담을 넘어서서 전 소송절차를 감내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권리구제를 추구하는 현상을 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대표적인 주요 소비재인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영역인 BMW나 i-phone과 같은 상품<sup>406)</sup>에서 드디어 품질보증서상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하나둘씩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 4. 민법상 새로운 유형의 전형계약인 품질보증계약편 신설(입법제안)

우리 민법의 태도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되어 품질보증인 채로 유통되는 소비재 상품의 거래이더라도 매매계약의 성립만을 중시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에게 묻는 책임인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매도인인 상점 등과 해결하도

406) 고가이면서도 당해 상품에 대한 개인의 애착이 다른 소비재에 비하여 훨씬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이다. 이러한 특성이 있기에 한국과 같이 품질보증에 관한 소비자보호수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손해배상액수도 만족스럽게 인정되는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회비용과 불편을 감내하고서라도 소송절차까지도 불사할 만한 상품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제작자와 소비자 간의 품질보증계약이라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여부를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하면 족하다고 보거나, 혹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에 더불어 권리경합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이나 제조물책임으로 금전배상 정도 받으면 족하다고 보아 굳이 품질보증계약이라는 전형계약편을 들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현상광고와 같은 저빈도의 계약조차도 그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 규율을 두고 있는 민법의 전형계약의 태도를 고려할 때 근대 이래의 민사거래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제작자와 소비자 간의 상품품질보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우리 민법이 시대의 변화에 속도를 맞추어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언뜻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품질보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책임의 본질을 갖는 것으로는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상 종류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작자에 대하여는 매매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물을 수 없다. 다만, BMW 520d판결에 의하면 제작자의 품질보증교부의사를 해석하여 일반적인 법률행위일반론에 따른 법률행위에 기한 품질보증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에서 제작자의 법률행위책임으로서의 품질보증책임을 제작자의 단독행위로 성립한 것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와의 비전형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어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인지 여부는 선명하지 않지만 품질보증서의 교부 등을 통하여 품질보증의사를 밝힌 제작자와 그 품질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소비자간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된 비전형계약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제작자와 소비자간의 상품품질보증에 기초한 계약관계에 관하여 기본 원칙과 규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민법상 전형계약 편

에 새로운 유형의 전형계약으로서 품질보증계약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5. 특별법인 품질보증법의 제정(입법제안)

우리나라는 품질에 관한 산업적 규율을 하는 다양한 행정법규가 있고 상품을 팔기 위한 많은 사업체들을 지원하는 법들이 있지만 그 상품을 사서 소비해주는 국민의 대다수가 겪을 수 있는 상품에 관한 민사적 품질보증문제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특별한 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애플의 i-phone 5사건만 하더라도 원고는 제작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에 이르기까지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의 각종 행정적 권리구제절차를 거치고 중국에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권리구제절차를 밟아 1년여 기간 동안 분쟁을 진행되었음에도 최종 승소판결로 받게 된 총 배상액은 동일 모델 신규 휴대폰단말기 소비자가격에 위자료 50만원을 더한 금액인 1,527,000원에 불과했다.<sup>407)</sup>

이와 같은 일반법인 민법 만에 의한 구제는 품질보증분쟁을 민사법의 기본 이념인 공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충분한 법환경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쌍방 당사자를 전제로 하여 각종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고 있으나 제작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사실상 전혀 대등하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제작자가 스스로의 지배영역에서 설계하고 제작하여 이를 각종 정보로 광고하고 홍보하여 품질보증서를 제공하여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는 별다른 관여를 할 수

---

407) 물론 본인소송이고 젊은 청년이 화가 나서 제기한 소송으로서 다양한 손해발생원인의 주장을 하고 손해배상액을 충분히 주장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법원의 손해배상인정실무관행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법원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인정해주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가 없다. 단지 이러한 소비재 제조 유통 판매 전반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행위의 결과인 상품을 판매점에서 보고 수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구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하여 상품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에 대하여 제작자는 자신의 적극적인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반선행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소비자의 신뢰에 대하여 부합하는 책임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 만약 그게 아니라 제작자는 품질보증분쟁이 제기되더라도 묵묵부답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승소를 하려면 소비자 스스로가 분쟁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주장·입증 행위를 민법의 일반적 주장 입증 원칙에 따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신의칙이나 공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밖에도 소비자는 이미 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제작자에 비하여 부족하며, 법적 쟁송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열위에 있는 등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쌍방 대등성은 현실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공평하지 않은 분쟁현실을 공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다투어 볼 수 있는 그라운드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 그리고 동종 동류의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개인에 따라 다른 분쟁해결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객관적, 정형화된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구제결과가 보장될 필요성, 이러한 구제가 일반 법원의 일반 민사쟁송절차에 의하여 다른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별다른 차별 없이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인 민사법적 증명책임에 의하여 판단이 도출되기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분쟁해결의 결과가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품질보증에 관한 새로운 특별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보호에 과도하게 치우친 형평성을 상실한 법을 입법하자는 것이 아니다. 품질보증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정하고 품질보증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확립하며 품질보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형평에 부합하는 해결기준과 그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국민대다수의 일상적 소비생활의 대부분이 종류물인 공산품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거래로 채워지고 있는 현대의 변화된 거래현실을 지금이라도 무게감 있게 인식하고 이를 사법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품의 품질보증이라는 계쟁거래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자 판단기준과 권리의 내용을 객관화, 정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문성에 기초한 적절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그 구제의 실현에 알맞은 절차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종류물소비재와 관한 품질보증분쟁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원고가 되고 비슷한 종류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피해액 등 소송물의 특성에 부합하게 집단 소송 등을 규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전형계약의 편에 새로운 유형으로 품질보증계약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게 된 이후에도 특별법으로 품질보증법(가칭)을 제정하여 법적 성질, 요건, 효과, 적용범위,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민법은 이미 도급계약을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을 별도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과 같은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여 가장 고가의 부동산 소비재관련 분쟁을 특별히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와 같은 품질보증법을 제정하게 될 경우에 미국 레몬법은 중요한 참고법규로 기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은 대부분 일반적, 추상적이다. 약관규제법만 보더라도 모범약관자체를 정해놓고 그와 다른 사업자의 약관이 있을 때 사업자의 약관을 모범약관자체로 대체하여 갈음하는 효력을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 또는 주법은 매우 상세하게 실무에 직접 쓰일 품질보증서의 일부항목에 대한 내용이나 양식, 게시문구 등을 아예 정하고 있고 만약 사업자의 품질보증서 내용이 그와 다른 경우 사업자의 품질보증서를 법규로 덧씌워 버리는 효력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품질보증법 입법에 있어 하자나 손해배상요건의 정량화, 계량화, 객관화와 더불어 눈여겨보

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6. 결어

우리나라에도 품질보증과 관련한 소비자에 의한 분쟁이 태동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의 불만은 수세기에 걸쳐 증가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정립한 법률의 효력을 갖는 특별한 구제수단은 아직 없었다. 단지 유통업체나 제작자에 직접 연락을 해보거나 소비자원이나 행정부 담당부서에 민원을 넣거나 언론에 알리는 등 비사법적 민원으로 해결의 시도를 해보았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가령 자동차와 같은 상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는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일단 개별 소비자의 민원은 다른 업무에 비하여 후순위로 취급되거나 무성의하게 다루어질 가능성도 크고, 부처간 칸막이문제나 협조문제, 혹은 권한 박임을 들어 다른 부처로 서로 넘기며 담당자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등 효율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껏 문제제기에는 성공한다고 하여도 갑론을박 논쟁만 지지부진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가장 사법적 구제절차와 유사한 현존하는 소비자원의 분쟁해결절차는 양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지 않고 계속 다투는 한 강제력이 없어서 사실상 실제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소비재거래의 특성과 사법적 구제의 비용상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을 구하는 경우까지는 거의 없다. 현대 사법거래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의 상품구매관련 사법적 관계에 대하여 이와 같은 기본원칙의 부재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우리 민법의 현 규정, 그리고 약관규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법 등만으로는 품질보증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판단기준과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소비자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 없이 고른 구제가 보장되는 권리의 내용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빈도로 보아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사거래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율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소수의 빈도로 발생하는 거래를 예정하여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를 일반법에 규정하여 두다보니, 그나마 존재하는 이러한 일반법상의 법규로 원래 규율대상으로 예정하였던 그 소수빈도의 거래뿐만 아니라 대다수빈도의 거래에 대하여서도 일반법이라는 명목하에 적용하게 됨으로써 일반법규의 특성상 별다른 구체적 판단기준이 있기 어려운 동 법규의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판단기준의 입법공백이 발생하고 그 입법공백의 크기만큼 일반규정이나 행정절차규정에 기하여 판단하게 되는 판단자 또는 행정실무담당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와 같이 과도하게 확대된 만큼 판단자나 행정실무담당자의 판단오류는 확대된 범위의 불공평, 부정의의 크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결국 품질보증법의 제정은 현대 대량생산, 대량유통시대의 사회적 요구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품질보증과 관련한 제작자와 소비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법률행위해석일반론에 의한 사법적 규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때 민법의 법률행위성립과 효력에 관한 일반론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과 같은 특별법, 그리고 비록 법규의 효력은 지니고 있지 못할지라도 유일하게 품질보증분쟁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

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보다 더 전문화되어 가고, 조립형 자동차, 조립형 스마트폰, 인간형 로봇 등 이제 상품 자체의 품질보증과 그 부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문제 등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품질보증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환경과 거래현실의 변화는 민사적 품질보증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하자담보책임의 하자판단기준으로서의 주관설이나 손해배상판단기준으로서의 통상손해, 특별손해, 상당인과관계설 등 추상적인 일반론적 판단기준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변화된 거래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거나 신속하고 필요한 구제를 실현하는 것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변화는 민사적 품질보증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하자판단기준이나 손해배상의 범위결정기준에 있어 보다 정량화된 구체적인 객관적 기준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품질보증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손해보고 넘어가고, 가끔 너무 억울하면 사업체나 행정부에 민원을 넣어 보고, 아니면 집단 리콜 등 국가행정력이 미칠 때만을 기다리게 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개개인이 별다른 기회비용의 부담 없이 신속하게 구제를 강구할 수 있는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담은 민법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육성이나 채권자측의 필요가 보다 우선시된 입법보다 민사거래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종류물인 상품의 매매에 대한 분쟁해결에 관한 법, 결집되어 대변되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법 거래 중 종류물의 거래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립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관기관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행정부적 차원에서는 소비자원의 기능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같이 확대할 수도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이 소비자분쟁조정원을 별도로 설립할 여지도 있으며, 사법부적 차원에서는 소비자분쟁전담

법원<sup>408)</sup>을 설립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중립기관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을 활용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중재원 등을 별도로 구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구제기준의 면이나 구제절차의 면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미국의 연방 및 주 레몬법은 중요한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

일단 제작자에 대한 책임을 물음에 있어 매매계약관계의 부존재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입법을 통하여 품질보증책임의 근거를 보다 확실히 정립하고, 권리발생요건에 있어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담보책임의 추상적 기준과는 달리 레몬법처럼 “3+1”이나 “수리로 인한 30일간의 사용불능” 시 별다른 요건의 주장·입증없이 “Repair or Replace/refund”의 구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자나 상품의 부적합성판단기준을 정량화, 계량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있어서도 선명하게 액수를 산출할 수 있는 공식까지 규정하는 등 명확하고 소비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강한 법적 안정성이 예상되는 선명한 구제수단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레몬법처럼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정은 양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쟁송절차로 가더라도 승소한 소비자의 변호사비용을 배상해줌으로써 대부분의 소송절차가 본인의 기회비용 희생 없이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 등은 눈 여겨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객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품질보증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의무를 확실히 지우고 있고, 결부조건부 품질

---

408) 사법부의 인원이나 업무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운영방식에 있어서 해당 상품의 전문가를 포함한 자원봉사자위원들로 구성하여 영국의 Magistrate Court (영한사전에는 치안법원 정도로 번역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번역할 만한 한국어를 찾기 어려워서 그냥 원어로 사용하였다.)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Magistrate Court는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에 해당하는 매우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 직업판사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판단자의 역할을 하여 커뮤니티에 봉사한다. 그 자원봉사자들은 통상 무급인 경우가 많다.

보증을 금지하는 등 품질보증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법이 참고하여야 할 레몬법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409)

본 연구를 통하여 이렇게 품질보증에 관한 대표적인 입법례인 미국 레몬법을 소개하고 미국의 Warranty개념에 기초한 품질보증의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써, 자동차품질보증 문제를 중심으로 품질보증문제에 대하여 법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연방품질보증법을 제정했던 미국의 레몬법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 품질보증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논의나 최소한 주요자산인 자동차품질보증 또는 기타 아이폰 등 고가의 내구재 상품들에 대한 분쟁해결 등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연구의 결론처럼 정형화, 계량화된 객관적 판단기준에 따라 신속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일정 유형의 하자가 판단되고 그 환불범위도 법규에 따라 명확하게 공식까지 정하여져 있게 된다면 소비자만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제작자의 입장에서라도 최소한의 수리를 통하여 자신의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는 것을 교환이나 환불의 권리발생의 법정요건으로서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환불범위에 있어서도 품질보증법상의 규정된 수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책임을 이행이 인정되므로 비합리적으로 무조건 다른 새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위 “진상 소비자 또는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고민하거나 개별 분쟁대응에 자원을 낭비할 필요 없이 법정된 내용을 법정절차에 따라 이행하면 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동차 품질보

---

409) 그리고 품질보증기간 자체에 한정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내구연한이나 부품의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은 관련 법령 등을 찾아 보아야만 알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품질보증서와 관련정보 제공서류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고 개정내용 등의 반영 및 통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의무 등을 인정하는 것도 권리구제의 실현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관련부처에서는 적절한 부품의 보유기간을 정하여 기업체의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엄격히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증을 포함하는 품질보증법의 제정 또는 민법상 전형계약의 새로운 한 유형의 편입이 이루어진다면 제작자측에서는 법규화된 기준에 따라 정량화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소비자 역시 개인의 능력이나 자원에 따른 커다란 차이 없이 보다 합리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판단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결부조건금지, 충분한 품질보증수리센터의 유지 등 품질보증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품질보증책임을 신속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정량화된 객관적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상 소비자거래의 대부분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규율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품질보증관련법규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품질보증에 관한 명확한 규율기준을 수립하고 국내 소비자보호기능을 갖는 법규가 체계적, 정합적으로 제정될 때 애플과 같이 각 국의 소비자보호관련법령에 따르겠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국제통상의 전 글로벌마켓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의 상품소비자에 대한 보호 역시 타국에 비하여 불공평,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일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제정된 품질보증법이 적용되고 다양한 품질보증법의 논의가 성숙되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BMW MINI 결부조건부 품질보증금지원칙위배 심결사건’이나 미국 국토안보국의 한국 특허청과의 소위 ‘아이폰 짝퉁 부품’ 합동지재법위반조사사건과 같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기업이나 국가경제, 또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하여 국내외 근거법규간의 관계나 유사점과 차이점, 부각되는 법적 쟁점이 달라지는 이유 등에 대하여 명료한 법리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또는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대체부품인증제 등의 사회제도가 국내외 지적재산권법을 위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법, 경쟁법에 더불어 품질보증법까지 3개의 법역에

걸쳐서 결부조건부 품질보증금지의 원칙과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의 실효적 보장,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쟁마켓, 대체부품과 짝통부품의 구별기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경쟁마켓의 실현과의 조화 등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토대로 기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미국 법령

미국 연방 레몬법 (U.S Code의 해당부분을 <http://uscode.house.gov>에서 인용)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플로리다 레몬법  
(<http://www.flsenate.gov/Laws/Statutes/2014/Chapter681/All>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600-0699/0681/0681ContentsIndex.html](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600-0699/0681/0681ContentsIndex.html))  
미국 주 레몬법 ([www.westlaw.com](http://www.westlaw.com)의 법령)  
Alabama : Alabama 1990 Ala. Acts 505 (effective July 1, 1990).  
Alaska: Alaska Stat. § § 45.45.300 to 45.45.360 (1984).  
Arizona: Ariz. Rev. Stat. § § 44-1261 to 44-1265 (West 1984).  
Arkansas: AR ST s 4-90-401, et seq.  
California: Cal. Civ. Code § § 1793.2 to 1793.4 (West Supp. 1984).  
Colorado: Colo. Rev. Stat. § § 42-12-101 to 42-12-107 (1984).  
Connecticut: Conn. Gen. Stat. § § 42-179 to 42-186 (West Supp. 1983).  
Delaware: Del. Code Ann. tit. 6, § § 5001 to 5009 (Supp. 1983).  
District of Columbia: D.C. Code Ann. § § 40-1301 to 40-1309 (1985).  
Florida: Fla. Stat. Ann. § § 681.10 to 681.108 (West Supp. 1989).  
Georgia: Ga. Code Ann. § § 10-1-780 to 10-1-793 (1990).  
Hawaii: Haw. Rev. Stat. § 490:2-313.1 (1984).  
Idaho: Idaho Code § § 48-92 to 48-909 (1988).  
Illinois: Ill. Rev. Stat. ch. 12W, § § 1201 to 1208 (1983).  
Indiana: Ind. Code § 24.5.13 (1988).  
Iowa: Iowa Code Ann. § 322E.1.  
Kansas: Kan. Stat. Ann. § § 50-645 to 50-646 (1985).  
Kentucky: Ky. Rev. Stat. Ann. § § 367.860 to 367.870 (Bobbs Merrill Supp. 1984).

Louisiana: La. Rev. Stat. Ann. § § 51:1941 to 1948 (1984).  
Maine: Me. Rev. Stat. Ann. tit. 10, § § 1161 to 1169 (Supp. 1983-1984).  
Maryland: Md. Code Ann., Com. Law § § 14-1501 to 1504, 2001 to 2007 (1984).  
Massachusetts: Mass. Gen. Laws Ann. ch. 90 § 7N½ (West Supp. 1983).  
Michigan: Mich. Comp. Laws Ann. § § 257.1401 to 257.1410 (West 1986).  
Minnesota: Minn. Stat. § 325F.665 (West Supp. 1984).  
Mississippi: Miss. Code Ann. § § 63-17-151 to 63-17-165 (1985).  
Missouri: Mo. Ann. Stat. § § 407.560 to 407.579.  
Montana: Mont. Code Ann. § § 61-4-501 to 61-4-533 (1983).  
Nebraska: Neb. Rev. Stat. § § 60-2701 to 60-2708 (Supp. 1983).  
Nevada: Nev. Rev. Stat. § § 598.751 to 598.786, 598.791 (1983).  
New Hampshire: N.H. Rev. Stat. Ann. § 357-D (Supp. 1984).  
New Jersey: N.J. Stat. Ann. § § 56:12-29 to 56:12-49 (West Supp. 1988).  
New Mexico: N.M. Stat. Ann. § § 57-16A-1 to 57-16A-9 (1986).  
New York: N.Y. Gen. Bus. Law § 198-a (McKinney 1983).  
North Carolina: N.C. Gen. Stat. § 20-351 (1987).  
North Dakota: N.D. Cent. Code § § 51-07.16 to 51-07.22 (1985).  
Ohio: Ohio Rev. Code Ann. § § 1345.71 to 1345.77 (1987).  
Oklahoma: Okla. Stat. Ann. tit. 15, § 901 (West 1985).  
Oregon: Or. Rev. Stat. § § 646.315 to 646.375 (1983).  
Pennsylvania: Pa. Stat. Ann, tit. 73, § § 1951 to 1963 (1984).  
Rhode Island: R.I. Gen. Laws § § 31-5.2-1 to 31-5.2-13 (Supp. 1984).  
South Carolina: S.C. Code Ann. § § 56-28-10 to 56-28-110 (1989).  
Tennessee: Tenn. Code Ann. § § 55-24-201 to 55-24-211.  
Texas: Tex. Rev. Civ. Stat. Ann. art. 4413(36), § 6.07 (Vernon Supp. 1983).  
Utah: Utah Code Ann. § § 13-20-1 to 13-20-7 (1985).  
Vermont: Vt. Stat. Ann. tit. 9, § § 4170 to 4181 (1984).  
Virginia: Va. Code Ann. § § 59.1-207.9 to 207.16 (1988).  
Washington: Wash. Rev. Code Ann. § § 19.118.010 to 19.118.160 (West Supp. 1987).

West Virginia: W. Va. Code § § 46A-6A-1 to 6A-9 (Supp. 1984).

Wisconsin: Wis. Stat. § 218.015 (West Supp. 1984).

Wyoming: Wyo. Stat. Ann. § 40-17-101 (Supp. 1984).

## □ 미국 의회 · 정부기관 자료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의 e-CFR Data의 C.F.R.

<http://www.ecfr.gov/cgi-bin/retrieveECFR?gp=1&SID=80e6fdfbc5239a06ce86a15fd34cf9&ty=HTML&h=L&r=PART&n=pt16.1.700>

<http://www.gpo.gov/fdsys/pkg/CFR-2012-title16-vol1/pdf/CFR-2012-title16-vol1-part700.pdf>

S. Rep. No. 151, 93d Cong., 1st Sess. 19 (1973)

H.R. Rep. No. 1606, 93rd Cong., 2d Sess. (1974)

H.R. Rep. No. 93-1107, at 24 (1974).

120 Cong. Rec. 31,304, 31,318 (1974)

Pub. L. No. 93-637, 88 Stat. 2183 (1974)

H.R. OF FLORIDA, COMM. ON REGULATORY REFORM, FINAL STAFF ANALYSIS AND ECONOMIC IMPACT STATEMENT ON H.B. 854, at 10 (1988)

FLORIDA LEMON LAW ARBITRATION PROGRAM, 1989 ANNUAL REPORT 1

West's Florida Administrative Code, Title 2. Department of Legal Affairs, Chapter 2-30. Florida Lemon Law 2-30.001

National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https://www.nada.com/> 참조

West's F.S.A. 501절 Consumer Protection의 Part II. Deceptive and Unfair Trade Practices

FTC의 Businessperson's Guide to Federal Warranty law,

<https://www.ftc.gov/tips-advice/business-center/guidance/businesspersons-guide-federal-warranty-law>,

Warranties: Making Business Sense Out of Warranty Law, a Federal Trade Commission Manual for Businesses.

<https://www.ftc.gov/news-events/blogs/business-blog/2011/08/mag-moss-rule-review-it-warranty-ed>

## □ 미국 도서, 논문 및 사례(판례와 심결례)

Black's Law Dictionary, 8th Edition

OXFORD Desk Dictionary and Thesaurus, Second American Edition, OXFORD

Barkley Clark and Christopher Smith, 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Joan Vogel, Squeezing Consumers: Lemon Laws, consumer Warrantuies, and a Proposal for Reform, 1985 Ariz. St. I.J. 589

59 A.L.R. Fed. 461 (Originally published in 1982) § 2 [a] Summary and background—Generally, Consumer product warranty suits in federal court under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15 U.S.C.A. § 2301 et seq.),

88 American Law Reports (이하 ‘A.L.R.’ 라 한다) 5th 301 (Originally published in 2001)

Harold Greenberg, 22 Ind. L. Rev. 57, B. THE INDIANA MOTOR VEHICLE PROTECTION ACT OF 1988: THE REAL THING FOR SWEETENING THE LEMON OR MERELY A WEAK ARTIFICIAL SWEETENER?, Indiana Law Review, 1989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in Indiana Law

Michael F. Brockmeyer, I. A. 2. c., FEDERAL AND STATE WARRANTY LAWS, C739 ALI-ABA (271American Law Institute - American Bar Association Continuing Legal Education), January 9, 1992

Lawrence Alan Towers, J.D. 11 Am. Jur. Proof of Facts 3d 343 (Originally published in 1991), “Lemon Law“ Litigation—Existence of

Substantial Defect, § 1. General comments;

Reitz, Consumer Product Warranties Under Federal and State Laws, § 12.05 at 204-07. (1987)

Comment, Consumer Warranty Law in California Under the Commercial and the Song-Beverly and Magnuson-Moss Warranty Acts, 26 UCLA L. REV. 583, 594-597 (1979), 666-67.

Duane A. Daiker, FLORIDA'S MOTOR VEHICLE WARRANTY ENFORCEMENT ACT: LEMON-AID FOR THE CONSUMER, 45 Fla. L. Rev. 253

Elaine K. Zipp, J.D. ALR, Jurisdiction of district court to entertain class actions by consumers pursuant to provisions of Magnuson-Moss Federal Warranty Act (15 U.S.C.A. §§ 2301 et seq.) § 1. Generally

Diane L. Schmauder, J.D., 47 A.L.R.5th 677, Liability on implied warranties in sale of used motor vehicle.

Colton v Decker (1995, SD) 540 NW2d 172, 47 ALR5th 951

M.Dougherty, J.D., Francis Products liability: automobile manufacturer's liability for injuries caused by repairs made under manufacturer's warranty, § 1. Generally, 40 A.L.R.4th 1218

Gray D. Spivey, J.D., 68 A.L.R.3d 1277, Promise or attempts by seller to repair goods as tolling statute of limitations for breach of warranty

John S.Herband, J.D. Construction and effect of new motor vehicle warranty limiting manufacturer's liability to repair or replacement of defective parts, 2 A.L.R. 4th 576, §§ 1-2

Jay M. Zitter, J.D., Automobile Repair Shop's Duty to provide Customer with Information, Estimates, or Replaced parts, under Automobile Repair Consumer Protection Act, 78A.L.R.6th 97

Gregory G. Sarno, J.D., Liability of repairer for unauthorized, unnecessary, or fraudulent repairs of motor vehicle, 78A.L.R.6th 97, 23 A.L.R.4th 274 (Originally published in 1983) Rules, Regulations, Statements, and Interpretations Under Magnuson-Moss Warranty Act, 40 Fed. Reg. 60,168, 60,210-11 (Dec. 31, 1975).

General Motors Corp. v. Schmitz, 362 Md. 229, 764 A.2d 838, 88 A.L.R.5th 735 (2001), Patricia C. Kussmann, J.D., Validity, Construction and Effect of State Motor Vehicle Warranty Legislation (Lemon Laws) Lawrence Alan Tower, Automobile Warranty Litigation § 2, 39 Am.Jur.Trials 1

Mark S. Dennison, Warren Freedman, Punitive Damages I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 20.7., 54 Am.Jur. Trials 443

George. A.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Pratt v. Winnebago Indus., Inc., 463 F. Supp. 709, 714 (W.D. Pa. 1979)

Avenell v. Westinghouse Electric Corp., 41 Ohio App. 2d 150, 324 N.E.2d 583, 586-87 (1974),

505 So.2d 587, RESULTS REAL ESTATE, INC., Appellant,v. LAZY DAYS R.V. CENTER, INC., a Florida corporation, Winnebago Industries, Inc., an Iowa corporation, and Chevrolet Motor Division, a division of General Motors Corporation, Appellees. No. 86-427. April 10, 1987.

Schafer v Chrysler Corp. (1982, ND Ind) 544 F Supp 182.

Novosel v Northway Motor Car Corp. (1978, ND NY) 460 F Supp 541, 1978-2 CCH Trade Cas ¶162380, 25 UCCRS 137.

BMW of North America v. Gore (1996) 517 U.S. 559, 116 S.Ct. 1589, 134 L.Ed.2d 809 (BMW ).

State Farm Mut. Auto. Ins. Co. v. Campbell (2003) 538 U.S. 408, 123 S.Ct. 1513, 155 L.Ed.2d 585

2015 WL 1346181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In the Matter of BMW of North America, LLC a limited liability company. File No. 132-3150, February 5, 2015,

<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lemon?s=t>

[http://www.volkswagenag.com/content/vwcorp/content/de/investor\\_relations/Warum\\_Volkswagen/MQB.html](http://www.volkswagenag.com/content/vwcorp/content/de/investor_relations/Warum_Volkswagen/MQB.html)

<http://www.projectara.com/>  
<https://twitter.com/ProjectAra/>  
<http://www.qld.gov.au/law/laws-regulated-industries-and-accountability/queensland-laws-and-regulations/fair-trading-services-programs-and-resources/consultation-regulatory-reform/lemon-laws/>  
[https://www.facebook.com/lemonlaws4aus,](https://www.facebook.com/lemonlaws4aus)  
<http://www.abc.net.au/news/2015-06-17/queensland-to-push-for-national-lemon-laws-when-new-cars-go-bad/6553056>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trips\\_01\\_e.htm?l=it](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trips_01_e.htm?l=it)  
<http://www.courthousenews.com/2015/06/04/eu-high-court-clarifies-europe-s-lemon-law.htm>

## □ 국내 법령, 판례, 문헌 등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http://law.go.kr))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15.01.06 [법률 제12986호, 시행 2015.01.06]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가소549092 판결  
김재형,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⑤ 민법(하)”, 법률신문 2015. 3. 15.자, 12면

주지홍 미국 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이태희, 미국통일상법전상의 담보책임, 법률실무연구 제15집, 1985. 1.  
<http://slownews.kr/22336>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4&pg=1&npp=10&catmenu=m02\\_01\\_01\\_02&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4910](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4&pg=1&npp=10&catmenu=m02_01_01_02&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4910)  
[https://locate.apple.com/kr/ko/?target=nav/find\\_a\\_store](https://locate.apple.com/kr/ko/?target=nav/find_a_store)

## **Abstract**

# Product Warranty Regulation, with a focus on so-called “Lemon Law”

Hannah Kim  
Major in Law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Globalization including the spread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Agreements has resulted in signatory countries implementing domestic regulation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se Agreements, i.e. Intellectual Property(IP) protection under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Those implementing domestic regulations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rnationally protected righ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getting closer in context, while the layperson's everyday rights which rely on domestic regulations and have not been protected world-wide equally by international agreements facing difficulties in the maturity of individual nations' legal fields especially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Related Aspects of Domestic Rights Regulations. In other word, while some jurisdictions have mature and well-balanced laws in most areas, others are still developing in fields like consumer protection law including product warranty. Traditionally these legal fields were regarded as public,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economy,



international trade or international economy law. But in the real world, where everyday transactions occur, especially from the consumer's view, it is not so easy to categorize.

There has been two interesting cases in the US and South Korea in 2015. In February 2015, US Federal Trade Commission(FTC) found BMW North America LLC violated 15 U.S.C. § 2302(c), and Section 5(a)(1) of the FTC Act, 15 U.S.C. § 45(a)(1) which are the "Tying Prohibition of Magnuson-Moss Warranty - 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Federal Warranty Act, Federal Lemon Law, MMWA)" which prohibits companies from conditioning their warranties on the consumer's use of any article or service (other than an article or service provided without charge under the terms of the warranty) identified by brand, trade, or corporate name and the related rules promulgated by the FTC under the Federal Warranty Act of 16 C.F.R. §§701, 702 and 703 by conditioning its warranty on the use of BMW MINI dealers and genuine BMW MINI parts without providing such parts and services without charge during the fourth year of its warranty. Meanwhile, US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HSI) raided a non-authorized, independent i-phone service provider in Seoul, South Korea, searched and seized "fake" i-phone parts and investigated them on charg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with "fake" i-phone parts which were not labeled with the Apple brand as genuine Apple parts. The investigation by a US government authority happened in May 2015 in cooperation with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in South Korea where there is no directly operated Apple Store and directly operated Apple after sales service for i-phone consumers.

First of all, this thesis aimed to raise issues about the unfairness caused by the existence of certain domestic regulations which are normally dependent on the level of maturity of the society and became more significant under the current global trade regime because it is related to certain rights which are protected internationally. This can be expressed as 'Same product manufacturer and same protection for their IP Rights in other countries' or 'Same product consumers but different consumer protection including civil dispute of warranty by the country where you live'. Between the countries who are signatories to a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that requires similar implementing regulations in reciprocity for the specific subject, i.e. IP right protection, which is a part of those international agreements, there can be certainly a different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Secondly, this thesis aimed to call attention to necessity to address the most important causation of those differences or unfairness and to enact a new title for "Product Warranty" in the civil code and a new separate "Product Warranty Act" in a timely manner. What makes the difference in view points in the real world legal enforcement between these two cases especially when you think on the side of the consumer who merely wants to fix their product regardless of i-phone or MINI at the closest independent service shop, with a cheaper spare parts, and enjoy the benefit of competition in the everyday consumers civil law environment? Of course, the matter of whether the 3rd party spare parts are legitimate, licensed or infringed "fake" is on a completely different dimension of legal questions. However, when you consider layman consumer life in the real world, it is hard to deny that there are significant questions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above two cases can be deemed as fair and equal treatment in the global trade market from the view of consumers who want to get their consumer products fixed with independent service and 3rd party spare parts without facing the risk of warranty nullification or from the view of global manufacturers who want to enjoy the business opportunities of after-sales markets with genuine parts and authorized service through warranty measures or from the view of independent service/parts providers who want to participate in those after-sales markets as competitors. Is consumer protection or promotion of market competition not as important when it comes to an Apple product and their IP rights in comparison to BMW MINI? Or are only US consumers allowed to enjoy their consumer rights from multinational manufacturers? Why is the US independent service provider for MINI okay with running their business with 3rd party spare parts and protected as well as the purchaser of a MINI who isn't required to take a risk of warranty nullification when they choose to use unauthorized service shop and spare parts, whereas a Korean independent service provider for i-phone is forced to shut down after criminal charges. Korean consumers don't have the right to choose an independent service provider because there is no such thing existing legitimately after the US HSI raid? Can Korean Consumers not help but subjugate to Apple Service Policy no matter how unfair it would be since there is no alternative service provider but Apple's monopoly? What would be the fundamental principle to govern and rule the line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and its limits for the balance with other public policy such as market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s especially in global markets fair consumer protection? Normally global manufacturers like BMW MINI or i-phone tend to provide the same written warranty terms to global

customers regardless of nationality. Normally application of the domestic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 clause is incorporated in their warranty terms. While the US has enacted and applied Federal Warranty Act(Federal Lemon Law) since 1975 and each of the 50 states has also enacted Lemon Laws which regulate consumer product warranty, Korea has never enacted a Product Warranty Act but for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Standardized Contract Regulation Act) since 1987 which has no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nsumer product warranty so far. Therefore most warranty disputes have been dealt with under general civil code and civil law doctrines even if there have been only 2 court cases so far. Of particular interest is that Korean courts are starting to face consumer product warranty cases since 2014. Besides, US Federal Lemon Law is not mere Lemon Law any more, its fundamental axis of potentiality is on the track of changing from domestic warranty act to a international trade control measure against non-American entities who sell their products in the US market just like Sherman Anti-trust Act.

Thirdly, this thesis also aimed to provide practical reference or tools for emerging consumer product warranty court cases and prepare for future further discussions related to IP rights,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duct Warranty in global trade. In addition, this thesis aims to suggest new enactment’s with possible reference to US Lemon Law including; the full Federal Lemon Law; the full Florida Lemon Law; Comparison and analysis of 3 states Lemon provisions (Connecticut, California and Florida); and analysis as well as comparison with the US Uniform Commercial Code or Korean Civil Code including discussions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urrent Korean Civil Code Warranty Provisions of Sales and Lemon

Law rights including privity requirement as well the application scope with regard to Product Liability Act, Torts, Breach of contract, Remedy for Incomplete specific performance. This research showed elements of rights under warranties or civil contracts related to defects of goods, especially mass-produced, can be quantified to achieve clearer standards for specifically aime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To deliver sufficient investigation and analysis to accomplish these aim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TC BMW MINI case, Korean i-phone 'fake' parts case and the first 2 Korean court cases of Consumer Product Warranty, current Korean regulations related to warranty, and observations of real market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 for consumer product and warranty service. More importantly, this thesis introduces US Lemon Law to Korean civil law field related to Product warranty dispute resolution measure and warranty right elements for the first time. So, it focused on careful and thorough introduction of Federal Lemon Law and Florida Lemon Law by full translation to Korean Legal Terms and restructuring and reorganizing its format by subject-base analysis. The reason why this thesis focuses on Lemon Law introduction is because a product warranty act will be a corner stone to develop future further meaningful discussions on overall relationship among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Fair Competition, Fair consumer Rights and consumer protection in a global market following the issues raised above, and also because Korea still does not have any domestic product warranty act. Furthermore, this study introduces a recent Korean law revision on Motor Vehicle Service and 3rd party spare parts certification system which the author was involved and

supported passing the bill by drafting or counseling the government because it can inspire the harmonized way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promoting proper market competition and uphold consumers rights for independent service and 3rd party spare parts usage without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s globalized trade era.

In conclusion, this thesis expresses the stance that this is the appropriate time for Korea to enact a “Product Warranty Act” and start to contemplate the fundamental principles to regulate IP rights, Fair Competition Market, Consumer Rights and Fair Protection in global trade harmoniously.

.....

**Keywords : US Lemon Law, Product Warranty including Motor Vehicle, Quantification of warranty right elements, Consumer Product and Right to Repair, 3<sup>rd</sup> Party Repair Parts·Service and Anti-tying Clause, Issue-raising on the Discipline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Fair Competition and Equal Consumer Protection on National Implementing Regulations·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in Global Trade**

*Student Number : 2005-21775*

